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

-1910年代를 중심으로-

李 漢 九*

目 次

Ⅰ. 緖 論
Ⅱ. 植民地的 棉作奬勵政策 強制
Ⅲ. 棉作 第1期 擴張計劃
Ⅳ. 民族系 綿産業의 存在樣態
1. 製造業
2. 商 業
Ⅴ.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의 主導階層
1. 民族系 企業家들의 類型
2. 貴族, 官僚出身型 企業家
3. 地主出身型 企業家
4. 庶民出身型 企業家
Ⅵ. 結 論

Ⅰ. 緖 論

日本의 産業革命은 1882년 中央銀行인 日本銀行의 설립으로부터 개시되었는데 綿紡織工業이 동 혁명을 주도하였다. 당시 면방직공업부문의 기계화는 1880년대 力織機의 도입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작업은 정부 및 澁澤榮一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 부문의 大資本化, 大量生産體制 등이 확립되었다.

일본방직산업 근대화의 최우선 과제는 대량의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차제에 일본 방적자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韓國市場의 개척에 주목하였는데 淸日戰爭(1894~5)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동자본의 한국시장 장악의 결정적인 계기를 초래하였다.

* 水原大學校 經濟學科 副敎授, 經博

한편 일본은 방적산업의 근대화에 필요한 면화 등 원료를 당초 일본내에서 棉作增産을 통하여 조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露日戰爭(1904~5년)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가 기정사실화 하자 일본은 장차 한국을 日本紡績産業의 原料供給地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함과 함께 면화재배에 적합한 한국의 남부지방에 미국산 陸地棉의 재배를 획책하였다.

이후부터 한국은 일본 방적제품의 최대 수요처로서, 원료공급지로서 재편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면방적산업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이후 한국과 일본은 植民本國과 植民地라는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틀속에서 한국의 면공업부문은 어떠한 양태로 존재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 또한 매우 흥미있다.

차제에 본 연구는 한국민들 衣類需要의 대종을 차지하는 綿産業이 일제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는가를 부각시키는데 주안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朝鮮總督府의 綿産業政策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면산업의 존재양태 및 근대 면산업성장을 주도한 계층과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규명함으로써 日帝下 韓國資本主義의 성격규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시기를 日帝下(1910~1939)로 국한하였는데 대상산업은 棉花栽培, 繰綿, 紡績, 紡織 등 제조업 및 상업, 무역업무분까지 포괄하였다. 그러나 작업량이 방대하여 연구의 편의상 본 연구는 크게 1910년대와 2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는데 본 논문은 제1차 작업으로써 우선 일본의 한국강점 이후 初期經營時代(1910~1919)에 촛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는 기존의 문헌(①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社會組合要錄〈1921년판, 1941년판〉, ② 張在洽 編, 朝鮮人大商店辭典〈1927년〉, ③ 朝鮮織物協會 編, 朝鮮織維要覽〈1943년판〉, ④ 東亞日報, 1922~1929년치, ⑤ 木山耕藏 編, 朝鮮紳士銘鑑〈1911〉, ⑥ 朝鮮研究會 編, 新朝鮮成業銘鑑〈1917〉, ⑦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士興信錄〈1922〉) 등을 전부 섭렵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업체는 공칭자본이 대체

로 1만圓 이상의 회사조직을 갖춘 기업체에 국한된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규모 등은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제조업의 경우 면직물 제조업체만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면직물제조와 병행하여 絹布, 麻布 등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업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촛점이 일제하 한국 면산업의 총체적인 성장과정의 규명에 두어졌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의 경영양식, 기계화 정도, 자본의 축적과정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밝혀둔다.

Ⅱ. 植民地的 棉作奬勵政策 强制

일본의 大阪, 名古屋지방은 고래로 면공업의 중심지였다. 서구문물이 일본에 유입되기 이전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면화의 공급 및 織布의 생산은 원칙적으로 자급자족체제였다. 그러나 開港(1854) 이후 西洋産 綿絲, 布의 대량 유입과정에서 면공업의 근대화가 개시되었는데 일본 면공업의 근대화는 방적부문으로부터 개시되었다.

당시 일본은 값싼 「輸入絲를 대체할 계획하에 殖山興業政策의 일환으로 2千錘 규모의 방적공장을 설립하는」[1] 한편 大阪地方의 商人層 및 華族層 또한 동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1萬錘 규모의 大阪紡績(株)를 설립」[2]하였다. 일본 綿紡績業의 근대화는 이를 계기로 개시되었는데 이후 1879년부터 188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13개의 근대적인 방적공장이 설립되었다.

일본정부 및 상업자본가들을 중심으로한 방적공업의 근대화, 대규모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890년에는 일본은 드디어 면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한편 1899년에는 紡錘數가 1百萬錘를 능가하게 되었다.[3]

---

1) 黃完晟, 日本資本主義成立期의 工業構造, 經營史學會 編, 經營史學, 第6輯, 1991. 12, p.154.

2) 상게 논문, p.154.

3) 金宗炫, 日本近代經濟史, 1991, p.70, 〈표 3-2〉 참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되었으나 紡績部門의 근대화는 외국산 輸入絲의 사용을 전제로한 것이었다. 차제에 일본은 원료인 면화의 자급책을 강구하였는데 1905년 露日戰爭의 승리를 계기로하여 장차 한국을 棉花供給地로 육성,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06년에는 일본의 紡績資本을 주축으로 한국내에 「棉花栽培協會」를 조직하였다. 동 협회는 미국산 陸地棉種의 무상배포, 새로운 면화재배법 지도, 陸地棉 買占價의 우대 등의 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조선정부로 하여금 향후 3년간 10萬圓의 사업비지출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허약한 조선정부를 강요하여 臨時棉花栽培所官制를 제정케 하여 면화재배사업을 한국의 國策事業으로 운영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필요한 면화를 단기간내에 재배하기 위하여 1906년에는 韓國棉花株式會社(자본금 200萬圓, 本店 일본 大阪, 支店 木浦)를 설립하였다.[4]

한편 일본은 동년(1906) 棉花栽培協會를 발족함과 동시에 勸業模範場 木浦 棉作支場을 설치하여 면작장려를 정부주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5] 주요 목적은 면화재배에 적합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지역에 종래 在來棉 대신 생산성이 높은 陸地棉의 대량재배에 있었다. 차제에 일본은 陸地棉栽培地의 확보를 위하여 朝鮮政府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반강제로 재배지의 확대를 도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농민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6]

일본이 이처럼 한국내에서 면화를 조달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10년에는 전라도의 목포, 광주, 남평, 전주 및 경상도의 대구, 진주 그리고 충청도의 영동 등에 총 재배면적 1,123町步를 가진 10개의 採種圃를 확보하는 한편 육지면생산에 주력한 결과 동년에는 648,142斤(동년 한국전체 면화생산량의 31.2%)[7]의 육지면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일본이 단기간내에 일본 면방적산업의 근대화를 획책하기 위하여 한국

---

4) 高承濟, 李朝總業史 硏究, pp.110~112 참조.

5) 1921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203 참조.

6) 高承濟, 상게서, p.112 참조.

7) 1910년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p.173~174 참조.

採種圃別 棉花栽培實績(1910년)

	設立年度	栽培面積(町)	實棉收穫高(斤)	단보당수확고(斤)
木浦採種圃	1906	326	133,643	41
務安採種圃	1910	130	63,858	49
咸平採種圃	1910	12	7,094	58
南平採種圃	1906	328	179,451	55
光州採種圃	1908	181	189,258	118
右水營採種圃	1907	77	40,217	52
珍島採種圃	1906	27	19,676	71
全州採種圃	1908	21	1,939	9
晋州採種圃	1908	17	6,290	36
大邱採種圃	1908	5	487	10
永同採種圃	1908	15	6,140	40
총 계		1,123	648,142	58

• 1910년도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190에서 작성.

棉花輸出額

(단위 : 千圓, %)

	生 綿	操 綿	合計(A)	總輸出額(B)	A/B
1908년					
일본	18	85	103		
청국		0.01	0.01		
합 계	18	85	103	14,113	0.007
1909년					
일본	141	131	272		
청국		0.2	0.2		
합 계	141	131	272	16,248	0.017
1910년					
일본	79	224	303		
청국	0.01	0.01	0.02		
합 계	79	224	303	19,913	0.015

• 1910년도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p.351~356에서 작성.

을 植民地的 棉花供給地로서 재편성한 결과 한국내에서는 면화생산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한국의 對日本棉花輸出額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의 在來棉生産은 사양의 길로 접어든다.

Ⅲ. 棉作 第 1期 擴張計劃

일본 면방적업체는 1899년의 78사를 정점으로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紡錘數 및 綿絲生産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방적회사의 규모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大規模化, 資本의 集中化가 됨을 뜻한다.

일본 면방적산업의 대규모화는 일본 국내시장의 확대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의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결과인데 이에 따라 원료인 면화 수요량도 함께 증가하였다.

日本綿紡織産業의 發達

年 度	會社(A)	紡錘數* (B)	B/A	綿絲生産高** (C)	C/A
1899	78	1,189	15.2	757	9.7
1901	66	1,181	17.9	660	10
1903	54	1,379	25.5	801	14.8
1905	49	1,329	27.1	905	18.5
1907	42	1,458	34.7	983	23.4
1909	37	1,569	42.4	1,025	27.7
1911	34	1,784	52.5	1,129	33.2

資料 : 金宗炫, 近代日本經濟史, p.70에서 作成.

1910년 일본은 한국강점과 함께 한국에서의 면화증산을 획책하기 위하여 동년에 전남 함평 및 무안에 새로 採種圃를 설치하는 한편 각 채종포에 육지면 종자를 무려 23만근(1910년보다 2.5배 증가)을 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남 公州種苗場, 각 金融組合, 郡廳 등에 육지면 재배를 위탁하는

등 면화증산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10년에는 육지면 재배면적이 1,123 町步로 확대되었고(1909년의 3배) 육지면 수확량은 84萬 5千斤(1909년 대비 109% 증가)에 달했다.[8]

한편 日本은 1912년에 한국에서 「棉作 第 1期 擴張計劃」을 추진하였다. 동 계획은 1919년까지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었는데 동 계획을 시실하는 목적을 첫째, 일본 면방적산업에 필요한 원료 조달, 둘째, 朝鮮내 면화수요의 자급, 셋째, 朝鮮 농가경제의 향상 등에 두었다.[9]

아울러 일본은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6개 지역을 棉作奬勵區域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1919년까지 육지면의 재배면적을 10만 町步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0]

일본은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棉作奬勵地域에 다수의 棉作組合을 조직하고 면화재배농민들을 동 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한편 각 조합원들에게 農工銀行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융자혜택을 주고 대신 생산된 면화를 조합단위로 共同販賣케 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陸地棉栽培管轄 府, 郡廳에 면작경험이 풍부한 道技術員을 駐在시켜 재배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전담하게 하였다.[11]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육지면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勸業模範場 木浦支場에서 다년간 실험결과 한국의 풍토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King's Improved種子를 대량으로 육성하여 이를 면작농가에 배부하는 한편 육지면의 재배가 부적합한 西鮮, 北鮮地方의 면작농가에는 在來棉의 選種, 施肥, 除草 등의 재배법을 지도하여 재래면의 증산을 도모하였다.[12]

이로 인하여 전라, 경상도 등 남부지역에서 육지면의 보급 및 재배면적의 확대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는

---

8) 1910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278 참조.
9) 1921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213 참조.
10) 1917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152 참조.
11) 1913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166 참조.
12) 1914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194 참조.

육지면의 생산성이 재래면보다 높아 점차 육지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제에 일본은 그간 물의를 일으키며 추진한 採種圃制度를 1913년부터 폐지하였다.[13]

동 계획은 1918년에 예정된 목표를 달성한 후 종료되었는데 그 결과 1919년 현재 육지면의 재배면적은 1910년보다 무려 97배나 증가한 10만 9천 136 町步에 달하였으며 육지면 생산고 또한 1910년보다 101.8배나 증가한 8,602萬 4千斤에 달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의 면화재배총면적 1억 4천 5백 43만 6천 정보의 59.2%, 면화총생산량 9천 7백 35만 8천근의 88.%에 해당한다.

年度別 棉花生産量 推移

(단위 : 町, 千斤)

年 度	陸 地 棉		在 來 棉		合 計	
	재배면적	수확고	재배면적	수확고	재배면적	수확고
1911	3,042	2,737	58,713	23,970	61,755	26,707
1913	15,822	13,445	56,187	26,033	72,009	39,448
1915	34,715	28,668	43,705	19,118	78,420	47,786
1917	72,194	54,553	36,301	17,701	108,480	72,254
1919	109,136	86,024	36,300	11,334	145,436	97,358

• 1920년도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p. 12~15에서 작성.

Ⅳ. 民族系 綿産業의 存在樣態

면직물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의복 등으로 수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 이에 따라 면산업은 여러 업종으로 분화되는데 이들 일련의 업종은 대체로 棉花栽培, 繰綿, 紡績, 紡織, 綿織物販賣業 등으로 구분되고 一國 綿産業의 건전한 발달은 이들 일괄된 업종들이 균형되게 발전해야만 한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면산업에 진출한 기업체(규모가 큰 개인상회 포

13) 1913年度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166 참조.

함)는 棉花栽培 및 繰綿業에 7개 업체, 紡織 및 洋機製造業에 8개 업체(방직업은 2개 업체), 商業 및 貿易業에 56개 업체 등 총 71개 업체로써 아직까지 근대적인 綿紡績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기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 기업체 중 日本人資本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는 繰綿業의 7개 업체, 紡織業의 1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의 6개 업체 등 日人所有企業은 총 14개 업체이다. 반면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체들은 방직업 1개 업체 등 제조업에 7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에 50개 업체 등으로 이시기 한국인 기업체들은 방직업 등 제조업 및 상업, 무역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1910년대에 설립된 企業體의 民族別 現況

(단위 : 업체수)

	繰棉業	紡織業*	商業, 貿易業	총 계
한국의 자본		7	48	55
한일공동경영			2	2
일본인 자본	7	1	6	14
합 계	7	8	56	71

* 양말제조업 포함.

자료 :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1927년 판, 木山耕藏, 朝鮮紳士銘鑑, 朝鮮研究會, 新朝鮮成業銘鑑,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士興信錄, 京城紡織編, 京城紡織 五十年, 張在治, 上揭書 등에서 작성.

한편 이들 기업의 연도별 설립내역을 보면 대체로 각 연도별로 균형된 분포를 보이는데 1916년 이후 1919년까지 4년간에 조면업 4개 업체, 방직업 및 양말제조업 5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48개 업체 등 총 57개 업체(총 72 업체의 79.2%)가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히 1919년에는 조면업 2개 업체, 방직업 1개 업체, 상업, 무역업 15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전체의 25%)가 동년 중에 새로 설립되었는데 1919年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년 하반기에 설립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제 1차대전으로 야기된 일본내의 호황의 결과 그간 내부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식민지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에 경쟁

적으로 진출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토착자본들이 企業設立運動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추정되는데 특히 1919년 민족계 기업체의 異常過多進出現象은 3·1運動으로 야기된 民族意識鼓吹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年度別 設立現況

(단위 : 업체수)

年 度	綿棉業	紡織業*	商業, 貿易業	총 계
1910		1	4	4
1911		2	3	5
1912			3	3
1913	(2)		2	4(2)
1914			5	5
1915	(1)		1	2(1)
1916	(1)		12	13(1)
1917		3(1)	5(1)	8(2)
1918	(1)		6	7(1)
1919	(2)	3	15(4)	21(6)

* 양말제조업 포함.

** ( )내는 일본인 기업체수.

자료 : 中村資良 編, 1921년 판, 1927년 판, 木山錄藏, 朝鮮紳士銘鑑, 朝鮮硏究會, 新朝鮮成業銘鑑,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士興信錄, 京城紡織 編, 京城紡織 五十年, 張在治, 上揭書 등에서 작성.

또한 이 시기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방도시에서도 다발적으로 출현하는데 비교적 진출기업이 많은 도시로는 서울(조면업 1社, 방직업 등 3社, 상업 13社), 仁川(상업 3社), 木浦(조면업 2社, 상업 5社), 大邱(양말제조업 1社, 상업 3社), 釜山(방직업 1社, 상업 5社), 平壤(양말제조업 3社, 상업 2社), 元山(상업 3社), 永興(상업 3社) 등 開港都市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棉作地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출현한 기업들 중 공칭자본이 100만圓 이상인 기업은

조면업 2社, 방직업 1社, 상업 1社 등 도합 4개사 뿐이고 나머지는 50만圓 이하인 중소규모의 업체들인데 대체로 일본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들의 자본규모가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1. 製造業

1910년대는 분명 한국에 있어 근대 면공업의 발흥기였다. 이 시기에 비로소 조면, 면방직공업 등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근대적 기업들이 출현하는데 繰綿工業部門에서는 1911년에 당시 한국의 최대면작지인 전남 목포에서 자본금 25만圓의 朝鮮棉花株式會社가 출현한다. 동사는 일본 最大紡績資本의 하나인 日本棉花株式會社(1921년 현재, 총 4만주 중 2만 7천 291주 소유)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사업목적은 日本棉花(株)의 원료공급을 위하여 한국내에서 육지면의 재배 및 조면생산이었다.[14]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일본내에서 새롭게 재벌로 부상하던 鈴木商店이 한국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동 상점은 1913년에 충북 永同 驛前에 5馬力의 石油發動機를 장착한 永同繰綿工場을 설치하였는데 동 공장은 면화재배도 겸하였다.[15] 鈴木商店은 그후 1915년에 부산, 인천, 진남포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고 인근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일본에 대한 수출 및 면사포, 사탕 등의 수입업무에 착수하는[16] 한편 익년인 1916년에는 대구 칠성동에 大邱繰綿工場을 설치하였다. 동 공장은 부지 7,000坪에 흡입와사엔진 70馬力짜리 1대와 繰綿機 52대를 설치하였는데 1일 繰綿量은 實棉 35,000근 규모였다. 또한 동 공장에는 직공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직공의 절반은 여자 근로자들이었다.[17]

그 외에도 이무렵 조면업에 진출한 회사들로는 朝鮮製綿(1912년 자본금 15萬圓으로 경성에서 설립),[18] 光州綿業(1918년 전남 광주에서 자본 10萬

14)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pp.38~39 참조.
15) 朝鮮硏究會 編, 新朝鮮成業銘鑑, 1917, 충청북도 편, p.16.
16) 朝鮮硏究會 編, 상게서, 경상남도 편, p.35.
17) 朝鮮硏究會 編, 상게서, 경상북도 편, p.23.
18)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p.37~38 참조.

圓으로 설립), 南北綿業(1919년 전남 목포에서 자본금 100萬圓으로 설립, 東洋棉花系〈三井財閥 소유〉),[19] 西鮮繰綿(1919년 진남포에서 자본금 100萬圓으로 설립)[20]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출현한 繰綿會社들 중 대부분은 木浦 등 한국 남부지방의 棉作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西鮮繰綿만은 北鮮지방에서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棉作 第 1期 擴張計劃」의 추진 결과 면작지가 종래 남부지방으로부터 黃海道 以北地方으로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동사는 西, 北鮮地方에서 생산된 면화를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일본인 富田儀作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는 일본 兵庫縣 출신으로 일찍부터 한국에 도래하여 殷栗 鑛山을 인수하여 광산업에 착수하는 한편 요업, 농업경영 등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치부한 자본을 근거로 하여 그는 사업다각화에 주력한 결과 三和銀行 頭取, 平壤銀行, 戶田農具, 東洋畜産, 京城現物市場(株) 등의 취체역, 鐵南浦電氣 및 朝鮮農産 감사, 東亞蠶絲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北鮮地方의 대표적인 자산가로 군림하였다.[21]

위에서 열거한 綿業관련 회사들은 예외없이 朝鮮棉花(株)와 마찬가지로 한국내에서 면화재배 및 조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회사들은 전부 일본인 자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편 이무렵 방직업부문에서도 근대적인 방직회사들이 출현하는데 한국 근대 방직업의 효시는 朝鮮紡織株式會社이다. 동사는 1917년에 일본의 三井財閥이[22] 부산 범일동에서 자본금 500만圓(250萬圓 불입)으로 설립하였는데 사업내역은 棉花栽培, 綿絲, 綿布의 紡織, 販賣 등이다.[23] 동사는 紡機 5,200錘와 織機 600대로 1922년부터 조업을 개시하였다.[24]

---

19) 中村資良 編, 상게서 p.102 참조.
20) 中村資良 編, 상게서, p.54.
21)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事興信錄, 1922, p.110 참조.
22) 京城紡織 編, 京城紡織 50年, 1969, p.69 참조.
23) 中村資良 編, 상게서, p.42 참조.
24) 大韓 紡織協會 編, 紡協 10年志, 1957, 제2부, 會員工場篇, p.1.

동사가 이 시기에 부산에서 설립된 이유는 부산은 한국최대의 개항장으로써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북 지방은 전라도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면화주산지로서 일본에 수출될 면화가 목포와 이 지역에 집결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무렵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했는데 당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勞動法의 적용을 받지않아 얼마든지 노동력의 수탈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朝鮮紡織의 출현 이후 방직업부문에서도 새로운 민족계 기업들이 출현하는데 그러한 예로서 1919년에 서울에서 호남의 大地主出身인 金性洙에 의하여 자본금 100萬圓으로 설립된 京城紡織株式會社가 있다.

京城紡織은 1922년에 영등포에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에 착수하였는데[25] 織機는 일본 豊田式織機株式會社로부터 100대를 수입, 설치하였으며 綿絲는 大日本防績株式會社 明石工場에서 생산한 면사를 수입하여 조달하였다.[26]

이들 회사외에도 방직업부문에서는 京城織紐會社(1911년 경성에서 尹致昭가 댕기, 분합, 허리띠, 주머니끈, 염낭끈, 대님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자본 10만圓으로 설립)[27]가 있었다. 그러나 동사의 생산시설은 전근대적인 수공업시설로 회사조직만 근대적인 체제를 갖추었을 뿐이다.[28]

한편 이 무렵에는 서울, 평양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양말직조공장들이 출현하는데 그러한 예로는 三共洋機工場(1910년에 자본금 12만圓으로 朴泰堯, 孫昌潤 등이 설립),[29] 慶興工廠(1911년 李鎭淳이 3萬圓으로 설립),[30] 平信洋機工場(車炯弼이 다년간 포목업에 종사하다가 설립)[31] 등이 있었고 서울에는 京城物産商會(1919년에 金聖昌이 직기판매 및 양말제조를 목적

25) 상게, 紡協 十年志, 제2부, p.11.

26) 京城紡織 編, 상게서, p.58 참조.

27) 京城紡織 編, 상게서, 48-49면, 拙著,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1989, p.114 참조.

28)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1983, p.253 참조.

29) 張在洽 編, 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 1927, p.318.

30) 張在洽 編, 상게서, p.313.

31) 張在洽 編, 상게서, p.324.

으로 설립)[32] 등이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10년에는 朝鮮紡織, 京城紡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근대적인 면방직업체들이 출현하는데 면화재배 및 조면업분야에서는 일본 자본들이 주도한 반면 면방직업분야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民族系 企業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자본규모에서 한, 일 자본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綿工業의 근대화 작업은 綿紡織工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무렵 한국의 면공업은 일본 방적공업의 원료인 면화재배 및 조면업과 방직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植民本國과 植民地關係－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부터 값싼 棉花를 공급받아 紡織絲를 만들고 그것을 재차 한국에 수출하여 紡織原料로 사용케하는 韓日間 섬유산업의 補完的인 特性때문이었다.

2. 商 業

1910년대에 들어서면 서울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면직물판매회사들이 대량으로 출현하였는데 동사들의 주요 취급품목은 면화, 면사, 면포 등이었다. 이 기업체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土布 및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된 외국산 면직물 등을 취급하였는데 취급물품의 대종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기계제 면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3]

특히 이 시기에는 일본 등으로부터 打綿, 綿絲, 綿布 등 엄청난 물량의

---

32) 張在治 編, 상게서, p.62.

33) 이와 같은 추정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913년 현재 국내 시장 1,143개소에서 1년간 거래된 면직물, 마직물, 견직물, 모직물 등 직물거래액은 7백 31만 9천원인데 동년의 타면, 면사, 면직물의 수입액은 1천 1백 77만 5천원으로 면직물을 포함한 직물거래액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10년대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시기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면직물은 약간의 토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산 면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920年度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p.16～19 및 pp.36～37 참조).

면직물이 수입되는데 당시 면직물수입액이 한국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55% 정도를 점하고 있다.

年度別 綿織物輸入額 推移

(단위 : 千圓, %)

年 度	打 棉	綿 絲	綿織物	合計(A)	輸入總額(B)	A/B
1910	299	1,555	8,304	10,158	39,782	25.5
1913	607	1,866	11,775	14,248	71,580	19.9
1915	515	2,435	10,579	13,529	59,199	22.8
1917	706	4,704	18,457	23,867	102,886	23.2
1919	1,743	3,908	63,098	68,749	280,786	24.5

* 1920年度 統計年報, pp. 120~151에서 작성.

이상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대량의 면직물은 포목상들에 있어 호재의 상품으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포목상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이를 기반으로하여 근대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 시기에 출현한 면직물거래회사는 총 56개 업체인데 이들을 설립년도별로 보면 제 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부터 1919년까지 4년 동안에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38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출현한다.

한편 이들 기업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서 13개 업체, 목포에서 5개 업체, 부산에서 6개 업체, 원산, 영흥에서 각각 3개 업체가 설립되는 등 전국 각지의 도시에서 고르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및 생산의 증가, 교통의 발달 등 새로운 상업환경의 조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체 중 49개 업체는 조선인에 의하여, 6개 업체는 일본인에 의하여 그리고 나머지 1개 업체는 朝日合同으로 설립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면직물판매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국상인들이 강고한 商圈을 구축하고 있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상인들의 침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출현한 기업체들 중 공칭자본이 50만圓 이상인 민족계 기업체로는 서울의 大昌貿易(1916년 白潤洙가 자본금 50만圓으로 설립), 共同貿

易(1919년 金聖煥, 閔裕植 등이 자본금 50만圓으로 설립), 東洋物產(1919년에 金潤冕, 金東殷, 金潤洙 등이 자본금 200만圓으로 설립), 大同貿易(1919년에 金宗國, 金聖煥, 閔裕植 등이 자본금 50만圓으로 설립) 등 4개 업체이다. 반면 일본인 업체로는 高瀨합명회사(1917년에 부산에서 高瀨政治郞 등이 자본금 150만圓으로 설립), 鬼頭秉次郞商店(1919년 인천에서 자본금 60만圓으로 설립), 明治屋(1919년 豊泉德治郞이 부산에서 자본 60만圓으로 설립) 등 3개 업체이며 한일공동경영업체는 株式會社 共益社(1914년 西原龜三郞, 朴承稷 등이 서울에서 자본 50만圓으로 설립)가 있다.

자본금 50만圓 이하 10만圓 이상의 민족계 기업들로는 서울의 (株)共進商會(1919년 金溶殷, 安永煥이 자본 20만圓으로 설립), 東益社(1919년 金東健, 金東殷 등이 자본 25만圓으로 설립) 등과 지방에서는 金泉興業社(1919년 權泰榮 등이 김천에서 자본 40만圓으로 설립), 大東商會(1919년 車性奎, 金在錫 등이 함경도 영흥에서 자본 10만圓으로 설립), 주식회사 靑南(1919년 張春伯, 安廷協 등이 함경도 북청에서 자본 20만圓으로 설립), 開城社(1913년 朴泰鉉, 高燕厚, 朴宇鉉 등이 개성에서 자본금 50만圓으로 설립) 등 6개 업체이다. 한편 이 부류에 속하는 일본인 업체는 福井商店(1919년 서울에서 자본 10만圓으로 설립), 睦商會(1919년 서울에서 자본금 30만圓으로 설립) 등 단 2개 업체만 발견된다.

이들 업체외에 비교적 자본규모가 적은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민족계 자본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이상에서 보듯이 상업부문은 조면, 방직 등 제조업과는 달리 순전히 민족계 토착자본에 의하여 주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는 日人들의 진출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V.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의 主導階層

1. 民族系 企業家들의 類型

본 연구에서는 민족계 기업가들의 유형을 크게 貴族, 官僚出身型과 地主

出身型 그리고 庶民出身型으로 분류하였는데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은 주로 한말이래 봉건적 지배체제하에서 각종 특권을 이용하여 치부를 했던 왕족, 귀족 및 관료들로서 당시에는 지식계급에 속한 엘리트들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당시 봉건적 통치기구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내외 정치 및 경제사정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식민지화 과정에서 한국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종래 朝鮮政府의 관료 등 지배계급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여 식민통치하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지배계층으로서 존속시켰는데 그러한 예로서 舊韓末의 王族, 貴族, 兩班, 官僚 등에 각종의 爵位를 주어 우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豪族들 또한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통치하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특히 會社令에 의하여 기업설립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던 이 시기에 이들은 기업설립시 매우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기업설립 및 운영시 이들의 효용가치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근대기업가로 변신한다.[34]

민족계 기업가의 두번째 유형은 地主出身型 企業家들이다. 이들은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미곡 등 농산물을 地代로, 혹은 高利貸金業을 통하여 富를 축적한 계층인데 이들중 대부분은 양반으로서 전술한 귀족, 관료형과 마찬가지로 世襲된 富를 바탕으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세력들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경제,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혜택을 받은 엘리트들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 구미지역에 유학하여 신식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은 여건이 지주자본을 근대기업자본으로 전환하게 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 결과 이 시기에 상당수의 기업가들이 이들 계층으로부터 출현한다.

「이들은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에 비하여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

34) 拙著, 상게서, p.103 참조.

해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치부방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밝았다. 더구나 그들의 기업동기는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들은 비교적 성공하는 예가 많았다.」[35]

세번째 유형은 庶民出身型 企業家들인데 이들 중 대부분은 土着商人들로써 이들 중에는 白潤洙의 경우처럼 世襲商人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當代에 상인으로 변신하여 치부한 계층들이다. 이들은 생리상 어느 계층보다 商利에 밝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높아 蓄財의 기회를 재빨리 포착한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개항 이후 새로운 상업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근대적인 기업가로 변신함으로써 성공을 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당대에 적수공권으로 시작하여 축재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귀족, 관료출신형 및 지주출신형 기업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1910년대 설립된 민족계 기업 및 韓日共同經營 기업체 중 공칭자본 10만圓 이상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체의 설립 및 1921년까지 기업설립 후 초창기 경영에 참여한 기업가들 중 중심 인물들만 다루었다.

조사결과 이 시기에 면산업부문에서 출현한 민족계 기업가들은 귀족, 관료출신형 3명, 지주출신형 8명, 서민출신형 30명, 출신성분이 밝혀지지 않는 기업가 15명 등 총 56명인데 유형별 기업가들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貴族, 官僚出身型 企業家

1910年代 면공업부문에 참여한 貴族·官僚出身型 기업가로는 朴泳孝와 韓相龍, 朴宇鉉 등 3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경영 참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5) 拙著, 상게서, p.105 참조.

朴泳孝(1861~1939)는 판서 朴元陽의 아들로 태어나 哲宗의 사위가 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에 진출하였으나 그의 관직생활은 李完用 內閣의 宮內府 大臣으로 마감하였다. 이후 그는 한일합방과 함께 일본정부에 의하여 侯爵으로 봉해졌는데 그가 근대적인 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1912년 金宗漢, 朴箕陽, 趙民熙 등과 합자하여 勸業株式會社를 설립하면서 부터였다.[36] 이후 그는 1919년 京城紡織株式會社의 설립과 함께 동사의 사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이무렵 그는 58세로서 회사설립 및 경영에 있어 주체는 아니었다.

「이 분을 사장으로 모신 것은 동지적인 뜻만 아니라, 회사설립의 어려움을 커버하기 위한 뜻도 있다.……(朝鮮總督府에서는) 目論見書(인용자 주 : 지금의 사업계획서)를 수십번 고쳐 쓰게 하여 스스로를 지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듯이 회사의 설립은 여러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분을 사장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었다.

이 사실은 朴泳孝씨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명목상의 사장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중역회의에도 별반 참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개입하는 일이 없었다.」[37]

이외에도 그는 일제의 한국침략의 전위기구인 朝鮮殖山銀行의 理事로 참여하는 등[38] 1920년대까지 금융업, 제조업부문에서 기업설립에 관여하고 있으나 京城紡織의 경우처럼 기업설립운동의 주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紡織의 相談役으로 참여하고 있는 韓相龍은 奎章閣 副提學을 지낸 韓觀洙의 3남으로 태어났는데 당시 세도가인 李允用, 李完用이 그의 外叔이었다. 그는 일본 成城學校를 졸업한 후 1901년에 귀국하여 平式院(度量衡제작을 관장하는 부서) 총무과장으로 관직을 시작하였다. 이무렵 李允用, 完用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는 이들의 후광을 배경으로 澁澤榮一

36)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pp.116~117 참조.
37) 京城紡織 編, 京城紡織 50年 p.57.
38) 中村資良, 전게서, p.4 참조.

등 일본 정, 개계의 거물들과 교유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公立 漢城銀行의 左總務로 전직하면서 기업가로 변신하였는데 이후 그는 동 은행의 專務, 東洋拓殖株式會社 理事, 朝鮮銀行 및 朝鮮郵船株式會社의 設立委員,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副社長,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朝鮮都市共榮株式會社 理事, 金剛山鐵道株式會社 監事를 맡는 등 주로 식민지 한국수탈의 전위적인 회사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親日企業家였다.[39]

그는 朴泳孝와는 달리 기업설립 및 경영에 적극적이었는데 그가 이처럼 왕성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漢城銀行의 경영정상화 등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는 첫째, 그가 일본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점, 둘째, 그의 外叔인 李允用, 完用이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수탈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간판으로 내세울만한 조선인출신의 인물이 필요하였다는 점등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朴字鉉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는 1913년에 開城에서 자본금 50만 圓으로 開城社를 설립한 朴泰鉉의 實兄이다. 1911년 현재 開城郡守로 재직한 자로서 이무렵 조선인으로는 드물게 보는 高級官僚 중의 한 사람이었다.[40]

그가 언제 관직에서 물러나 기업가로 전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12년 合資會社 永信社의 설립시 發起人 및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41] 그의 기업가로의 變身時期는 동사의 설립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무렵 朴泰鉉은 개성굴지의 상인으로 부상하였는데 開城社는 합자회사로서 朴泰鉉(40,500圓 출자), 金益煥(45,600圓 출자), 高熏厚(28,500圓 출

---

39) 趙璣濬, 상게서, pp.128~139 참조.

40) 牧山耕藏 編, 朝鮮紳士名鑑, 1911, p.387 참조.

41) 朝鮮硏究會 編, 新朝鮮成業銘鑑, 1917, p.511 참조.

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였다.

동사는 설립과 함께 일본의 三井物産 京城支店과 綿布, 食鹽, 人造肥料 등의 판매계약을, 미국 뉴욕의 Standard Oil과 석유판매계약을, 英美煙草 Trust와 담배판매계약을, 大日本麥酒會社와 맥주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성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판매활동을 전개한 결과 년 19%의 출자배당을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다.[42]

이후 朴宇鉉은 동사의 子會社로 설립한 高麗蔘葉社(개성의 巨商인 孫鳳祥, 金益煥 등이 설립)[43]의 시장, 松都陶器(1922년 개성에서 자본금 4만圓으로 설립)사장, 합자회사 永信社(1912)의 발기인, 朝鮮商業銀行의 大株主[44]로 참여하는 등 그 또한 개성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변신하였다.

3. 地主出身型 企業家

이시기 면산업부문의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에 참여한 지주출신 인사는 총 8명이 등장하는데 尹致昭, 方奎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京城紡織의 발기인 및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尹致昭는 충남 아산지방의 대지주로써 京城織紐株式會社의 설립시 社長으로 관여하고 있다.[45] 그가 어떠한 연유로 동사의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와 인척관계에 있는 尹致昊의 권유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方奎煥은 京城 황금정 2정목에 거주하는 不在地主로서 경기도 광주, 고양 등지에 3개의 농장(東亞農場)을 소유한 大地主였는데[46] 그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朝鮮紡織의 大株主(총 10만株 중 1,750주 소유)[47]로 참여하고 있다.

---

42) 상게, 新朝鮮成業銘鑑, pp.114~115 참조.
43) 상게, 新朝鮮盛業銘鑑, 1917, p.116 참조.
44) 中村資良 編, 상게서, p.7 참조.
45) 拙著, 상게서, p.114 참조.
46) 東亞日報, 1920年 4月 2日字 廣告.
47)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42.

京城紡織의 설립에는 국내 유수의 대지주들이 참여하는데 동사의 설립 및 초기경영에는 金性洙외에도 尹相殷, 李一兩, 曺漢鉉, 閔裕植, 崔浚 등이 참여한다.

尹相殷은 동사의 理事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1908년(隆熙2)에 경남 구포지방에서 龜浦貯蓄株式會社를 설립하여 후일 慶南銀行으로 발전시킨 선각자적 기업가로써 한국의 독립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한 진정한 民族企業家였다.[48]

李一兩은 1912년 대구지방의 대지주들인 鄭在學, 張吉相 등과 함께 大邱銀行을 설립한 경북일대의 대지주로서 京城紡織 설립시 監事로 참여하고 있다.[49] 曺漢鉉 또한 전남 영암지방의 대지주로서 동사의 監事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閔裕植은 한말이래 거족이었으며 대자산가였던 驪興閔氏 일족으로써 그 또한 여느 지주출신형 기업가들처럼 그간 축적된 자본을 근거로하여 1919년 이후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동사의 취체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동년에 설립된 共同貿易株式會社(자본금 50만圓)의 大株主로써, 大同貿易株式會社(자본금 50만圓)의 理事로써, 龍山勸業株式會社(자본금 40만圓)의 專務로써 활발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50]

崔浚은 동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는 慶州地方의 대표적인 대지주로써 전술한 지주출신들처럼 그 또한 다채로운 기업설립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1912년에 尹相殷 등이 설립한 龜浦貯蓄株式會社와 동년에 설립된 大邱銀行의 설립에도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白山 安熙濟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白山貿易株式會社(자본금 100만圓)의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51]

이상에서 보듯이 京城紡織의 설립에는 경향각지의 대지주들이 참여하고

48) 拙著, 상게서, pp.111~112 참조.
49) 拙著, 상게서, p.113 참조.
50) 拙著, 상게서, p.109 참조.
51) 拙著, 상게서, pp.111~115 참조.

있으나 金性洙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들은 동사의 설립 및 경영에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이들은 先代이래로 축적된 土地資本을 근거로 하여 1910년대 이후 근대적인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고 있다. 이들 또한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처럼 비교적 근대교육을 받은 지식계층에 속하는 인사들로써 당시 이들의 기업참여동기는 利潤動機보다 民族經濟의 復興動機가 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 庶民出身型 企業家

동 기간 중 면산업에 진출한 민족계 기업가들 56명 중 서민출신형으로 밝혀진 자들만 30명으로 전체의 53.6%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부분은 상업 및 무역업 부문이다.

이들 중 방직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가들은 朴容喜, 張斗鉉, 張春梓, 李康賢, 邊光鎬 등이다. 한편 상업 및 무역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가들중 金東殷, 金東健, 金東元은 東益社에, 金東殷, 金潤麗, 金潤洙, 崔俊煥, 李德裕 등은 東洋物産에, 朴泰鉉, 崔基昌, 金麗煥 등은 開城社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이 시기에 한국 면공업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데 이들중 대표적인 인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 출현한 상업자본가들은 우리나라 상업계의 중심적 존재들인데 이들 중 金潤洙가 주목된다. 그는 1911년 私立 五星學校 商科를 졸업한 후 1915년에 京城商會(露日戰爭 중인 1905년에 서울 남대문 통에서 개인상회로는 드물게 거금 5만圓을 투자하여 설립)의 주인이 되었다. 그후 그는 1919년에 東洋物産의 常務 및 光化門金融組合의 監事, 京城布木商組合의 理事를 맡았으며, 1920년에는 東洋染織의 監事, 京城株現物式取引市場 중매인 면허획득 등 한국 상계에 혜성과 같은 존재로 부상하였다.

그후 그는 1922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汎太平洋商業大會에 朝鮮人 代表로 참가하여 동 대회의 부회장에 당선되었을[32] 뿐만 아니라 1923년

1월 9일 서울에서 物產奬勵會 發起準備委員會를 결성할 때 실업계 대표로써 유일하게 참가하는 등[53]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청년실업가이다.

朴容喜는 「西江에서 물산객주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파주출신의 대지주의 자제로서 일찍부터 京城織柾會社의 지배인을 역임」한[54] 자인데 그는 京城紡織의 초기경영에 실질적인 주역이었다.

張斗鉉은 鍾路 포목상출신의 대자산가로 京城紡織외에도 朝鮮商業銀行의 중역 및 1922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汎太平洋協會商業協會에서 朝鮮支會長으로 선출될 만큼 당시 대표적인 서민출신형 기업가였다.[55] 뿐만 아니라 그는 金潤洙, 金德昌과 함께 1923년 1월 20일 서울 낙원동 協成學校에서 개최된 物產奬勵會 초대이사로 선출된 인물이었다.[56]

李德裕는 남대문 포목상출신으로 朴承稷과 함께 조선 포목업계 거두로써 金德昌이 설립한 東洋染織의 사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金潤冕이 설립한 東洋物產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등[57] 그는 당시 民族商界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金聖煥은 1884년에 서울 다동에서 양반집 자제로써 출생하여 일찍기 일본에 유학하여 東京商業學校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귀국하여 개인적으로 지물포, 면직물 무역상 등을 경영하는 한편 朝鮮物產貿易株式會社 상무, 海東銀行 취체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大同貿易株式會社의 전무취체역으로써 동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청년실업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58]

---

52) 東亞日報, 1922년 10월 29일자.

53) 趙璣濬, 朝鮮物產奬勵運動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尹炳奭, 安秉直外 編, 韓國近代史論 3권, pp.62~91 참조.

54) 京城紡織, 상게서 p.57 註 참조.

55) 東亞日報, 1922년 11월 6일자.

56) 趙璣濬, 朝鮮物產奬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的 性格, 상게서, pp.62~91 참조.

57) 東洋物產은 설립이래 재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고전의 연속이었는데 李德裕는 金潤冕, 崔俊煥과 함께 동사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각자 17만원씩 조달하기로 하였다(東亞日報, 1923년 5월 15일자 참조).

58) 朝鮮新聞社 刊, 朝鮮人士興信錄, p.708 참조.

朴泰鉉은 전술한 朴宇鉉의 實弟로써 일찍부터 개성상계 진출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후 그는 金益煥, 高鼎厚 등과 함께 1913년에 合名會社 開城社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그는 40,500圓을 출자하는 한편 동사의 대표를 맡았다. 이후 그는 경영수완을 발휘하여 단기간내에 開城社가 개성 굴지의 기업체로 부상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59]

金益煥의 부친은 개성유수의 실업가였는데 그 또한 일찍부터 근대적인 기업가로 변신하여 開城社 설립시 자본금 4만 5천 6백圓을 출자하여 사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그는 1917년에 金正浩, 孔聖學, 孫洪畯 등 개성유수의 자산가들이 설립한 開城電氣株式會社(자본 10만圓)[60]의 설립에도 관여하는 등 개성지방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성장하였다.[61]

이들외에도 朴承稷, 白潤洙, 金潤冕 등 개항기에 출현한 大商業資本家들이 이 기간 중에도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62] 이들 또한 전술한 기업가들처럼 이 시기에 근대적인 기업가로 탈바꿈하는데 白潤洙는 大昌貿易株式會社를, 金潤冕은 東洋物産株式會社를 각각 설립하였다. 朴承稷은 이 시기에 京城布木組合(1918년에 자본 6만圓으로 발족)의 組合長을 맡을 만큼 면직물판매업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그는 東洋染織의 취체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1914년에 京城商業會議所 相談役을 역임한 西原龜三郎과 일본 伊藤忠商事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株式會社 共益社의 사장을 맡고 있다.[63]

한편 출신성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기업가 15명도 이 시기에 출현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共益社 등 주로 상인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체들의 발기인 및 중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 중 상당수가 서민출신형 기업가들로 추정된다.

---

63) 상게, 新朝鮮成業銘鑑, pp.109~110 및 中村資良 編, 상게서, pp.164~165 참조.

59) 朝鮮硏究會 編, 新朝鮮成業銘鑑, 1917, p.115 참조.

60) 中村資良 編, 전게서, p.123 참조.

61) 전게, 新朝鮮成業銘鑑, p.116 참조.

62) 이들에 대하여는 拙稿, 開港期 新興綿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 "肇山 黃明水博士 華甲記念論叢(1993년)에 所收"를 참조.

主要 經營者層의 類型別 分類

出 身	人 名	關係會社	設立年度	所在地	資本金	業 種	職 位
官僚出	朴泳孝	京城紡織	1919	서울	100萬圓	방직업	社長
	韓相龍	朝鮮紡織	1917	부산	500萬圓	방직업	相談役
	朴宇鉉	開城社	1913	개성	50萬圓	상 업	顧問
地主出	尹致昭	京城織紐	1911	서울	10萬圓	방직업	社長
	金性洙	京城紡織					理事
		京城織紐					社長
	尹相殷	京城紡織					理事
	李一兩	京城紡織					監事
	曹楔鉉	京城紡織					監事
	閔裕植	共同貿易					理事
		大同貿易					理事
	崔 浚	京城紡織					發起人
	方奎煥	朝鮮紡織					株主
庶民出	朴容喜	京城紡織					專務
		京城織紐					監事
	張斗鉉	京城紡織					監事
	張春梓	京城紡織					監事
	金東殷	東益社					理事
		東洋物產					理事
	金潤洙	東洋物產					理事
	朴承稷	共益社	1914	서울	50萬圓	상 업	社長
	崔仁成	共益社					理事
	金洛殷	共進商會	1919	서울	20萬圓	상 업	代表
	白潤洙	大昌貿易	1916	서울	50萬圓	상 업	社長
	金聖煥	共同貿易	1919	서울	50萬圓	상 업	代表
		東益社					專務
	金東健	共眞商會	1919	서울	25萬圓	상 업	社長
		東洋物產	1919	서울	20萬圓	상 업	理事
	金潤晃	開城社	1919	서울	200萬圓	상 업	社長
	朴泰鉉	開城社	1919	개성	50萬圓	상 업	社長
	崔基昌	開城社					理事
	金鶴煥	開城社					發起人
	金益煥	開城社					社長
	金鶴基	開城社					株主

出 身	人 名	關係會社	設立年度	所在地	資本金	業 種	職 位
庶民出	李奎弘	開城社					株主
	崔進永	開城社					理事
	李永輔	開城社					株主
	高聽厚	開城社					理事
	馬承奎	開城社					監事
	鄭載東	開城社					監事
	李康賢	京城紡織					理事
	朴泰鵬	三共洋襪	1910	평양	12萬圓	양말제조	代表
	安廷協	(株)靑南	1919	북청	20萬圓	상업	理事
	車性奎	(資)大東商會	1919	영흥	10萬圓	무역업	代表
	金東元	東益社	1919	서울	25萬圓	상업	專務
	邊光鎬	京城織紐	1911	서울	10萬圓	방직업	社長
	金聖昌	京城物産商會	1919	서울		양말제조 직기판매	代表
不明	鄭淳珏	西鮮繰綿					株主
	鮮于全	京城紡織					理事
	李昌林	東益社	1919	서울	25萬圓	상업	監事
	金鍾國	大同貿易					社長
	金弘植	共進商會				상업	理事
	安永煥	共進商會				상업	理事
	權泰英	金泉興業社	1919	김천	40萬圓	상업	社長
	金在錫	大東商會	1919	영흥	10萬圓	상업	理事
	張春伯	(株)靑南	1919	북청	20萬圓	상업	理事
	朴勝敏	京城織紐	1911	서울	10萬圓	방직업	監事
	金漢基	東益社	1919	서울	25萬圓	상업	理事
	金宗煥	東益社	1919	서울	25萬圓	상업	監事
	崔景瑞	共益社					監事
	金元植	共益社					監事
	張錫佑	共益社					監事

이상에서 보듯이 1910년대 면산업부문에 등장한 기업가들중 대부분이 서민출신형 기업가 유형에 속하는 기업가들로써 이들은 분명히 1910년대 한국 면산업의 근대화에 있어 실질적인 주도계층이다.

Ⅵ. 結　論

1910년대는 한국 綿産業의 근대화가 추진되는 시기인데 이와 같은 근대화작업은 繰綿, 紡織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업부문에서도 활발히 진행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근대화는 서양의 여느 나라들처럼 자생적, 자주적인 근대화가 아니라 日本資本主義의 완성을 전제로한 외부의 힘에 의한 半自主的, 畸形的 近代化라는 점인데 이와 같은 특성은 본 연구의 대상인 면산업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露日戰爭(1904~5)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한국을 장차 일본 면방적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면직물의 판매시장으로써, 원료공급지로써 재편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1900년대 이래 半強制的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면산업의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그 방향은 철저하게 일본 면산업과의 보완적인 관계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의 면산업의 근대화는 繰綿業, 紡織業, 織物販賣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조면업의 근대화는 일본의 원료공급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紡績業에 필요한 대량의 면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적이며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일본은 한국내의 전라, 경상, 충청도 등을 중심으로 면화재배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화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의 경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주안하여 방적업의 원료인 조면공장을 다수 설립하였다.

방직업부문에서는 朝鮮紡織, 京城紡織 등 대규모 기업들이 출현하는데 이들이 등장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은 고래로 면직물의 大需要國이었는데 일본은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 일찍부터 한국 면직물시장의 공략에 주안하였다. 일본은 이미 1890년대에 이르러 綿絲輸入國에서 輸出國로 전환하였는데 이후에도 일본의 방적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차

제에 일본은 면사의 수출확대에 주력해야만 했는데 이와 같은 일본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한국 등에서 수입한 면화를 자국내의 방적공장에서 면사로 재가공하여 한국에 逆輸出하는 政策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내에 비교적 규모가 큰 방직업체들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상업 및 무역업부문에서 근대적인 기업들이 대거 출현한다. 이러한 이유는 특히 일본산 면직물이 대량으로 공급된 때문인데 상업부문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비교적 소요자본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자본의 회전속도 또한 빨랐기 때문이었다.

상업부문의 경우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업체는 예외없이 무역업을 兼營하는 stock sale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시 한국의 수입면직물의 공급은 日商, 靑商 등에 의하여 장악되어 한국상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차제에 한국의 상인들은 이와 같은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을 겸영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제조업, 상업을 불문하고 전시대에 비하여 상당수의 기업체들이 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16년부터 1919년까지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야기된 일본내의 호황이 초래한 결과로 추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자본들이 植民地的 超過利潤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한국에 진출하였고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 재래의 土着資本들이 近代企業資本으로 전화한 때문이었다.

이 기간중 근대기업가로 轉化한 다수의 기업가들 중 귀족, 관료형 및 지주출신형 기업가들은 비교적 대자본이 소요되는 방직업등 제조업부문에 진출한 반면 서민출신형기업가들은 그들의 배태기반인 상업 및 무역업을 중심으로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서민출신형 기업가들의 자본동원능력이 귀족, 관료출신 및 지주출신 기업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등장한 기업들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이윤동기보다 민

족경제의 건설을 위한 기업설립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한국경제가 일본자본의 수탈장으로 전화하자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기존의 商圈을 보호하고 동시에 日本資本을 배척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때문이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 출현한 기업가들의 경우 전 시대에 비하여 비교적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인테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므로 보다 民族意識이 강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한국 면산업부문의 근대화작업을 주도한 기업가들 중 대부분의 귀족 및 지주출신들은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중심세력은 庶民出身型 企業家들인데 그들은 상업을 통하여 축적된 자본을 기업자본으로 전화함으로써 동 작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본 및 기술이 日人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점과 원료 등 면직물의 공급루트가 일본 방직자본의 의하여 장악되어져 있다는 점등 때문에 이들 자본의 성격은 民族性과 買辦性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면산업의 근대화는 면화재배 및 조면업과 방직업, 그리고 면직물판매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植民本國과 植民關係－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부터 값싼 면화를 공급받아 방적사를 만들고 그것을 재차 한국에 수출하여 방직원료로 사용케 하는 韓日間 綿産業의 補完的인 特性때문이었다.

東西貿易의 史的研究

金　　新*

目　次

Ⅰ. 序　言
Ⅱ. 古代貿易의 起源
Ⅲ. 東西貿易의 發生
Ⅳ. 아랍의 東西貿易
Ⅴ. 中國의 東西貿易
Ⅵ. 韓國의 東西貿易
Ⅶ 結　論

Ⅰ. 序　言

왜 中國人들은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아랍인들이 아프리카와 世界를 일주하는 航海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地球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貿易史研究에 있어서 취급하여야 할 對象範圍는 실로 광범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세계사적 시야와 안목으로 조감하고 종합해야 할 일과 世界經濟의 관점에서 본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기술상의 제문제를 망라해서 貿易史研究와 관련시켜 연구, 고찰의 대상범위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1]

貿易이 가진 다면적 성격을 생각하면, 通史로서의 貿易史는 무역이라는 근원으로 올라가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역사의 연구는 더욱 전문화된 특수연구가 요청된다. 예를 들면 각국별 연구가 있고 商品別研究, 時代別研究가 있다. 또한 그것들은 상호연관되어

---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 金　新, 「韓國貿易史」, 石井, 1992, pp. 20~23.

있어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무역의 발생을 東洋과 西洋으로 나누어 比較分析함으로서 그 特徵과 차이를 분석하여 그 發生史的 意義를 구명하고자 한다.

Ⅱ. 古代貿易의 起源

1. 貿易의 發生

도시 문명 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技術(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생업경제(subsistence), 人口(population)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 戰爭(war), 종교와 의식(religion and ceremony) 무역(trade)들이다.[2)]

물론 이러한 각 요소들이 都市 문명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와서 다른 요소들보다 특히 무역이 문명과 국가형성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아지고 있다.

古代에 있어서 貿易[3)]이란 넓은 의미로 한 地域(어떤사람)에서 다른지역(다른사람)으로 대행인에 의해 통제된 資源이나 商品의 相互移動을 말한다.

즉 Karl Polanyi는 교역을 reciprocity(호혜성)-redistribution(재분배)-exchange(교역)으로 나누고, 최후의 市場을 통한 交易만이 국가 또는 제국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세번째의 交易段階는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price-making market)에서 일어나는

---

2) Karl Polanyi,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d. by K. Polany, C. M. Arensberg,an H. W. 1971,pp.243~270.

3) Lamberg-karlovsky, C. C., "Trade mechanism in Indus-Mespotamian Interrelation", The Rise and Fll of Civilizations, ed. by C. C. Lamberg-Karlovsky and jeremy A. Sabloff, Cumming Pb. Co. 1974, p. 302.

행위이며, 부족사회가 호혜성, 고대사회가 재분배경제, 國家 재국 文明의 선행적인 제도가 교역(또는 무역)단계라고 보았다. 이와같은 K. Polanyi의 말처럼 交易段階는 貿易·貨幣의 사용·시장단계와 더불어 古代國家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특히 交換은 전형적인 교역형태이다.[5]여기서 교환은 상대방을 서로 연관시키는 통합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현대적인 交易形態는 서구와 북미 전역에 많은 物質的 富를 쏟아 놓았다. 당장은 침체상태라 하더라도, 交換은 여전히 중요하다. 교역재, 즉 상품의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이며, 교역의 조직은 供給－需要－價格 메커니즘으로 추적되는 노선을 추구한다.[6]

시장 메커니즘은 운임, 보험, 단기신용, 자본, 보세창고, 은행설비 등을 위한 特定市場을 형성함으로써 재화뿐 아니라 모든 交易要素, 즉 저장, 運送, 위험, 信用, 支拂 등을 취급하는 데 적합해지며 그로써 무한한 융용범위를 보여준다.

오늘날 貿易史家의 주요관심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 쪽으로 향하고있다. 交易은 市場과 언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우리는 교역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결과를 언제 어디서 마주치게 되는가?[7]

2 貿易의 메커니즘

시장과 교환은 서로 독립적인 경험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交換과 市場의 의미란 무엇인가? 아울러 그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

4) K. Polany는 무역이란 말과 비슷한 것으로서 Exchange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Exchange is the mutual appropriative movement of goods between hands. " 이다(Karl Polanyi, 전게서, p.266).

5) Lamberg-Karlovsky, C. C., 전게서, p.302.

6) Colin Renfrew, "Trade as action at a Disitance",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ed. by jeremy Sabloff and C. C. Lamberg-Karlovsky, Albuquerque : Univ. of Mexico Press, 1975, pp.3~59.

7) 金 新, 『韓國貿易史』, 石井, p.21.

실제적으로 정의해 보면 交換은 쌍방간 재화의 상호 전유적 이동이다. 그러한 이동은 고정가격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協商價格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후자만이 쌍방간 흥정의 결과이다.[8]

그렇다면 교환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의 價格이 존재한다. 그 가격이 협상가격이건 고정가격이건 이것은 사실인 것이다. 협상가격에서의 교환은 교환거래, 또는 〈통합의 한 형태로서 교환〉과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교환만이 市場制度라는 명확한 타입, 즉 가격결정시장에 국한되어 일어난다.

市場制度는 공급자, 수요자 또는 양자 모두로 구성되는 제도라 정의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다시 교환되는 財貨를 획득 또는 처분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라 정의된다. 그러므로 市場制度가 교환제도이긴 하지만, 市場과 交換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固定價格에서의 교환은 호혜적인 또는 재분배적인 통합 형태들 아래에서 일어난다. 협상가격에서의 교환은 가격결정시장에 국한되어 일어난다. 固定價格에서의 교환이 교환형태 이외의 어떤 다른 통합형태와 양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 귀결인데, 왜냐하면 협상된 교환만이 交換去來라는 의미에서의 교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환은 하나의 統合形態이다.

3 貿易의 形成

都市라고 불리는 인간집단의 거점이 만들어지게끔 되었던 것도 商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부터였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物品交換이거나 화폐에 의한 교역이거나, 먼저 교환하기 위해 팔 수 있는 잉여물자가 없으면 안된다.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空房 등의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저장하는 창고도 필요하다.

---

8) Karl Polanyi,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d. by K. Polany, C. M. Arensberg, an H. W. Pearson, 1971, pp. 243~270.

거기에 다른 지역과 그 잉여물을 교환할 거대한 장소(市場)가 없어서는 안된다. 商業으로 인해 都市가 생겨나고, 도시에 의해 상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都市成立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상업이 그 출현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都市는 먼저 시장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이 고대 오리엔트의 여러 지방에서 계속하여 탄생된다. 그 商業活動을 독점한 사람들이 바로 셈족이라고 불리우는 민족이었다. 즉 앗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헤브리인도 셈족으로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통의 성격을 지닌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셈어족이라고 총칭되는 이들 民族은 각각의 특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자질 중의 하나는 대단히 商術에 능숙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商業을 발명했던 것은 다름아닌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4000년 이상에 이르는 전통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속에 확실히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9]

4 貿易과 世界市場

世界市場은 세계적인 확산에 있어서 國際貿易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적인 시장관계를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역사적 개념에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일면에서는 地方的 具體的 市場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더욱 더 고도로 순화되어온 개념이나, 다른면에서는 각종의 生産組織을 내포하고 그것과 복잡하게 얽힌 組織體의 집합이기도 하다. 즉, 거기에는 단순하게 거래의 장소만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10] 그러나 자본주의 이후에도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交易은 행해졌었고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밀접한 市場關係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世界市場이 존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쿠친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그곳에는 다음의 각점에서 資本主義 成立

9) 金 新, 『韓國貿易史』, 石井, 1991, pp.36~38.

10) Lionel Casson, Ships and Seamanship in the Ancient World, 1971.

이후의 世界市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고 사려된다. 즉,

1. 그곳에 商品價格의 單一化가 없었다는 사실과 거래가 언제나 우연성으로 좌우되었다는 것.

2. 즉, 商品經濟가 자율작용을 가지고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

3. 世界市場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거래의 항상성과 그를 위한 생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經濟組織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 3가지 점이다.

자본주의 이전에 있어서는 生産은 생산, 流通은 유통으로 별도로 존재했었다. 生産物의 대부분은 약간의 공납품을 빼고 자가소비로 돌려져, 말하자면 시장에 나올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과 流通이 일정의 관계를 가지고 相互作用하는 관계라는 것은 생겨날 여지도 없었다. 자본주의 특징의 하나는 그것들의 관계를 연결하여 그곳에서 공통의 이해를 내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資本에 의한 統一, 組織化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世界市場은 본래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그 논리적 귀결로써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자본의 論理, 그것도 세계적 확산에 있어서 市場의 特殊性을 넘어선 공통성에 의해 世界市場의 파악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資本主義와 함께 세계시장도 서로 다른 국내시장의 통일개념과 함께 했던 것이다. 국내시장이 상호 다르다는 것도 자본주의적 발전의 특질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것은 국제적규모에서의 무역관계의 기초임과 동시에 國際貿易關係를 통해 통일적인 世界市場을 구성하는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東西貿易의 發生

1. 함무라비시대의 貿易

交換이 생성되기 이전의 원시적 형태속에서, 物物交換은 交換의 내용물로 작용하였다. 반면 시장형태속에서 그 제도는 현존하는 交換에 대해 보완적이다. 실례로 근세기에 商業生活은 복잡한 信用構造들, 청산조직, 정

교한 형태의 브로커, 그리고 특정용도의 화폐 등을 창출해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훨씬 덜 복잡한 형태로나마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이전의 초기사회에도 존재해 왔다. 그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物物交換이 만연한 곳에서, 信用, 브로커, 청산 또는 표준으로 사용된 화폐는 物物交換을 행하는 것을 돕고 그럼으로써 交換貨幣및 交易이 없다는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기능적 交易의 결여가 곧 交易에 대한 代用物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交換手段으로 이용되는 화폐가 없을 경우, 개인의 채무계정 발생과 이에 수반되는 청산관계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필요한 주요산물들의 대규모 공공저장 시설이 종종 존재하게 된다. 貨幣는 交換手段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支拂手段으로서뿐 아니라, 표준으로서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기 다른 재화가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브로커와 경매는 교환을 조정하는 일반적 장치들이다. 交易의 발달과 더불어, 그러한 慣習들은 물론 불필요하게 되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그것들은 이번에는 더 정교한 형태로,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交易의 기능을 돕는 새로운 역할로서 다시 나타난다. 이와같이 制度的 特質들 및 조작장치의 재생된 형태가 오늘날 다시 등장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貿易業이라고 부르는 분야이다.

2. 이집트의 해양공포증

古代에 있어서의 일종의 해양 공포증을 저절로 확실히 입증시켜주는 광범위한 사실로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미타니(Mitanni) 등의 都市國家 地域들이 그 중심부를 해안으로 옮기는 것을 끝내 반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집트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것이 적용된다. 대다수 이들 지역의 위치는 강변이었지만 아무도 바다에 접근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歷史의 흥망성쇠에 따라 북쪽의 레이크스 밴(Lakes Van)과 우르미아(Urmia), 남쪽의 페르시아 만과 홍해, 서쪽의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

에 여러 強國들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陸強大國들 쪽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지속적인 노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불변의 률이며, 때로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의 추이들도 이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아즈텍과 마야의 貿易

아즈텍과 마야간의 원거리 交易問題로 돌아가자면, 우리의 연구분석에서는 세가지 요소가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수입되고 수출되는 상품들, 外國經濟에 종사한 인원, 그리고 원거리 交易業者들의 만남이 실제 일어났던 地理的 位置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당시에는 사치품과 그 原資材들이 교역의 주요 항목들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러한 교역은 대체로 消費者로서의 일반대중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또한 왜 고향시장터, 즉 각자 주머니속에 카카오열매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에서의 民主的交換이 엘리트계층과 국가적 필요에 국한된 交易體系에서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이유이다.

화물이송은 당연히 일찍부터 고지와 평원, 사막과 정글, 숲과 초원과 같은 環境的 地域의 경계를 따라 발전되었다. 따라서 交易港은 현대 이전에 존재했던 원거리상업의 주요기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역은 협약에 기초를 두고 그 地方當局의 특별조직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경쟁은 허용되지 않았고 價格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대개 交易港은 해변가의 작은 왕국이나 추장들의 연합체와 같은 정치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발달되었으며, 그 이유는 고대 당시의 여건상 이방인들이 호전적 제국에 속한 지역들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왕국들에게 交易港은 땅바구니, 즉 공급의 원천이나 마찬가지였다. 권력있는 통치자들조차도 외국의 貿易業者들과 외국인들이 기피하여 교역이 갑자기 중단될까 봐 交易港에 함부로 손대는 일이 없게끔 조심하였다. 그지역 주민들 자신은 교역원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원거리 貿易業者들의 물품을 보관하고 수많은 도매상들을 유치시키고 있던 이같은 獨立的 貿易地帶는 地球上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널리 존재했음이 판명되었다.

4. 바빌로니아의 貿易

최초의 文明發生地는 이집트라 하지만 이집트는 그 自然地理的 條件上 농업에 유리할 뿐 아니라, 외부와도 차단되어 상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바빌로니아에 미치지 못하였다. 바빌로니아(Babylonia)는 自然條件에 의한 외부와의 차단이 훨씬 적었고, 상업로상의 위치가 극히 유리하여 수도 바빌론은 극동, 중앙아시아, 남아라비아, 아프리카, 地中海의 여러 항구 및 소아시아로부터 몰려드는 隊商에 의해서 풍비는 대상업도시가 되었다. 이리하여 商業上으로 보면 바빌로니아는 고대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국가의 하나였다. 귀금속을 화폐로 사용하였고, 12진법의 도량형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商業交通에 관한 법규와 信用業務의 발전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바빌론인들은 楔形文字를 발명하였고, 입법에 의해서 農業, 商業, 運輸 및 그밖의 경제적 현상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만들어진 점토안에는 매매, 고용, 대차에 대한 설형문자가 조각되어 있다.

5. 페니키아의 貿易

地中海의 최초의 상업중심지는 크레타(crete)섬이었다. 크레타인들은 상업에 뛰어나 피라밋시대(BC 2,800년경)로부터 이집트와 통상하였고 이집트왕의 허가를 받아 델타지방에 소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그들의 활동상을 짐작할 수 있다.[11]

크레타인의 뒤를 이어 지중해 상업의 패권을 쥔 民族은 페니키아(Phenicia)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에서 가장 순수한 貿易國으로서 최초로 원거리항해를 하였고, 그것을 이용하여 각지의 물품을 교류하는 中繼貿易

11) Janve Stephenson, The Principles of Commercial. p.57.

의 설립자로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文明을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페니키아가 貿易에 特化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국토가 레바논산맥과 지중해사이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비옥하지만 많은 人口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업과 商業을 통한 海外進出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레바논산맥에서 산출되는 삼나무는 좋은 造船材料가 되어 조선과 항해업의 발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한 배를 이용하여 地中海는 물론 영국 근해에까지 진출하였고, 따라서 식민활동 역시 활발한 것이었다. 그들은 북극성을 지표로 하여 대서양을 항해하였는데, 그리스에도 그 技術이 전파되어 그리스인들은 이 북극성을 「페니키아인의 별」(phenician star)이라 부르게 되었다.[12]

6. 그리스의 貿易

그러나 페니키아의 商業도 그리스와 로마의 출현에 의해서 점차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BC 1,0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페니키아인에게 그 商權을 빼앗기고 있던 그리스인들은 점차 발전하여 BC 600년경까지는 에게해(Aegean Sea)와 이오니아해(Ionian Sea)에서 페니키아인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리스의 여러 都市國家들 가운데서 상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아테네였다. 아테네가 商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상재(商才)와 자연적 환경에 의한 바 적지 않으나, 역시 중요한 원인은 항해업의 발달이었다. 따라서 그리스의 상업은 運輸業과 貿易業이 주가 되는 것으로서 外國商品은 단지 피레우스를 경유할 뿐이고, 해외로 재수출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이 취급하는 物品은 주로 사치품으로서 특수층의 수요충족에 봉사할 뿐, 서민대중의 필수적인 수요충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한편 도시경제가 번성하였으므로 시가에는 소매업이 성행했었다. 그러나 소매상인은 노상이나 광장에서 상품을 가축에 싣고 呼賣하였고, 점포는 아직 초라한 것이었다.[13]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대왕이 페르시

12) Clie Day, A History of Commerce, 1910, p.10.
13) Ibid, p.19.

아와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의 각지를 침공하게 되자 그리스貿易은 쇠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래 그리스 貿易이 中繼貿易이었기 때문에 그 붕괴속도 또한 대단히 빨랐다. 그리스가 쇠퇴하자 貿易의 중심은 다시 동방에로 이동되어 알렉산드리아, 셀류키아(Selukia), 안티오크(Antioch) 등이 새로운 商業都市로 등장하고, 지중해는 오직 로데스(Rhodes)만이 貿易의 중심으로 남게 된다.

7. 로마의 貿易

로마는 非貿易的인 나라였다. BC 509년에 카르타고와 체결한 通商條約의 예를 보더라도 로마인 자신은 상업에 아무런 지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로마의 貿易은 주로 페니키아, 그리스인들과 같은 外來商人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제국은 3대륙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일하여 貿易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地中海의 중심도시 로마는 상업도시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귀족층은 商業을 이용하고 그리스의 귀족과 마찬가지로 고리대나 노예매각에 의해서 부를 쌓아 그것을 토지의 증대에 사용하였었다.

Ⅳ. 아랍의 東西貿易

1. 아랍과 貿易活動

새로운 "바다의 시대"는 商業과 文明의 중심을, 한정된 육지, 닫혀진 육지 안의 바다인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열려진 大西洋, 무한히 세계로 뻗는 大洋의 해안으로 옮겨 놓았다.

아우구스투스(Augustus, 27 B. C.~14 A. D.)황제의 로마 제국시대에는 홍해와 인도 사이의 海上貿易이 번창하여 1년에 무려 120척의 배가 왕래하였다. 네로의 통치 시절, 플리니우스(Plinius, 23~79)는 로마 제국이 인도의 하찮은 商品을 사느라고 돈을 너무 썼기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다량의 로마 주화가 印度에 사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貿易이 얼마나 넓게 행하여졌는가를 알 수 있다.

이슬람교가 陸路를 통하여 인도 지방으로 팽창되기 훨씬 전에, 아랍상인들의 모습은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 무하마드 이후로는 십자군이 상업을 더욱 조장시켰다. 이븐 바투타(Ibn Battuta)는 14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아랍 상인들이 말라바르 해안에서 중국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갔다고 기록하였다. 廣東에는 9세기 때에 가진 무슬림 거류 지역이 있었고, 또 초기의 기록을 보면 무슬림들은 멀리 북쪽으로 韓國까지 갔었다고 씌어져 있다.[14]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랍인들은 결코 열광적이거나 또는 성공적인 航海家들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地中海 주변에 있던 아랍인들의 이야기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무슬림 세력을 조직화하고, 육로로 페르샤와 이집트까지 무슬림 제국의 위력을 떨쳤던 칼리프 오마르 1세(Caliph Omar I, 581~644)는 바다에 대하여서는 조심성이 컸다. 그의 시리아(Syria)의 총독이 키프로스(Cypros)를 침공하겠다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레반트(Levant)의 섬들은 시리아 해안에 기까이 붙어 있읍니다. 개가 짖는 소리며 암탉이 꾸꾸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읍니다. 그 섬들을 공격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총독이 요구하였다. 오마르는 가장 현명한 그의 將軍의 의견을 들었다. 將軍 암리븐-알-아스(mribn-al-As)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바다는 무한히 뻗쳐 있읍니다. 그곳에는 큰 배도 하나의 점으로 보이고, 위로는 하늘과 밑으로는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읍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면 수부들의 마음은 침울해지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바다를 믿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 깊은 물에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오마르는 원정을 금지시켰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아랍인의 바다에 대한 불신의 표명이었다. 아랍 말로는 "낙타를 타는 것처럼 배를 탄다"(rakaba markab)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슬

14) George J. Hourani, Arab Seafaring in the Indian Ocean in Ancient and Early Medieval Times, 1951, Bernard Lewis, The Arabs in History, 1964.

림들이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바다를 그들이 異敎徒를 침략하거나 이교도들과 交易을 하기 위하여 도중에 건너야 할 사막으로 보았다. 여기서 북에서 온 아랍인들은 좀처럼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았다. 地中海에서의 고대 아랍인들의 해양 모험은 상업이나 또는 해적행위의 필요성에서였지만, 명확히 이것들을 구별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航海帝國을 건설하지는 못하였다.

2. 아랍과 海上活動

그러나 비록 지중해에서도 아랍인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비잔틴 함대가 알렉산드리아를 탈환한 후에(A. D. 645), 무슬림 제국은 海軍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알렉산드리아는 무슬림들의 貿易業 中心地가 되었고, 해군의 훈련과 시리아에서 가져 온 목재로 배를 건조하는 새로운 사령부가 되었다. 655년에 아랍 함대는 다알트 알-사와리(Dhat al-Sawari)에서 5백척의 비잔틴 함대를 격파하였다. 아랍의 전통에 따르면, 아랍인들은 적과 싸우는데 육지에서 싸우기를 좋아하였고, 비잔틴은 바다에서 싸우기를 좋아하였다. 아랍인들은 이 전투에서 육지에서 싸우는 戰法으로 海戰에 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잔틴 군의 함선에 올라타서 칼과 화살로 비잔틴군을 학살하였다.

아랍-무슬림 제국은 지중해 주변의 육지로 뻗어나갔다. 유럽의 땅이 아프리카의 땅과 맞닿은 이베리아 반도는 서유럽 본토의 한쪽 부분인데, 그곳은 무슬림의 지배하에 있었다. 앙리 페렌(Henri Pirenne)에 의하여 특히 영향을 받은 歷史家들은 지중해는 진실로 무슬림의 호수가 아니었던가 하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다. 육지에 근거한 아랍 세력은 그들이 지중해의 內地의 貿易까지 관장하고 있었든, 또는 그렇지 않았든, 그들은 지중해의 양쪽 끄트머리까지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유럽에 있어서의 항해의 장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키프로스, 크레테, 시칠리 섬의 사소한 예외는 있지만, 아랍인들로서는 그들 帝國의 한쪽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데 바다를 건너야 할 필요는

없었다. 만일 地中海의 남부 해안에 정착하고 세력을 뻗친 북방의 아랍인들이 로마인과 같은 기질이 있고, 보다 잘 바다에 적응하고 바다와 친숙할 수 있고, 광대한 바다를 덜 두려워하였다면, 그 후의 유럽 歷史와 나아가서 종교마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는 무슬림들의 베네치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였다. 일찌기 전성기에 있을 때에는 60만의 인구를 가졌던 한때의 大都市는 9세기 말엽에는 10만 인구로 줄어들었다. 9세기와 10세기 때의 칼리프(caliph)들은 그 도시를 황폐하도록 방치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를 비춰 주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던 그 유명한 파로스(Pharos) 등대는 폐허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폐허는 14세기 때 지진으로 더욱 파괴되었다. 아랍의 사상과 아랍의 문예는 陸地指向的이었다.

그러나 地中海에서는 많은 제국들이 바다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였고, 이곳에서는 배가 제국 건설자들의 칼이 되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알라(Allah)의 제국이 서양에서 후퇴를 하고 있을 때, 自然의 거친 풍파 지대인 印度洋은 놀랄 만큼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랍의 뛰어난 해운력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인도양이다.

V. 中國의 東西貿易

1. 世界貿易과 中國

세계의 大國 가운데서 中國은 交易量이 가장 적고, 사실 외국과는 거의 접촉이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15] 그들이 전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지도 비슷한 지도가 있기는 했으나, 그들의 세계는 중국 내의 15개 州에 한정되어 있고, 중국 주변의 바다에 몇 개의 섬을 그려 놓고 거기에다 그들이 들은 바 있는 여러 王國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 섬들은

15) Nigel Cameron, Barbarians and Mandarins, 1976.

모두 합치더라도 중국의 가장 작은 주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그들의 지식이 이와같이 한정되어 있으니만큼 그들이 중국이 곧 全世界라고 자랑하며, 중국을 天下,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16]

陸路旅行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모험적인 뛰어넘기가 아니고, 노력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하는 지루한 소달구지 여행과 같은 것이었다. 영어로 'travel'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나온 말인데-원래는 고통스럽고 숨막힐 듯한 성질의 勞苦-정확히 말하면, 먼 거리의 길을 가야하는 노고를 뜻하는 'travail'과 동의어였다. 적은 수의 개척자들이 이 노고(勞苦, travel)를 걸머지고, 유럽에서 中國(Cathay)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유럽인들은 아직도 독선적인 地理學의 암흑 속에 빠져서 오랫동안 신비스러운 동양의 전설에 매혹되어 있었다. 소수의 남녀들만이 지구의 다른 끝에서 가져온 이국적인 사치품-中國의 보드라운 비단, 골콘다(Golconda)의 눈부신 다이아몬드-을 즐기고 있었다. 페르샤의 값진 융단을 깐 방안에서 그들은 실론산 향료를 친 음식을 먹었고, 샴(Siam)에서 가져온 黑檀의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17]

2. 中國과의 貿易路

베네치아, 제노바 또는 피사의 상인들은 이들 이국적인 東洋商品을 팔아서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 자신은 물론 한번도 인도나 중국을 가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동양 상품의 접촉지는 동부 地中海에 있는 레반트(the Levant)의 항구들이었다. 그들의 귀중한 商品은 두 통로를 통하여 공급되었다. 하나는 유명한 실크로드(Silk Road)인데 이 통로는 중앙 아시아를 거쳐 東部 中國에서 오는 상품의 주요 공급로였으며, 여기서 오는 상품은 사마르칸트(Samarkand)와 바그다드(Baghdad)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흑

16) C. P. Fitzgerald, China : A Short Cultural History, 1976.

17) Joseph Needham, Clerks and Craftsman in china and the West, 1970.

해나 동부 지중해의 연안 도시로 흘러들어왔다. 다른 통로의 하나는 남지나해, 인도양 그리고 아라비아해였는데 이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상품은 페르샤만을 거쳐 바스라(Basra)로 들어가거나 또는 홍해를 거쳐 수에즈로 들어갔다. 이들 商品이 유럽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페르샤와 시리아 또는 이집트 등의 陸路를 거쳐야 했다. 프랑크인(Frankish)과 이탈리아인 商人들이 지중해의 여러 항구에서 아시아로 나가려고 했을 때 이들 두 통로가 모두 봉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레산드리아나 알레포(Aleppo) 또는 다마스커스(Damascus)에서 이들 상인들과 기꺼이 交易을 했다. 그러나 터키 무슬림들은 유럽인들을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中世 後期의 철의 장막(Iron Curtain)이었다.

그러다가 약 1250년부터 1350년까지의 1세기 동안, 철의 장막은 다시 걷혀지고 유럽과 中國사이에 직접적인 人的交流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보다 용감하고 사업적인 이탈리아 商人들은 동양 상품이 알레포나 다마스커스 또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직접 캐라반(caravan, 隊商)을 만들어 실크 로드를 지나 인도나 중국의 여러 도시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독교 전도사들, 프랑크인과 이탈리아인의 수도사들이 미사를 올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동양과 서양 상호간의 풍요를 가져 오고 보다 넓고 활력있는 交流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었던 장막의 걷힘은 짧은 순간 모험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였고, 그 후 장막은 다시 내려졌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沮止이며 대부분이 近代 歷史를 통하여 동양진출적이고 서양진출적인 비전을 말살하는 암흑에 있어서의 막간의 빛이 되고 말았다. 大洋을 이용함으로써, 유럽인들이 다시금 인도와 남동아시아의 해안 지대와 접촉을 하기까지에는 수십년이 지나야 했다. 유럽인들이 다시 中國의 港口를 찾는 것이 허용되기까지에는 또 몇 세기가 지나야 했다. 중앙 아시아는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고, 中國의 內陸은 2세기 동안의 막간이 지난 후부터는 유럽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또는 유럽인들을 적대시하기까지 하였다.

장막을 다시 걷어올린 것은 기독교 군사들의 힘도 아니고 유럽의 정치가들의 책략도 아니었다. 世上을 각성시킨 많은 기타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이었다. 中國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는 데 공이 있는 자를 든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그렇게도 오랫동안 유럽인의 접근을 봉쇄해 온 터키인과 같은 혈통의 종족－중앙 아시아의 몽고인인 달단인(Tartars)을 들지 않을 수 없다. 中世紀때 유럽에 위협을 주었던 달단인들은 매우 포악하였다. 달단인의 명성은 최초로 유럽을 침공한 달단인의 무서움을 알았거나 또는 들은 바 있는 유럽의 문필가들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3. 새로운 東西貿易

몽고 제국은 陸地의 제국이었으며, 로마 제국이 최고로 번창했을 때의 그 國土面積의 2배나 되었다. 징기스 칸과 그가 이끄는 유목민들은 1214년에 몽고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왔다. 그 후반 세기만에,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를 정복하였고, 다음으로는 러시아를 넘어 서쪽으로 진격하여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쳐들어갔다. 쿠빌라이 칸이 1259년에 몽고 왕이 되자, 그의 제국은 중국에서 동유럽의 다뉴브 강까지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페르샤만에까지 이르렀다. 징기스 칸에서 시작하여 그의 아들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몽고 왕들－바투 칸(Batu khan), 망구 칸(Mangu Khan),쿠빌라이 칸(Kublai Khan)그리고 훌라구(Hulagu)－은 대 제국을 지배한 어떤 왕들보다도 유능한 왕들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어떤 세습적인 統治家들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군사적 천재성을 지녔고, 개인적 용감성을 가졌고, 행정적 수완이 탁월했고, 또 문화적 관용성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西洋의 歷史家들이 평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이채로운 인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18]

이와 같은 몽고 왕들과 그의 특이한 재능과 특별한 업적이 없었던들 中

18) Derek Bodde, Essays on Chiness Civilization, 1981.

國으로 가는 길은 다분히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던들 어떻게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갈 수 있었겠는가. 中國에 가려는 일념으로 당시의 유럽인의 상상에 큰 영향을 준 마르코 폴로나 그 밖의 사람들이 없었던들 어떻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겠는가.

마르코 폴로는 경험, 업적, 영향력에 있어서 다른 모든 기독교 여행자들보다 뛰어났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몽고에 갔지만 모두 3년내로 돌아왔고 또 그들은 傳道外交家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24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그의 先任者들보다 훨씬 멀리 몽고를 지나 中國의 중앙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는 대양에 이르기까지 중국전역을 횡단하였고, 쿠빌라이 칸의 친구가 되어 中國 大都市의 총독이 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중국말에 능통하였고 그 스스로 중국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젖어 있었다.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양에 대한 그의 풍부하고 生動力있고, 사실적인 소개가 곧 아시아의 발견이 되었다.

그 당시의 베네치아는 지중해와 그 너머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 상업의 일대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몽고 제국이 붕괴하고 시리아에서 동쪽으로 곧장 아시아로 들어가는 육로가 유럽인들을 보호해 주는 안전한 통로가 되지 못한 뒤에도,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그들의 東方貿易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육로로 남동쪽으로 이집트를 지나, 다음에 홍해와 아든만을 거쳐 아라비아해를 건너서 아시아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수지맞는 장사를 계속하였다.

4. 中國人의 海洋進出

항해자 헨리 완자가 아프리카의 서해안 아래쪽으로 그의 배를 보내고 있을 때, 지구의 다른 쪽에 있는 中國 航海者들은 그 수와 기량과 기술에 있어서 비할데 없는 해군을 가지고 있었다.[19]

---

19) C. P. Fitzerald, The Chiness View of Their Place in the World, 1971.

中國의 웅대한 함대는 이미 동지나해를 넘어 인도양을 돌아서 암흑 대륙(Dark Continent)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아프리카의 동해안에까지 항해를 하였다. 그러나 핸리 왕자의 배의 탐험이 新世界를 발견하고 지구를 일주하는 항해의 서막이었던 것에 대하여, 같은 시대의 용장한 중국인의원정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듯이, 中國人이 자신의 국경 안으로 몸을 움츠리는 격변적인 후퇴를 고하는 것이었다.[20] 1433년의 대후퇴가 그렇게도 극적인 것이 된 것은 그 때까지의 중국의 항해의 성과를 이룩한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이 중국의 해운력의 별명이 된 영웅이요, 광범위한 항해 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계획자이자 지휘관이었던 사람은 "세 개의보물"(The Triple Treasure)의 제독로서 불리워진 정화(鄭和 : 1371~1435? 중국 명나라의 환관)였다. 이 삼보라는 별명은 어쩌면 불교의 세 개의 중요한 요소인 불(佛, Buddha) · 법(法, Dhama) · 승(僧, Sangha)에서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정화는 그의 海軍-우리는 이것이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을 지나해와 인도양에 인접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끌고 갔다. 빛나는 문예부흥 이래, 적어도 500년 동안, 중국은 이슬람교 세계와 해외무역을 해 왔다. 중국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에 나일 강, 수단, 잔지바르(Zanzibar), 그리고 심지어는 남지중해의여러 지역들을 기입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러한 지식은 아랍貿易業者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에서 잔지바르에 걸친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주화 및 도자기는 이미 중국인들이 그 지역에 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정화의 원정대에는 이들 지역의 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交易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1]

7회에 걸친 원정은 서쪽으로 멀리 멀리 뻗쳐나갔다. 첫째의 원정은 1405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때에는 쟈바와 수마트라, 실론 섬, 그리고 캘리커트

---

20) Marcel Granet, Chiness Civilizstion, 1951.

21) J. J. L. Duyvendak, China,s Discovery of Africa, 1949.

를 방문하였다. 다음 원정은 샴(Siam)을 방문하였고, 동인도제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말라카를 기지 본부로 삼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벵갈, 말다이브 제도, 페르샤 만의입구에 있는 호르머즈의 페르샤 무슬림 군주의 영지에까지 방문하였다. 태평양방면은 류쿠(Ryukyu)와 브르네이까지 갔고, 또 다른 선대는 더 서쪽으로 내려가서 호르머즈에서 홍해의 입구에 있는 아든(Aden)까지 갔고, 다시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남서쪽으로 내려가서 소말리랜드의 모가디슈, 몸바사의 북쪽에 있는 말린디 그리고 잔지바르 해안까지 갔다. 2년에 걸친 제 6회원정(1421~1422)에서는 보르네오에서 잔지바르에 이르는 인도양의 전역에 걸쳐 36개국을 순방하였다. 그러나 이 웅대한 대 원정도 1424년에 정화의 후원자였던 永樂帝의 죽음으로써 일단 불운을 겪어야만 했다. 영락제의 후계자는 반항해파의 의견을 따라 그 해에 계획되었던 항해를 중단시켰다.

5. 發見의 時代

정화의 航海 產業은 잠시 왕위 계승의 볼모가 되었다. 그러나 황제의 짧은 통치 기간이 끝나자 또 새로 왕위에 오른 황제는 적극적인 항해지지파로서 역대 항해 원정에서 볼 수 없었던 대범한 제 7회 항해 원정을 추진하는데 협력하였다. 27,550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이 7회 원정은 2년 동안의 기일에 걸쳐 일찍 전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먼 지역에 걸쳐서 행하여졌으며, 遠征隊는 1433년에 돌아 왔는데, 그 원정 결과 니코바르 제도를 거쳐 쟈바 섬에서부터 북서쪽으로 메카,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아프리카의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20개의 왕국 및 무슬림 군주국들과 외교관계 또는 속국 관계를 맺었다. 지금에 이르러, 이들 먼 지역의 주민들은, 천여년 동안 기껏해야 그들의 항구에 나타난 조그만한 중국의 정크(junk, 너벅선) 정도만 보아 오다가 그들이 본 어떤 바다 보다도, 그리고 포르투갈인들이 타고 온 어떤 배보다도 훨씬 큰 이 중국의 배를 보고 압도되었다. 그들은 이처럼 강력한 海軍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하여 무척 의아스럽게 생각했었을 것이다.

이들 "웅대한 배"의 의도는 서구인들로서는 파악하기가 자못 쉽지 않았다. 정화의 관심과 목적은 "발견의 시대"(the Age of Discovery)의 유럽의 탐험선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서아프리카를 남하하여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향한 포르투갈인들의 항해는 그들의 國家的 富를 축적하고, 동양의 特産品과 사치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이미 보아온 바와같이, 바스코 다 가마는 그의 交易 物資로 줄무늬가 있는 피륙 세숫대야, 줄에 꿴 구슬, 그리고 설탕덩어리—이런 것들을 보고 캘리커트의 왕 사무리(Samuri)는 비웃은 바 있지만—같은 것들을 싣고 갔던 것이다. 이러한 물건의 댓가로 포르투갈인들이 뜯어낸 商品들 중에는 수천명의 노예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노예 상품은 앙골라(Angola)만에서도 17세기 중엽전에 이미 130만에 이르고 있었다. 배에 무기를 가득 싣고 와서, 그들은 마음대로 폭력을 자행하였다. 일단 武力으로 휘어잡자, 포르투갈인들은 印度를 무력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정화의 海軍은 이와는 반대로 아주 판이한 세계에서 왔다. 정화의 거대하고 호화롭고 장거리에 걸친 원정대의 목적은 재화를 거둬들이거나, 交易을 하거나, 改宗을 시키거나, 정복을 하거나 또는 과학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근의 역사에 있어서 해상 원정대치고 이런 목적을 가지지 않은 원정대는 없었다. 중국의 연대기에서는 영락제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난징으로부터 탈출하여 해외에서 방랑하고 있는 영락제의 조카를 추적하기 위하여 영락제의 명을 받고 정화가 맨 먼저 파견되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화의 원정이 계속됨에 따라 그것과는 다른 보다 더 큰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정화의 航海는 그 자체가 새로 탄생한 명의 왕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꾸며진 하나의 행사였다. 그리고, 그 航海는 의례적이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설득력을 통하여 외진국가들로부터 貢物을 받아내는 방책이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중국은 朝貢을 바치는 국가내에 그 자신의 영원한 기지를 설치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자발적으로 중국을 찬미하는 국

가 내에 "하나의 전 세계"를 만드는 것을 원하였고, 중국 자신이 오직 文明의 중심이 되기를 바랐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중국의 해상 원정대는 그들이 방문하는 국가들을 약탈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화는 노예도 금은도 또는 향신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사람들이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힘으로 빼앗음으로써 아시아의 주민들에게 겁을 주었지만, 중국사람들은 힘으로 주려고 함으로써 아시아의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중국사람들은 받는 것 보다도 주는 것이 더 고귀하다는 기독교의 원리를 무지불식 간에 실천하고 있었다. 유치한 값싼 물건 대신, 中國人들은 가장 훌륭한 기술이라는 보물을 보여 주었다. 아시아에서 온 유럽의 원정대들은 그들이 목마르게 동양의 특산물을 원하는가를 보여 주었지만, 중국인 원정대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여유있는 태도로서 보여 주었다. 이 당시 중국의 對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이었던 제도는 서양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친히 행하고 있던 것과는 아주 판이한 것이었다. 중국에 貢物을 바치는 나라는 정복자에게 굴복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중국을 유일하게 진실한 文明國으로 보고, 중국은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공물을 바치는 나라는 中國의 문화혜택을 받기를 스스로 즐겨하였고, 또 중국은 그 대가로 "중앙 왕국으로서의 관용성과 풍요성"을 베풀었다. 중국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여러 국가의 존재를 선뜻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 오직 중국만이 주권국가들로서의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오직 중국만이 참된 주권국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22]

6. 中國의 對外貿易

정화의 시대를 통하여, 중국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겼는

22) Marcel Granet, Etades socialogigues. Sur la China, 1953

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편향적인 논리는 중국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주도록 하였다. 모든 새로운 중국의 무역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의 公共關係를 이와 같은 기묘한 틀 속으로 밀어 넣은 중국의 우발적인 역사는 앞으로 다가오는 수세기 동안을 중국의 대외 교제를 무능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공납제도는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 팽창하는 상업적 욕구에 대하여 눈을 가리우는 장애가 되었다. 외국의 주권국들은 중국의 황제가 '선물'을 받는데 대하여 말이 많아졌다. 이 선물은 사실은 外國主權國들을 달래기 위하여 폭력으로 빼앗은 것들을 평화적으로 내주는 중국황제의 뇌물이었다. 중국정부는 차츰 외국의 열강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몇 세기 동안 약화되어 가는 중국 정부에서 그래도 外國貿易業者들은 중국에 아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화의 시대에는 중국 황제는 적어도 한동안은, 중앙 왕국은 아무에게서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아무게에서나 아무것도 배울것이 없다는 그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관철하였다.

중국사람들은 그들이 貿易業者나 정복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은 또한 십자군도 아니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무자비한 의사를 가지고 西洋人의 편협성을 아시아에 가져왔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단 기독교는 그들의 개종과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1560년에 포르투갈인들은 인도 남부의 고아(Goa)에 실질적인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기독교 정권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공포조치를 실시하였다.

장소와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해돋이와 해넘이의 방향 외에, 선원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뚜렷한 방향은 바람의 방향이었다. 적어도 기원전 I세기 때 중국사람들은 그들의 "바람의 계절"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들은 바람을 24종의 계절풍으로 치밀하게 분류하였고, 그 바람의 각각 상이한 상태를 시험하기 위하여 연을 사용하였다. 아주 초기의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自然科學에 공헌한 모든 종류의 선구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바람개비를 만들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가리키기 위하여 각각 다른 바람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方向과 같은 뜻이 되었다. 초기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부푼 볼과 상징적인 바람을 내뿜는 강한 숨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주요한 방향표시였다. 콜럼버스시대의 스페인 선원들은 방향을 나침반의 방향으로서가 아니고 바람으로 생각하였다. 포르투갈선원들은 그들의 나침반의 지침반을 바람 장미(wind rose : 風配圖를 뜻함)라고 계속 불렀다. 기독교 선원들이 코르도바에 있는 그들의 교회에 성모 마리아를 모셨을 때, 성모 마리아가 "좋은 바람의 여신"이 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자석 나침반의 시대가 되기 전의 모든 유럽의 선원들은 '방향'을 바람과 동일시 하였다.

"비밀이 독점을 낳듯이, 독점은 비밀을 낳는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다. 이같은 경험과 비슷한 호기심을 끄는 일이 이보다는 종전의 일이지만 지구의 다른 쪽에서도 벌어졌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환관이 중국의 배들을 거느리고 동양의 모든 해역을 항해하여 여러 큰 공을 세운 후 1433년 중국은 이에서 물러서기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탐험을 금지시켰다. 다음 1480년에는 이미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른 다른 중국 환관 한사람은 航海海上探險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국의 고위당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 환관이 금지된 탐험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 전의 탐험기록을 없애 버렸다.

Ⅵ. 韓國의 東西貿易

1. 韓國貿易의 起源

物資의 교류는 교역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호혜적인 物品贈受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식량, 재료 등의 입수, 공급을 위해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物物交換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특징의 하나는 토기를 만들어 이것에 물을 담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기도 한 점이다. 특정종류의 토기가 넓은 지역에서 발굴되는데 이것은 이

미 전문적으로 토기를 만드는 共同體가 있고 거기에 專門職人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그 토기가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교환을 통하여 널리 확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교환된 것은 토기만이 아니었다. 석기, 소금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었다.[23]

우리나라에서도 점판암이라든가 기타 특수한 石材의 획득을 위하여는 물물교환에 의한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장신구용인 옥제품이나 옥의 원석은 틀림없이 交易을 통해서 얻었을 것이다. 옥제품이 특히 두만강 유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만주 지방과의 交易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며, 춘천 교동의 주민들은 함경도 지방과 교역을 통해서 옥을 얻어 스스로 가공했던 모양이다.

이러한 貿易에 의해 거래된 물건은 모피, 건어, 특수석기, 목기, 골각기 등이었을 것이며, 어망, 직물 따위도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고, 농경의 시작 이후는 같은 즐문토기인 사이에서도 재래식의 어로위주의 집단과 농경위주의 집단으로 갈라지게 되어 交易은 보다 더 활발해졌을 것이다.

BC 3세기 이전에 편찬된 중국의 管子에 의하면 BC 7세기에 고조선은 이미 제나라와 무역하고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는 子母錢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조선의 법률인 犯禁8條에는 50만의 錢에 관하여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조선 시대에는 교환경제가 상당히 발전하였던 것 같이 생각된다.[24]

부족국가의 발전기인 부여, 三韓時代에는 대외무역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農業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호농 내지 지배층에 부가 집적됨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政治的集團이 무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부여에서는 서역기원을 전후하여 후한과 빈번히 무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漢民族과의 사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25]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오곡을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었고 목축

---

23)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탐구당, PP. 98.

24) 「歷史韓略」, 券2, 「東日韓略」, 券1, 韓國造幣公社, 「韓國貨幣全史」, 1971, pp.3.

25) 「晉書」의 夫餘國傳, 「武帝時來朝貢」에 기록이 있다.

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手工業이 발달하여 고급 비단이 생산되었으며 철제 생산도구를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농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업이 발달하고 잉여생산물이 많아짐에 따라 交換經濟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部族社會에 있어서도 비슷하였다. 이 시기에는 그밖의 부족집단들도 중국과 交易하고 있었다.

2. 三韓의 貿易

물물교환의 형태만 해도 발전단계에 따라 가장 원초적인 폐쇄적 自給自足의 교환관계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발달한 형태로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역이 진행되는 개방적인 交換經濟도 있다. 전자의 주요특질로는 개인 혹은 집단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은 자급자족의 수단으로 충당되므로 잉여물자를 생산하지 않으며 때로 需要量이상의 물자를 생산한다 해도 바꾸어 얻고자 하는 만큼의 양을 크게 넘지 않고 생산과 교환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交換過程에 아무런 매개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26]

文獻上으로도 삼한의 일부지역에서는 철이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실제 고고학 유물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鐵鋌들이 AD 1세기 이후의 支配者의 분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삼한사회에서는 물자교역 과정에 철이라는 매개체가 개입되기도 하며 물자의 생산도 철의 경우 自給自足에 필요한 양을 훨씬 넘어 타집단에게 공급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속기가 자급자족의 단계를 넘어 잉여산물의 형태로서 교역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단계에 이르면서 교역의 양이나 대상, 범위가 훨씬 확대,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7] 그 결과 朝陽洞 토분묘에서처럼 철정을 다량 부장하는 支配者의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26) Marshal D. Shlions, Tribesmon, 1968, Newsersy, pp.75.

27) 「三國志」韓傳에 「又有州胡, 在韓之西, 海中大島上. 乘船往來, 市買中韓」이라 하여 제주도 지방에 있던 집안들과도 物貨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속하게 재화가 축적되고 각 집단간에 세력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支配權力의 집중화가 진행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개방적인 교환경제가 진행되면서 三國志 倭人傳의 "國國有市長有無"라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각 소국별로 교역의 중심지가 조성되고 이곳에 타 물자와 교환하기 원하는 각종 물자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집적하여 國邑, 主師의 주관하에 교역이 진행되고 교역의 물건들이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28] 물자교역이 각 가계별이었는지 邑落集別이었는지는 교역물자의 내용, 사유재산의 발달정도, 교역의 지리적 범위 등에 따라 각각 달랐을 것이다. 당시 三韓社會의 사유재산의 발달정도는 잘 알수 없으나 철제, 농공구류의 보급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경작, 가계별 경작지의 확보의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및 경작도구의 가계별 구비가 예상된다.[29] 따라서 각 집단내에서 가계별 小規模 交易도 있었을 것이며, 읍락단위의 교역 또는 소국단위의 교역이 고루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교역의 중심지로서 國邑의 비중이 높아지고 교역과정에서 국읍,주사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써 국읍은 정치활동의 중심지로 변하고 국읍,주사의 정치권력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즉 국읍의 주사는 物資交易 過程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용이하게 재화를 축적할 수 있으며 교역될 물자의 분배과정에서 읍락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킴

---

28) Mesopotamia의 古代神殿 村落形成期에 있어 각 집단의 司祭는 政治權力者를 겸하면서 그 집단내의 교환할 생산제품을 신전과 공동으로 타 집단과의 교역을 주관하고 교역된 물자를 다시 각 구성원에게 재분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능까지도 경제활동과 더불어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伊東俊太郎, 「都市와 古代文明의 成立」), 1974, pp. 125~6.

29) 필리핀의 Kalinga族 사회에서는 가족노동에 의해 개별적으로 황폐한 땅을 개간하거나 수로를 만들어 생산이 가능한 경작지를 개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가족별 소유권이 인정되며 당해 가족이 그 토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세습권까지 주어진다. 이는 공동체 관계내에서의 가계별 사유재산이 생성되는 한 유형으로 보여지며, 철제농구의 보급 이후 이에 따르는 경작지의 가계별 개간 경작에 의해 三韓社會에도 각 소집단내의 家父長 家系別 土地占取權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Elman R. Servis, Prefiles in Ethnology, 1963, New York, pp.278).

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점차 강력한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되었을 것이다.[30]

3. 三國時代의 貿易

삼국시대의 대외무역에는 또 하나의 형태로서 밀무역이 있었다. 당시의 對外貿易은 본래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었으므로 사무역은 밀무역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주로 해로를 통하여 중국 및 일본을 상대로 밀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신라의 密貿易船은 일본의 대마도, 長門, 博多 등지 및 중국의 山東地方을 출몰하면서 상품을 교역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밀무역에 대한 금지령을 발포하기도 하였으나 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密貿易船은 때때로 해적으로 변하여 조공선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혹은 중국과 일본의 연안주민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4. 新羅의 貿易

신라말기에 이르러 정치적 통제의 이완으로 개인적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貿易條件이 개선되어 신라인의 무역은 황해와 대한해협을 무대로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해외발전은 해상교통의 발달을 전제로하여 가능한 것이다. 먼저 한반도의 해상교통에 대한 위치를 살펴보면, 서쪽으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하고 있는 만큼 三國時代에 백제와 신라(남지나에 대해서는 고구려도)의 중국과의 교통이 항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도 공적교통이 주로 해로로 통하였으며,[31] 또한 한반도 동남쪽으로 대한해협과 동해를 면해서 일본

---

30) 南 Africa Zulu族의 族長 가운데 유럽인들과의 생산물 교역과정에서 강한 政治的 支配權을 획득함으로써 다수 집단들을 통일하고, 이러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年齡級團(Age Grade)으로 구성되는 전투조직을 편성하고 주변의 타집단들을 흡수해나감으로써 Zulu왕국의 발달된 政治權力의 기반을 마련한 예가 주의 된다 (Eleman R. Service, Profile in Ethnology, 1963, New York,pp.293~4).

31) 三國志, 魏書 三十東夷傳, 第三十倭人.

과 대하고 있어서 동아제국의 海上交通은 사군시대부터 이미 한반도를 중심으로 행하게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대당 교통도 특별한 장해가 없는 한 대개는 대한해협을 통하여 황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며, (대륙교통에는 구주 특히 북부의 博多가 그 중심이었음) 또한 日·中 교통에 대한 신라(통일후)의 지위를 살펴보면, 신문왕 시대에 일본의 遣唐 留學生들과 入唐 學文僧들과 당으로부터의 放歸者(백제 몰락 후의 被擄者) 등이 자주 신라사절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치되었으며 신라를 통하여 일본에 사절을 보냈으며(경덕왕시대), 혜공왕시대에 재당일본사신과 유학생 등의 통신은 신라사절을 통하여 자주 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신라의 전성시대에 그 해상활동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이샤워 교수는 "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통일신라 하반기의 해상 사무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32]

"일본이 아직 중국의 문화수입에 급급할 때인 9세기 중엽경에 한국인(신라인)들은 벌써 새롭고 더욱 극적인 세계사의 한 국면에 참여하고 있었다." 즉 신라인들은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세계무역시대의 시작시기라는 뜻으로서의 세계해상무역의 초기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의 세계해상무역의 주류는 중근동 貿易商人들에 의하여 揚州까지 도달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거점으로 하여, 이 지점에서 그 무렵에 알려져 있는 곳의 끝까지 신라인들은 무역의 발길을 뻗치고 있었다. 중국 동부, 한반도 및 일본은 신라인의 활동의 대상이었다. 세계의 동쪽 끝에 있는 비교적 위험한 수역에서 그들은 서쪽 끝에 있는 평온한 지중해 연안의 商人들이 그 주변영역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동서의 대응사실이나 그 시대에 관한 표준적 역사의 敎科書에도 또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의 서적에도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

32) 海運港灣廳, 「韓國海運史」, pp.33~7.

5. 新羅의 對唐 貿易

당시 당의 東岸지대 가운데 신라와의 海上交通이 편리한 항구지대를 중심으로 신라인들은 자치적인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다. 그 중심의 하나인 登州, 文登縣, 赤山村은 유학생, 구법승들의 내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본국에서 유랑하거나 혹은 상업 등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온 신라인들, 그 중에 더러는 노예선에 의해 납치되어 귀화한 사람들도 끼어 살고 있었다. 이것을 보통 新羅坊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은 승려나 관리와 같이 출장하여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수도 있었지만 貿易業, 조선업, 해운업, 염업, 목탄 생산업이나 농업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연해운송업에 종사했던 것 같다.

한편 淮河 유역이나 양자강 하류 부근의 촌락은 海洋貿易業者나 직업선원이 중심이 되지 않았나 한다. 당시 長江 하류의 揚州는 이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의 심장부이기도 하다. 839년 일본승 圓仁이 이곳에서 신라인 무역상 王靖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운하와 준하를 이어주는 경제적 전략적 요지인 楚州나 준하 유역의 運水연변에 살고있던 신라인들은 8세기 초엽에서 장보고의 淸海鎭 전성기라 할 9세기 중엽까지 무역업이나 해송업에 종사하여 신라, 당, 일본의 삼국무역에 주동역할을 하였으며, 또 남으로 明州, 宗州, 廣州에 이르는 서방세계의 상인과의 교역도 행하였으리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 신라인들의 촌락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상당히 누리고 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楚州나 運水지방의 신라방의 장은 총관이라 하고 그 아래에 譯語, 그리고 專知官이란 이름을 가진 自治區 신라인 관리가 그들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동의 등주부, 문등현, 적산촌은 초주나 연수지방과는 달리 보다 광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적산촌의 신라인 통활관청은 勾管 新羅所이며 그 장을 押衙라 하며 그 밑의 향촌마다 촌장을 두었다. 押衙와 唐帝國地方州廳에 대한 영향력은 總管보다 월등 강대하였을 것이며, 이곳에 당

시 머물러 여러모로 협력을 얻은 日僧 圓仁은 이를 "大使"라고 기록하고 있어 大使라고도 부른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촌락에는 村保나 板頭라는 직명이 보이고 있으므로 혹 당대 隣保制 조직이 형성되어 자치활동을 한 듯하다. 어떻든 적산촌의 자치권이 보다 광대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이 지역 거주인구가 많은 것과 정치적, 지리적 특성에서 온 것이라 믿어진다. 이처럼 당나라내의 신라방 중에서도 그 심장부라 할 적산촌은 장보고가 세운 新羅僧院, 즉 赤山法華院이 있어 僧24名이 상주하였으며, 이곳 押衙등 3인의 운영자는 년 500석을 수확하는 염전을 가지고 있었다. 2월 16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월 15일에 끝맺는 新羅風俗과 신라말로 거행된 마지막 2일에는 250명과 200명이 각각 참례할 만큼 그 규모가 자못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6. 高麗의 貿易

고려상인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래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신라말기에 비하여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니 여기에는 또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원래 고대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문화의 수요는 주로 조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사회에 있었던 것이어니와 고려에 있어서도 그들의 수요는 國商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다리기 전에 宋商에 의하여 대개는 공급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관계야말로 麗商 활동이 소극화된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고려상인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기록도 또한 적어서 그 전 모습을 추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동아 국제무역의 무대에 있어 고려상인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고려상인의 외국무역은 陸海 양면으로 병행되었던 것이니 서북으로는 遼, 金과 互市를 행하고[33] 서남 해로로는 송나라에, 동서해로로는 일본으로 통하였던 것이다. 고려상인의 대중국 해상무역은 이미 태조 때부터 행하였던 것이다. 태조

33) 「續文獻通考」, 卷 25, 市考, 市舶互市條, 「金史」, 本紀宣宗, 興定2年 4月 癸丑條에 「完顏素蘭, 請宜論高麗, 復開互市從之」라 하였음.

초년부터 後唐과의 국교가 열려 사절의 왕래와 國信物의 교환이 자주 행하여졌으며 일반 무역도 자못 활기를 띠었던 것인데 태조 17년 7월에 고려의 商船이 후당 登州(산동)에서 교역을 행한 것과 동년 10월에 고려의 선박이 후당에 건너가 등주에서 무역을 행한 것으로도 개황을 추찰할 수 있는 것이다.

宋代에 이르러서도 고려의 海船이 자주 明州, 登州에 표착하였다는 기사가 宋史에 보인다.[34] 원래 명주와 등주는 고려와의 교통과 무역에 있어 중요한 항구로서 唐代로부터 고려의 상선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므로 그곳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고려의 선박은 商船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송에서는 국가수입을 늘이려는 정책에서 동남연안의 주요항구에 市舶司를 두어 출입화물의 징세와 海舶에 대한 검찰이 엄하였던 관계로 양국 민간사이에는 밀무역이 성행하였던 것이다.[35]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명주, 등주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고려의 선박도 密貿易船으로서 표류를 위장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된다.

V. 結　　論

東西洋 모두 貿易이란 한 國家가 또 다른 國家에게 재화를 交換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交換構造가 오늘날과 같은 貿易메커니즘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경쟁적인 貿易國家의 출현은 고대 동서양의 貿易에서 주요관심사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동서양의 무역체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함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형태로 발생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東西洋의 貿易을 비교분석한 것은 국제적인 거래를 이루고 있는 많은 개념들을 무역적인 측면에서 이용가능하게 할 것이

---

34) 『宋史』, 高麗傳에 「明州登州言, 高麗海船, 有風漂至境上者, 詔令存問, 給度海糧, 遣還, 仍爲著例」라 하였음.

35) 侯厚培著, 『中國國際貿易小考』, 第4章 第1節 所引 〈知慶元府胡子〉 (南宋理宗, 寶慶年間) 參照.

다. 東西洋의 貿易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고대로부터 진행되어 오고있는 점진적인 제도적 변환에 비추어 관찰되어야 한다.

東西洋貿易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무라비時代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西洋의 貿易은 地理的環境과 貿易을 管理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러나 東洋, 특히 中國의 貿易은 王에 의해 주도 되었다.

둘째, 西洋은 地理學에 빠져서 신비스러운 東洋의 傳說에 매혹되어 끊임없이 東洋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반면에 東洋은 西洋에 대한 情報가 막혀있었다.

셋째, 西洋의 遠征隊 는 財貨의 취득과 宗敎的인 任務가 目的이었지만 東洋의 遠征隊 는 財貨의 획득이나 交易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기 위한 朝貢이 目的이었다.

넷째, 東西貿易은 실크로드와 남지나, 인도양을 통한 貿易路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貿易路가 막히면 이를 극복하는 方向에서 새로운 東西貿易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무역은 西洋의 경우 교통의 중심지나 政治的 中心地인 都市 또는 港口, 東洋은 君主의 王都에 발생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교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都市的 交換形態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역에서 도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貿易이 1차적으로 이를 유도했다기보다는 영속적인 供給者와 貿易購買者群이 존립, 또는 형성되었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무역연구분야에서의 우리의 주요한 임무이다. 우리가 입증하고자 시도해 왔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적 구조는 무역의 실재적 의미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동서양의 무역의 근원은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다고하나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貿易은 오직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貿易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 勞組 組織形態의 變遷에 관한 硏究

金 倉 宜*

目 次

Ⅰ. 序 論
Ⅱ. 韓國 勞組組織의 形成·發展
1. 解放前의 勞組組織
2. 解放後의 勞組組織
Ⅲ. 現況과 當面課題
1. 現在의 勞組組織 形態
2. 當面課題와 展望
Ⅳ. 結 論

Ⅰ. 序 論

勞動組合의 효율성은 그들이 자주적으로 勞動市場을 어느 범위까지 통할 할 수 있고 또한 그 정도가 얼마만큼 강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노동자를 어떻게 組織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勞組의 組織形態는 각 산업의 발전단계 또는 각 시기의 노동시장 구조 및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에 따라 다양한 조직형태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職業別 組合, 一般組合, 産業別 組合 그리고 企業別 組合 등의 형태로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노조조직의 형태는 국가마다의 특수성에 따라 어느 정도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된다. 노조조직의 발전경로를 보면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직업별 노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진출과 더불어 과거의 낡은 조직형태를 탈피하여 産業別 組合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는 숙련노동자층이 두텁지 못하고 자본

* 圓光大學校 經營學科 敎授

주의의 발전 자체도 국가나 독점자본주의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나라들의 경우 숙련 노동자 중심의 職業別 勞動組合의 전통이 대단히 미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서구처럼 職業別 勞動組合에서 産業別 勞動組合으로 나가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노동조합이 발전했다기 보다는 移植된 독점자본하에서 일정한 기업체 단위로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발전 경로는 직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나가는 西歐의 노동조합의 유형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나가는 日本의 노동조합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과 기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노사관계의 특징으로 終身雇傭制와 企業別 勞組를 내세우고 있고 이러한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본경제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과 기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形成起源, 그리고 發展過程 및 現況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특성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發展을 전망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本 論文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史的考察과 함께 現況 및 展望을 다루고자 한다. 硏究의 범위는 勞動運動의 理念, 勞動爭議는 제외하고 勞動組織의 形成과 변천에만 국한하였다.

Ⅱ. 韓國 勞動組合 組織의 形成 · 發展

1. 解放前 勞組組織

1) 韓國 勞組組織의 形成

1876년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래 부산, 원산, 인천 등 한국의 각 항구가

개항됨에 따라서 한국의 봉건사회경제는 새로운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개항이래 1919년까지의 기간에 있어 일본 자본주의의 침투에 따르는 임금노동의 형성과정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각 개항장의 물동량 증대에 따르는 부두노동자의 성장이며, 둘째는 상품 및 원료시장으로서의 식민지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가공업의 점차적 발달에 따르는 공장노동자의 형성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임금 노동자들의 組織이 언제 비로소 탄생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해명할 자료가 없다.

韓國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

"평민은 自衛上 조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 크며 따라서 협동일치의 정신이 크게 발달하여 단체 및 노동조합이 대단히 많다.", "노동조합은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여러가지 소단체의 집합으로서 직업의 同一을 요소로 하는 것이 가장 많고 한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인민은 모두 일정한 규칙 및 長의 밑에 특수한 조합을 조직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여기서 韓國誌가 말하는 것은 각종 匠人契 따위를 지칭하는 것이며 반드시 임금노동자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조말 각처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契의 형식으로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부정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처음에 義兄弟 또는 萬同生 등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점차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약간의 회비를 거두어 勞契 또는 조합을 조직하였다.

1898년 성진에서는 李奎順이 47명의 부두노동자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다른 개항장에서도 부두노동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은 有形의 조직은 아니지만 변두(弁頭)·접장(接長)·십장(什長)의 통솔하에 무형의 조직으로 단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을사조약 이래 일본 자본주의의 노골적인 식민지화 정책이 진행된 이후 시기에 있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노동조합이 전국각처에 속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합은 물론 오늘날과 같은 産業別 또는

1) 韓國誌, 日本商務省譯, 1906, p. 48

〈표 1〉 노동단체의 설립과정

창립 년월일	단 체 명	소 재 지
1898. 5.	성진본정부두조합	성진세관 구내
1899. 2. 15.	공동노동조합	군산부 개복동(開福洞) 58
1899. 4. 1.	평양곡물두량조합	염점리(鹽店里) 32
1906. 6. 10.	조선노동조합	전남포부 용정리 23통 8호
1907.	수상조합	개성 송도면 서본정 313
1908. 4. 1.	신창리 노동조합	평남 신창리(新倉里) 101
1908. 4. 8.	광량만 노동조합	용강군 금곡면 우동리
1909. 4. 2.	노동조합	함남 이원군 상동면
1909. 10. 20.	삼화노동조합	진남포부 용정리 117
1910. 2. 7.	선업조합	진남포부 용정리 173
1912. 3. 20.	신노동조합	군산부 송창동(松昌洞) 18
1913. 3. 1.	고량포노동조합	장단군 고량포리 173
1913. 5. 30.	차호부두노동자조합	함남 리원군 차호면(遮湖面)
1915. 1. 10.	노동조합	충청남도
1915. 6. 10.	고저노동조합	통천군 순령면 고저리(庫底里)
1915. 10. 27.	토목공사노동조합	개성 송도면 북본정 144
1917. 1. 16.	신흥군마계(馬契)	함남 신흥군 동천면
1917. 2. 16.	공흥조	군산부 빈정 9
1917. 8. 27.	평양노동조합	평양부 염전리 36
1917. 11. 12.	객주조합 노동부	군산부 강호정 20
1918. 1. 1.	신흥조합	군산부 신흥동
1918. 3. 15.	고조노동조합	통천군 순령면 고저리
1918. 8. 11.	신환포부두노동자조합	재령군 남율면 신환포리(新煥浦里)
1919. 6. 14.	영일노동조합	영일군 포항면 포항동 남빈정
1919. 8. 19.	신태인노동조합	정읍군 용북면 신태리 280

자료 : 細井肇, 鮮滿の經營, 1921, 統治策論 29~35면.

전국적 조직은 아니었으며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職場別 組合들이었다.[2)]

2) 全國的 勞動者 組織의 발전

朝鮮에 있어서 임금노동자들의 조직은 1910년대 이전에 이미 각처에서

2) 金潤煥, 韓國勞動運動史, 青史, 1982, p.38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되었지만 1920년대 초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도 전국적인 유대를 갖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20년 2월에 이르러 조선노동공제회의와 노동대회가 각각 발기되어 전국적인 노동자 단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선노동공제회나 노동대회는 모두 각지에 지부·지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있는 노동자단체를 총망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2년 10월에 결성된 조선 노동연맹회가 그 뜻을 이어 추진하였으나 노동대회준비회와의 세력다툼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있다가 1924년 4월에 이르러 조선노동총맹을 결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조선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단일 노동자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노동운동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던 1920년부터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된 1924년까지의 192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 조선노동운동은 이러한 전국적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의 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3·1 운동을 계기로 노동

〈표 2〉 국내 한국인 단체 일람표

(1925년말 현재)

구분 / 도별	노동 단체	사회 단체	소작인 단 체	청년회	소년회	학생회	산업 단체	부인회	형평회
경 기	11	71	1	25	19	23	17	5	6
충 북	3	2	10	22	4	14	11	1	8
충 남	11	11	8	28	7	6	25	2	18
전 북	23	9	15	65	10	8	6	2	10
전 남	11	25	59	116	8	2	3		7
경 북	3	16	1	84	16	32	17	1	11
경 남	11	5	15	85	9	10	7	5	23
황 해	11	9	11	84	11	7	17	5	3
평 남	19	10	3	49	3	19	9	4	2
평 북	4	6		18	1	5	10	1	
강 원	6	4	2	62	8	26	26	1	7
함 남	12	8	1	103	14	26	18	1	4
함 북	3	7		106	17	7	10	1	
계	128	183	123	847	127	185	178	29	99

자료 :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노동조합운동사, 1979, p.126.

운동을 포함한 각종 사회운동이 크게 앙양되어 1920년대 초반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속속 결성된 바 있다.

1910년대 이전 또는 1920년대 초기의 노동자단체들은 그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친목회 또는 공제회 등 다분히 친목적인 상호부조의 단체였다.

이것이 조선노동공제회와 조선노동동맹회, 그리고 조선노동총동맹회의 강령과 목적들을 비교하여 보면 쉽사리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노동공제회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임금노동자들이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他를 원망함보다 자기를 自責하며, 自助와 自尊, 自覺 그리고 自高로써" 지식을 계발하고 품성을 향상하며 근검, 저축장려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상호부조·환란상구할 것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조선노동연맹회의 강령과 선언문을 보면 노동자들이 빈곤한 이유를 막연하나마나 사회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것이라 느끼고 신사회주의건설을 주장하며, 그러기 위하여 공동의 力으로 일치단결할 필요성에 의하여 노동자조직이 요청됨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노동총동맹에 이르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명확하게 노동계급을 해방하기 위해 자본계급과 투쟁하기 위하여 노동자단결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대회 그리고 조선노동연맹회에는 모두 소작인 및 소작인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조선노동총동맹에도 노동단체와 소작인 단체가 총망라되어 있어 노동자 농민운동이 미분리된 상태였다. 그런데 전국적 노동자조직으로서 朝鮮勞動總同盟이 결성된 것은 1927년 9월 7일 조선노동총동맹을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3] 이것으로 지금까지 조선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이 노동미분리의 혼합적 형태를 벗어나서 노동자들만의 단일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 활동을 심화할 수 있

3) 東亞日報, 1927. 9. 8.

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노동총동맹은 그 출생부터가 집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탄압적 조건하에서 서면대회라는 형식을 통해 겨우 결성되었던 것이니 만큼 그 표면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조선노동총연맹의 많은 간부들은 수차에 걸쳐 반복된 공산당원 검거사건에 연좌되어 체포·투옥되었기 때문에 조선노동총동맹은 사실상 마비되고 1928년경에는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져 간판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이 일제의 계엄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조선노동자들의 유일한 전초적 조직으로서 노동운동을 조직·지도하는 핵심으로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20년대 후반기에 와서 전국적으로 보다 활발하게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연합회의 결성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출현은 모두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의 적극적 지도에 의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노동조합연합체의 결성이 1925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직되기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농민단체나 형평단체, 심지어 개인들까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노동조합들만의 지역적 연합체로서는 실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었다.

3) 地域 및 産業別 勞動者 組織

1920년대 전반기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 노동대회, 조선노동연맹회, 조선노동총동맹이 차례로 결성되고 있을 무렵 지방에서도 속속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적 노동자조직은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의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고 노동자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조직된 것이 많았다.

이들 지방의 노동조합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만 보더라도 1920년에 13개, 1921년에 19개, 1922년에 32개, 1923년에 28개, 1924년에 29개, 1925년에 76개, 1926년에 105개에 달하고 있다. 신문에 게재된 것 이외에 빠진 것과 소작인 조합 등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당시의 지

방적 노동자조직의 명칭은 노동자친목회, 노동조합, 노동수양회, 노동청년회, 노동우애회, 공제회, 노동계, 노동회, 노동상조회, 노동동맹회, 노동동무회, 노동동우회, 노동구락부 등 다양하였다. 지방의 노동자조직의 설립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1924년에서 1926년에 걸친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전국적으로 앙양되던 시기였다. 이들 지방적 노동자조직은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들 지방적 노동자조직체는 세가지 형태가 있었다. 그 하나는 소도시나 농촌에 설립되었던 지역적인 합동노조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에 많이 설립된 인쇄공직공조합과 같은 직종별 노동조합이며, 또 하나는 군이나 도시의 몇개 직종별 노동조합을 연합한 노동조합연합체이다. 그것 이외에 1925~26년경부터 전국적인 직업별 노동조합의 조직도 점차 추진되었다. 이들 지방적 노동자조직은 노동자계급과 소작농민들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자에 대한 교양, 상호부조, 소작농의 보호, 당국에 대한 집단적 저항, 악덕지주에 대한 성토와 소작관행의 시정책강구, 노동야학의 운영, 노동계몽운동의 실시, 노동임금인상을 위한 파업, 당국의 압박에 대한 반대시위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 정치단체, 사회단체와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민족해방을 위해 꾸준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1925년 말의 조선 공산당사건이 있은 후 일제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가일층 혹심하게 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유일한 전국적 조직이었던 조선노동총맹도 창립 후 대회개최를 금지 당하는 탄압하에서 조선 공산당사건에 많은 간부들이 연루되어 체포 투옥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앙부의 활동이 일제의 혹심한 탄압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지방단위의 노동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이것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의 노동자조직을 기초로 하여 지역별 노동조합 연합체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속속 결성된 것이다.

1920년대 전반기의 노동조합은 직장별로 조직되었거나 아니면 각급 노동자를 혼합한 지역적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던 것이 후반기에 와서는 각종

노동자들이 혼합된 지역적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되고, 그 위에 그들 산업별 노동조합을 통합한 지역별 노동조합 연합체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여기서 1920년대 후반기에 들아와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연합체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4]

1925년 5월 전남 함평에 있는 수개의 노동단체가 연합기관으로 함평 노동조합연합회를 설하였으며, 1925년 8월에는 경성인쇄직공조합, 경성철공조합, 경성금수부조합 등을 하나로 묶어 경성노동연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5년 10월 목포에서는 제유노동조합, 면업노동조합, 정미노동조합, 방직공조합, 자유노동조합, 선하노동조합, 하차노동조합, 問屋노동조합 등이 연합하여 목포노동총연맹을 조직하였고, 원산에서는 종래의 40여개소 小組를 합하여 원산노동회로 되어 있던 것을 결복노동조합, 운반노동조합, 부두노동조합, 운송노동조합, 두량노동조합, 선박노동조합, 海陸노동조합의 7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 원산노동연합회를 구성하였다. 1925년 11월 전남 담양에서는 手車노동조합, 우마차조합, 운반조합, 점미노동자조합, 자유노동자조합 등이 담양노동자조합연맹을 창립하였으며 이들은 나아가 1926년 2월에 나주 노동조합연맹, 광주 정미노동조합, 광주철공노동조합, 광주인쇄직공조합, 영암노동회, 지도왜관노동조합과 더불어 전남노동연맹을 발기하였다.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도 1926년 3월 신문배달인 조합, 정미인접인부조합, 우마차조합, 합열노동자조합, 자유노동점원친목회, 익산노동회 등 7개 노동단체가 연합하여 익산노동연맹을 창립하였으며 동년 4월에 가서 전북노동연맹을 결성하였다.

그 밖에도 1925년에서 1927년에 걸쳐 진주노동연맹회, 나주노동조합연맹, 광주노동연맹, 함북노동연맹, 해주노동연맹, 함흥노동연맹, 조선노동총동맹평양연맹 등 여러 곳에서 노동조합연합체가 구성되었고 그 산하에 세포단체들도 직장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속속 개편되었다. 이와 같이 개편된 지역별 노동조합 연합체는 각기 그 지방에서 일어

4) 東亞日報, 1925. 2.

나는 노동쟁의를 적극적으로 지도하였다.

한편 1925년경부터는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일찍부터 조합조직을 하였으며 또 노동자의 단결도 비교적 강하던 인쇄공, 철공, 신문배달인 조합 등 몇몇 부분에서 조직되었을 뿐 많이 조직되지는 못했다. 그 원인은 당시의 한국에서는 조직성이 약한 노동자가 근대적인 공장노동자 보다도 많은데다가 그 공장노동자도 여성이 많은 정비, 섬유 등이 주이며 숙련과 기술을 요하는 중화학공업 노동자가 적었다는데 기인한다. 비록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은 많이 조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국각지의 각군, 각부의 직장별 노동자가 지역적으로나마 산업별로 단일화되었다는 것은 192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의 하나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이 일제의 탄압과 지도부의 파쟁으로 노동운동을 지도하지 못하였던 1920년대 후반기는 주로 지방의 산별노조와 그것을 연합한 노동조합연합회가 노동운동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당시 지역별 노동조합연합체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열거하면 〈표 3〉과 같다.

일제는 1920년대초에 3·1운동에서 받은 타격으로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걸고있던 시대이므로 노동운동에 대하여 정면탄압을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1925~26년경부터 노동강연이나 노동절기념행사 같은 것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강화되는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큰 수난기를 맞이하게 되어 1935~36년경에는 거의 모든 지방노동단체도 표면상으로는 그 기능을 정지당하고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 解放後의 勞組組織

1) 美軍政下의 勞組組織

1945년 11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운동의 기초를 둔 朝鮮勞動組合 全國評議會(全評)가 조직될 당시 南韓전체로서 16개 産業別 勞動組合에 약 730개의 산하조직과 약 3만명의 組合員이 있었다. 이 全評의 지도인

불들은 日帝시대부터 공산주의활동을 해온 사람들로서 남한에 민주국가의 건설을 막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그 전위대

〈표 3〉 노동조합 연합체 조직상황

단체명	소 재 지 명	창립년월일
평양노동연맹	평양	1924. 7. 20
군산노동연맹	전북 군산	1925. 1. 1
경성노동연맹	서울	1925. 8. 10
진주노동연맹회	경남 진주읍	1925. 10. 8
목포노동총동맹	전남 목포	1925. 10. 13
원산노동연합회	함남 원산	1925. 10.
함남노동총동맹	함남 함흥	1925. 10. 23
담양노동조합연맹	전남 담양군	1925. 10. 28
조선직유직공조합	서울	1925
나주노동연맹	전남 나주군	1926. 2. 1
전조선신문배달부조합총연맹	서울	1926. 2. 11
익산노동연맹	전북 익산군	1926. 2. 28
광주노동연맹	전남 광주	1926. 2. 28
북청노동연합회	함남 북청	1926. 3. 1
영흥노동동맹	함남 영흥	1926. 3. 16
조선철공총동맹	서울	1926. 3. 21
전조선인쇄직공조합총동맹	서울	1926. 3. 21
전북노동연맹	전북 군산	1926. 4. 4
함북노동연맹	함북 청진	1926. 4. 4
해주노동연맹	황해도 해주	1926. 4. 6
함평노동조합연합회	전남 함평군	1926. 4. 25
보성노동연맹	전남 보성군	1926. 4. 27
구례노동연합회	전남 구례군	1926. 4. 27
평양노동친목회	평양 이문리	1926. 12. 3
함흥노동연맹	함남 함흥	1927. 3. 6
전주노동연맹	전북 전주	1927. 8. 3
마산노동연맹	경남 마산	1927. 8. 20
담양노동연맹	전남 담양	1927. 12. 5
진주노동연맹	경남 진주	1928. 2. 21
조선노동총동맹 평양연맹	평양	1928. 4. 29

자료 :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p.143.

로 사용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총파업 또는 데모 등으로 근로자를 선동하여 해방후 혼란하던 사회 및 경제질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信託統治의 찬성을 내건 北韓과 南韓의 左翼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행동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 상황속에서 1946년 3월 民主·民族진영이 중심이 된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大韓勞總)이 職場別(企業別)組織原理에 의해 결성되었다.

대한노총의 주된 활동은 조직확장을 통해 全評을 압도하는데 있었으며 그 세력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대한노총은 민주진영과 함께 신탁통치의 반대노선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건국을 방해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처음 기반이 약했던 대한노총은 우익진영정치단체의 강력한 후원으로 全評을 타도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면에서 볼 때 국가건설시기의 노동조합주의는 產業別 組織原理에 기초를 둔 全評이나 企業別 조직원리에 기초를 둔 大韓勞總을 막론하고 政治的 組合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5]

이 시기의 勞動立法은 몇 건이 軍政法令으로 공포되었으나 모두 노동보호법에 국한되었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2) 政府수립 후의 勞組組織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단독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26일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은 제3회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大韓勞動總聯盟으로 개정하였다.

전국중앙조직으로서 大韓勞總은 빈번한 파벌싸움을 겪어왔는데 특히 1959년 10월에는 대한노총에 비판적인 全國勞動聯合協議會(全國勞協)가 결성되어 1960년 11월 한국노동총연맹 한노총에 비판적인 全國勞動聯合協議會(全國勞協)가 결성되어 1960년 11월 한국노동총연맹으로 통합될 때까

---

5) 金聖珍, 韓國의 勞動組合, 韓國 勞動問題硏究院, 1979, p.61

지 대한노총과 병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동입법이 행해진 것은 1953년 3월과 5월이다. 1953년 3월 8일 勞動組合法, 勞動爭議 調整法 그리고 勞動 委員會法이 공포되었으며 또 1953년 5월 10일에는 勤勞基準法이 공포되었다. 이 노동입법중의 노동조합법의 시행으로 각급 노동조합들은 해체되고 새로운 노동조합법에 의거 組織을 재편성하게 되었고, 大韓勞總도 同法에 의해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勞動組合法은 自由設立主義 원칙하에 노동조합의 組織形態에 아무런 規定을 두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對內 民主性과 對外 自主性의 확보와 그리고 協約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勞動組合 組織形態도 企業別 내지 職場別 組織형태였으며 政治的 組合主義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조합운동은 분열과 분규가 계속되었다.

3) 5 · 16 이후의 勞組組織

1961년 5 · 16 혁명직후인 同年 5월 22일 혁명정부의 布告令 제6호로 모든 정당 · 사회단체가 해산됨에 따라 노동조합도 해체되었다. 그러던 중 同年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공포로 해체된지 약 70일만에 노동조합의 재조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용하면서 혁명정부는 재조직된 노동조합의 組織形態는 産業別組織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사부장관의 담화를 통해 밝혔다.[6]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企業別 組織形態로 인해 수많은 群小勞動聯合이 난립하여 조합상호간의 반목, 마찰, 분파작용 등의 폐단이 많았던 과거의 경험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리하여 61년 9월말로 전국중앙조직으로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이 재건되었고 철도, 섬유, 전력 등 14개 産業別 勞動組合이 결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63년 4월과 12월 民政移讓을 앞두고 두차례에 걸쳐 노동법개정을 보게 되었다. 이는 1953년 노동관계법들이 제정된지 10년만의 개정이었다. 勞動組合法의 주요개정골자는

---

6) 보사부장관 담화, 1961. 8. 14.

① 제2노조의 출현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②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③ 산업별 조합체제를 지향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다.

이처럼 6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從的인 형태(職場別, 企業別)에서 橫的인 형태(産業別)로 전환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가 조국근대화를 위한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앞세운 시대였다고 한다면 70년대에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 정치적 긴장관계와 국내정국의 불안정을 이유로 한 국가안보우선주의가 선언된 시대였다.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의 모든 헌법적 기능을 정지시키고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 「10월 유신」이 선언되었고 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노동법개정이 1973년 3월과 1974년 12월 그리고 1975년 4월과 5월에 행해졌다.

1973년 3월의 노동조합법개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 勞動團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7조가 개정되어 노동조합 支部 또는 分會로 하여금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서 지금까지 勞動組合法이 産別노조체제를 지향하고 있던 태도를 바꾸어 企業別 또는 事業場別 組織형태로 전환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나타났다.[7] 이처럼 勞組조직형태의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실제에 있어 노동의 조직이 사업장별로 형성되고 단체협약도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어 왔다는데 있겠으나, 이 밖에 단체행동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 5, 6 공화국의 勞組組織

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5共和國 헌법이 同年 10月 25日에 공포되었다.

80년 12월 30일 國家保衛立法會議의 의결을 거쳐 同年 12月 3日 근로기

---

7) 韓國 經營者總協會, 勞動經濟 40年史, 1989. p.85

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각각 개정되는 한편, 노사협의회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80년의 노동법개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로 강제하는 明文의 規定을 두었다(제13조).

87년 6월 29일의 이른바 민주화 선언으로 인하여 노사관계제도의 개혁과 임금을 포함한 각종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노동관계법규 및 기타관계법규가 전혀 무시되는 가운데 노동쟁의는 과격한 양상을 띠었다.

그리하여 각계각층에서 노동법개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87년 11월 28일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이 87년 12월 31일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다.

87년의 노동조합법개정에서는 企業別 單位勞動組合의 설립만을 허용하였던 규정(組織類型強制規定)을 삭제하여 勞動組合의 조직유형과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자율화함으로써 헌법상의 團結權의 내용에 합치하는 勞動組合의 설립과 조직을 보장하였다(법률 13조).

따라서 현행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地域別 또는 産業別 노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노조의 조직유형은 노동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었다.

Ⅲ. 現況과 當面課題

1. 現在의 勞組組織 形態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3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企業別·地域別·職種別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업별 연맹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산업별 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연합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산업별 단체로서 노동부의 신고필증을 받은 法的

조직으로는 1993년말 현재 전력, 체신의 2개 전국 규모의 産業別 單位勞動組合과 철도, 섬유, 광산, 외기, 통신, 항운, 선언, 금융, 담배인삼, 화학, 금

〈표 4〉 산별 · 성별 조합원수 및 노동조합수(1993년말)

(단위 : 개, 명)

	노 동 조합수	노동조합원수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7,147	1,667,373	1,275,859	391,514
한국노총	1	–	–	–
철 도	4	31,622	30,271	1,351
섬 유	390	96,263	37,471	58,792
광 산	54	18,489	17,559	930
전 력	1	25,784	23,126	2,658
외 기	68	27,095	17,762	9,333
통 신	26	57,600	43,643	13,957
항 운	70	36,169	37,400	1,769
선 원	68	60,792	60,498	294
금 융	193	143,933	88,033	55,900
담배인삼	8	12,020	10,040	1,980
화 학	962	167,023	124,158	42,865
금 속	1,233	259,907	291,502	68,405
연 합	1,169	171,409	132,438	38,971
출 판	150	10,697	7,838	2,859
자 동 차	744	99,566	97,475	2,091
관 광	165	23,745	13,558	10,187
체 신	3	25,627	19,731	5,896
보 험	55	20,554	11,687	8,867
택 시	1,229	122,768	122,072	696
고 무	39	28,884	11,210	17,674
사무금융	155	43,543	26,984	16,559
언 론	65	11,710	10,320	1,390
병 원	128	29,927	8,074	21,853
대 학	67	9,080	6,403	2,677
건 설	33	15,582	14,596	986
전문기술	70	14,584	12,010	2,754

자료 : 노동부

속, 연합, 출판, 자동차, 관광, 보험, 택시, 고무, 사무금융, 언론, 병원, 건설, 대학, 전문기술 등 23개 산업별 연맹이 있다. 따라서 法的으로 인정된 제도권 산업별 노조는 총 26개이다. 이 중 사무금융, 언론, 병원, 건설, 대학, 전문기술 등 6개 산업별 연맹은 노총에 가맹치 않고 있으며 노총에 가맹한 산별노조는 20개이다.

따라서 93년말 현재 산업별 연맹은 총 26개, 單位勞組는 7,120개이며 노동조합원수는 1,667,373명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조직율은 15.6%(노동부 집계방식 : 조합원수÷(상시고+일용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100)이다.

이상의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합한 수치이며 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들은 통계숫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2. 當面課題와 展望

1987년 6·29이후 상당수의 신규노조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産業別聯盟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신규노조는 6·29이후 폭발적인 신규조직의 확대와 노사분규에 대해 기존 勞總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연맹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1987년~89년에 결성되어 韓國勞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조직으로는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병원노련, 대학노련, 건설노련 등과 전문기술노련(이상 6개는 노동부의 설립신고증을 갖고 있음)과 시설관리노협, 민주출판노협, 전국대학강사협의회, 화물운송노련 등의 임의 노동단체이다.

또한 法外 임의단체로는 地域別·業種別 協議會가 있다. 지역별, 업종별 협의회는 마산·창원, 서울·인천, 성남, 경기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전주, 광주의 지역 등에 설립되었다.

1990년초 이들 지역별·업종별 협의회를 중심으로 全國勞動聯合協議會(全勞協)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全勞協이 조직된 배경을 보면 전노협 창립준비위원회 결성문에

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전국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노총은 신규노조의 결성에 인준증이나 발급하고 결성사후에 형식적인 교육활동만 하게 됨으로 명실상부한 운동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노동자 대중의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더우기 노동관계법투쟁과정에서 노총은 複數勞組 금지규정의 계속 존재를 내세워 노총 이외의 상급단체설립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이들은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 新生勞組들로 조직된 자주적인 지역별·업종별 연대조직들은 상급단체의 구성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목표를 실현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8]

또한 全勞協은 장래의 조직으로 産業別 組織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전노협은 지금의 기업별 조직형태에 기반한 협의체이지만 산업별 전국단일노조와 전국적 중앙조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3년 6월 1일 全勞協, 業種別·地域別 協議會, 現總聯 등이 참여한 가운데 全國勞動組合代表者會議(全勞代)가 발족되었다.

그 이듬해인 1994년 11월 13일에는 全勞代가 민주노총추진 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중앙단체의 변화 조짐과 무관하지 않게 지역·업종 차원의 이합집산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기술노련 산하의 이공계연구소 노동조합들이 해산절차를 거친 후 과학기술 노동조합이라는 단일노조로 출범(1994년 9월 5일 노동부의 신고필증교부)하였다. 기업조직체계로부터 업종·지역·산별·조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노총, 비노총계를 망라한 노동계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오던 주요 목표였지만 1987년 이후 과기노조와 같이 조직전환을 이룬 예는 없었다. 현재의 법체계와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이같은 조직적 전환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 지배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보험 사업장이나 농협조직들이 점차 지역을 단위로 한 통합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

---

8) 한국 기독교 산업개발원, 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 정암사, 1990. p.135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4년 3월 26일의 농협전남지역 노조와 4월 21일 경남지역 노조가 출범한 것이나 12월 15일 노동부의 신고필증을 받아 11개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강원, 서울, 대전, 광주지역 제외)이 단일 노동조합으로 출범한 것은 업종·지역단위의 노동조합조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직 연합의 강도는 약하지만 1994년 초에 조선노협이 출범하였고 기아그룹노동조합협의회가 새로 결성되었다. 또한 자동차업종노동조합협의회 구성을 위한 시도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자동차·조선업종을 제외한 금속업종을 묶는 전국금속 일반 노동조합협의회가 11월에 결성되는 등 다양한 차원의 노동조합연합체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도 94년 11월 초에 출범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이에 속한 노동조합의 성향이 노총계와 비노총계 그리고 중간적인 조직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아직 노총·비노총간의 조직경쟁에서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연대조직들이 법적인 제약과 더불어 내부적 결속력의 취약성 때문에 아직 노동조합연맹체로 까지 발전하거나 소속조직을 규율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사업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전통에 의해서도 이들 연합체들의 공동연대 사업이 조만간에 원할해 지리라고 예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같은 연합체들이 다양하게 결성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조직의 2원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과 노동조합간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9]

노총산하조직에서도 약간의 변화움직임이 일고 있다. 섬유노련내 화섬분회의 조직이탈이 구체화되었고 금융노련이 규약을 변경하여 종래 한국노총으로 명시되어 있던 상급단체를 삭제하였으며 보험노련이 노총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비노총계열의 사무금융노련과 통합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등도 1994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노총

9) 한국노동연구원, 勞動動向分析, 1994년 4/4분기, p.103

계가 기업별노조로부터 노조조직형태를 업종·지역·산별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은 민주건설 노총위원회가 법적인 지위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이 1995년중에 중앙조직으로 탈바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업종별·지역별·재벌그룹 노조연합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하조직을 바탕으로 제2노총을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직형태는 궁극적으로 보다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종·산별차원에서 다각적인 조직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노동계를 전망해 보면 첫째로 새로운 聯盟과 協議會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차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單位組合이나 聯合團體의 복수설립이 허용된다면 신규설립은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설사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률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연맹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로, 韓國勞總이나 제2노총을 추진하는 축이 모두 노동조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企業別 組合체제를 産業別 組織체제로 전환하려 할 것이나 가까운 장래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Ⅳ. 結　　論

1876년 강화조약에 의해 한국의 각 항구가 개항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된 勞組組織 形態는 職場別 組合(企業別 組合)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 한국에는 아직 소규모의 職業別, 職場(企業別) 또는 地域別 地方組合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직이 생겼던 것은 1920년대이다. 朝鮮 勞動共濟會, 勞動大會, 朝鮮勞動聯盟會, 朝鮮勞農總同盟, 朝鮮勞動總同盟 등이 代表的 노동조직이었다.

이러한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직들도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식민지정부의 각종 탄압으로 소멸하였다. 해방후에는 좌우익으로 나누인 전국 규모

노조조직이 탄생하였으나 좌익노조인 全評은 소멸되었다. 그 후에 당시의 정권에 의해 産業別 勞組, 企業別 勞組로 조직강제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노동법상 어떠한 노조조직형태를 취하던 사실상의 기업별 勞組組織형태는 계속 존재하여 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組織類型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을 産別로 할 것인가 企業別로 할 것인가 또는 職種別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결권의 향유자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특정조직유형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의 노조조직 유형강제가 없고 비노총세력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산별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産業別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西歐의 橫斷的 노동시장과는 다른 從斷的 노동시장구조를 가진 日本과 우리나라에서는 産業別 보다는 企業別 勞組組織 형태가 어울린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經營者는 經營家族主義 경영의식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기업에의 귀속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하게 갖는 기업문화풍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오랜동안 단체교섭이 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單位노동조합의 교섭능력도 충분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單位노조에서 상급단체에 쉽사리 교섭권을 위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미국, 카나다 등 서구에서도 종래의 산별체제의 단체교섭구조가 하부레벨로 이양되거나 하부레벨로의 다단계적 교섭체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현재의 企業別 組織 중심의 단위노조, 이들 單位勞組들이 가맹한 상급단체인 産業別 聯合, 그리고 産業別 聯盟이 가입한 中央組織의 형태의 3층구조의 노조조직형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별 중심체제하에서 전국규모의 노조조직인 勞總과 제2노총을 목표로 하는 非노총계의 조직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金聖珍, 韓國의 勞動組合, 韓國 勞動問題硏究院, 1979.
2. 김명시, 전노협건설과 노동조합운동의 현단계, 백산서당, 1989.
3. 金潤煥, 韓國勞動運動史, 靑史, 1982.
4. 金延輪, 勞動組合의 組織現況資料集, 한국노동연구원, 1993.
5. 金亨培, 勞動法, 博英社, 1989.
6. 우리 노동문제 연구원,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백산서당, 1989.
7. 韓國 經營者總協會, 勞動經濟 40年史, 1981.
8. 韓國 經營者總協會, 新勞動運動, 1989.
9. 한국 기독교 산업개발연구원, 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 정암문화사, 1990.
10. 韓國 勞動硏究院, 韓國의 勞動組合(Ⅰ), 1989.
11. 한국 노동연구원, 94 分期別 勞動動向分析, 한국 노동연구원, 1995.
12.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노동조합운동사, 1979.

地中海 中世 商業史 考察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金 聖 壽*

目 次

Ⅰ. 서 론
Ⅱ. 시대적 특성과 그 배경
1. 종세를 유지한 정신적 지주
2. 국왕권과 교황권의 충돌문제
3. 십자군전쟁과 봉건사회의 붕괴 및 상업의 융성
Ⅲ. 중세도시의 상업활동과 그 특징
1. 중세지중해의 상업도시와 무역
2. 이태리상인의 동방무역루우트
3. 길드 조직
4. 중세 지중해 상인들의 부기사용
5. 장원경제의 쇠퇴
Ⅳ. 중세 상업의 부활과 상인의 지위
1. 상인과 수공업자의 지위상승
2. 장인·직인·도제의 우수성
3. 중세 상업도시의 모습
Ⅴ. 결 론

Ⅰ. 서 론

본 논문은 중세 지중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상업활동과 발전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1세기를 접어들면서 지중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업발전은 유럽사회를 전반적인 안정세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9세기에 있었던 노르만족과 이슬람교도들의 침입도 점차로 약해지고 장원제도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가 나름대로 틀이 잡혀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봉건사회가 안정을 가져오자 농업 생산력이 커지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도처에서 개척과 개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남는 농산물의 처리를 위해 지방단위의 시장이 생겨나고

* 慶熙大學校 經營學科 敎授

도시가 교역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1세기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전체에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중세의 새로운 활기는 11세기말 십자군 운동으로 나타났다. 십자군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았던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만한 힘이 생겼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비록 성지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십자군으로 말미암아 원거리 통상을 비롯한 활발한 상업활동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이태리를 중심으로한 중세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제 중세도시의 상인은 활발해진 상공업활동의 중심지로서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하여 주변의 영주에게 예속되는 농촌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생활영역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차차 시민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만들어 내는 중세 상업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세기 중 11세기에서부터 14세기까지 전개되는 지중해 도시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상업 및 무역 등 상업사의 배경 등을 고찰해 보고 유럽의 봉건사회의 쇠퇴와 중세의 상업 및 무역루우트, Guild조직, 복식부기의 생성, 당시 지중해 도시의 경제생활 모습과 변화 등 중세도시의 상업활동의 실상 등을 분석하여 중세 지중해 상업사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 21세기 문턱에선 오늘 중세의 상업과 무역활동을 평가하여, 내일의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상업 및 무역사의 방향을 찾아 보자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

Ⅱ. 시대적 특성과 그 배경

1. 중세를 유지한 정신적 지주

중세를 유지하는 정신적인 지주는 종교 즉 카톨릭교였다. 카톨릭교는 9세기 경에 독일과 영국, 11세기 경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비롯한 북유럽에까지 전파되어 갔다. 이러는 동안 각 지방의 주교와 수도원은 왕과 귀족들

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광대한 영지를 지배하는 경제적 힘을 가진 봉건영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 교회의 영지가 서유럽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특히 교황청은 막대한 교황령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기증과 로마시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 등에 의하여 다른 세속의 국왕 및 제후들을 능가하는 유럽 굴지의 재산가가 되었다. 또한 로마제국 이래의 정통을 계승 발전시켜 고도의 관료기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분열되어 있는 국왕이나 제후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교회의 최대무기는 파문이었다. 이는 카톨릭 교회의 명령을 어기면 신의 나라 즉, 천당에 갈 수 없고 교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세인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교회는 신의 대리자로서 봉건제후들의 전쟁에도 간섭하였고 모든 세속적인 일에도 교회의 재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강대해지자 지상의 최고 권력자인 국왕과 우월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져 11세기 이후 약 2세기에 걸쳐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 교회의 영지에 대한 세금징수와 재판권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황제나 국왕은 성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격이 형편없는 자들도 자신의 측근이면 성직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는 칙령을 내려 세속 군주들의 성직자 임명권을 박탈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황과 세속군주간의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2. 왕권과 교황권의 충돌문제

〈사 례〉 헨리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의 충돌

(1)

본래 중세 초기에 있어서는 국왕과 로마 교황간에 서로 도움을 주는 협

조관계가 맺어져 왔다. 서로의 지배영역을 인정하면서 세속생활과 정신생활을 각기 다스려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1세기 후반에 이르면 국왕권과 교황권 사이에 성직자 임명권 투쟁이란 일대 충돌이 벌어진다. 그 발단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1075년 초에 이제껏 국왕 및 제후들의 권한이던 성직자 임명권을 부인하고 교황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데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헨리) 4세는 왕권도 역시 신이 직접 내린 것이므로 교황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교황은 다시 그 해 12월에 황제에게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조금도 굽히는 기색이 없이 이듬해인 1076년 1월 보름스에서 제국국회를 소집하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킨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사태는 극도로 악화되면서 교황 또한 하인리히 4세에게 파문을 선고하여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하인리히 황제와는 접촉을 못하게 하고 신하들조차도 더이상 황제에게 충성을 받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황제를 지지하던 제후들과 성직자들이 황제에게 등을 돌리고, 파문이 취소되지 않으면 1077년 2월에 교황이 주최하는 아우그스부르크회의에서 황제인 하인리히를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소식을 들은 하인리히 4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까지 자신을 지지해 주던 제후들과 성직자들의 배신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더 이상 교황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잃은 하인리히 4세는 재빨리 교황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서 그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판단한 하인리히 4세는 교황을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왕비와 왕자 그리고 몇몇 신하들을 거느린 채로 추운 겨울에 라인강을 건너고 알프스를 넘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서 라인강은 말할 것도 없고 알프스 남쪽의 포강까지도 얼어붙는 지경이었다.

이때 교황은 토스카나백작의 부인인 마틸다의 카놋사성에서 쉬고 있었다. 숱한 고생을 하며 도착한 하인리히 4세가 몇 번씩이나 교황을 만나려고 간청하였으나 교황은 막무가내로 거절만 했다. 교황은 하인리히 황제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 증거를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하인리히 황제는 카놋사의 성문 앞에서 모자도 없이 맨발로 얇은 겉옷만 걸친 채 3일 동안을 꼬박 눈속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마침내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하인리히에게 접견을 허락하였는 데 하인리히와 독일 제후들과의 분쟁은 교황의 재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비로소 파문을 취소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카놋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었는 데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하여 하소연을 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중세에 있어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 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카놋사의 굴욕」은 분명히 교황권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하인리히 4세는 일시적인 이러한 굴욕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파문에서 사면된 그는 뼈에 사무친 원한을 가슴속에 품은 채 귀국해서 왕권의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어 갈 즈음, 교황과의 대립 당시 하인리히 4세를 배반하였던 제후들이 그에 대항하여 루돌프를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이때는 하인리히 4세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오히려 대항하는 제후들 쪽이 궁지에 몰려 있었다.

(3)

독일의 이와 같은 혼란을 방관할 수 없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80년 하인리히 4세를 다시 파문에 처하고 제후들이 옹립한 루돌프를 황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변해 있었다. 하인리히가 이미 교회세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교황의 그런 선언이 독일에서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하인리히 4세는 브릭센에서 그를 지지하는 독일의 성직자들과 북부 이탈리아의 성직자들을 소집하여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에 대해 폐위와 파문을 결의하고 클레멘스 3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

하였다.

"이번 기회야말로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두고 봐라. 저번에 당한 모욕의 몇 십배로 갚아 주마!"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던 하인리히는 먼저 반대파 제후들로부터 격파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즉시 대군을 이끌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는 이탈리아에 원정하여 로마를 점령하는 동시에 그레고리우스를 추방하고 클레멘스 3세를 교황에 앉혔다.

(4)

그러나 아직도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황제와 교황의 대립에서 오는 혼란은 더욱 심해져 갔다. 결국 당사자들인 하인리히 4세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죽고 난 후에야 하인리히 5세와 교황 칼릭스투스 2세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을 맺었다. 즉 싸움이 시작이 되었던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의 권리로 하고 대신에 성직자에게 내리는 토지는 국왕의 권한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왕권과 교황권의 충돌이 가끔 일어났지만 열광적인 십자군의 분위기에 휩쓸려 대세는 교황쪽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국왕권과 교황권의 충돌문제와 이후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중세 지중해 봉건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3. 십자군 전쟁과 봉건사회의 붕괴 및 상업의 융성

1) 십자군과 상업도시의 협력

서유럽의 중세를 2시기로 나눈다고 하면 11세기 말의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 그 경계가 될 것이다. 11세기경 서유럽의 많은 크리스트 교도가 성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다녔다. 그런데 그 무렵 동방에서는 이슬람 교도인 셀주크 터키인의 세력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순례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소아시아령까지도 공격했으므로 비잔틴 황제는 로마 교황을 통하여 서유럽의 군주와 제후들에

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교황 우르반(우르바누스) 2세는 종교 회의를 열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였다. 각국의 제후나 기사는 신앙심에다가 외국에 진출하려는 욕망이 겹쳐서 이 원정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도 무역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 원정에 협력하게 되었다.

2) 십자군의 원정과 베네치아 상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원정군은 「십자군」이라고 불리었다. 그것은 원정군의 깃발에 십자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제1차 십자군(1096~99)원정은 프랑스와 남이탈리아의 봉건 귀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들은 먼 길을 고생을 거듭한 끝에 이슬람 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스도의 묘에 예배를 드렸다. 십자군은 팔레스티나에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서유럽풍의 봉건 국가를 세웠다.

또한 이탈리아의 해양도시는 원정군에 배를 빌려준 대가로 이 지방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성지는 얼마 후 이슬람 교도에게 빼앗겼다. 십자군의 원정은 2세기 반 동안에 7차나 거듭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2회 뿐이었다. 원정도 회가 거듭될수록 종교적인 순수성은 없어지고 경제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제4차 십자군(1202~04) 때 특히 심했었다. 베네치아(베니스)상인들의 농간에 빠진 십자군이 베네치아와 무역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해서 한때나마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이다. 분노한 로마 교황은 십자군의 전사들을 파문시켜 버렸다.

3) 십자군의 영향과 상업의 융성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일시적으로 밖에 탈환하지 못했으므로 그 임무는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십자군의 원정으로 유럽의 상업과 무역은 융성해지고 도시는 발달되었다. 또한 오랜 기간의 원정으로 봉건 귀족의 힘이 약화됨으로써 봉건 제도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로마 교황의

권위도 십자군의 전성기에는 빛나고 있었지만, 십자군의 원정이 실패로 끝나자 교황의 위신도 실추되었다.

그 밖에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문자가 서유럽으로 들어와서 유럽 문화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Ⅲ. 중세도시의 상업활동과 그 특징

1. 중세 지중해의 상업도시와 무역

고대에 융성했던 상업과 도시가 로마 제국의 쇠망, 민족 대이동의 혼란 등을 겪는 동안에 쇠퇴해져서, 중세 전반기에서는 자급 자족 경제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일단 안정되게 되자 생산력이 높아져 생산물의 교환이 활발하게 되었고, 수공업자와 상인이 주로 사는 도시가 생겨났다. 상업은 처음에는 도시와 그 부근의 농촌 사이에서 행하여졌으나, 차츰 발전해서 먼 지방 사이에서도 왕성하게 행하여지게 되었다.

특히 동방 무역이 번창하게 되었는 데, 이것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제노아·피렌체 등 도시의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등 동방의 도시에서 후추 등의 향신료를 아리비아인으로부터 사들여 이를 유럽 각지로 가져가 파는 것이었다.

도시는 교통의 요지에 새로 생기기도 하고, 큰 교회나 영주의 성이 있는 곳이라든가 고대로부터 도시가 있던 곳 등에서 발달하였다.

도시는 처음에는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차츰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매수하였다.

자치권은 중세 서유럽 도시의 특색인데, 그 가운데에서 서유럽의 자주적인 시민 정신이 싹트고 있었다.

많은 도시가 공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도시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독일의 여러 도시가 결성한 「한자 동맹」은 북유럽의 각지에서 활동하였다.

이처럼 19세기 이후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무역은 아말피·베니치아를

중심으로 부활하였는데 이와 함께 피사 · 제노아 · 피렌체 등의 도시도 가세하여 크게 발전하게 되어 소위 중세 유럽에 있어서의 상업적 번영의 선구적 존재가 되었다. 이들 도시의 무역은 처음부터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유럽과 동방제국과의 중개적 원격지 무역이었다. 그러나 이 동방무역은 11세기에서 13세기 후반에 걸쳐 재편성된 십자군의 영향으로 결정적인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십자군의 예기치 않는 성과로써 이태리 도시에 무역적 지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무역의 번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십자군을 비롯하여 각지에 소집단으로 할거하고 있던 유럽 사회는 점차 구곡을 벗어나면서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태리제도시는 재빨리 상실된 주권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아말피를 비롯하여 살레르노 · 나폴리 · 피사 등이 잇달아 부흥하였고 13세기 말에는 제노아 · 베네치아가 번영하여 지중해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14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베네치아가 제노아를 능가하여 지중해의 지배권을 장악하였고 그 후 Vasco da Gama의 동인도신항로를 발견할 때까지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2. 이태리 상인의 동방무역 루우트

이태리 상인의 동방무역은 대체로 세 가지 루우트에 의해 서유럽 각지에 수입되었으나 시대에 따라 성쇠를 달리하고 있었다.

(1) 12~13세기까지 지중해 지역과 북해 · 발트해 방면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은 해적의 출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주로 육로를 택하게 되었다. 이 육로의 요충지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정기시(세시)이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축제일 전후에 각국 상인이 각종 상품을 반입하여 성시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서도 13세기에 번영한 동프랑스의 Champagne 정기시는 가장 유명하며 세계적인 규모로서 거래상품도 다종다양하며 국제적 무역 도시로 발전하였다. 지중해 방면의 상인들은 옛부터 향료와 귀금속 그리고 고급 직물 등을 반입하고 있었으나 북방도시의 상인들은 식료품과 일상 생활품을 반입하여 서로 교환하였다. 물론 플랑드르 상인들은 이밖에 모직물과 아마포 레이스 등도 취급하고 있었고 식료품 가운데는 남프랑스 방면에

서 생산된 포도주와 소금, 발트해의 어류 등이다. 이밖에 목재와 모피·곡물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품목에 이르고 있었으나 주로 생활 필수품인 대량상품(Bulk Cargo)을 수입하고 있었다.

(2) 14세기에 Champagne시가 프랑스에 병합됨에 따라 무역 루우트는 이태리에서 이란을 거쳐 다뉴브강에 이르는 남독일 방면에서 북해연안에 걸쳐 번영되었다. 이 루우트는 한자 동맹의 독일 상인이 크게 활약한 무대이다. 무역 성격을 볼 때 북방의 Bulk(대량)상품과 이태리 상인의 사치품 및 향료와의 교환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3) 북유럽 방면에서 12세기 중엽에 번영하기 시작하여 점차 무역도시로서의 연대성을 강화한 소위 한자 도시 상인들과 영국·프랑스 상인에 의한 연안무역 루우트이다. 이 루우트는 14세기에 최성기를 맞이하여 제노아와 베네치아(Venice)의 Galley선박도 정기적으로 지브로올터 해협(Str. of Gibraltar)를 넘어 북상하게 되었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Brügge로서 14세기 서유럽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대륙루우트에 의한 무역은 큰 타격을 받아 무역중심이 다시 해상루우트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방무역의 경우 동양이 주로 상품을 공급하였는데 유럽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다량의 귀금속 수출은 없었다. 이들 동방물산의 대가가 된 상품은 다양하였다. 주요상품으로는 금·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과 동이었다. 이것은 세계화로서 남독일 광산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었다. 이들 광산업은 그 후 상업혁명이 진전과 함께 이미 13세기에 지중해 동방무역의 생산적 기초로서 착실히 발전해 갔다. 이 밖에 귀금속에 이어 모직물과 마직물·피혁·곡물·노예·무기·진주 등이 동방으로 수출되었다.

3. 길드(Guild)조직

이 무렵의 공업은 기계가 없었으므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수공업이었다. 도시에서는 상인이나 수공업자가, 방재조업자, 푸주한, 혹은 모직물

업자 등 각 동업자끼리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고 있었다.

길드에서 일하는 것은 사장 · 직인 · 도제이었다. 사장은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밑에는 견습 기간 중의 도제와 도제의 단계를 지나 사장을 도와 일하는 직인이 있었다. 길드에서는 조합원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노동 시간 · 임금 · 가격 · 작업장의 인원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길드는 원래는 종업원이 서로 협력하여 산업을 조직화하여 그 질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단계가 되자 길드의 자유 경쟁 금지의 원칙은 산업 발전의 방해가 되었다.

4. 중세 지중해 상인들의 부기 사용

Fritz Rörig에 따르면 13세기부터 상인의 경영에 기장(부기)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인들은 대개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중세의 부기는 단순한 것으로서 때로는 상거래에 가계지출비를 삽입하였는가 하면 신용거래만을 기입하기도 하였다. 그 후 특별계정이 생겨 어떤 계정항목을 다른 계정으로 바꾸어 쓴 「차변」·「대변」의 관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4세기의 제노아와 15세기의 베네치아에서는 모든 항목을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이중으로 기장하는 복식부기의 기초가 되어 이것을 베네치아식 방법이라 하여 피렌체까지 보급 · 확대되었다. 이처럼 차변란과 대변란을 대치시킨 것은 베네치아가 최초이다.

복식부기의 대성자는 프랑시스코 회계사 「루카 파쵸리」라고 한다. 그는 「부기 · 기하 · 비 및 비례전서(1490)」 제9집 제11논문 「계산 · 기록요론」에서 상인의 세 가지 기본기장(일기장 · 분개장 · 원장), 베네치아식 방법 및 결산에 기술하고 있다(1543년 역서가 Flandre에서 출판). 이처럼 복식부기는 Fugger가의 장부주임 「슈발츠」가 1511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거래를 종이 조각에 기입하여 벽에 붙였거나 차변과 대변의 구별이 없는 단순한 기장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참고로 Fugger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Fugger가의 조부는 1367년 Augsburg직포공 Zunft에 가입하였고, 부친(1412~69)은 그 대표자가 되어 Venezia와의 원격지간무역을 계속하였다. 1494년 형제는 6년 계약의 합명회사를 창설하여 1502년 계약갱신, 두 사람이 형이 죽은 1511년 가결산하여 일인경영이 되었다. 그 후 1527, 36, 46, 77년에 결산을 실시하였는 데 특히 1527년 결산은 당시의 대상인조직과 경영내용을 알리는 경영사의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다.

5. 장원경제의 쇠퇴

도시가 생기고 상공업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장원의 자급자족경제가 점차 무너져 갔다.

영주도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했으므로 농민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혹은 부역이나 생산물 대신에 돈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의 대유행으로 유럽의 인구 약 3분의 1이 죽었다. 또한 많은 농노가 장원에서 도시로 달아났다. 이로 인하여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었으므로, 영주는 영지의 노동력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농민에 대한 대우를 좋게 하였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농노가 차츰 자유로운 농민으로 되어 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주가 전쟁의 비용이나 경제의 변화로 인한 지출의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점차 곤경에 빠지게 되어 다시 지대를 무겁게 하거나 농민에 대한 속박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은 봉기하여 영주에게 대항하였다. 14~15세기에는 「농민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영세한 영주 가운데서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 버린 영주도 있었다.

Ⅳ. 중세 상업의 부활과 상인의 지위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안정되면서 활발한 상업활동이 꽃피기 시작하였다. 이태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무역은 물론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직물 무역이 점차로 내륙에 전파되어 전 유럽에 경제적 활기가 감돌게 되었다. 중세도시는 바로 이 상업의 부흥(Revival of Commerce)흐름을 타고 상공업의 중심지로서 생겨났다.

1. 상인과 수공업자의 지위상승

대체로 중세 초기의 교회도시나 성곽도시는 자연적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일시적인 주거지였으나 점차로 상인들의 생활터전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상인들의 거주지는 대개 성곽 외부에 건설되었으나 점점 상업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력이 커지자 상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 거주지 주변에 새로운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어로 성벽이라는 뜻의 「부르그」는 상공업 중심의 중세도시를 뜻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마르부르크(Marburg),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등이 이러한 중세적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과 더불어 도시주민의 핵심을 이룬 것은 수공업자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영주나 성직자들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이었거나 농촌출신의 막노동꾼이었는데 상업이 활발해지자 상품의 선적과 수송, 선박의 닻장 그리고 수레, 상자의 제조 등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도시인구가 점차 증가하자 새로이 외부로부터 제빵업자, 양조업자, 대장간, 푸줏간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도시들은 아직도 귀족이나 주교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는 그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즉 자유와 자치권을 원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돈을 주고 자치권

을 사거나 힘을 밀어붙여 지위를 상승시켰다. 그리하여 12세기 중엽까지는 대부분의 도시가 자유롭게 획득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도시의 상인은 시민으로서 자유민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중세도시는 영주나 교회의 재판권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은 후에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시민군 등을 조직하였으며 도시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을 만들어 지켰다. 시민들은 저마다 자유로운 도시의 혜택을 누리고 수입에 따라 평등하게 시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당시 도시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은 오늘날의 국가에 느끼는 애국심에 비할만한 것이었다.

중세도시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점점 활동의 규모가 커지자 앞에서도 지적한 길드(Guild)라는 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상인조합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상품의 수송도중 난파를 당하거나 해적을 만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를 보상해 주고 조합원이 죽었을 때는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살펴 주기도 하였다. 이들의 세력은 상당히 강해서 영주와의 협상을 맡는 등 중세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을 획득하는 데 가장 앞장섰으며, 도시의 행정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상인조합보다는 뒤늦게 조직된 수공업자조합은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산의 독점권을 가지고 생산과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러한 상인과 수공자의 활동은 상업혁명시대를 가져오는 기본적 요인이 되었다.

2. 장인 · 직인 · 도제의 우수성

당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인 · 직인 · 도제라는 특이한 직분으로 구별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우수하였다.

장인은 그 직종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를 뜻하며 한두 명의 직인과 도제를 거느렸다. 또한 장인만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직인은 아직 장인 밑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기능공으로서 약간의 급료를 받고 일하였는 데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을 길드에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면 장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도 떳떳한 한 사람의 수공업자로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 장인과 직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스승과 수제자의 관계였으므로 장인의 딸과 독립하는 직인이 많았다.

도제는 장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처음에는 심부름을 하다가 조금씩 기술을 익힌다. 이렇게 약 7년이 지나면 직인이 되어 본격적인 기술 연마를 한다. 결국 도제에서 장인이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으니 당시 수공업자 길드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대단히 우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공업자 길드는 규칙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작업시간을 다른 장인보다 연장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려는 부당한 경쟁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이나 작업장지정, 제품가격 등을 통제하여 오늘날의 자유 경쟁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점차 부를 축적하게 되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여 귀족과 성직자 중심의 중세의 신분질서에 도전하게 되었다.

3. 중세 상업도시의 모습

그렇다면 중세 상업도시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먼저 중세 상업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전쟁과 약탈이 자주 일어났으므로 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문은 해뜰 무렵에 열리고 해질녘에 닫혔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가축, 다른 생활물품들도 이 시간을 이용하여 왕래하여야만 하였다.

성문 앞에는 흔히 교수대나 교수대를 대신할 큰 나무가 있었다. 이 무렵에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살인, 방화, 도둑질, 유괴 등 도시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용서없이 교수형에 처하거나 손발을 자르는 가혹한 처벌을 했던 것이다.

성문 안에는 도시 중앙의 큰 길을 제외하고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대부분이었고 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비나 눈이 오면 진흙구덩

이로 변해 중세에는 세탁업자들이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그리고 거리도 지금처럼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 아니고 양떼, 소, 말, 닭 등이 뛰어나가기 일쑤였다. 특히 악취를 풍기며 거리를 더럽힌 것은 돼지였다. 거리에 배설을 하고 썩은 고기들을 주워 먹고 다니는 돼지는 중세의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또한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지라 쓰레기의 처치도 큰 골치였다. 상하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개 안되는 공동 우물로 물사정을 해결하였고 하수도는 얕고 좁은 도랑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도시들에는 보통 약 5천명의 시민이 살았다는 데 2만 명에서 4만 명에 이르는 국제적인 도시가 있었다. 10만 이상의 대도시로는 베네치아, 콘스탄티노플 정도였다. 최대의 도시는 4만명 정도였고 나머지 도시는 5천명 이하의 소도시였다. 고대 도시인 로마나 알렉산드리아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중세의 도시는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중세 지중해의 상업활동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의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중세 지중해 상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중세를 유지하는 정신적 지주는 종교 즉 카톨릭교였으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대등한 협력만이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중세 십자군의 원정으로 유럽의 상업과 무역은 성장하고 상업도시는 발달하였으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피렌체(Firenze), 베네치아(Venezia), 베로나(Verona), 제노바(Genova) 등 중세도시는 중세 유럽에 있어서의 상

업적 번영의 선구적 유적지로서 중세 상업사를 고증할 수 있는 연구적 가치가 있는 도시로서 재확인 되었다.

넷째, 중세 장원제도의 쇠퇴요인은 정치적·권력적 요인보다도 영주의 재정적 곤란과 농민에 대한 지대의 가중 및 착취와 속박이 농민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중세 상업사의 연구의 기본개념이 되는 상업의 부활(Revival of Commerce)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중세의 상업도시, 중세상인과 수공업자의 조직 즉 길드(Guild), 그리고 중세의 장인·직인·도제 등의 새로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중세에는 상인과 수공업자, 귀족과 성직자 중심의 신분질서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여섯째, 중세도시의 경제생활 모습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 및 관람은 성벽이 있는 도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세 지중해 상업활동사 문석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세 지중해의 상업 및 무역도시는 중세 상업사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중세 지중해 상업도시의 활동은 중세상업의 역사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Dollinger P., (1970), The German Hansa, tr., by Auft, D. S. and Steinberg, 1970. pp. 41~54, 61~66.
2. Pirenne H., (1963),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dieval Europe. p. 33.
3. Clough S. B., and Cole C. W., (1952), Economic History of Europe, 3rd ed., Boston, U. S. A.
4. Anstey R., (1977), The slave trade of the continental powers, Economic Historical Review, 2nd, ser, XXX.

5. Kenwood, A. G., and L. Loughead, (1971), The Growth of International Economy 1820~1960, George Allen and Unwin.
6. Mitchell B. R., (1975), European Historical Statistics, New York.
7. Mitchell H., (1940), The Economics of Ancient Greeces, Cambridge.
8. Pollard S. and C. Holmes(eds), (1973), Documents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 Ⅲ, Edward Arnold.
9. Poston M. M., (1952), The Trade of Medieval Europe: The North, in M. Poston and E. E. Rich, edit,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Ⅲ.
10. Rich E. E., (1967), Colonical Settlement and its Labour Problems, E. E. Rich and C. H. Wilson(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Ⅳ, Cambridge.
11. Pirenne, 增田四郎 監譯, ヨーロッパ世界の誕生, 創文社, 1960.
12. 大塚久雄・高橋幸八郎, 松田智雄 編著, 西洋經濟史講座ー封建制の經濟史基礎, 岩波書店所收; 中世遠隔地貿易二商業都市, 昭和35~37, p. 265 參照.
13. 弓削達, 地中海世界とローマ帝國, 岩波書店, 1977.
14. 高村象平, 中世都市の諸相, 1980.
15. 增田四郎, 中世北歐商業の展開(上), 社會經濟史學, 第7輯 第6號, 1980.
16. 大塚久雄, 歐洲經濟史, 岩波書店, 1980.
17. 木村尙三郎, 中世ヨーロッパ, 西洋史(3), 有斐閣新書, 1980.
18. 高橋理, ハンザ同盟ー中世の都市と商人たち, 歷史新書, 敎育社, 1980.
19. 朴壽伊, 國際貿易史, 博英社, 1982.
20. 김경묵・우종익 편저, 世界史ー古代오리엔트로부터 中世까지, 청아출판사, 1992.
21. 홍윤희, 世界史ーNew world study Encyclopedia, 太極出版社, 1988.

中世 地中海沿岸의 貿易經路에 關한 研究

朴 光 緖*

目 次

Ⅰ. 序 論
Ⅱ. 遠隔地 商業과 貿易活動
1. 南유럽 商業과 그 經路
2. 北유럽 商業과 그 經路
Ⅲ. 國際的 商業資本의 成長
Ⅳ. 이탈리아의 商人들
1. 베니스의 商人 마르코 폴로
2. 패렌체의 商人 페고르티
Ⅴ. 結 論

Ⅰ. 序 論

本稿는 中世 地中海를 中心으로한 十字軍 이후의 商業, 특히 이탈리아 제도시의 商業 및 貿易經路와 이탈리아 商人들에 대한 연구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農業生産이 증대하고 工業이 성장하는 가운데 商業도 성장하였다. 우선 지방에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局地的 商業(local trade)이 성장하였다. 국지적 상업을 통해서 도시민은 필요한 穀物, 食肉 및 락農品 등 각종 식료품과 羊毛, 亞麻 및 皮革 등 공업원료를 조달하였으며, 농민은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각종 貢租를 납부하기 위한 貨幣를 취득하고 도시에서 생산되었거나 遠隔地에서 가져온 각종 상품을 구입하였다. 그런 속에서 촌락과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局地的 商業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局地的 商業의 중심은 週市(market)였다. 많은 경우에 도시는 週市 주

* 順天鄕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변에서 성장하였고, 성장하는 모든 도시는 週市를 가지고 있었다. 週市는 후에 週에 2~3일 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주1회 열렸다. 週市는 修道院, 主教 및 貴族이 소유하여 거기에 賃租를 징수하는 수도 있었고, 때로는 도시가 그것을 소유하여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도시가 주시를 개설하는 광장과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적인 거래는 모두 주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週市를 통해 광범하게 전개된 局地的 商業은 거래량으로 보면 遠隔地商業보다 훨씬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中世商業에서 보다 두드러진 발전의 양상을 나타낸 것은 遠隔地商業이었다. '商業의 부활' 이후 유럽의 상업은 중세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전유럽에 걸쳐 밀접한 상업관계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 시기의 遠隔地商業을 남유럽상업 및 북유럽상업의 전개와 그들 상업의 상호접촉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자.

Ⅱ. 遠隔地 商業과 貿易活動

1. 남유럽 상업과 그 經路

11세기에 있어서의 回教徒勢力의 구축과 12세기에 들어서의 비잔틴제국의 세력약화라는 세력균형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지중해상업은 이탈리아 諸都市를 중심으로 새로이 발전하였다. 이탈리아 제도시에서 생산된 각종 공업제품과 스페인, 아프리카북부, 시리아 및 黑海에 이르는 전지중해 연안지방의 특산품이 교역되고 베니스, 제노아, 피자, 플로렌스, 마르세이유, 바르셀로나 등 많은 도시가 성장하였다.

남유럽산품의 교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東洋產品의 교역이었다. 유럽은 香料(spice), 高級綿織物, 絹織物, 藥品, 染料 등 東洋產品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향료는 중요한 것이었다.

"남유럽상업은 기본적으로 비잔틴제국, 回教國, 印度 및 中國으로부터 상품을 획득하고 이들 상품을 北 및 西유럽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탈리아 諸都市에서 工業生產을 하기 위한 原料 및 半製品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이들 원료와 북유럽 공업제품의 일부는 비잔틴제국과 近東의 回敎國으로 재수출되었다(Gerald A. Hodgett)."

東洋商品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西洋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東西交易路가 집중된 곳은 지중해연안이었다. 이곳으로 들어온 東洋商品은 이탈리아 諸都市의 商人에 의해서 서유럽으로 수출되었다. 남유럽 商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제노아와 베니스였다.

東西交易을 촉진한 계기가 된 것은 十字軍運動이었다. 십자군운동은 聖地回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지는 못하였으나, 商業的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계기로 이탈리아 都市는 크게 번영하였다. 특히 제노아와 베니스는 兵士의 수송, 군수품의 조달 및 戰費負擔 등을 통해서 십자군을 지원한 한편 전리품과 점령지의 일부를 획득하였다. 처음 기회를 잡은 것은 제노아였다. 그러나 최대의 이득을 얻은 것은 베니스였다. 베니스는 東地中海商業을 지배함으로써 東洋商品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상업상의 지위를 기반으로 베니스는 지중해만이 아니라 유럽 최대의 商業都市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남유럽商業은 북유럽商業과 연결되었다. 1300년에 이르기까지 交易은 전적으로 陸路와 河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노아는 스위스와 프랑스를 통해서 북유럽의 상업과 연결되었으며, 베니스는 알프스를 거쳐 독일과 연결되었다. 베니스와 독일과의 교역은 독일상인이 담당하였다. 베니스에는 독일商館이 설치되었으며, 그곳에서 독일商人은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거래하였다. 독일상인들은 베니스에서 이탈리아 도시를 비롯한 지중해연안 각지의 특산물과 특히 東洋産品을 조달하여 북유럽으로 수출하였으며, 독일 및 동북유럽産品을 베니스로 수입하였다.

독일 以西의 북유럽제국과의 交易은 14세기 이후에는 海路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베니스의 선박이 최초로 안트웨르펜(Antwerpen)에 도달한 1314년 이후 船隊가 규칙적으로 북유럽으로 파견되었다. 개인의 항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보통 年1회 정부의 기획하에 政府소유의 船隊의 왕복에는 거의 1년이 소요되었다. 이 船隊를 통해 베니스상인들은 브

류즈, 안트웨르펜 등을 통해서 가지고 간 東洋產品이라든가 남유럽產品을 판매하고 毛織物을 비롯한 북유럽產品을 구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남유럽商業은 북유럽商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2. 北유럽商業과 그 經路

1) 大市의 成長

북유럽商業은 플랜더즈와 북부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영국, 프랑스 및 발트해 연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교역된 상품은 플랜더즈 및 브라방產의 毛織物, 프랑스 諸地域의 포도주, 비스케灣產 소금, 남독일의 銀·銅 및 亞麻織物, 뉴른베르그와 아헨(Achen)의 금속제품, 발트海沿岸 및 스칸디나비아지방으로부터의 청어, 목재, 타르(tar), 피치(pitch), 穀物, 毛皮, 영국의 羊毛 등 각 지방의 1차산품과 공업제품이었으며, 이탈리아상인이 도입한 東洋商品도 있었다.

中世, 특히 12~13세기에 있어서 遠隔地商業의 중심은 북유럽의 경우 大市(fair, Messe)였다. 大市는 보통 年1회 정해진 기간에 개최되었으며, 그 기간은 3일에서 6주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大市에서는 遠隔地로부터 다양한 상품이 도입되어 都賣로 거래되었으며, 이곳에서 거래된 상품이 각 지방에서 小賣로 거래되었다. 週市의 경우와 같이 大市의 開催權과 課稅權은 그 지방의 지배자가 가지고 있었다. 대시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것은 도시 또는 지방의 通常的 稅金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었으며, 모든 나라 상인의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商去來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 지방의 封建土地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特別法廷에서 商人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大市의 상인은 보호되었으며, 通過料와 稅金은 낮은 수준이었다.

大市는 유럽의 거의 전역에 걸쳐서 나타났으며 11~12세기에 상업이 부활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이들 대시는 자연적 및 경제적 제조건에 의해서 전유럽적 시장, 전국적 시장 및 지방적 시장 등 중요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또 대시 상호간의 경쟁도 있었고 그 상대적 지위에 변동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12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대시는 샹빠뉴(Champagne) 지방에서 개최되었던 大市였다.

샹빠뉴 지방은 지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국경과 인접하여 陸上 및 河川의 중요한 通商路에 있었으며, 영국이나 독일 및 발트해 연안지역에도 접근하기가 쉬웠다. 이 지방은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伯爵領이었으며, 샹빠뉴백작은 상인의 신분과 함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商慣習을 존중하고 商活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대시에서 징수되는 大市稅나 通過稅 등은 지배자의 수입의 큰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지배자는 大市振興政策을 썼다. 특히 샹빠뉴大市는 플랜더즈의 毛織物과 이탈리아商業과 결합됨으로써 크게 성장하였다.

샹빠뉴大市는 4개지역(Lagny－sur－Marne, Bar, Provins, Troyes)에서 年6회 개최되었으며, 5회는 6주간 그리고 1회는 2주간 계속되어, 그것이 중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지방에서는 1년의 대부분을 통해서 대시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東洋產品을 포함하는 각지의 특산품이 각지의 상인에 의해서 거래되었다. 즉 이곳에는 플랜더즈는 물론 프랑스 각지의 상인을 비롯해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의 상인, 그리고 레반트 지방의 상인까지 들어와서 각지의 絹織物, 麻織物, 金銀細工品, 보석, 약품, 향료, 동양산고급직물, 鹽, 각종 금속제품, 피혁, 모피, 각종 식료품, 포도주, 가축 및 노예 등을 거래하였다. 그리하여 샹빠뉴大市는 전유럽적 상품거래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국제적 상품거래의 중심지로서 발전함에 따라 샹빠뉴大市는 金融中心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각 지방의 상인이 모여들어 거래를 하게 되자 그들은 다양한 화폐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전문적인 換錢業者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상품거래는 화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都賣에 필요한 거액의 화폐를 매년 4번 환전한다는 것은 번잡하였다. 거기서 상인들은 상호거래를 할 경우 각 거래마다 現金을 지불하는 대신 어음을 발행하고, 각자의 거래금액이 相互決濟된 후에 차액만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샹빠뉴大市가 끝날 무렵에는 일정한 어음決濟期間이 있었다. 환전업자들은 대시에서 발행된 어음 또는 그것을 보증한 어음을 담보로 상인에게 貸付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換어음制度가 발달하였다. 샹빠뉴大市에서는 당해 大市에서 발행된 어음만이 아니라 前回大市에서 또는 타지역에서 발행된 상업어음도 결제되었으며, 國王, 諸侯 및 修道院 등 聖·俗貴族의 非產業的 貸付의 결제도 이루어졌다. 당시 샹빠뉴大市는 유럽의 전시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13세기에는 유럽의 '어음交換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샹빠뉴大市는 14세기에 들어서 쇠퇴하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① 航海術의 발달에 따르는 이탈리아 港口都市와 플랜더즈 및 영국의 諸港口와의 직접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② 이 지방의 프랑스領에의 編入과 프랑스 국왕에 의한 重稅賦課, ③ 이탈리아都市 특히 플로렌스의 毛織物工業이 성장하여 플랜더즈 毛織物工業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샹빠뉴大市가 쇠퇴한 후 中世末期에 성장한 국제적 대시는 샬룽(Chalon-sur-Saone), 리용(Lyons), 제네바(Geneva),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등지의 大市였다. 서유럽의 선진지역에서는 大市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지만, 동유럽교역에서는 새로운 東西交易經路가 개발되면서 대시의 중요성은 계속되었다. 프랑크푸르트大市는 샹빠뉴大市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商工業이 성장함에 따라 大市의 중요성도 사실상 감소하게 되었다. 생산량이 적어 생산물을 어느 정도 비축하였다가 판매하던 시대가 지나고, 14세기 말이 되면 대도시는 도시 자체가 매일 열리는 大市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도시는 아직도 배타적이었으며 국제성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大市의 존재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샹빠뉴와 같은 전유럽적 大市는 소멸하게 되었다. 샹빠뉴의 뒤를 이어 15세기의 전유럽의 商品 및 金融去來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브류즈(Bruges)였다.

Ⅲ. 國際的 商業資本의 成長

중세 후기의 遠隔地商業의 발달에 대응하여 국제적 商業·金融都市가 성장하였다. 그들 도시는 수출용 공업제품과 특산품 및 금융거래와 관련을 가지고 도시적·국가적 테두리를 초월하여 전유럽적 범위에서 상업·금융 관계를 가짐으로써 '中世의 世界經濟'(Frity Rörig)를 형성하였다.

'中世의 세계경제'의 전개에서 먼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이탈리아 諸都市였다. 베니스와 제노아는 東洋産品을 독점하였으며 플로렌스와 밀라노는 毛織物·絹織物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탈리아도시의 상업자본은 東洋産品의 교역과 유럽상품의 對東方輸出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류즈와 런던을 중심으로 북유럽商業에서도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탈리아 諸都市의 상업적 영향을 받아서 아우그스브르그와 뉴른베르그 등 남독일都市도 성장하였다. 남독일都市의 상업자본은 麻綿混紡織物, 麻織物, 모직물, 금속제품, 銀, 銅 등 지방적 특산품을 생산적 기반으로 베니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諸都市와 교역할 뿐만 아니라 라인강 하류지방과 교역하면서 성장하였다.

한편 북유럽에서는 플랜더즈 및 브라방 지방의 毛織物工業을 생산적 기반으로 브류즈가 성장하였다. 브류즈는 毛織物의 생산적 기반을 배경으로 한 지방적 상인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상인과 북해·발트해貿易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한자都市商人을 비롯한 많은 나라 상인에 의해서 20여개에 달하는 商館이 설치되어 남유럽商業과 北海·발트해商業을 연결함으로써 15세기에는 전유럽적 商業去來의 중심지가 되었다. 商館은 당해국 상인의 共同宿所, 집합소, 점포, 창고였으며, 또 분쟁을 해결하는 법정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大市의 移動的 商人으로부터 定住商人(sedentarymerchant)에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또한 브류즈의 去來所(Bourse)에서는 전유럽적인 金融去來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도시의 성장은 바로 그들 도시를 본거지로 활동한 商業資本의 성장이었으며, 그속에서 국제적 大商業資本이 성장하였다. 플로렌스의 페르치家(Bardi) 및 메디치家(Medici), 그리고 아우그스부르그의 푹거家(Fugger)와 웰저家(Welser)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商業資本은 蓄積資本을 화폐형태로 대부함으로써 高利貸資本은 가능하였다. 생산시설에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던 중세적 생산조건에서 축적된 막대한 商業資本은 상업활동 그 자체와 토지구입 및 高利貸付 이외에는 유리한 투자대상이 없었다. 商品·貨幣經濟의 발달에 따라 모든 계층의 화폐적 필요는 커졌다. 封建的 土地經濟에 기반을 두고 貨幣收入에 비한 지출증대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封建支配層의 경우 화폐적 필요는 더욱 컸다. 이에 商業자본은 축적한 貨幣資本을 적극적으로 대부하였다. 貸付對象에는 상인은 물론 봉건적 생산의 담당자인 農民·手工業者도 있었으나, 특히 敎皇·皇帝·國王·僧侶·諸侯 등 봉건지배층이 있었다. 상인의 金融業務도 지방적·국가적 테두리를 넘어 전유럽적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中世와 世界經濟'에서 활동한 商業·高利貸資本은 이미 大市에서 활동한 舊來의 이동적 상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도시에 定住하여 本店을 두고 유럽 각지에 많은 支店·代理店을 설치하고, 그들 거래망을 이용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에서 先貸와 상품수송 그리고 送金, 高利貸付 등의 금융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定住商人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會計記錄을 이용하고 組合이라든가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複式簿記의 회계방법이 이탈리아 도시의 상인들에 의해서 처음 이용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商業資本은 15세기의 이탈리아 및 남독일諸都市, 브류즈, 함브르그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성장하였다.

전형적인 商業·高利貸資本은 먼저 이탈리아 도시에서 성장하였다. 플로렌스의 페르치家는 14세기에 이미 16개 支店과 150명 이상의 代理商을 두고 국제적으로 商業金融業을 수행하였으며 바르디家도 국제적 상업금융을 하였다. 플로렌스의 商業 및 金融的 發展은 15세기에 메디치家의 활동

을 통해서 절정에 달하였다. 메디치家는 이탈리아와 남프랑스 諸都市 그리고 브류즈 및 런던에 진출하여 商業去來와 함께 봉건적 지배층에 대한 高利貸付를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올렸다.

뒤이어 국제적 商業·金融資本家로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우그스부르그의 훅거家였다. 훅거家는 14세기 말 織物의 제조 및 거래에서 家産을 일으키고 東洋産品의 거래에도 종사하면서 성장하였다. 훅거家는 국제적 商業去來를 하는 한편, 15세기 중엽 이후부터 각국의 봉건지배층에 대한 高利貸付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남독일의 銀·銅鑛을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올렸다. 당시 남독일에서 생산된 銀은 世界銀總生産의 절반이나 되었다. 이러한 기반에서 훅거家는 국제적 大商業·金融業者가 되었다. 훅거家는 簿記를 도입하고 同族企業組織으로 80여개 도시에 설치한 支店, 代理店網을 이용하여 각지의 시장상황 및 전쟁, 해적, 정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베니스와 16세기에는 안트웨르펜을 비롯하여 각지의 상업을 주도하고, 봉건 지배층에 대한 광범한 高利貸金을 하였다. 특히 스페인 國王에 대한 貸付는 거액에 달하였다. 훅거家는 16세기 후반에 들어 鑛産業의 정체, 아메리카大陸産銀의 대량유입 및 스페인왕실의 재정난에 따른 債務支拂停止 등으로 파산하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막대한 財力으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훅거家의 시대'(R. Ehrenberg)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商業·高利貸資本은 봉건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봉건지배층의 권력을 배경으로 성장하였고, 書續資本도 商業·金融, 토지구입 및 기타 비생산적 목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前期的'資本이었다. 그러한 한계를 가지면서도 '中世의 世界經濟'의 전개와 商業·高利貸資本의 성장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商品·貨幣經濟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국제적 도시의 성장과 商業·金融活動의 전개과정에서 合理的·個人主義的 意識이 성장하고, 중세도시의 傳統的·共同體的 가치체계가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近代資本主義의 합리주의, 개인주의를 낳은 르네상스(Renaissance)운동이

14세기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일어나서 15~16세기에 유럽 諸都市로 확산된 것은 위에서 본 商業·金融資本의 성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경제적 합리주의와 영리주의로 특징지어지는 初期資本主義(W. Sombart)는 15~16세기의 남독일의 都市의 商業資本의 성장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전개되었다.

Ⅳ. 이탈리아의 商人들

1. 베네치아의 商人 마르코 폴로

13世紀에 베네치아의 마르코 폴로가 東洋으로 가서 中國의 文物과 繁榮에 감탄하여 돌아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이탈리아 베네치아(Venezia)의 貿易商人으로, 1271년 그의 父親과 叔父를 따라 陸路로 中國으로 가서, 당시 元의 皇帝 世祖(쿠비라이, khubilai, 忽必烈)을 만나고, 그 곳에서 17년간 머물며 벼슬을 살고, 중국 각지를 돌아본 후 25년 만에 海路로 귀국하였다.

그는 특히 元의 宰都 칸발리크(Kahnbalik, 大都, 北京)의 雄壯 華麗함에 놀라고, 中國 南部의 港口都市 杭州와 泉州의 번영에 감탄하였다.

칸발리크(北京)의 人口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北京에 定住한 住民 이외에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廣大한 版圖를 가진 大帝國의 각처에서 모여온 使民과 그 隨行員, 그리고 商人들로서 들끓었다. 그들은 주로 郊外에 留宿하므로 市內보다 오히려 郊外에 더 人口가 많았다고 한다. 郊外에는 外地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客館이 많았고, 그 客館은 種族別로 指定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을 위한 公娼의 數는 25,000名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公娼은 官妓로서 公的 손님 接待用이고, 손님에게 報酬를 요구하지 않으며, 매일 밤 교대하여 손님을 接待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數가 너무 많아 誇張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으나, 그는 두 곳에서 반복하여 그 數가 25,000名이 된다고 강조하고, "每日 각지에서 모이는 사람과 商人들의 出入이 언제나

많으므로 결코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 예로서 元의 支配下에 있던 高麗의 忠烈王 10년(1284)에 王, 公主 및 世子가 元에 갔을 때는 시종하는 臣僚가 약 1,200名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廣大한 版圖의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數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추측할 수 있고, 그 接待用 官妓가 그만큼 많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商人답게 그 곳의 物情과 商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全世界 各地에서 珍奇한 물건, 값이 비싼 물건들이 販路를 찾아 이 도시로 모여든다. 특히 印度로 가는 寶石·眞珠·藥材·香料 등은 거의 이곳으로 모인다. 또 가타이(中國)의 各地方 및 帝國의 各領土로부터도 價値가 있는 물건이 宮殿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需用에 응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모여든다.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도 이곳에서 팔리는 商品의 數量이 많다. 每日 비단을 실은 1千 以上의 馬車와 말이 온다. 그리고 各種의 金빛의 얇은 비단과 絹織物이 大量으로 生産된다."

이것도 역시 誇張은 아닌 것 같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忠烈王 一行이 元에 갔을 때, 銀 약 600斤, 苧布 2,440疋, 楮貨 1,800錠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豪華롭고 큰"杭州(Kinsai, Hangchow)는 그 크기가 굉장하게 크고, 人口 100萬 世帶라고 하였다. 그러면 人口는 300萬이 넘는다. 그 眞否는 고사하고 마르코의 눈에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서 賣春婦의 數는 報告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그럴 것이 거기서는 官妓보다도 私娼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는 "異邦人으로서 그 娼女에게 魅惑되어, 그 印象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官能的인 快樂에 빠져있다가 그들의 故鄕에 돌아오며, 杭州 즉 '國王'에 있었다고 報告하고 다시 그 樂園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거리에는 異邦人을 위한 沐浴湯이 있었고, 각 家庭에서도 商用으로 訪問한 異邦人을 自宅에 招待하여 歡待하고 去來上 도움이 되겠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便宜를 보아 주었다고 한다.

그 地方에서는 "大量의 生絲紗가 生産되고, 商人들이 獨占的으로 다른

地方에서 輸入하기 때문에, 이곳 住民들의 대부분은 언제나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衣食住의 豪奢와 歡樂의 樣相을 羨望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그는 또 하나의 당시 貿易港인 泉州(Zarrun)의 번창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觀地의 各地方에 분배되는 商品을 가득히 실은 많은 배들이 寄港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輸入되는 胡椒의 量은 아주 많아, 여기에 비하면 西洋의 여러나라의 需要에 응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港에 輸入는 量은 아주 적어 그 100分의 1도 못된다. 실로 세계 최대의 港口의 하나로 認定되는 이곳에 모여드는 상인의 수와 集積된 商品의 量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는 그 근처의 생산품으로서 陶磁器의 生產과 販賣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있다. 그것은 宋代의 陶瓷에 관하여 들은 바가 있는 것 같다.

그는 당시 中國에서 紙幣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報告하고 있다.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紙幣는 없었다. 紙幣를 유럽에 紹介한 것은 마르코 폴로가 처음이 아니고, 급다 25년전에 中國을 訪問한 류브룩(William of Rubruck)이라고 한다.

中國에서 紙幣가 처음 사용된 것은 급다 훨씬 이전이나, 西方에 전해진 것은 元代라고 한다. 그것은 처음 1294년 페르샤에 傳해지고, 中國 紙幣를 모방하여 그 이름도 中國名으로 "초" 그대로 "초우"라고 불리워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高麗時代에 元의 支配下에 있을 때 元의 紙幣가 強制로 通用되었다. 즉, 忠烈王 13년(1287) 元의 使臣이 와서 방으로 그들의 지폐인 "至元寶초"를 나눠주고, 종전의 "中統寶초"와 併用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高麗의 貨幣는 東西洋에 걸쳐서 廣大한 版圖를 가진 元의 貨幣圈內에서 그들의 것과 連結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中國의 木版印刷術이 페르샤에 전해졌다고 한다.

당시의 東西文化의 交流에 있어서 빠뜨리지 못할 것은 官營의 驛傳制度이다. 칸발리크(北京)에서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길이 많이 있는데, 길마

다 一定한 거리에 驛이 있고, 宿泊施設, 그리고 말과 배와 같은 輸送物을 준비하여 交通과 通信의 便宜를 제공하였다. 위급할 때는 밤에도 燈불을 앞세워 밤낮없이 갈 수 있었다. 특히 긴급하고 중요한 任務에는 그것을 표시하는 牌를 주었다. 마르코 폴로가 歸國할 때도 皇帝로부터 金牌를 받아, 그의 領土內에서는 自由로이 安全하게 旅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廣大한 地域을 支配하기 위한 交通과 通信網은 안전하고 完備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르코 폴로의 旅行記는 그의 5分의 2가 中國에 관한 것이고, 그 文物의 雄壯하고 華麗함에 驚嘆과 羨望의 눈으로 描寫하고 있다. 그가 자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Venezia)는 이미 그때 十字軍의 영향으로 莫大한 富를 蓄積하고 高度의 文明을 享有하고 있었다. 이미 東方에서 들어온 商品과 風物도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당시 유럽 一流의 都市에서 자란 마르코 폴로가 中國에 가서 또 하나의 高度의 文明에 接하여 感歎하고 놀란 것은, 당시 中國의 文明이 폴로가 본 유럽의 그것보다 越等하게 優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르코 폴로는 너무나 유명하여 당시 東洋에 갔다온 사람이 그 뿐인 것 같이 생각되나 그렇지는 않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東洋과 中國에 갔다와서 旅行記나 報告書를 남긴 사람은 많이 있다. 폴로의 父親과 叔父도 그가 中國에 가기 이전에 이미 먼저 가서 구비라이(忽必烈, 世祖)를 만나보고 돌아왔고, 그들이 폴로와 갔을 때는 두 번째로 간 것이었다.

1245년 로마敎皇의 使節로서 프란체스코派 高僧 카르피니(Karpini, Giovanni de Plono)는 元으로 가서 皇帝 쿠육(Kuyuk, 貴由, 定宗)을 만났고, 皇帝의 書信을 가지고 歸國하였다. 그 旅行記는 출판된 바 있다.

당시 蒙古는 사라센帝國 뿐만 아니라 유럽의 러시아(Russia), 폴란드(Poland), 헝가리(Hungary) 및 독일까지 基督敎國을 侵略하자, 로마敎皇이 당황하여 親善使節을 파견한 것이었다. 그때의 元의 皇帝 쿠육의 敎皇에 대한 返書는 지금도 남아 있다. 원래 그 正本은 蒙古語로 되어 있으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페르시語의 副本이 로마 敎皇廳의 圖書館에

保存되어 있다. 그 내용은 별것이 없으나, 그 語調는 威壓的이고, 과연 世界의 征服者인 蒙古皇帝다운 書翰이라고 한다.

1253년 프랑스의 루이(Louis) 9世의 使臣 류브룩(William of Ruvruck)은 같은 목적으로 元에 가서 망구(Mangu, 蒙家, 憲宗)을 만나고 돌아와 報告書를 남겼고, 그것은 당시 中國 사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資料가 된다.

그 이외에도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10數名이 있으나, 記錄에 남지 않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특히 이탈리아의 貿易商人들은 數千名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르코 폴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泉州에는 西洋人 專用의 沐浴湯이 있었고, 카톨릭의 布敎를 시작한 것도 元代이고, 泉州에는 3개의 敎會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蒙古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歷史上 未曾有의 廣大한 地域을 支配하던 大帝國으로서 4개의 汗國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東의 元朝와 西의 일·칸(Il Kahn, 伊兒汗)國과의 관계는 밀접하고, 그 交涉도 빈번하였다. 陸路인 실크로드와 海路에 의한 交通이 開拓되고, 莫大한 人員과 物資가 따르는 使臣의 來往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많은 西方의 商人들이 中國을 來往하였고, 中國과 페르샤(Persia)의 特産物의 交易이 가장 盛行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元의 世祖 쿠비라이는 일·칸國의 宮廷에 2,000名의 陶工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일·칸國은 西方의 基督敎國에 대해서도 友好政策을 다스리고, 유럽 각국에 使節을 파견하였다. 그 하나는 1307년 蒙古人을 英國의 宮廷에 파견하여 그들과 協力하여 이집트(Egypt)를 征服하고자 提案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칸國의 國際貿易은 번창했고, 한때나마 그 文化는 빛났던 것이다.

그때까지 東洋의 文物은 西洋으로 흘러 들어 가고, 西洋人은 東洋을 경탄과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던 때였다. 그것은 東洋의 文物이 西洋의 그것보다 優秀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優秀한 東洋의 文化는 西쪽으로 흘러 들어 가는 西漸의 傾向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라시아(Eurasia) 大陸의 蒙古의 時代는 15世紀로서 끝나고,

蒙古帝國의 崩壞와 더불어 東西洋의 접촉은 斷絶되고, 東洋의 優位는 끝난다. 東西洋의 接觸이 回復되었을 때는 이미 時代는 近代에 이르러 形勢는 逆轉되어 있었던 것이다.

2. 피렌체 商人 페고로티

東西洋의 文化 交流에 있어서 15世紀까지는 東洋이 優位에 있었고, 西洋人이 東洋의 文物에 感嘆, 羨望 내지 憧憬하여, 그 珍奇한 物資를 渴求하였던 것은 마르코 폴로의 旅行記에서도 如實히 나타나 있다. 다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또 하나의 資料가 發見되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피렌체(Firenze)의 商人 페고로티(Francesco Balbucci Pegolotti)에 의하여 1330年代에 쓰여진 책이다. 그 책은 처음에는 筆記本으로, 舊名은 "Libro di Divisamenti di Paesi, etc."(The Book of the Descriptions of Countries, etc.)라고 하였으나, 1765~66年 그것을 처음으로 印刷한 파니니(Gian Francesco Pagnini)가 그 册의 내용이 주로 商業에 관한 것이므로, "Practica Della Mercatura"(商業指南 또는 東方交易案內書)이라 改題하여 出版하였다. 그 英譯은 1914년 런던(London)에서 출판되었다.

그 筆記 原本은 없어지고, 1471년에 피립포·디·니코라이오·디·프레스코발디(Filippo di Nicolaio di Frescobaldi)에 의하여 쓰여진 筆寫本이 원래 피렌체의 圖書館에 있었고, 최근에는 시에나(Siena)의 圖書館에 있다고 한다.

그 原書의 著者 페고로티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는 피렌체의 발디(Bardi)商會의 一員으로서 商人이었고, 자신과 그 商會 그리고 讀者의 利益과 繁榮을 위하여 그 책을 썼다고 한다.

그 책의 내용은 商業에 관한 것이나, 유럽 각지와의 것보다 먼저 第1章부터 東方貿易 특히 中國과의 交易을 다루고 있다. 中國으로 가는 길, 去來對象의 物資, 商業慣習, 貨幣, 重量, 尺度, 稅金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第1章 "다나(Tana)에서 中國까지 往復 商業旅行에 필요한 知識"이라는 표제 아래, 그 旅程과 旅行 手段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간단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0日 →

Tana → Gintarchan → Sara → Saracancc → Organci → Oltrarre →
25日(牛車) 1日(河川) 8日(河川) 20日 35~40日 45日
10~12日(馬車) 陸路可 陸路可 (駱駝車) (駱駝車) (노馬)

Aramalec → Camexu → Cassai → Gamalec(Cambalec)
70日(노馬) 45日(馬) 30日

이것은 실크로드의 북쪽 길이고, 빠르면 7~8個月만에 中國에 도달한다. 出發點인 다나(Tana)는 黑海의 北쪽에 있는 아조프海邊에 있는 港口로서, 당시 이탈리아商人들의 植民地가 있었던 곳이고, 中國으로 가는 出發點이었던 것 같다.

끝의 終着地인 Gamalec(Camvalec)는 칸바리크(大都, 北京)을 Cassai는 마르코폴로가 Kinsai라고 하던 杭州를 말한 것 같다. 杭州는 가장 商業이 활발한 곳이고, 거기서 가지고 간 銀은 팔고 中國의 紙幣와 交換하여 首都인 大都(北京)로 가라고 하였다. 그때의 銀과 紙幣의 交換比率은 銀1錠(sommo)에 紙幣 4장이라고 하였다. 그는 당시 中國에서 紙幣가 그렇게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第2章 "中國 商業旅行에 필요한 것"이라는 표제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수염을 기르고 깎지 말아라. 다나(Tana)에서는 通譯을 구하여 데리고 가라. 좋은 通譯 대신에 나쁜 通譯으로써 費用을 節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좋은 通譯에 資金을 더 주는 것이 나쁜 通譯을 쓰고 절약하는 것보다 有利하기 때문이다. 通譯 이외에 큐마니아(Cumanian)語를 할 줄 아는 2名 이상의 下人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女子 1名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한다면 다나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女子를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는 없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안 데리고 가는 것보다 훨씬 유쾌하고 편하다. 그 女子는 男子 下人과 같이 큐마니아語에 익숙한 것이 좋

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깎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체로 中國人 특히 蒙古系統의 사람들은 수염이 적어서 수염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그렇게 西歐人의 표를 내어도 安全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通譯, 下人 그리고 女子에 대한 것은 모두 商人다운 약삭빠른 이야기이다. 旅行中 각처에 짐승의 고기는 충분하므로, 밀가루와 간한 물고기를 各驛에서 위에 말한 日程數에 맞추어 준비해 가라고 권하였다.

"다나에서 中國으로 가는 길은 그 곳을 가본 商人들의 말에 의하면 晝夜를 가리지 않고 완전하게 安全하다. 도중에 만약 그 商人이 죽으면 모든 소유물은 그가 죽은 나라의 王에게 歸屬되고, 모든 물건은 그 地方의 官吏에 의하여 沒收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中國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만약 그의 兄弟가 같이 가던가, 친한 친구나 同僚가 자기가 그의 兄弟라고만 하면, 그 財産은 그에게 引導되어 救濟가 된다."

당시 中國으로 가는 길이 晝夜로 얼마나 安全한가를 알 수 있다. 마르코폴로도 그렇게 말한 바 있고, 蒙古帝國의 驛傳制度가 완벽하였다는 뒷받침이 된다. 다만 死亡하였을 때는 財物이 沒收되나, 同行에 兄弟가 있거나, 兄弟가 아니라도 兄弟라고만 하면 沒收를 免하는 救濟策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危險은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王이 別世하고 新王이 卽位할 때까지이다. 그 때는 西歐人과 外國人(Franks)에 대하여 不法行爲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西歐人이 安全하게 그 길을 많이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國에는 대단히 많은 都市와 邑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위 首都라는 곳은 商人들이 극히 많이 몰려들고 巨額의 商去來가 행해진다. 그 곳을 칸발리크(Camvalec, 大都, 北京)라고 한다. 그 都市는 周圍가 100리(miles)이고 어디 가나 사람과 집, 그리고 그 곳 住民들로 꽉 차 있다.

이것으로 마르코폴로가 首都 北京을 描寫한 것이 그리 誇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一定한 量의 商品과 通譯 1人 및 下人 2名을 데리고 中國으로 갈 때의 費用의 上限線과, 中國에서 다나로 돌아올 때의 費用의 標準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모두 銀으로 支給하되, 은 1솜모(sommo, 錠)의 價値는 5프로린(florin)의 金貨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牛馬車, 駱駝車 등이 각각 몇 마리가 한 車를 끌며, 얼마 만큼의 실크(비단)을 運搬할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中國에의 商業旅行이 실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蒙古帝國 領土內에서의 도중 旅行은 완전하게 안전하나, 그 밖의 다나에서 사라(Sara)까지 가는 길은 그렇지 않고 덜 안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장 나쁜 길이라도 60名쯤 떼를 지어 가면 "그 安全하기가 자기 집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中國에 가면 銀은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대신 그들의 紙幣를 交換해 주고, 그 紙幣로써 실크(비단)와 기타 商品을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銀 1솜모(sommo, 錠)를 가지고 얼마 만큼의 中國실크(Cathay silk) 기타 각종의 실크를 살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써 그들이 中國으로 旅行한 주된 목적의 商品이 실크(비단)였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위 실크로드라는 것은 西洋 사람들이 東洋의 실크와 기타 文物을 求買하기 위하여 東洋으로 몰려 오던 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第3章에서 中國과 다나와의 重量과 尺度의 比較를 하고, 개개 商品의 販賣單位 등을 표시하고 있다.

第4章에서는 다나에 들어 오는 物資에 대한 각종 稅金과, 다나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稅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第5章에서는 다나와 베네치아 등 기타 지방과의 重量 및 尺度의 比較 등을 하고 있다.

第6章 이하는 각지의 輸送費用과 賣買事情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

다.

이상으로써 페고로티는 아틸리아의 商人으로서 商業에 관한 知識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 각지와의 交易보다는, 주로 中國과의 실크를 위한 交易에 관한 것이었다. 그 자신 中國에 직접 갔다 돌아왔다는 確證은 없으나, 마치 갔다 온 것과 같이 소상하게 記述하고 있다. 이것으로 당시 많은 유럽人 특히 이탈리아의 商人들이 中國에 來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西洋 複式簿記 發生의 基盤이 된 이탈리아 각 都市의 遠距離貿易은 사실상 中國을 중심으로 한 東洋과의 실크를 주로 한 交易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귀중한 資料인 페고로티의 原書가 오래도록 이탈리아의 한 圖書館에서 잠자고 있었고, 18世紀 後半에 비로소 印刷되어 脚光을 받았다. 그러나, 그 書名이 "商業指南" 또는 "東方交易案內書"와 같이 商業에 관한 것으로, 마르코폴로의 그것과 같이 珍奇한 興味가 없어서 그런지, 오래도록 그리 널리 알려 紹介되지 않았다. 그 참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페고로티의 책은 商人의 商行爲을 위한 現實的인 知識이기 때문에 마르코폴로의 그것과 같이 興味있는 이야기(fiction)는 아니고, 誇張이나 虛說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페고로티의 책은 마르코폴로의 그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西洋사람들이 東洋의 文物에 대하여 感嘆과 憧憬의 눈으로써 보았고, 西洋文化의 발전에 東洋의 그것이 必須不可缺한 것이었다는 것을 如實히 말해 주고 있다.

사실상 世界 三大發明이라고 하는 火藥, 製紙, 羅針盤, 기타 印刷術, 絹織物, 陶器, 中國의 陰陽思想, 印度의 佛敎哲學 등, 東洋文化가 近代西洋文明의 形成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人들은 르네상스(Renaissance, 文藝復興)라 하여 文字 그대로 近代 西洋文明의 誕生이 그리이스·로마의 復活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東洋文化의 貢獻을 시인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정당한 評價를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이 책은 새로운 각광을 받고, 東西文化의 交流, 東西交易史 등의 연구에 귀중한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商業의 復活" 이후의 중세의 상업 특히 이탈리아의 제도시의 프랑스, 독일 등의 제도시 상업발달과 무역경로 및 실크로드를 통한 中國과의 교역 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國際的 商業發達의 성장과정과 베니스 상인 마르코 폴로와 피렌체의 상인 페고르티를 통하여 당시 中國의 商業發達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를 정리, 요약하여 결론을 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유럽상업과 무역은 기본적으로 비잔틴제국, 回敎國, 印度 및 中國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이들 상품을 北 및 西유럽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탈리아 제도시에서 工業生産을 하기 위한 原料 및 半製品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이들 원료와 북유럽 공업제품의 일부는 비잔틴제국과 近東의 回敎國으로 재 수출되었다. 東洋商品은 여러가지 經路를 통하여 西洋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東西貿易路가 집중된 곳은 지중해 연안이었다. 이 곳으로 들어온 東洋商品은 이탈리아 제도시의 商人에 의해서 西유럽으로 수출되었다. 南유럽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제노아와 베니스였다.

東西貿易을 촉진시킨 계기가 된 것은 十字軍運動이었다. 十字軍運動은 聖地回復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상업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 제도시는 크게 번창했다. 특히 제노아, 베니스는 병사의 수송, 군수품의 조달 및 전비부담 등을 통해서 십자군을 지원하는 한편 전리품과 점령지를 획득했다. 처음 이 기회를 잡은 것은 제노아였으나 최대의 이익을 얻은 것은 베니스였다. 베니스는 東部地中海를 지배함으로써 東洋商品을 독점하였다. 베니스는 지중해 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의 商業都市의 地位를 차지했다.

南유럽 상업은 北유럽과 연결되었다. 1300년에 이르기까지 교역은 陸路와 河川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노아는 스위스와 프랑스를 통해 北유럽 상업과 연결되었고 베니스는 알프스를 넘어서 독일과 연결되었으며, 이 교역은 독일 상인이 담당했다.

北유럽 상업은 플란더즈와 北독일을 中心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영국, 프랑스 및 발트해 연안을 포착했다. 교역품은 프란더즈 및 브라방산의 모직물, 프랑스의 포도주, 비스케만산 소금, 남독일의 銀, 銅 및 아마직물, 뉴른베르크와 아헨의 금속제품, 발트해 연안 및 스칸디나비아지방의 청어, 목재, 타르, 피치, 곡물, 모피, 영국의 羊毛 등 각 지방의 특산품이었다.

원격지 무역의 중심은 북유럽의 경우 大市(Fair Mesee)였다. 샹파뉴는 유럽 최대의 대시였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국경과 인접하여 陸路 및 河川의 중요한 交通路였으며 영국이나 독일 및 발트해 연안지역에도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샹파뉴 大市가 쇠퇴한 후 中世末期에 성장한 국제적 大市는 샬롱, 리용,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등지의 大市였다. 그 중에서도 프랑크프루트는 샹파뉴 大市를 대신하였다. 그리고 샹파뉴의 뒤를 이어 15세기 전유럽의 상품 및 金融去來의 中心은 브르즈였다.

베니스와 제노아는 東洋産品을 독점하였으며 플로렌스와 밀라노는 모직물, 견직물 생산의 中心地였다. 이탈리아 제도시의 영향을 받아 아우그스부르크와 뉴른베르크 등 남독일 도시도 크게 성장했다.

大商業資本家로서는 플로렌스의 페르치家(Percii), 바르디家(Bardi), 및 메디치家(Medici)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의 훅거家(Fugger)와 웰저家(Welser)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 商業資本은 축적자본을 화폐형태로 대부함으로써 高利貸金資本의 기능을 하였다.

훅거家는 14세기말 직물의 제조 및 거래에서 가산을 모으고 東洋産品 去來에도 종사하여 성장했다. 이러한 기반에서 훅거家는 부기를 도입하고 동족기업 조직으로 80여개 도시에 설치한 지점, 대리점망을 구축하여 치부하여 "훅거家 時代"를 구축했다.

合理的, 個人主義的 의식이 성장하고 중세도시의 전통적, 공동체적 價値體制가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近代資本主義, 合理主義, 個人主義를 낳은 르네상스(Renaissance)운동이 14세기 이탈리아 도시에서 일어나서 15~16세기에 유럽제도시로 확산된 것은 상업, 금융자본의 성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中世 이탈리아의 商人들이 中國을 여행한 目的은 실크(비단)의 구입에 있었다. 따라서 소위 실크로드라는 것은 西洋人들이 東洋의 실크와 기타 文物을 구매하기 위하여 동양으로 몰려오던 길임을 알 수 있다.

東洋文明은 西洋文明의 形成에 크게 공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文藝復興은 확실히 東洋文明의 여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 고 문 헌

金宗炫, 「經濟史」, 經文社, 1992.

趙璣濬, 「社會經濟史」, 日新社, 1992.

朴光淳, 「經濟史」, 裕豊出版社, 1994.

權丙卓, 「一般經濟史」, 博英社, 1988.

尹根鎬, 「韓國會計史硏究」, 韓國硏究院, 1984.

李正浩, 「會計思想史」, 經文社, 1993.

經營史學會, 「經營史學」, 1~9輯.

經濟史學會, 「經濟史學」, 1~10輯.

堀江保藏 角山榮, 「一般經濟史」, 1977.

本位田祥男, 「東洋經濟史」, 1961.

增田四郎, 「東洋經濟史論」, 1966.

松田智雄 編, 「西洋經濟史」, 1982.

Pinenne, H.,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dieval Europe」, London, 1936.

_____, 「Medieval cities : their Orgins and the Revival of Trad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Postan, M. M., 「Mediev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_____, 「Medieval Economy and Society : An Economy History of Britain 1000~15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中世紀 유럽地域의 會計學 發展史에 관한 硏究

李 建 憙*

目 次

Ⅰ. 中世의 社會 및 經濟思潮의 背景
1. 中世의 社會的 背景
2. 中世의 經濟思潮
Ⅱ.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會計史的 背景
1.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受託責任
2. 이집트의 內部統制組織
3. 그리스의 會計官
4. 로마時代의 帳簿
5. 中國의 會計制度
Ⅲ. 中世의 會計
1. 封建時代의 背景
2. 官廳會計
3. 莊園의 會計
Ⅳ. 유럽地域의 會計發展史
1. 獨逸의 會計史
2. 英國의 會計史
3. 프랑스의 會計史
4. 이태리의 會計史
5. 스페인의 會計史
6. 네덜란드의 會計史
Ⅴ. 結 言

Ⅰ. 中世의 社會 및 經濟思潮의 背景

1. 中世의 社會的 背景

유럽에 있어서 中世는 대체로 서기 500년에서 1500년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이 1000여년 가운데 초기의 몇 세기, 즉 500년으로부터 900년 내지 1000년에 이르는 기간은 가끔 暗黑時代라 불리는데, 이는 西로마帝國의 멸망과 게르만 민족의 침입에 의해 古代의 찬란한 文化가 파괴되고 또 끊임

* 梨花女子大學校 經營學科 敎授

없이 移住와 戰爭으로 사회가 혼란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기인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고 부정확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中世라 칭할 때는 9세기 샤를 마뉴에서 15세기 콜럼부스에 이르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소위 우리가 封建制度라 부르는 제도가 성립하여 그것이 전형적으로 발전을 본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中世社會를 封建社會라고도 한다.[1]

그런데 본래의 이 封建制라는 말은 주로 지배계층에 있어서의 身分的 主從關係와 이들 간에 이루어진 封土의 授受關係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上部構造의 특징을 대체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封建制는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中世社會의 構造와 變化를 보려할 때, 上部構造의 특징을 나타내는 封建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中世社會에 있어서 基本構造와 그 변화의 움직임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上部領域에서의 封建이라는 개념과 함께 그러한 上部領域을 떠받치고 있는 下部構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 下部領域에 있는 經濟構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大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층으로서의 領主가 직접적인 생산자인 대다수의 農民을 토지에 結束시킴으로써 농민으로부터 剩餘勞動을 封建地代라는 형태로 수취하는 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정의는 상부구조의 특징보다는 중세에 있어서 2대 계층인 영주와 농민을, 기본적 生産手段이었던 土地를 매개로 파악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지배적인 노동형태가 農奴, 즉 토지에 결박된 농민이기 때문에 農奴制라고도 불리우는 것이다.

따라서 封建制라는 말속에는 위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유럽에 있어서 封建制의 成立과 그 社會的 構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中世封建社會의 成立

유럽에 있어서 封建制는 대체로 8세기 후반 내지 9세기 초에 프랑크王國

1) 李海周, 社會經濟思想史, 經世院, 1991.

에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封建制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상부구조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封建制의 기원은 게르만 從土制와 로마의 프레카리움(Precarium)에서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로마적 유산과 게르만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해되는 封建制는 封土의 授受關係에 의해 맺어지는 階層的 主從關係를 그 특징으로 한다.

게르만 사회에 있어서 從土制는 원래 게르만의 자유민 사이의 충성의 서약을 통해 맺어지는 강력한 人的 結合體였다. 즉, 그 자신이 戰士였던 게르만의 자유민들은 그들의 自由身分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충성의 서약을 통해 主從關係를 맺고 軍事的 및 人的 結合을 유지하고 강화하였다.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이러한 주종관계는 보다 강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성립된 部族國家는 강한 권력을 가진 국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 그런데 민족의 이동과 정복에서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국왕은 이 토지 중 일부를 공이 있는 貴族, 豪族 그리고 宗敎團體에 分與하고, 또한 이 토지에 대해서는 不輸不入權의 特權까지 부여하였다. 이렇게 토지를 부여받은 자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主權의 지배를 벗어나 자산의 領地를 구축할 수 있었다.

2) 封建制度의 構造

위에서 설명한 봉건제의 성립은 주로 상부구조의 특징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상부영역에 있어서 봉건제의 특징은 封土를 매개로 한 신분적 主從關係이다. 따라서 이를 먼저 살펴보고, 中世의 경제적 단위였던 莊園을 통해 領主와 農民과의 관계를 나중에 보기로 한다.

(1) 封建的 位階制度

토지가 지배적인 경제적 기초였던 封建社會에서 封土로 수여된 토지에는 그 所有權만이 아니라 그 곳에서 행해지는 國王의 課稅權과 裁制權이라는 公權力까지도 동시에 주어졌다. 이러한 封土의 授受關係를 정치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公權의 分割을 의미하며, 이는 分權的 性格이 강한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예속관계가 國王으로부터 직접적 생산자인 農民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피라밋型을 社會階層制를 구성하게 된다.

(2) 領主－農民關係

中世 封建社會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제단위는 莊園이었다. 이 莊園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왕을 비롯한 專門武士階級들이었다. 그리고 이 莊園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계층은 사회계층제의 最下位에 있는 農民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중세에 있어서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과 이들의 剩餘勞動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領主라는 두 개의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관계를 보게 된다.

이러한 領主－農民關係야 말로 中世 封建社會의 社會關係의 기초였으며 모든 발전의 토대였다. 따라서 土地를 기초로 한 領主－農民關係에서 封建制의 본질을 구하는 것이 社會經濟史에서는 통례로 되어 있다.

莊園은 통상적으로는 영주자신의 自己經營에 의해 경작되는 直營地와 농민 자신들에게 분여된 토지로 나뉘어져 있다. 莊園에서 지배적인 노동담당자는 農奴였다. 이들 농민들은 자신들의 분여지를 받는 대신 한 주일에 며칠씩 영주의 直營地에서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보유지에서 나온 생산물 중 일부를 現物이나 돈으로 바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토지보유와 관계없이 영주의 보호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貢物을 바쳐야만 하였다.

2. 中世의 經濟思潮

중세에는 모든 학문의 정점에 神學이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학문도 神學에 예속되어 있었고 基督敎的 敎理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經濟的 觀念도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의 일부분으로서 였다. 특히 封建社會의 經濟的 構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中世敎會는 基督敎的 敎理와 經濟現實을 더욱 쉽게 융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융합은 초기의 敎父들의 가르침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학이 기독교神學의 기초 위에서 성립되었다.

즉, 經濟學은 神學의 기초위에 세워졌으며, 탐욕과 불욕을 비난하고, 개인의 물질적 향상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도움과 내세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정당화 되었다. 이는 基督敎的 經濟論理가 現實的 經濟構造 및 社會制度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物質的 富에 대한 무관심에의 강조는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보다 敎會法學者들에 있어 더욱 강하였다.

그러나 中世 後期에 가까와 짐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교환이 활발해짐으로써 초기 교회가 경제행위에 대해 보였던 硬直性은 크게 완화되었다. 스콜라 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토마스 아퀴나스(Tomas Aquinus, 1225~1274)는 이러한 변화된 經濟現實과 敎理를 일치시키려 노력하였다. 이제는 재산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논의의 초점이 옮겨졌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富가 당연하고 善한 것이라 말하지는 않았지만, 現世의 인간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점차 증가해 가고 있던 交易에 관한 태도에도 변화가 왔다. 비록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문제는 교역의 정당성에 있었으며 이러한 정당성은 '公正한 價格'이란 개념 속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직 富의 원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공정한 價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公正價格이란 개념은 慣行價格(conventional price)이라는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교역에 의해 致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 맡겨두면 재화를 그 價値 이상으로 팔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神의 法에 위배되는 것이고 죄악을 낳는다는 것이다. 交易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었고, 교환하는 쌍방에게 똑같은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세 초기의 사회는 아직 自然經濟가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需要와 供給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상업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관습적 가격이 공통된 평가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역이 우연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에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 先賣買占 獨占을 금지하는 규칙과 최고가격의 설정은 당시의 입법과 도시의 길드(guild)규제에 공통되는 특징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교리에 의해 채색된 經濟論理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封建社會와 불완전하지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합관계는 봉건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終末을 고하게 된다.

Ⅱ.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會計史的 背景

1.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受託責任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 문명은 세계에서 최초의 組織的인 정부를 수립하여 世界最古의 문자와 현존하는 最古의 商業記錄을 남겨놓고 있다. 당시 금과 은을 標準單位로 한 「商人의 통화」라는 記錄이 존재하였다. 그들은 이미 信用의 原理를 알고 있었으며, 어음을 발행한 후 다른 장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다.[2)]

현존하는 모든 資料를 근거로 해서 볼 때, 바빌로니아들은 組織化하기 위하여 記帳하기를 즐겨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流域에 거주하고 있었는 데, 당시 초기의 統治者는 「神의 土地管理者」로서 거의 모든 土地와 家畜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統治者와 被統治者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상세한 受託責任計定書(stewardship accounts)를 초자연적인 지배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함무라비法典과 같은 公式的인 法典이 상업상의 사실을 記錄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였다. 즉, 商人에게 財貨를 판매하는 代理商은 價格을 표시한 契約證書의 교부를 義務化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契約의 法的 效力을 주장할 수 없게 하였다. 비록 아무리 적은 去來라 하더라도, 모든 商業去來는 契約書를 작성하고 契約當事者와 證人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商業去來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商業契約 체결시 法規가 준수되고 있는

2) Michael Chatfield 著, 李正浩 譯, 會計思想史, 景文社, 1985.

가 여부를 監視하는 記錄官을 두기도 하였다. 記錄官은 오늘날 會計士의 前身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관은 契約當事者 쌍방이 합의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나무가지를 필기도구로 이용하여 축축한 작은 점토판에 契約當事者의 性格, 收入·支出의 內容, 체결된 協定 및 그 밖의 필요한 細目을 열거하여 그 계약을 기록하였다.

바빌로니아의 신전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많은 기록관을 行政官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신전이나 왕실에서는 帝國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공물이나 세금의 徵收者로서 기록관들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기록관들은 穀物이나 家畜 및 기타 農産物 등의 現物을 세금으로 징수하였으며, 부패로 인한 損害를 줄이기 위해, 財貨가 도착하면 즉시 品目과 數量을 기록하고 매각·사용 또는 저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在庫調査를 하고 수입·지출상품에 대하여 責任受託履行 報告書式의 計算書를 작성하였다.

2. 이집트의 내부 統制組織

이집트에 있어서의 官廳會計는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記錄이 용이하여 證據書類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바빌로니아와 유사한 형태의 발전을 하였다. 國家로서의 結束力은 王室財政組織의 강약 여부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倉庫에는 물품으로 地方貢稅가 收納되었으며, 그 중에서 부패성이 적은 물품은 中央의 倉庫로 이송되었다. 이들 帝國에서는 記帳에 의하여 결속되어 있었으므로, 기록관들은 "國庫 및 기타 部門등의 全機構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중심적 存在"로 되어 있었다. 각 倉庫에 소속된 기록관들은 물품의 收納 및 使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기록하였다. 文書에 의한 命令書 없이는 누구에게도 國庫로부터 지급되는 일이 없었다. 또한 어떤 한 官吏의 기록이 다른 관리의 기록과 일치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밀한 內部統制組織에 의한 안전성을 더욱 보강하였다. 그리고 기록관의 諸決定은 倉庫의 監督官에 의하여 監査되고, 큰 不正行爲가 있을 때에는 手足

을 절단하거나 死刑에 처하였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중시되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文盲이고 화폐와 같은 통일된 交換手段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會計는 物品의 변동만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金 및 銀은 가치의 尺度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교환수단으로서만 취급되었던 것이다. 단일의 物質로 모든 財貨를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集計 및 合計計算이 극히 곤란하여서 통일적인 會計制度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었다.

3. 그리스의 會計官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시민은 政府財政과 官僚體制에 대하여 진정한 權限을 가지고 있었다. 財政支出水準은 法으로 정해져 있었다. 市民會議의 의원들은 권한을 위임받아 주로 議會를 통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의원들이 財政規制를 관장하고 財政의 收入·支出을 통제하였다. 추첨에 의하여 선발된 10명의 政府會計官은 조세수입을 기록하고 정부의 債務者 目錄을 작성하였다. 최고위의 관리라 할지라도 시민의 主權을 존중하고 있었으므로, 역사상 처음으로 財政의 公開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각 行政官吏의 기록은 그의 任期가 만료하는 때에 政府의 會計監査官에 의하여 검사를 받았다. 神政社會였던 그리스의 國家財産의 대부분은 신전에 축적되었으나, 그 관리는 僧侶가 아니라 國家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會計에 대한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기원전 약 630년 경에" 鑄造貨幣를 발명하였다는 점이다. 會計記錄이 화폐단위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簿記는 한층 더 專門化되었는 데, 특히 商業會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으리라고 짐작된다. 화폐의 사용이 서서히 그리스 사회에 확산되었으며, 會計에 대해서도 점차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文盲이었으므로 去來 즉시 決濟하는 일이 많았다. 일반 그리스인들은 債券·債務를 기록하는 이외에는 부기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그리스인과 그 뒤의 로마인은 통상적으로 화폐라는 共通計算單位로 그들의 모든 재산과 거래를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도 많았다. 재산은 物量으로 표시되기도 하였으며, 貨幣單位로 표시되는 貨幣性 資産은 상이한 都市國家의 상이한 貨幣單位로서 會計帳簿에 혼합되어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銀行業이 다른 고대사회보다 고도로 발전하였던 것 같다. 모든 銀行家는 會計帳簿를 기록하고 있었는 데, 이는 法廷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換錢, 貸出, 預金 등이 업무, 仲介者 및 受託者로서의 업무를 맡았으며, 또한 고객을 위하여 원격지의 도시에 있는 代理人에게 보낸 支給命令書에 의하여 現金對替業務도 하고 있었다.

천여종의 Zenon 古文書에는 그리스-로마時代의 잔존하는 計定書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기원전 256년 이집트가 그리스의 영토이었던 시대에 Zenon은 Apollonius王의 광대한 所有地의 관리자였으며, Ptolemy 2세 재임시 재무장관직을 맡아 責任會計制度를 도입하였다. 모든 去來가 文書化되었으며, 결과의 기록은 비슷한 項目끼리 모으고 난 뒤 總額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하였다. 모든 거래기록은 Zenon이나 그의 보조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票를 붙여서 철해졌다. 部門別 기록은 元帳 비슷한 몇 개의 現金計定, 商品計定 등에 정기적으로 集計되었다. 月次, 年次 및 3年次의 集計表가 작성되었으며 모든 計定書는 監査를 받았다.

Zenon의 古文書는 기원전 5세기로부터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會計制度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계제도는 東地中海와 中東의 도처에 보급되었으며 후에는 로마인에 의하여 채택되고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計定書가 작성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양상을 띠었다고 할지라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Zenon이 記錄을 한 이유는 外部人에 대한 報告나 納稅額의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다만 雇傭員이나 去來處의 竊盜, 詐欺, 非能率 등으로 인한 損失을 밝혀내기 위해서 였던 것이다.

4. 로마時代의 帳簿

로마政府와 銀行家의 會計帳簿는 전통적으로 家長이 기장하여 온 기록

을 보다 정교하게 손질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共和政하에서 로마의 元老院은 貨幣鑄造와 國家財政을 지배하고 있었다. 당초에는 歲出에 관한 권한이 執政官에게 위임되어 있었지만 기원전 443년에는 監察官에게 이양되었으며, 감찰관은 國家財政管理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歲入·歲出은 소수의 財務官에게 위임되어 있어, 그들은 國庫를 관리하고 군대의 경비를 지급하여 정부의 會計를 감독하였다. 그리고 재무관의 감독하에서 國庫記錄官이 가계의 備忘錄에 해당하는 日記帳을 기록하였으며, 日記帳은 現金出納簿와 같은 記錄簿에 매월 요약되었다. 그들은 또한 債權·債務記錄帳(calendarium)도 가지고 있었다. 또 각 財務官들 상호간에는 기록을 서로 檢査·對照하는 제도도 확립되어 있었다. 금전이 國庫에서 지불되기 위해서는 承認者와 文書化된 公式 支拂命令書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자출을 승인하는 權限은 보통 現金을 취급하는 관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公的 會計書는 재무관의 감독하에 있는 監査스텝에 의하여 검증되고 있었다. 재무관은 퇴직시에 자기의 計定書를 元老院과 후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로마에 있어서 商業의 計定書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左右對照의 계정형식을 약간이나마 보이고 있는 銀行家 및 受託者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다. 은행가는 발생한 거래를 備忘用으로 기록하는 日記帳(adversaria), 現金出納簿(codex accepti et expensi), 그리고 일기장의 자료를 분류한 去來處元帳(liber rationum) 3권의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보통 왁스를 바른 목판에 기입되었기 때문에 이들 計定書의 정확한 樣式에 관해서는 거의 알 수 없다. 로마의 은행가는 각 고객의 이름으로 人名計定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장부를 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인의 전형적인 계정은 장문의 문장형식이고, 數表도 없으며, 심지어는 收入·支出의 분류도 되어 있지 않았다. 또 借邊·貸邊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계정의 반대 페이지는 고사하고 평행한 두 欄에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借邊·貸邊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발전되지 않았다. 複式簿記의 본질인 實在計定과 名目計定을 통합하

는 제도도 개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일된 單式簿記制度조차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5. 中國의 會計制度

中國에서 會計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발전을 보여 왔다. 周王朝時代에 官廳會計는 최고조에 달하여 19세기에 複式簿記의 기술이 도입될 때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존속되어 왔다. 周王朝는 夏王朝 및 殷王朝 時代에 시작된 財政管理 및 會計責任의 槪念을 계승하고 확립시켰다. 당시의 사람들은 鑄貨를 사용하였으며, 貸與 및 수요가 적은 재화의 구입을 통한 商品市場의 안정도모 등 中央銀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었다.

周王朝 財政活動의 중심기관이었던 太府는 조세를 징수하고 그것을 다른 정부기관에 배분하며, 모든 歲出을 승인하고 매 會計年度末에는 收支計算書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行政監督은 財政資金이 정교한 基金制度를 통하여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

대재상(prime minister)는 豫算編成過程 및 각 政府部門의 現場監査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양 기능의 구체적인 시행은 司會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中國人은 太陰曆에 기초하여 旬間, 月間, 年間의 豫算報告書를 작성하였다. 旬間報告書는 그때 그때의 상황을 해설적으로 기술한 것이었고, 司會는 이를 無作爲抽出法에 따라 監査하였다. 그러나 月次 및 年次 報告書는 精密監査가 시행되었다. 한편 각 政府機關은 實績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작성하였으며 司會에게 監査받았다. 이러한 監査는 관리의 업적을 중시하는 것이었고, 3년에 한번씩 小宰가 시행하는 官吏試驗의 豫備審査로 간주되었다. 즉 이와같은 시험에 의하여 승진하여 명예를 얻는 자와 降等되어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는 자를 결정하였다.

Ⅲ. 中世의 會計

1. 封建時代의 背景

로마제국의 법률적인 회계절차와는 달리, 中世의 會計는 地方分權化되어 다수의 專門機關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로마시대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서인지, 이들 두 時代에 있어서 會計帳簿를 기록하게 된 것은 雇傭主가 자신의 代理人으로 행동하고 있는 부하를 監視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로마의 簿記方法과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는 수백년 동안이나 유럽 전역에 걸쳐서 租稅를 부과하고 징수하였던 카톨릭교회의 收入·支出會計를 들 수 있다. 이미 6세기에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수입을 보고하기 위하여 執事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敎皇金庫의 代理官이 각 敎區에 배치되어 수입을 로마에 송금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9세기 샤르망皇帝가 王室所有地의 관리 및 국왕에의 보고에 관하여 受託人이 해야 할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규정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것은 計算方法이 유치하고 會計期間도 부정기적이었지만, 유사항목을 하나의 表題밑에 집계하고 예상되는 收入源泉을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한 秩序整然性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王室所有地와 動產에 관한 年次在庫調査도 실시하고 있었다.

노르만 민족에게 정복되기 이전의 英國에서는 귀족들조차도 文盲이 많았기 때문에 11세기까지 財務 資料의 대부분이 口頭로 전달·검증되었으며 文書는 중요사항을 補完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封建社會는 여러 層으로 쌓아 올린 피라밋에 비유할 수 있으며,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일정한 義務의 댓가로 일정한 權利가 보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機構는 많은 權限의 委讓을 필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名目上의 所有者로부터 實際上의 所有者와 使用者에게로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것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會計의 중요한 문제는 主人과 代理人 사이의 垂直的인 意思傳達 문제와 檢證에 관한 문제였다. 따라서 英國의 所有地 會計에서는 莊園의 受託者가 領主를 대신하여 責任受託·履行報告書를 작성하게 되고, 한편 王室財政에 있어서는 徵收 稅額을 기록 및

검증하는 納入制度가 나타나게 되었다.

2. 官廳會計

英國에 있어서 현존하는 最古의 會計記錄은 Pipe Roll 또는 "Great Roll of the Exchequer"인데, 이것은 土地量帳의 評價額이나 州長官 및 그 밖의 관리가 國庫에 입금할 때 제출하는 計算書를 매년 모아 놓은 것이다. Pipe Roll은 1130년부터 700년 동안 국왕에게 지급할 지대, 벌과금, 세금 및 기타 일정한 賦課金 등의 내용과 이들의 徵收狀況 및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費用을 集計하여 이를 文章形式으로 기술한 것이다.

봉건적인 사회환경에서 財務省(Exchequer)은 王室歲入의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國務省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합법성은 主權을 委任받음으로써 나타난 것이었다. 국왕과 신하와의 관계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는 국왕의 과세할 수 있는 權利와 신하의 납세해야 할 義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財務省裁判所 안에 있는 두 부문의 상호관계는 中世簿記의 代理人的 양상을 더욱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Treasurer's Dapartment 혹은 Lower Exchequer(하원)는 通貨를 수령하고 물품으로 지급하는 업무와 아울러 화폐가 「規定된 條件」에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어떤 것은 國庫에 직접 入金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왕과 시민의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였다. 州長官은 民事 및 軍事問題에 관하여 국왕의 代理人 역할을 수행하고 있있으며, 보통 그 州의 중심 城郭에 거주하고 있있다. 州長官은 王室歲入의 징수관이었으며, 또한 固定地代로 貸與한 州所有地의 관리인이기도 하였다. 거기에다 그는 州法廷에서 재판을 하고, 도로, 삼림, 전답의 사용료, 수출입관세, 도시에서의 年貢, 벌과금 및 기타의 조세를 징수하였다.

1) 納入制度

각 州長官은 연 2회, 즉 부활절과 미카엘젤(9월 29일)에 웨스트민스터에

서 시행되는 Exchequer sessions에 참석하도록 소집되었다. 부활절에 州長官은 자기 州에 부과된 稅額의 약반을 Lower Exchequer에 지참하여 납입하였다. 전년도 체납분의 징수액은 Roll과 대조하여 장부에 기록하였으나, 금년도분의 징수액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대신 州長官으로부터 納入金 또는 先納金을 수령한 財務官은 州長官으로 하여금 나무로 된 割符(tally)에 눈금을 새기도록 지시하였다.

州長官은 미카엘젤에 다시 참석하여 王室歲入의 殘額을 납입하고 監査를 받았으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會計이다. 부과금의 반액은 부활절 때에 납입되었지만, 미카엘젤의 소집은 그 잔액 때문이 아니라 연간의 總歲入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이 때 Receipt Roll이 편집되었다. 재무관은 州長官에게 설명준비가 되었는지를 정식으로 질문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재무관은 Pipe Roll의 사본에 적혀 있는 賦課金額을 읽어주고 州長官의 경상비가 전년과 동일한가를 묻는다. 이것들을 Exchequer의 사본과 대조한 후 Roll에 기록하였다.

최종적인 淸算은 바둑판 무늬의 천을 펴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는데, 후에 여기서 Exchequer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 테이블의 한쪽에 州長官이 徵收金과 割符 및 경비지출 증명서를 가지고 앉으면, 재무관은 전체 州의 당해년도의 부과금이 적혀 있는 Exactory Roll을 읽는다. 州長官의 건너편에는 計算官이라는 관리가 앉아 있다가, 국왕에게 납입해야 할 年貢額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둑판 무늬의 정방형 計算板을 내보인다. 그리고 州長官의 割符 「스톡」과 Exchequer의 「포일」의 刻印이 같은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스톡」과 「포일」을 맞추어 본다. 그러고 나면 會計官이 그 금액을 확인해 본다. 會計官이 하는 일은 당해 주화의 純度를 검사하고 1파운드에 대하여 필요한 펜스를 減하는 일이었다. 새로운 割符가 수정된 금액에 따라 만들어진다. 州長官의 봉급과 제경비에 대한 국왕의 승인서가 계산대 위에 제출되면 이를 당해 납입해야 할 금액에서 다시 감한다. 납입금, 割符, 봉급영수증에 의하여 國王의 計算板이 모두 청산되면 州長官의 義務가 이행되는 것이다. 그는 Exchequer의 事務官에 대하여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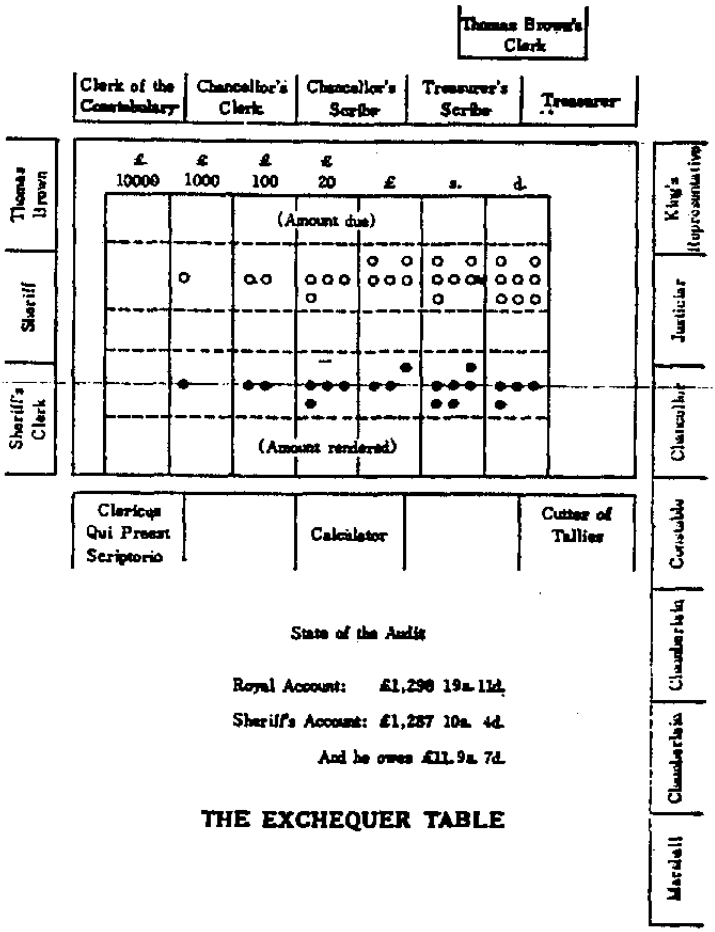

THE EXCHEQUER TABLE

심에 따라 합법적인 계산을 하였음을 서약하고 나서야 퇴장하게 된다.

2) Exchequer會計의 발달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視覺과 口頭에 의존했던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한정된 수단으로서도 會計機能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Exchequer會計의 제일 큰 단점은 目前의 발전에만 지나치게 집

착한 나머지 궁극적으로 會計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를 무시한 점이었다. 로마숫자의 사용은 계산을 불편하게 하고 오류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평행한 行에 대조하여 기입하려는 시도없이 文章體의 計定形式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이다.

Exchequer會計는 왕실의 새로운 收入源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져 갔다. 割符는 영수증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한편, 나중에 가서는 지급어음, 稅金豫想金額, 後日字手票, 換어음 등으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즉 私的債務도 債權者에게 지급할 債務額으로 割符에 새겨 표시되고, 채권자는 적당한 시점에서 割符를 제시하여 지불을 받았다. 赤字財政에 따라 점차 割符가 담보로 제공되는 데 이는 貸與者에게 장래의 稅收入을 수령할 권리가 더 나아가서 租稅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부여하였다. Exchequer의 割符 去來量이 증대함에 따라 이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투기대상으로 변모하게 되어 골드스미스 은행에서 할인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 들어와서는 國庫手票가 점차로 割符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결국 1892년에는 割符가 폐지되게 되었다.

3. 莊園의 會計

中世末까지는 人間의 勞動力이 최대의 生產要素이어서 封建社會制度는 이와 같은 노동력이 토지에 연결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莊園(귀족의 소유지)은 중세 영국의 농장이고 또 공장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莊園社會는 자급자족하는 경제실체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였으며, 외부인과의 거래의 결과는 計定書에 특별히 外務(foreign)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莊園生活의 특징은 代理人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莊園의 공작이나 백작의 생계는 광대한 소유지의 생산력 및 자기가 직접 監督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존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일상적인 관리는 보통 막료와 각 부문 責任者의 계층조직에 위임하고 있었다. 領主가 기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 受託者(steward)의 誠實性과 信用性을 조사하고 損失 및 절도를 예방하며 또한 일반적으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서 였던 것이다. 한편 受託者의 입장에서 볼 때 會計記錄을 자기가 정직하고 훌륭하게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莊園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외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오늘과 같은 財務會計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信用販賣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資産에 대한 在庫調査는 하였으나 貸借對照表는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 領主의 農器具는 소작인의 개인재산과 동일시되었으며 莊園資産의 열람표에는 때때로 現金價格이 재화의 物理的 數量과 더불어 뒤섞여 기재되고 있었다.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말(馬)의 原價와 그것이 먹는 乾草의 원가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諸費用은 여러 가지 활동에 상세하게 배분되어 각기 독자적인 활동이 成果를 표시하였으나, 總損益에 관하여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때로는 計定의 보고내용이 만약 다른 活動을 하였더라면 획득하였을지도 모르는 이득의 推定 때문에 도중에 중단된 채로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莊園의 사무원이 計定書를 기록한 것은 오늘과 같이 企業實體를 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保護를 위하기 때문이었다. 광대한 所有地에서는 監視人(surveyor)이 지내나 소작료 등에 관한 計定書를 수집하여 정부를 만들었는 데, 이 장부는 실제로 수입대금을 회수하고 이를 원천별로 기록하였던 總收入擔當者(receiver－general)가 이용하였다.

莊園의 內部統制節次는 現代企業에 필적할 만하였다. 莊園의 監視人은 회사의 理事와 마찬가지로 會計資料를 사용하여 諸活動을 관리하고 장래의 計劃을 세워야만 하였다. 그의 職務에서는 예고없이 현장에 나가 實査를 하여 그 결과의 좋고 그름을 領主에게 보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去來를 기록하고 記帳業務와 현금취급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이 건전한 실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木材, 肉類, 衣類, 기타 財貨 등의 필요량을 예상하고, 그 예상 필요량에 따라서 受託者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날짜를 결정하고 있었다.

莊園내의 각 작업장에서 기록된 計定書는 內部監査制度에 따라 검증되고 있었다. 어떤 所有地의 下級監督人은 食卓에 제공된 食事를 기록하여 이를 調理室의 재료사용량 기록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다시 조리실에 수입되는 양식이나 食品의 목록과 대조하였다. 食品貯藏 擔當者와 빵 製造人의 기록은 배달된 빵과 消費한 빵에 대하여 일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맥주 釀造人과 창고 관리인은 맥주량을 서로 대조 확인하고 있었으며, 屠殺人은 獸皮에 관해서는 장갑 製造人가 또 肉類에 대하여서는 肉類 貯藏 擔當者와, 그리고 초(燭)에서 사용하는 獸脂에 대해서는 燭商人(chandler)과 대조하고 있었다.

(1) 莊園의 會計監査

거의 모든 大莊園의 계정서는 영주 및 莊園 내의 委員會 또는 특별히 선출된 監査人이 매년 검사하고 있었다. 한 領地內에 여러 개의 莊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莊園을 일괄하여 검사하던가 또는 監査人이 각 농장을 순회하면서 감사하였다. 이 경우의 監査 역시 受託者의 會計責任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監査는 내부통제를 촉진하고 財務諸表의 信賴度를 높이며, 최종적으로 現金을 취급하는 官吏와 部門責任者에게 책임을 해제시켜 주었다. 중세의 모든 會計機能 중에서도 이와 같은 監査가 현대의 것과 가장 유사하며 또 직접적으로 현대의 실무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감사인은 半期別로 경영능률의 평가를 포함한 예비검사 또는 點檢(view)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計定書의 점검은 監査人과 受託者 사이에 미묘한 대립을 생기게 하였다. 受託者는 損失은 과대하게 그리고 收入이나 自然增價는 과소하게 추정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計定書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 監査人의 직무는 부정, 태만 또는 그릇된 판단에 의하여 領主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카엘절에 많은 領地에서는 監査人이 受託者에게 당해년도에 과해진 부과액을 말해 주었다. 그러면 受託者는 자기가 부담한 비용과 장원의 收入責任者에게 지급한 금액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監査人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금액을 計定書에 기입하고 그만큼을 부과액에서 차감시켰다. 그리고 수탁자가 잔액을 감사인

에게 지급하면, 감사인은 履行證(quietus)을 주거나 또는 責任履行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收入責任者에게 인도하였다. 마지막으로 監査人은 이들 개개의 計定書에 小計를 기입하고 最終殘額의 아래에 '下記署名한 監査人이 청취하였음'(Heard by the auditors undersigned)이라는 監査證明을 의미하는 말을 쓰고 그것을 領地 전체의 責任受託 履行報告書에 결합시켰다.

마지막 단계는 年次監査宣言이었다. 그것은 감사인에 의하여 증명된 責任受託 履行報告書를 職務履行에 대해서 精密調査를 받고 있는 영주와 受託者들의 면전에서 낭독하는 것이었다. 각 受託者가 질문에 대답하도록 호명되었고, 이들은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이때 計定을 口頭로 요약하게 된 하나의 명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Exchequer와 동일하게 莊園도 또한 대부분이 文盲인 사회였다는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청회는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 記錄漏落이나 誤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不正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會計의 一般化

영국인은 옛날의 로마인과 같이 監査人을 위한 敎育指導書를 작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計定書를 검사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誤謬와 詐欺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所有地管理에 관한 著書에는 責任受託, 履行報告書를 작성하기 위한 標準樣式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더 나아가서 13세기의 농업 호황은 莊園의 관리와 감사인의 부족을 초래하여 莊園會社가 옥스포드대학의 敎科目의 일부로 채택되기까지에 이르렀다. 監査人을 위한 指導書와 같이 이와 같은 정식훈련이 所有地會計의 실무를 표준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會計에 있어서의 繼續性, 比較可能性과 같은 현대의 논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봉건적 환경 역시 그 시대 특유의 會計技術을 즐겨 사용한 것 같다. 市政府, 修道院, 莊園, 家庭, 同業者길드, 위십플 컴퍼니(worshipful companies) 등에서 責任受託.

履行報告書(charge and discharge)簿記와 責任監査의 전통이 계승되

었다. 모든 종류의 計定書를 農事時期와 일치되고 있었다.

Ⅳ. 유럽地域의 會計發展史

1. 獨逸의 會計史

(1) 獨逸 中世社會의 背景

오늘날 獨逸이라 불리는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게르만민족은 인도·유럽語族에 속하며, 발트해 方面으로부터 남하해 온 遊牧民族이다.

당시 그들의 社會組織은 자연발생적인 血緣關係를 기초로 초목이 풍부한 목초지를 찾아 다니며, 生産手段이 풍부한 牧地의 共同所有에 기초한 共同 勞動과 共同 消費를 주안으로 하는 氏族組織이었다.[3]

기원전에 게르만民族이 게르마니아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一部는 정착 지역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過程에서 게르만共同體 構成員의 활력도가 높아지고, 自主的 農業經營이 되도록 生産力을 발달시켰다. Julium Casar(줄리우스 케잘) 이후, 1세기 반을 경과하고 타키토우스 時代에는 그의 저서 「게르마니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半血緣的 半地緣的 團體로서 農耕生活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50개의 部族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고유의 지역에 독립적으로 定着하게 되고, 각 부족은 一人의 王이나 少數의 首長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으며, 그 內部로는 그리시아·로마의 도시국가에 있어서 정확한 私的 所有關係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직도 原始共同體的인 平等의 原理를 남기고 있다.

이미 게르만민족의 獨逸은 금속공업이나 방직공업이 발달하게 되어 貿易도 로마에 국경을 接하는 지방에서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상황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은 아직 金屬貨幣를 알지 못하고 있어 교환활동은 아직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타키토우스로부터 약 300여년은 史料의 부족으로 단편적인 내역밖에 남

---

3) 林 良治, ドイツ簿記會計學史, 稅務經理協會, 1982.

아 있지 않으며, 적어도 4세기 후반으로부터 6세기까지의 200여년에 걸쳐 게르만민족이 계속 대이동을 함으로써 초기의 사정이 자명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유럽에도 大轉換이 일어나게 되었다. 유럽은 이 시대에 古代的인 것이 점차 사라지고 혼란과 동요의 시대를 거쳐 中世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 民族大移動이 장기간 지속되고 오랜 기간 정치적 변동 후에 莊園을 기초로 한 主從關係에 의한 계급조직을 갖는 社會制度와 封建制度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게르만적인 所有形態는 노예제도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移動, 征服이라는 歷史的 事件을 지나서 古代 로마의 生産力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封建制까지 발전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各種 私有財産의 발생과 地主의 세습화가 상호결합되어 대토지 소유의 貴族階級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8~9세기에 들어서는 종래 大地主에 불과하였던 귀족이 차례로 公的 支配權(立法, 裁判, 課稅權)을 획득하고 차례로 私有地를 領地化하였다. 따라서 8~9세기에 성립된 大土地 領有制에 기초한 封建關係는 그 후 다시 발전·보급된 上下主從의 身分關係를 固定化하여 11세기로부터 13세기에 걸쳐서 頂点에 달하였다.

(2) 中世都市의 商業帳簿

중세에 라인강의 마인로, 도나우강의 레겐즈브르그 등이 交通要路에 잉여생산물과 교환을 위한 市場이 생성되고 그 개최도 점차로 定期的으로 되고 回數도 빈번하게 되었다.[4]

생산물의 交換을 매개로 하여, 兩者를 유통시켜, 商品 및 貨幣經濟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내시장을 성립시키는 것과 같은 방향을 유도하게 되어, 前期的인 商業資本이 활발하게 되고 상품의 集積을 크게 하고 시장은 都市形態를 갖추게 된다.

당초 이러한 과정속에서 성립된 도시는 국왕이나 영주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 따라 生産力이 증대되고그것은 스스로의 經濟力과 團結

4) 井上 淸, ドイツ簿記會計史, 有斐閣, 1980.

力으로 自治權의 획득을 위하여 封建勢力과 대항하게 되고, 국왕이나 영주의 지배로부터 이탈되어 自由都市를 성립시키게 되었다. 완전한 自治權을 획득한 封建諸侯와 동등한 지위까지에 도달한 것이 13세기에 라인·도나우 兩流域에 몇 개가 형성되어 13세기 중반에 류베그를 盟主로 하여 결성된 한자同盟에는 80개에서 90개의 諸都市가 참가하게 되었다.

1) 한자都市의 帳簿

현존하는 독일 最古의 商業文夫는 이러한 류베크에 살고 있는 Witterborg家의 장부로서, 1300年代 前半에 주인 Heman(~1937/1938년)과 夫人, 子弟 요한(~1363)의 3대에 걸쳐 주입된 것이다.[5]

簿記의 記入은 라틴어에 의하여 1329년으로부터 「遺書, 본인은 Herman, Witterborg는 40마르크分의 銀貨로 연대보증인을 얻고 60마르크의 銀貨를 요한·보게나에게 貸付하였다」라는 要領으로 시작되었다. 다라서 出資關係나 債權에 관한 약간의 기입을 한 후에, 다음에는 夫人의 記入이 동일한 라틴어로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覺書, 본인은 잔콕토·야고보가 2個의 相續財産의 地代 16마르크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식이다. 또한 그 子弟의 기입의 前半은 라틴어로, 後半에는 독일어로 기입되었다. 즉, 「覺書, 본인은 요한·비터버그가 류베크市로부터 收入利子 5마르크의 권리를 갖는다(Notum sit, Quod ego Johannes Wittenborch habemus um civitate lubecensi 5m. redittus).」 내지는 「覺書, 본인은 요한·비터버그가 친척인 베르톨트에서 5.5마르크를 본인의 5.5마르크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출자한다(Wittellic si dat ie Jo. Wittenborch gebe dan mime Heechte Bertelde $5\frac{1}{2}$m. Tegen $5\frac{1}{2}$m. in humpenighe)」라는 형식으로 기입되었다.

2) 南獨逸의 帳簿

北獨逸의 한자 地方으로부터 1300年代에 수개의 帳簿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과 이러한 정도의 記帳水準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무대는

5) 井上 淸, 獨逸簿記會計史, 有斐閣, 1980.

北에서 南으로 옮겨가고 1300년대 후반에 레겐스브르크에 記入된 Runtinger家의 帳簿를 눈여겨 볼 수 있다.

당시의 남독일에도 北方貿易圈과 地中海 貿易圈의 중개지로서 몇 개의 都市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레겐스브르그는 그 한 例가 된다. 또한 Runtinger家의 帳簿에는 同家門의 업무내용이 되는 商品賣買나 換去來를 반영하는 각종의 기록이 보여지지만, 그것도 아직은 상호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私的인 記錄이 포함됨으로써 순수한 資本記錄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財産管理의 측면에서 사용인의 책임발생과 소멸을 對照 表示한 部分은 지금까지도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計定의 발생에 第一步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사용인의 換業務를 代行시키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을 위한 左右의 對項을 두고, 左項에는 해당 사용인에게 주어진 것을, 右項에는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明記하게 된다.

3) 15世紀의 記帳樣式

① 單式記入과 複式表示方法

15세기에 접어들어 거래의 兩面 認識을 기초로하여 이것을 羊式記入으로 계정면에 표현하는 商業帳簿가 몇 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家計에 관한 記入이 자취를 감추고 라틴어나 로마숫자 대신에 독일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常用되었다. 그 중 하나가 15세기 前半에 북독일의 단찌히에서 記入한 요한·핏쓰(Pitz)家門이 독일 전체에 걸쳐서 상품의 중개 내지 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장부에도 이를 反映하여 내용적으로는 중개·매도·매입으로 3分하여 記帳樣式으로서는 먼저 살펴 본 루팅가家의 帳簿와 동일한 上下連續式과 左右對照式의 계정형식이 併用되었으며, 注目되는 것은 去來의 二面認識과 單式記入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체계적으로는 거기에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항목은 좌측에 매출금액을 기입하고(單式記入), 그것은 동시에 외상매출금의 증가를 의미하고(複式表示), 그러한 이유로 회수는 동일항목의 우측에 記入하고(單式記入), 그것을 외상매출금의 감소와 현금

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複式表示). 다만 거기에서 賣出과 賣入, 現金 및 外上賣出金과 外上賣入金, 資本의 각 잔액이 어느 정도 관련되고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동일한 시점에 남독일의 뉴른베르그에서도 우루리히·쉬타크가 동일한 요령으로 1권의 帳簿를 記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債券計算 및 財産計算의 兩面에서의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 전자에 있어서는 매출과 매입이 관련되고 있으며, 후자는 필요에 응하여 잔액이 산출되고 있다.

② 樣式의 整備

15세기 전반의 南北獨逸에 있어서는 아직도 완결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複式簿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4세기에는 記帳 範圍가 자본운동의 부분에서 全體로 확대되고 기장양식도 敍述式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서는 자본운동을 전영역에 걸쳐서 計定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記帳技術을 상인의 실천사항으로 하였다. 記帳範圍는 그 대상으로 규정된 資本의 사용가치와 持分關係와의 양측면에 미치고 있다. 記帳樣式은 양측면에의 증감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구체적인 左右對照, 그리고 나아가서는 上下連續의 計定形式을 채택하고 있다. 그 記入은 去來의 兩面性에 따라서 질서있게 행해지고 있다.

③ 永續的 企業形態

15세기 후반에 들어서 決算이 행해졌다. 더구나 定期的으로 행해졌으며 1491년 가을부터 1494년 가을까지 Blum 一家 兄弟는 半年마다 決算을 행하였다.[6] 또한 Jacob Ehinger의 Vorgang Ferva회사는 그 정관에 의하여 每年 決算하였다. 그러나 Schreiber와 Detman의 회사에서는 정관에 2년마다(1491년, 1493년, 1495년) 결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도 기업에 따라서는 複式出資者의 존재는 정기적 결산에 의한 持分確定은 不可缺이 되고 있다.

당시의 독일, 특히 남독일의 諸都市에서는 커다란 經濟的 繁榮을 나타내

---

6) Blum 등의 회사의 결산은 Dietz의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Dietz, Frankfurter Handelsgeschift, Frankfurt, 1910.

고 있었는데, 그 기초가 된 것은 個人企業이 아니라 社會企業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었다. 즉 南獨逸의 資本의 현저한 발전에 있어서는 구 주요부분이 되는 個別資本은 전적으로 社會企業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역으로 會社形態에 의한 資本의 集積이 당시 資本의 발전에 의한 필연적 요구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貨幣가 資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商業, 高利貸付, 産業의 구체적 諸事情에 응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의 증대에 따라서 우월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會社形態에 있어서의 자본의 集積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였다.

④ 定期的 配當

따라서 永續性을 갖는 당시의 會社·企業에 있어서 이미 經濟史家에 의한 硏究成果가 多數 발표되고 있는데, 南작센의 特許權去來會社(Privilegierte Gesellschaft des Zinnkaufs)에 관한 예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會社의 設立은 일찍이 15世紀의 90년대, 또는 그 이전과 같지만 자본은 주로 작센侯의 중심 출자로 하였으며, 그 금액은 약 30,000 그루덴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자자의 姓名 및 出資額은 회사의 장부에 기입되고 그것에 대하여 증서를 교부하였다. 사원 중에서 주요한 것은 重役으로서 기업의 전체를 통제하고, 그 밑에 2인의 Faktoren 또는 Dikener가 영업의 실무를 행하였다. 또한 그 2인의 사원으로서 출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每年 드레스덴에서 연회가 열리고 利潤의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定期的 配當의 前提로서 資本의 記錄計算手段으로서 複式簿記로서 決算手續이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2. 英國의 會計史

1) 英國 會計

英國에 있어서는 複式簿記가 전달한 時을 가장 오랜 경우에는 英國東印度會社의 商館長인 Richard Cocks의 1616年 3月 9日의 日記의 첫번째 페이지에 Turkey史의 책자와 貸借의 책자(a book of form of debitor and

creditor)인 簿記書를 Nealson 氏에게 貸與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商館의 會計帳簿(分介帳 1620~24年, 元長 1624~26年)에는 이태리式 貸借帳簿가 사용되고 있다.[7]

A. H. Woolf는 Paciolo의 「簿記論」의 번역이 1543년 英語簿記書로 이루어진 것은 수학교사인 Hugh Oldcastled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태리式 貸借簿記式을 설명하는 簿記書가 Jan Ympyn Christoffels에 의하여 네덜란드語와 프랑스語로 Nieuwe Intructie, Nounelle Intruction 1543년에 번역되었으며, 이 책은 去來記帳例의 부분을 제외하고 4年 후에는 英譯되어 "A notable and very excellent works"라는 書名으로 출판되었다.

Woolf의 설명에 의하면 Ympyn의 簿記書는 Paciolo 簿記論의 改作, 번역 혹은 적어도 그것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Ympyn의 부기서와 Paciolo 부기론과의 차이는 제24장 이후의 장부절차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형태적으로는 Paciolo 簿記論은 최종의 페이지에 적어도 4개의 元帳計定記入例(人名計定 3개와 現金計定)를 표시하고 있으나, Ympyn 부기서에서는 期初財產目錄, 分介帳, 元帳 및 일련의 記帳例示를 本文의 몇 배가 되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태리式 貸借簿記法을 설명하는 簿記書가 네덜란드語와 프랑스語로 출판되고 同…에 Oldcastle에 의하여 英語로 번역된 것은 네덜란드, 프랑스 및 英國 各國의 최초의 簿記書가 된다. 따라서 1543년 簿記史 硏究上 특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8]

2) 英國의 會計論文

London 東印度會社(The Governmen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로서의 영국의 東印度會社는 1600年 勅許에 의해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東印度會社와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을 대신하여 제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향료 등을

7) 小島佐夫, 英國簿記發達史, 森山書店, 1971.

8) 片岡義雄, 片岡泰彦, ウルフ會計史, 法政大學出版局, 1977.

주대상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다. 英國會計史에 관한 中世紀 당시의 문헌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9]

1) James Peele : The Manner and Forum How to Keep a Perfect Reckoning, London, 1953.

2) John Wellington : A Brief Instruction, Antwerp, 1967.

3) James Peele : The Pathe Waue to Perfectness in the Accountes of Debitour and Creditour, London, 1569.

4) John Mellis : A Brief Instruction and Manner, London, 1588.

5) I. Carpenter : A Most Excellent Instruction, 1632.

6) Richard Dafforne : The Merchants Mirrour, London

3. 프랑스의 會計史

複式簿記로서 현존하는 세계 最古의 장부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1340年에 출발한 財務官 Massari의 장부이다. 보통 장부는 政務官의 임기 만료시에 每年 更新되었다. 적어도 1339년 이전에도 複式簿記가 있어 온 것으로 推定되나, 1939년의 민중봉기로 그 기록이 소실되었으며, 複式簿記가 채택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후에 제노아市 會計는 銀行方式을 사용하여 왔다.

현재까지 발견된 複式簿記와 관련된 프랑스의 最古의 기록은 1320~1323년 日附印이 찍힌 채권, 채무를 기록하고 있는 리용의 한 라샤업자(성명 미상)의 장부에 元帳의 단편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뉴른베르그의 라샤업자의 帳簿(1320~1307年)와 동일한 제3자와의 計定을 포함한다. 특히 리용의 라샤業者는 手帳(quert)과 그 存在는 알려져 있으나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朱色帳(paper vermeil)이 기록되고 있다.

Forecalquier의 라샤業者로서 공증인인 Martre Ugo Teralh의 日記帳에는 1330~1932年의 日附印이 찍혀 있으며 일종의 信用去來를 나타내고

---

9) 茂林虎雄, イギリス東インド會社會計史論, 大東文化大學 經營硏究所, 1994.

있다. 各 項은 3개 欄으로 구분하여 ① 좌측란에는 좁은 란을 설정하여 고객의 居住地方名을 기술하게 되고 ② 中央의 넓은 欄에는 去來의 명세를 記入하여 주로 고객명, 판매 품목명, 지급기일, 引渡日 등이 기재되었다. 때로는 公證人의 보증이 계약에 미치는 效果와 아울러 공증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있다. ③ 우측 란에는 지급조건이 기록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할부에 의한 지급내역의 記述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경우에 고객은 약속을 증명하는 證書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Maltre Ugo Teralh의 帳簿내에 지급약속을 記入하고 있다.

또한 14世紀의 현존하는 日記帳은 칼 캇손의 랏샤업자 겸 商人인 Jean Sanal의 것이다. 그것은 그 일부밖에 現存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단편적 내용으로는 이전의 리용의 라샤業者의 Maltre Ugo Teralh의 기록과 유사하다.

中世의 프랑스의 商業記錄 중에서 비견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Montaubau의 商人 겸 銀行家 보니(Bonis)兄弟의 帳簿이다. 그것은 Forestie에 의하여 19세기말에 公刊되고 연구된 것이다. Bonis형제는 광범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한 地方商人이었다. 즉, 라샤, 香料, 약품이 주요 상품이었다. 그 兄弟는 상업을 영위하면서 銀行業을 수행함으로써 他人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즉, 預金을 수납하고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으며, 利子를 받고 貸出을 하였다.

4. 이태리의 會計史

(1) 이태리會計의 起源說

複式簿記의 발생을 이태리 北方의 諸都市에서 찾아보는 사람들의 연구방향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그 하나는 去來의 貸借兩面의 認識, 計定形式의 生成, 計定組織의 體系化 등 複式簿記의 기술적·형식적 측면의 生成發展을 그 독자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形式的 側面도 중요시하지만, 다시 일보 전진하여 그러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 根本的 過程을 社會經濟的 要因을 구하는 데서 풀이하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는 주로 R. Brown,[10] B. Penndarf,[11] E. Peragallo[12]의 諸研究에 기초한다.

① Genoa說

베스타(Fabio Besta)의 연구(La Rajioneria, 1922)는 會計史의 연구에서 성서와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複式簿記가 최초로 사용된 1340年의 會計帳簿는 제노아의 財務官이 帳簿였다. 재무위원 Massarii Communis는 금전출납을 관리하고 금전의 收入·支給을 기록하고 제노아國家財政을 기록한 것이다. 이 제노아 재무관의 帳簿로 複式簿記를 사용한 근거로는 이러한 人名, 財貨, 各目의 諸計定形式으로 나타내고, 貸借의 좌우 대립적인 계정형식이 이미 사용된 것과 더불어 나아가서 商品計定의 구성, 이것과 損益計定과의 사이에 보여주는 組織的 關聯性때문이다.

② 타스카니地方說

언어학자인 카스테라니 교수(Prof. Arrig Castellani)는 원래 이태리語의 언어학자인 연구를 위해서 이태리語로 기록된 1300년 경의 타스카니地方에 현존하는 초기의 原文의 수집을 행하고 그 原典資料를 "New Texts of Florence(Nouvi testi florentini)"라는 册名으로 1952년 플로렌스에서 출판하였다.

그 원전에 의한 1300년 이전의 계정은 전적으로 Paragragh형식으로, 즉 수취계정의 경우에는 최초에 借邊記入(devitentry)을 하고, 지급계정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貸邊記入(crditentry)을 하고 난 후에 약간의 공백을 둔 것이다.

③ 롬바르디地方說

複式簿記의 본질적 요건으로서, 去來의 複式記入과 貸借平均, 計定의 포괄적 조직, 所有主 持分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메리스와 일치하는 見解를 가지나 메리스가 貸

10) Richard Brown,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cy, 1905.

11) Balduin Pendarf, Luca Pacioli, Abhand iiber die Buchhaltung 1491, 1933.

12) Edward Peragallo, Origin and Wvolu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1938.

借左右對照的인 計定形式을 複式簿記의 본질적 문제로는 보지 않고 형식은 다만 便宜性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계정을 어떠한 형식이라도 장부는 貸借平均이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反對의 입장을 보이는 Tommas Zerbi가 있다. 그는 貸借左右對照的인 計定形式의 존재와 複式簿記를 연결시켜 그 計定形式의 形成을 複式簿記의 본질적 요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메리스가 계정형식이 없어 貸借平均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오히려 반박하면서 「貸借左右對照的인 形式, 즉 表形式(tabular form)」은 예비적 단계로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13] Zerbi는 미라노에 있는 보코니商科大學(Universita Commerciale L. Bocconi)의 회계학 교수로 「複式簿記의 起源(Le Origine della partita doppia, 1952)」에서 複式簿記에 대한 尺度와 미라노中心의 롬바르디地方을 중심으로 하는 複式簿記의 起源을 주장하고 있다.

(2) 14世紀의 工業會計의 發展[14]

가) Peruzzi의 會計(Florence, 1335年)

나) Commune of Genoa의 財務官의 會計(Genoa, 1340年)

다) Datini의 商業會計(Florence, 1366年과 1383年의 帳簿의 比較)

라) Del Bene의 工業會計(Florence, 1383年)

마) Datini의 工業會計(Florence, 1395年)

(3) 15世紀의 商業 및 工業會計의 發展

가) Soranzo, Padua, Barfasigo의 會計(Venice, 15世紀)

나) Borromep 商會의 會計(Milano, Bruges, London 1436~1439)

다) Cotrugli 會計(Napoli, 1458年)

라) Paciolo의 會計(venice, 1494年)

(4) 16世紀의 商業 및 工業會計의 發展

가) Medici 商會의 會計(Florence, 16世紀)

나) Schreiber와 Gottlieb의 會計(獨逸1523年, 1531年, 1546年)

---

13) R. de Roover,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95, p. 411.

14) 早川 豊, 工業會計發達史, 森山書店, 1974.

다) Tagliente와 Manzonic의 會計(이태리, 1525年, 1534年)

라) Oldcastle(영국, 1543年)

마) Ympyn의 會計(벨지움, 프랑스 1543年 : 영국 1547年)

바) Schweicker와 Mennher의 會計(독일 1549年 : 프랑스 1550年, 1565年)

사) Peele의 會計(영국, 1553年, 1569年)

아) Casanova의 會計(Venice, 1558年)

자) Plantin의 工業會計(벨지움, 1563~1567年)

차) Weddington과 Petri의 會計(영국 1567年 : 네덜란드 1576年, 1585年)

5. 스페인의 會計史

스페인이 最古의 簿記 會計書가 되는 것은 1552年 Burgos에서 出版된 디에고 · 델 · 카스틸로(Diego del Castillo)의 「計定論」(Tratado de cuentas)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라곤 地方의 malina에서 태어난 法律家, 數學者로서 그 「計定論」은 당초 라틴語로 쓰여졌으나, 카르로스 5世(1516~1556年)의 요구로 카스티리아語로 번역되었다. 그것은 諸計定, 회계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장부, 장부작성 및 장부에 영향을 주는 제 법률과 규칙 등을 취급하고 있다.

제2의 부기 · 회계서는 가스파르 · 데 · 텍사다(Garpar de Texada)의 算術實務全書(Sum a de arithmetica Practica, 1546年)로서 上位계층의 사람들의 재산을 위한 회계가 제1장에 포함되고 있다.

저자는 스페인의 저명인 우고 · 이 · 페드로 · 데 · 우리에스(Ugo · E · Petro · de · Uries)의 신하였던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算術實務全書」는 64페이지의 책자로서 去來의 계정과 관련된 수학적 방법으로 대부분을 접하고 있으며, 簿記 · 會計에 관한 부분은 54~58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單式記入으로 주인의 簿記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6권의 帳簿를 사용하고 있다.

① 人頭稅(小作料) 또는 延滯金에 관한 帳簿

② 管理人 또는 管轄地에 관한 帳簿

③ 領地에 관한 帳簿

④ 日常의 計定에 관한 帳簿

⑤ 特殊計定에 관한 帳簿

⑥ 會計係에 관한 帳簿

스페인이 발달된 簿記를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카스티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일찍부터 기업적 정신이 왕성한 카타르니아의 바르세로나에서였다. 카타르니아人들은 본래 儉約精神에 철저하고 海外雄飛의 정신이 높고, 상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13世紀에 들어서는 일거에 地中海世界에서 政治的 第1人者의 지위로 약진하였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南프랑스의 랑그도크의 도우르즈에 이르는 향료무역과 地中海世界의 產業을 취급하여 나폴리로부터 부리쥬에 이르는 貿易活動으로 베니스, 제노아의 상인들과 利害를 걸고 경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1420년까지는 北區貿易의 중심지 뷰리쥬까지 第2의 세력을 가지고 極東市場을 장악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에 대해서도 최정상의 집단이었다.

6. 네덜란드의 會計史

Ympyn, Weddington의 簿記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6世紀 Antwarp에서는 그 市場의 特殊性을 반영하여 이태리式 簿記法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나, 16世紀末이 되어서는 새로이 전개되어 簿記法의 지도·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16世紀末의 Antwarp에서는 수 많은 簿記書의 저작자가 나왔으며, 분개법칙을 제시하고 啓蒙的 指導를 시도하는 저서가 출간되었다. Antwarp의 몰락과 더불어 世界商業의 中心은 北上하여 Amsterdam으로 이행하여 왔다. 北유럽, 西유럽, 南유럽 및 地中海를 직접 연결하여 世界商業의 擴大·繁盛化는 상인들에게 종래에도 늘어나서 簿記法 習得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1576년 Nicolaus Petri Daventriensis는 「이태리式 簿記」(Boeckhouwen op di Italiaenschen maniere(1588年 再版, 1595年 改正增補)을 출판하였고, 다시 1583년에는 「計算과 簿記의 實際」(Practigue on te leeren rekkenen, Cijpheren, ende boechouwen met die regel coss, en geometrie zeer profitteijcken voor coopuyden), 1583年(再版 1591年, 改正增補 1598년, 1605년, 1635년)을 출판하였다.

V. 結 言

中世紀의 유럽地域의 簿記 · 會計史를 獨逸, 英國,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를 諸國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簿記의 發生源泉地는 로마, 베니스, 제노아의 起源說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의 모든 地域에서 사용하여 온 부기는 이태리의 商業都市에서 사용한 簿記를 기초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 번역되어 擴張되어 왔다.

또한 초기에는 單式記入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는 점차 발전하여 複式簿記로 發展하여 왔다.

Analias C. Littleton의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1933)"에서는 15世紀의 商業과 貿易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사람들은 帳簿記入方法을 複式簿記에 의해 발전시켰다. 19世紀에 들어서서 당시의 商業과 工業의 飛躍的인 前進에 따라 사람들은 複式簿記를 會計에 발전시킨 것이다. Littleton은 인류의 문명과 그 기원을 會計의 歷史속에서 15世紀와 19世紀를 함께 硏究의 초점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複式簿記보다 약 200년이 앞선 12세기경에 「四介松都治簿法」이라는 開城簿記가 있었음이 전해져 오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15]

---

15) 玄丙周, 四介松都治簿法(全) 金璜植 · 裵俊汝併閱, 京城, 德興書林, 1916.

參考文獻

1. 南相午, 會計理論, 日新社, 1987.
2. 미카엘 체트필드 著, 李正浩 譯, 會計思想史, 景文社, 1985.
3. 李海周, 社會經濟思想社, 經世院, 1991.
4. 玄丙周, 四介松都治簿法(全) 金環植・裵俊汝併閱, 京城, 德興書林, 1916.
5. O. テン・ハーウェ 著, 三代川王秀 譯, 會計史, 稅務經理協會, 1975.
6. ヴャン フーラスティエ 著, 山浦漢字 譯, フランス會計學, 東京 白水社, 1973.
7. 久野秀男, 英米(加)古典簿記書の 發展史的 硏究, 學習院, 1979.
8. 茂林虎雄, イギリス 東インド會社會計史論, 大東文化大學 經營硏究所, 1994.
9. 米川伸一, 經營史學－生誕, 現狀, 展開, 東洋經濟新聞社, 1977년.
10. 白井佐敏, 會計思想史序說－複式簿記와 損益計算, 白桃書房, 1980.
11. 本田耕一 譯, パチョリ簿記論, 現代書館, 1975.
12. 泰村信吉, 會計學說史－近代會計學의 展開, 同文館, 1980.
13. 小島男夫, 簿記史論考, 森山書店, 1964.
14. 小島男夫, 會計史入門, 森山書店, 1987.
15. 小島男夫 編, 簿記史硏究, 大學堂書店, 1975.
16. 小島男左夫, 複式簿記發生史の硏究, 森山書店, 1961.
17. 小島佐夫, 英國簿記發達史, 森山書店, 1971.
18. 岸 悅三, 會計生成史－프랑스商事 王令 會計規程硏究, 同字館, 1980.
19. 林 良治, ドイツ簿記・會計學史, 稅務經理協會, 1982.
20. 田中藤一郎, 複式簿記發展史論, 評論社, 1961.
21. 井上 淸, ドイツ簿記會計史, 有斐閣, 1980.
22. 井上 淸, 獨逸簿記會計史, 有斐閣, 1980.

23. 早川 豊, 工業會計發達史, 森山書店, 1974.
24. 中野常男, 會計理論生成史, 中央經濟社, 1992.
25. 泉容勝美, 複式簿記生成史論, 森山書店, 1980.
26. 清水悅男, 會計小史, 文人書房, 1959.
27. 片岡義雄, Paciolo「簿記論」의 硏究(第2版), 森山書店, 1967.
28. 片岡義雄, 片岡泰彦, ウルフ會計史, 法政大學出版局, 1977.
29. 片岡泰彦, ドイツ簿記史論, 森山書店, 1994.
30.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Russell & Russell, 1966.
31. B. S. Yamey,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y Manuscript on the Art of Bookkeep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5, No. 1, Spring, 1967.
32. E. Paragallo, Origin and Evolution of Double Entry Bookeeping, New York, 1938.
33. R. de Roover,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55.
34. I. Carpenter, A Most Excellent Instruction, 1632.
35. James Peele, The manner and forum how to keep a perfect reckoning, London, 1953.
36. James Peele : The Pathe ways to Perfectness in the Accouters of Defitour and Creditouir
37. John Mellis, A Brief Instruction and Manner, London, 1588.
38. John Weddington, A Brief Instruction, Antwerp 1960, London, 1569.
39. M. Chatfield,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Holt Reinhardt & Winston Inc. New York, 1973.
40. Richard Dafforne, The Merchants Mirrour, London.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會計史的 考察

高 承 禧*

目 次

Ⅰ. 問題의 所在
Ⅱ. 複式簿記의 發生史的 背景
1. 複式簿記의 生成要因
2. 複式簿記의 發生史的 背景
Ⅲ.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形成過程
1. 人名計定의 嚆矢
2. 計定形式의 發展
3. 複式記入의 範圍擴大
Ⅳ. 中世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形態
1. 「프로렌스」의 商業帳簿
2. 「제노아」市政廳의 財務記錄
3. 「베니스」의 會計帳簿
Ⅴ. 「파치오리」와 世界最初의 複式簿記書
1. 「파치오리」의 生涯와 業績
2. 「파치오리」 簿記書의 構成內容
Ⅵ. 中世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特徵
Ⅶ. 맺는말

Ⅰ. 問題의 所在

人類文明의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簿記의 濫觴은 「에집트」,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그리스」 및 「로－마」 등의 고대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이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 것은 中世 「이탈리아」의 商業都市가 형성되면서 부터라고 한다.[1] 십자군 전쟁 이후 地中海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商去來가 융성하던 時代에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는 商業이 勃興하고 「콤멘다」(Commenda : 冒險貸借)와 같은 형태의 企業이 소유하는 財産을 記錄計算할 필요가 漸增하면서 부터, 簿記는 複式記入의 형태를 띄기 시작하였다. 환언하면, 複式簿記는 原始 商業資本의

* 檀國大學校 商經大 敎授

1) 片岡義雄, 「パチョーリ簿記論の硏究」(東京, 森山書店, 1974), p. 307.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商人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활발한 상업활동이 기대되던 中世「이탈리아」의 都市國家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中世「이탈리아」에서 발생한 複式簿記는 당시의 융성했던 商業의 발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金融業의 出現과「콤멘다」의 발달도 複式簿記의 형성에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한다.[2] 金融業에 있어서는 業務의 성질상 많은 고객과 계속적인 去來를 하게 되고 고객에 대한 人名計定으로서의 기록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콤멘다」에 있어서도 조직상 두 사람 이상의 資金과 勞務를 제공하여 공동기업의 형태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社員間의 손익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록계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당시「이탈리아」의 商業都市에는 複式簿記의 형성에 필요한 社會經濟的 環境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複式簿記는 상업자본주의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하고 기업의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으며 경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複式簿記의 自然發生的인 발달과정을 고찰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會計史의 정립을 위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本稿에서는 複式簿記의 發生史的 背景,「이탈리아」複式簿記의 形成背景과 그 형태 및 세계최초의 簿記書로 알려진「파티오리」의 著書를 중심으로 하여, 1211年부터 1494年까지에 이르는 中世「이탈리아」複式簿記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整理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Ⅱ. 複式簿記의 發生史的 背景

1. 複式簿記의 生成要因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複式簿記의 生成過程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지고

2) 上揭書, pp. 307~308.

있지는 않다. 現存하는 會計帳簿와 實務에 관한 記錄의 斷片들을 통하여 類推해 보면, 결코 複式簿記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어느 한 時代의 所產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進化되어온 것임이 분명하다. 「로－마」는 하루 사이에 建設된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複式簿記의 구조는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會計學의 母胎가 되는 複式簿記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소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複式簿記를 발생하게 한 要因, 즉 경제사회가 進化하는 과정에서 複式簿記가 필연적으로 生成될 수 밖에 없었던 기본요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리틀톤」敎授에 의하면, 複式簿記의 生成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前提가 제시되고 있다.[3)]

1) 實質的 要因

① 私有財產權(private property)

② 資本(capital)

③ 商業(commerce)

④ 信用制度(credit system)

2) 形式的 要因

⑤ 書法(art of writing)

⑥ 貨幣(money)

⑦ 算術(arithmetics)

이상의 일곱 가지 要因은 모두 複式簿記가 성립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複式簿記의 成立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財產이나 資本이 존재하지 않으면, 記錄의 의미가 단순한 備忘記錄에 지나지 않게되며, 貨幣가 없는 경우에는 交易은 단순한 물물교환에 불과하게 된다. 信用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去來는 직접

---

3)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Lussel & Lussel, 1933, reprinted 1968), p. 13.

적인 현금거래로 이루어져야 하며, 商業이 없다고 하면, 재산기록의 필요는 정부의 課稅範圍를 넘어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商人이 出現할 수 없게 되며 利潤槪念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書法이나 算術이 없었다고 하면 簿記의 수단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일곱 가지 要件은 複式簿記의 성립상 필요불가결한 前提條件이며 이들 要因이 존재하지 않는 한, 複式簿記는 生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諸要因이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에 의하여 강화되어질 때, 위의 실질적인 要因이 형식적인 要因과 융화되어 조직적으로 表現하는 수단으로서의 方法論이 모색되어지는 것이다. 이 方法論이 複式簿記이다.

2. 複式簿記의 發生史的 背景

위에서 살펴본 複式簿記의 生成要因은 고대의 문명국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特히 中世의 「이탈리아」의 商業都市를 중심으로 하여 形成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흑시대로 일컬어지는 中世의 역사적 특질, 특히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複式簿記의 形成背景을 살펴봄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中世의 歷史的 特質

적어도 11世紀 이전에는 文明에 대한 前途는 悲觀的이었다. 「로－마」帝國의 말기에는 정치상의 理想이나 情熱이 결여되어 부패한 관료주의의 정부, 메마른 토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가기에 고생스러웠고 重課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침입해 온 蠻族이 지배자의 위치에서 가렴주구를 일삼았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은 약화되었으며, 무질서가 「유럽」 全域에 걸쳐 있었다. 그것은 皇帝와 法王, 그리고 諸侯들 사이에 심한 개인주의의 爭鬪에 의하여 特徵지워지는 긴 암흑기간이었다. 수세기 동안 敎育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으며 現實生活에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으므로, 智的生活은 死後의 준비를 위한 쪽으로 集中되어 있었다. 이러한 동요의 시대에 혼란을 막고 사람의 마음에 光明을 준 것은 「크리스

도」敎會였다. 그 이외에는 智的活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4]

2) 十字軍과 商業都市의 勃興

약 천년에 걸친 암흑시대에도 進步的인 움직임은 있었다. 中世紀에 이르러 「유럽」은 종교적인 정열, 봉건적인 결합, 騎士道的인 理想을 喚起하고 共同體的 結合을 하게 되었다. 11世紀末(AD. 1075)에 「셀죽·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되자, 聖城回復을 위한 動機下에 結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이나 「휴매니즘」의 물결이 「유럽」 大陸을 휩쓸었고 地中海를 넘어 흘러갔다. 결국 聖地 「예루살렘」의 回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偶發的인 결과가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탈리아」 특히 「베니스」, 「플로렌스」 및 「제노아」와 같이 오랫동안 「오리엔트」 地方과 交易해 왔던 都市國家에서 나타난 것이다. 十字軍의 수송을 맡았던 이들 도시국가의 商船團에 종사한 선원들과 귀환한 군인들에 의하여 東方物産을 열망하게 되고 交易에 필요한 財貨를 생산하기 위하여 手工業을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들 지방은 商業의 대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5]

中世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에는 農奴나 地主보다도 商人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商業은 그들의 중요한 생활수단이었다. 商業을 통하여 富가 축적되었고 그와 동시에 學問과 藝術이 번영하였다. 그 이전에는 學者들의 專有物이었던 「읽기와 쓰기」(reading and writing)가 「베니스」의 商人들 사이에도 보급되었다. 물론 學者들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오던 것이었지만, 商人들은 이 時代에 이르러 商業上의 記錄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3) 財産權의 確立과 貨幣經濟

古代의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財産權이 中世에 이르러 自由民의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享受할 수 있게 되었다. 商業으로 번

---

4) W. C. Webster, "A General History of Commerce", (N. Y., 1903), p. 55.

5) 송태영, 『近代會計學』(서울, 東國文化社, 1961), pp. 6~7.

영을 누렸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는 私有財產權이 널리 보급되고 保護되고 있었다. 그리고 貨幣의 발명으로 交換의 매개물로서 활용되고 貨幣經濟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1096년부터 1291년에 이르는 약 200년 동안 十字軍의 수송 및 군수품의 공급은 유리한 사업이었으므로, 여기에서 새로운 近代商業이 發興하였던 것이다. 十字軍戰爭 이후 오랫동안 北部 「이탈리아」의 商業都市를 통하여 流入한 동양의 상품 및 수공업품의 交易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여러 도시에 資本이 급속히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商業의 생산적 규모는 확대되었던 것이다.[6]

4) 信用去來와 銀行의 設立

中世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는 12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사이에 商業資本이 생산력을 촉진시켰고, 貿易이 중요한 사업으로서 자리잡았다. 부유한 무역업자는 선박을 소유하고 商品을 구입하여 노예였던 自由民으로 하여금 그 船舶과 상품을 이용하여 「오리엔트」 地方이나 地中海의 연안지역을 순회하면서 商行爲를 하도록 하였다. 즉, 「콤멘다」에 의한 匿名組合의 형태로 지중해 연안무역을 행했던 것이다. 이 때 信用을 전제로 하는 商品去來가 비롯되었으며, 또 船舶을 담보로 하여 資金을 貸與받는 제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信用거래이다.

1178년 「제노아」의 商人은 國庫收入을 담보로 하여 政府에 자금을 貸與하였다. 이러한 金融이 훗날 유명한 「죠르죠」 銀行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한다. 「베니스」 은행도 역시 같은 起源을 가졌다. 1200년 이전에 벌써 換어음이 등장하였고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화되었다.[7]

5) 計算技術로서의 算術의 發明

12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약 300년 동안 算術은 複式簿記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적인 前提條件으로서 작용하였다. 처음에는 「그리스」인이나

---

6) 片岡義雄, 前揭書, pp. 318~319.

7) 上揭書, pp. 319~320.

「로－마」인이 사용하던 數字를 이용하여 계산했었으나,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라비아」人으로부터 數字를 배워 간편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商人들은 初期의 商業算術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리비아」 數字와 計算方法이 1202년에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들 商業都市는 더욱 번성하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世의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商業, 資本 및 信用 등은 古代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複式簿記의 發生要因으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다.

Ⅲ.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形成過程

1. 人名計定의 嚆矢

수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 이후 상업발전의 한 가지 형태는 定期市場이었다. 銀行家는 定期市場에서 이루어지는 상인의 거래대금의 결제업무를 代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인들에게 融資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信用供與나 對替業務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단순한 備忘記錄이나 금전수지기록 만으로는 金錢의 貸借關係를 처리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고객별로 貸借와 그 결제를 기록하고 이것을 「計定」(rascione : ragione)라고 불렀다. 計定은 貸借를 上部에, 決濟를 下部에 기록하는 上下連結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의 발생순으로 計定을 설정하여 기록하는 債權債務混合方式이 일반적인 관계였다.[8]

금전의 貸借에는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라틴어」로 羊皮紙에 기록되었다. 貸借記錄은 고객의 이름을 主語로 하여 작성되었다. 예컨대, A에게 貸與한 경우, 「A는 7월 10일 우리가 준(貸與) 100리브라를 우리에게 상환해야 함」(A no die dare di X luglio lb. c i quali demmo)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고객 B로부터 빌린(借入)경우

8) 黑澤清 編, 「體系近代會計學 Ⅵ」(東京, 中央經濟社, 1979), p. 40.

는, 「B는 7월 20일 그가 우리에게 준(貸與) 200리브라를 받아야 함」(B die avire xij anzi kai. aghosto lb. cc i quali c i diede)이라고 기록하였다.[9] 이와 같이 貸借記錄은 고객을 主語로 하여 「A는 상환해야 한다」(貸與)든가, 「B는 受領해야 한다」(借入)라고 표현함으로서 人名計定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금전대차기록으로서 現代會計用語의 原形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다(與)」와 「받다(受)」라는 말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事例는 1211년 6월 18일자로 되어 있는 「플로렌스」 銀行家들의 기록으로, 「플로렌스」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 帳簿는 羊皮紙(48cm×28cm의 크기)에 4페이지에 걸친 44개의 計定記錄으로 되어있다. 이 기록은 「볼로니아」의 定期市에서 銀行家가 기록한 것이지만 어느 은행의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한다.[10]

이러한 計定記錄이 會計帳簿로서 형식을 갖추고 발전하게 된 것은 13세기 말에 이르러부터이다.

2. 計定形式의 發展

1) 金額欄의 生成

13세기에 이르러 計定記錄은 定型化되기 시작하였으며 去來마다 改行하여 기록하지 않고 채워넣기式으로 記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금액표시를 「로－마」數字로 하였다. 計定이 회계적 성격을 갖게 된 端緖는 각 계정의 잔액계산이 용이하도록 金額을 貸借文言 이외의 별도 란(欄)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改良도 計定이 갖는 증거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去來마다 改行하여 기록하는 제1단계의 方式에서 去來額을 각 계정기록의 右欄外에 기록하는 제2단계의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最初에는 貸借記錄

---

9) 上揭書, p. 41.

10) 上揭書, p. 48 ; 〈Biblioteca Laurenaziano Mediceo(Piazza San Lorenzo, n. 9, Firenze) : Laurenziano, Aedil, 67〉.

의 主語, 동사, 目字(副詞)를 記錄한 첫째 行의 欄外에 금액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금액은 欄外에 기록되어 있어도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目的語인 것이다. 이러한 금액란이 설정된 帳簿形態는 1241년에서 1272년 사이에 쓰여진 記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資料 I · 參照).

제3단계의 발전은 主語 · 동사 · 目字 및 거래내용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금액을 첫째 行의 右欄外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리코만」의 遺産運用記錄(1272~1278)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11] 오늘날에도 하나의 去來를 二行 이상에 걸쳐 기록하는 경우에는 最終行의 금액란에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습의 확립은 1211년 기록으로부터 계산하여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였다.

〈資料 I〉: 「데 · 타코만도」의 穀物貸與記錄(1241~1272)

anno domini mcclxj queste racione sono de Cambio de tacomando et iobannes suo frate die viij ext. febraio.

iouanello de giouanni di saco da monte micano de dare ij st. de g. t. en kl. agosto. arengieri rogo carta die iij ext. febraio.

iobanni a dato j st. de g. ke de xiij s. en presentia de maiestro de tacomando die x ext. mai.

da iobanni auemo j st. de g. ke de viij s. et vj dn.

〈譯文〉:

1282年, 이 計定은 Cambio de tacomando와 그의 兄弟 Giovanni의 것이다. 2月 21日

Monte Micano 출신의 Giovanello de Giovanni는 8월 1일에 소맥 2붓셀을 상환하여야 하며 Arengieri가 2월 26일에 證書를 작성하였다.

Giovanni는 13솔리데(S. 13)의 小麥 1붓셀을 5月 22日 De Tacomand의 主人앞에서 상환하였다.

우리는 Giovanni로부터 8솔리데 6데날리(S. 8 d. 6)의 小麥 1붓셀을 받았다.

11) 黑澤清 編, 前揭書, pp. 53~54.

(出處 : F. Melis : Un Mastro Tascano del 200. Rivista Italiana di Ragioneria, 1946, n. 4-5-6, pag. 52 : 黑澤清 編, 前揭書, p.53)

13세기에 있어서의 金額欄의 생성실무와 14세기 前半에 있어서의 그것은 計定記錄에서 금액의 合計를 용이하게 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하나의 實務가 社會的 合意를 얻기까지 긴 세월을 요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2) 上下連續形式에서 左右對照形式으로의 變形

금전의 貸借를 각 계정의 上部에, 그리고 그 決濟를 下部에 기록하는 上下連續形式(sezioni sovrapposte)은 13세기에서 14세기 전반기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널리 쓰여졌던 記帳實務이다. 이 중에서 채권계정과 채무계정을 분류하게 된 것은 13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며 그 이전에는 두 계정을 혼합하여 정리하는 債權債務混合方式이 일반적이었다.

債權과 債務에 관한 記錄을 人名計定에 의하여 행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分介의 형식은 上下連續方式에서 左右分離方式으로 점차 변형되어 갔다. 같은 페이지 안에서 左右에 二分하는 左右對照型으로 변형된 가장 오래된 計定形式은 1340년의 「제노아」 市政廳의 元帳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스카나」 地方에서 左右對照型이 보급된 것은 1380년 이후이다. 그 形式은 帳簿上의 左側=借邊, 右側=貸邊으로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며, 「베니스」에서 導入되었다고 한다.[12]

計定의 左右對照形式에서는 「A는 주어야 한다」(A de dare=A must give), 그리고 「B는 받아야 한다」(B de avere=B must have)라는 現代形으로 점차 통일되었다. 여기서는 上下連續形式에서 볼 수 있는 채권·채무의 발생·소멸을 나타내는 法的表現과 會計的 表現의 일치관계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데, 貸與金의 회수기록도 借入金의 경우와 같이, 「B는 받아야 한다」로 표현되며, 法的表現形式에서 독립한 會計 特有의 표현으로 바뀌진 것이다. 그리하여 「주다」(授 : dare=give)와 「받다」(受 :

12) 上揭書, pp. 56~57.

avere=have)가 動詞에서 名詞로 轉用되어 借邊·貸邊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3. 複式記入의 範圍擴大

1) 現金出納帳과 現金計定

당시의 현금출납장은 收入을 前半페이지에, 支出을 後半페이지에 나누어, 날짜 순으로 거래 상대방의 성명과 참조장부명 및 所在面數가 표시되고 收入은 da(=from)로, 支出은 a(=to)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13~14세기의 「토스카나」 地方에서는 現金出納帳이 現金計定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元帳에 현금계정(la chassa di denari contanti)이 設定되어진 것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기이다.[13]

2) 商品計定과 商品賣買利益

商品計定에 관한 가장 오래된 記錄은 「제노아」 市政廳의 元帳에 나타나 있는 후추·綿絲 등이 計定이라고 한다. 상품의 매매를 原價로 기록하고 賣買利益을 고객계정의 차변과 이익계정에 兩面記入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었는 바, 이것은 오늘날의 分記法에 類似한 방법이다.[14]

이와 같이 판매에 즈음하여 우선 人名計定의 借邊과 상품계정의 貸邊에 구입원가로 기록하며, 그 후 판매이익은 같은 인명계정(고객계정)의 차변과 이익계정의 대변에 複記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複式簿記의 구조가 최초의 人名計定에 單式記入하던 것에서 상품계정과 판매이익계정을 설정하는 쪽으로 擴大되었던 것이다.

3) 資本主計定

13~14세기의 會計帳簿에서 중요한 것은 그 帳簿가 商人의 개인적인 기록이었는가, 아니면 企業의 형태를 가진 기록이었는가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組合이 결성될 경우 한 층 명백해진다.

---

13) 上揭書, p. 59.
14) 上揭書, p. 63.

組合企業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持分이나 이익분배기준은 조합정관에 규정되며 出資에 관한 사항은 秘密帳에 각 조합원별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出資額에 대한 보수로서 우선 7~8% 정도의 定率로 利子가 지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利益의 分配는 利子支給 후의 재산에 대하여 실지 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秘密帳내에서 資産－(負債＋出資金)＝利益이라는 式을 사용한 貸借對照表(bilancio)가 작성되어 이익이 계산되며, 約定率에 따른 分配가 이루어지게 된다.[15]

商人의 개인적인 記錄의 형태에서 組合企業이 出現으로 인한 利益分配記錄이 결국 複式記入의 構造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Ⅳ. 中世「이탈리아」複式簿記의 形態

1.「프로렌스」의 商業帳簿

「르네상스」期에「유－럽」經濟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플로렌스」市의 상공업의 번영은 富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었고 1252년의 金貨(Fiorino doro) 鑄造를[16] 시발점으로 하는「프로렌스」貨幣經濟의 형성은 이 도시에 金融業과 銀行을 발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였다. 더구나 富의 축적에 대응하는 學問과 技術의 발달은 상업에 깊은 관계를 가진 技法으로서의 簿記를 발전시키는 절호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 도시에는 귀중한 會計記錄이 남아 있으며, 銀行의 計定記錄이 남아있는 것은「프로렌스」에 있어서 複式簿記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플로렌스」銀行家의 帳簿記錄

現存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會計帳簿는「프로렌스」의 어느 銀行家가 1211년에「볼로니아」에서 記錄한 것이라고 한다. 그 記錄의 일부를 소개하

15) 上揭書, pp. 65~66.

16) 江村みのる,『複式簿記生成發達史論』(東京, 中央經濟社, 1960), p. 130.

면 다음과 같다(〈資料 Ⅱ〉 참조).

이 記錄에 의하면, 記帳形式은 각각 「주다」(no di dare=er muss uns geben)와 「받다」(die avere=er soll haben) 「상환하다」(ei a dato=er hat uns gegeben)라는 표현으로 記錄하고 있다. 이 記帳形式의 특징은 모든 去來가 上下連續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金額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日字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형식에서도 對替轉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特記할 만 하다고 思料된다. 이들 銀行帳簿에서는 거래처별로 각각 두개의 面(쪽)을 설정하여 한 쪽에 있는 貸邊의 금액을, 다른 쪽의 借邊으로 對替轉記하고 있다. 이것이 複式記入의 단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資料 Ⅱ〉:「플로렌스」銀行家의 記錄(1211年)

(1) Aldobrandino petro e buonessegnia falkoni no dino dare katuno in tuto lb. lij per liure diciotto d'imperiali mezani arrascione di trenta e cinque meno terza ke demmo loro tredici dl anzi k. luglio, e dino pagare tredici dl anzi kal. luglio: se piūstanno, a iiij di lb. il mese, quanto fusse nostra uolontade tt. alberto baldovini e quitieri alberiti di porte del duomo

(2) Item die dare buonessegnia s. xij per u massamutino.

(3) Buonessegnia falkoni ci â dato lb. xl : rekŏ jakopo a termine.

(4) Item die auire lb. iiij s. ij : leuammo di rascione buonessegnie oue douea auire per ser kalkagnio vj di anzi k. luglio

(5) Item die lb. iij meno d. xij per tornaquinci, ke'ei pagŏ nei panni suoi.

(6) Item ci die buoninkontro dappopio s. xl di sua mano tre di anzi kal. luglio.

(7) Item ci die aldobrandino lb. iij meno d. xij : rekŏ giannozo.

〈譯文〉:

(1) Aldobrandino Petro와 Buonessegnia Falconi는 우리가 6月

18日에 그들에게 준 Imperialimezzani 貨幣 lb. 18에 대하여 34⅔의 計定에서(환산한) 총액으로 하여 lb. 52를 각각 우리에게 상환해야 하며, 6月 18日에 지급할 것, 만약 그 이상 연체하면 (이자는) 우리가 희망하는 1개월에 lb. 1 當 d. 4의 비율이다. 證人은 Alberto Baldovini와 도-모의 門人 Quittieni Alberti.

(2) 同上, 그(Buonessegnia)는 massamutino(아라비아 화폐) 1대신에 S. 12를 상환해야 함.

(3) Buonessegnia Falkoni는 우리에게 lb. 11을 상환하였다. Jakopo가 期日에 지참했다.

(4) 同上, 그(Buonessegnia)는 lb 4 s. 2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6월 25일에 Kakgnio卿과의 거래관계로 받아야 했다. Buonessegnia 計定을 공제했다.

(5) 同上, 그(Buonessegnia)는 Tornaquinci를 통하여 lb. 2 s. 19를 우리에게 상환했다. 이렇게 하여 그(Buonessegnia)는 同金額을 스스로 지급하였다.

(6) 同上, Buonessegnia는 6月 28日에 lb. 2를 우리에게 상환했다.

(7) 同上, Aldobrandiono는 lb. 2 s. 19를 우리에게 상환했다. Giannozo가 가져왔다.

(出處 : P. Santini : Framenti di un Libro di Banehieri Fiorentini Scritto in Volgare nell 1211, Giornalle Storico dello Letteratura Italiana, 1887, Vol. X, pag. 166~167 ; 黑澤清 編, 前揭書, p. 49.)

그러나 1211년에 작성된 「플로렌스」의 會計帳簿는 단순히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 銀行의 일반업무에 관한 去來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흠이다. 더욱이 거기에는 人名計定만이 설정되어 있으며, 誤記와 脫漏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帳簿의 마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物的計定이 설정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이며, 그 때에 가서 借邊記入과 貸邊記入은 一般化되었고 上下式에서 竝立式으로 이행되었다고 한다.[17]

17) 片岡義雄, 前揭書, pp. 337~339.

2) 「베네」 商會의 商業帳簿

複式簿記의 成立史에 중요한 資料를 제공한 것은 「프로렌스」의 공문서 보관창고에 소장되어 있는 「베네」 商會(Francesco del Bene e Comp.)의 商業帳簿이다. 그것은 1318年에서 1341年에 이르는 23年間에 이루어진 記錄이다.[18]

「베네」 商會는 1318년 9월 1일에 組合形態로 개업하여 織物과 染料 등을 구입 · 판매하였다. 그들은 상품매매의 記錄法으로서 元帳과 상품매매장을 사용하였다. 商會의 主商品인 織物의 기록에는 商品賣買帳이 이용되었으며, 前半에 구입거래가, 後半에 판매거래가 날짜 순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매입장 · 매출장과 유사하다. 前者는 고객의 이름을 主語로 한 「주다」(de dare=must give : 借邊), 그리고 後者는 「받다」(de avere=must have : 貸邊)로 표현되어 그 下部에 거래내용이 기록되었다. 元帳에는 직물 · 염료 등의 상품계정이 설정되어 借邊에는 매입원가와 중개수수료의 금액이 計上되고, 貸邊에는 판매액 및 염색을 위한 자가소비액이 기입되었다. 기말재고액이 있을 경우, 그것을 상품매매장과 원장에 각각 複式記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元帳에 설정된 특수상품계정은 재고상품의 금액을 借邊에 對替하고 매매손익계정에 對替함으로서 年度末에 마감하는 절차를 거쳤다.[19]

「베네」 商會의 상품매매장에 기록된 내용일부를 소개하면 〈資料 Ⅲ〉과 같다.

〈資料 Ⅲ〉 : 「베네」商會의 販賣記錄(商品賣買帳)

(1) Alberto del Giudice e conpangni ci deono dare per
j biancha d'Aloste di lb. xiij s. ij par.
j biancha d'Aloste di lb. xiij s. v par.
Somma lb. xxvj s. vij par. per s. d. xxxvj a

18) 黑澤清 編, 前揭書, pp. 69~77.
19) 黑澤清 編, 前揭書, pp. 70~72.

fior. il s. di xxiiij d'ottobre cccxx, sensale Vanni Rinucci mot. insomma

a ffior. lb. lxxviiij s. j.

(2) Annone dato di xvij di febraio anno trecento venti; ponemo ove deono dare che debiano dare a libro nero ne le xiviij carte, iscritti Guido di Vanni

a ffior. lb. lxxviiij s. j.

(3) Ponemo al quaderno de le rechate de 'panni ne le lj carte.

〈譯文〉:

(1) 「알베르토」商會는 상환해야 한다.

「알로스테」産 白色商品 1개, 「파리」貨幣 lb. 13 s. 2.

「알로스테」産 白色商品 1개, 「파리」貨幣 lb. 13 s. 5.

1320年 12月 24日. 合計 「파리」貨幣 lb. 26 s. 7, 「파리」貨幣 s. 1 當 「아피오리」의 貨幣 d. 36, 仲介人 「바니 · 리누치」, 총액으로 「아피리오」貨幣 lb. 79 s. 1.

(2) 1321年 2月 17日 상환하다. 우리는 元帳 c. 48의 것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록하다. 「주이도 · 디 · 바니」가 記載하다. 「아 · 피오리」貨幣 lb. 79 s. 1.

(3) 우리는 상품수익장 c. 51에 기재하다.

〈出處 : (A. S. F., Carte del Bene, n, 3, c. 111r.) ; (黑澤淸 編, 前揭書, p. 72.)

lb., s. II.

그리고 「베네」商會의 元帳과 상품매매장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진 1322년 8월 1일자의 貸借對照表(bilancio)를 소개하면 〈資料 Ⅳ〉와 같다. 이 資料에서는 利益의 分配에 관한 기록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資料 Ⅳ〉: 「베네」 商會의 第2期末 貸借對照表(1322)

「발란치오」 (Bilancio)			
P. Chapperoni	92. 10. 11.	F. del Bene	5,264. 17. 9.
De Bardi	2,582. 18. 2.	G. di Lapo	101. 17. 9.
G. di Vanmi	7. 19. 4.	Nente	374. 1. 5.
備品, 商品 等	3,440. 17. 6.	當期利益	383. 9. 0.
	6,124. 5. 11.		6,124. 5. 11
F. del Bene에게	230. 1. 5.	當期利益	383. 9. 0
P. Chapperoni에게	153. 7. 7.		
	283. 9. 0.		383. 9. 0.

(註) : 第2期는 1321년 9월 1일부터 1322년 8월 1일까지의 11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出處 : A. Sapori ; Una Compagnia di Calimala, Firenze, 1932, pp. 254~255 : 黑澤清 編, 前揭書, p. 76.〉

2. 「제노아」 市政廳의 財務記錄

1211년에 「프로랜스」에서 開幕된 「이탈리아」의 簿記史의 무대는 「제노아」로 옮겨진다.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제노아」의 帳簿記錄은 지금 「제노아」의 公文倉庫에 보관되어 있는 1340년도 「제노아」 市政廳 財務課의 帳簿이다. 이 帳簿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한 것은 1865년에 창고 관리인 「데시모니」(Desimoni)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 獨逸學者인 「시베킹」(Sieveking) 敎授가 자세한 연구를 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20]

이 帳簿(41cm×30cm의 크기)는 240페이지의 분량이며, 1340年부터 1466年까지 126年間 記錄되어진 것으로 총43券이다.[21] 이 帳簿가 複式簿記史上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1) 이 장부에는 한 페이지를 좌우로 나누어 左

20) H. Sieveking, "Genueser Finanzwesen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Casa di S. Giorgis, Freiburg, 1898 und aus Genueser Rechnungs-und Steuerbüchern, Wien, 1909 ; 片岡義雄, 前揭書, p. 323.

21) 黑澤清 編, 前揭書, p. 78.

右對照形式으로 되어 있다는 것, (2) 計定科目 중에 物品計定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3) 名目計定의 마감을 위한 損益計定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4) 營業과 決算의 두 가지 면에서 複式記入이 관철되고 손익계정의 잔액(이익)도 市政廳計定에 移記되어 있다는 것, (5) 分介帳은 존재하지 않으나, 각 계정기록에는 서로 對照가 가능하도록 상대방의 과목과 페이지 數가 文末에 表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計定이 左右로 兩分된 竝列式으로 하여 상품계정을 포함한 그 매매손익이 손익계정에 對替되어 마감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實現되어 있다는 점에서 會計史家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이 帳簿가 眞正한 의미에서 複式簿記史上 最古의 事例로 評價되어지고 있다고 思料된다.

「제노아」 市政廳의 元帳은 私的인 상업장부가 아니고 官廳簿記이기 때문에 記錄은 공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中世「이탈리아」의 전통에 따라 모두가「라틴어」를 사용하였고 漢字는「로ㅡ마」數字로 되어 있다고 한다. 貸借用語는 借邊이 「나에게 (빚을)지다」(debet nobis pro)로 나타내며, 貸邊은 「내가 받다」(recepimus)로 구분 표시되어 있다. 去來는 左右竝列方式으로 記錄되며 移越記入도 같은 방식에 의하고 있다. 文末에 「여기서 5페이지로…」(unde nobis in(isto in) c. v.)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페이지 數를 明記하였다.

〈資料 Ⅴ〉는 「제노아」 市政廳 元帳의 「바카」 計定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人名計定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計定은 그 貸邊殘額이 市政廳計定으로 移記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것은 人名計定이지만, 11月 7日자로 市政廳計定에 對替되어 있는 사실은 단순한 人名計定이 아니고, 名目計定의 마감을 위한 최종적인 集合損益計定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公證人計定(vacha계정)은 市政廳을 위하여 얻은 收益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22]

「제노아」 市政廳의 회계년도는 3月 6日부터 다음해 3月 5日에 이르는 1年間이다. 名目計定의 마감은 일부는 5月 5日에 개시되며, 후추·絹絲 등

22) 黑澤清 編, 前揭書, pp. 79~80.

〈資料 V〉:「제노아」市政廳元帳의「바카」計定(1340)

Mcccxxxx die vij novembris. Guillielmo Vacha notarius debet nobis pro Comune Janue unde nobis in isto in cxxxxij lb. cxij s. j. Somms lb. cxij s. j. 〈論文〉: 1340년 11월 7일 公證인「G. 바카」는 우리에게 빌리고(借) 있다. 「제노아」시정청은 여기로부터 142면에 移越하다. lb. 112 s. 1 합계 lb. 112 s. 1.	Mcccxxxx die vij aprilis. Recepimus, accipiente Andrea de Castellione castellanus castelli Arcule in racione unde nobis in cxxxxvij lb. xxij. s. j. Item ea die in Dominico de Garibaldo undo nobis in xiij lb. lxxxx. Somma lb. cxij s. j. 1340년 4월 7일 우리는 받다(수령). 「아르끌레」성의 성주「앙드레아·데·까스텔리오네」로부터 받았(수입)으며, 동계정은 여기에서 부터 147면에로 移越하다. lb. 22 s.1 동상동일,「도미니꼬·데·가리발도」는 여기부터 13면으로 移越하다. lb. 90 합계 lb. 112 s. 1.
〈出處 : F. Besta : La Ragioneria, Vol. Ⅲ, pp.275~276 : 黑澤淸 編, 前揭書, p.80〉.	

의 商品計定은 11月 7日이다. 3月 5日의 年度末에는 市政廳計定의 차변에 시정청경비계정이, 대변에는「제노아」市民統治者, 徵稅組合 등의 收益計定이 對應計上된다. 年度初에 新元帳으로 移越記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3.「베니스」의 會計帳簿

1)「도나도, 솔란쪼」兄弟商會의 帳簿

複式簿記가 가장 정비된 형태로서 구현되었던 것은「르네상스」시대의

최대의 商業都市인 「베니스」의 會計帳簿이다. 「베니스」에서 현존하는 最古의 상업장부는 「도나도, 솔란조」(Donado Solanzo)兄弟商會의 記錄이다.[23] 그것은 新舊의 두 가지로 된 帳簿記錄으로서 1406년부터 1434까지 29년 동안 기록된 것으로서 168枚에 이르고 있으며 거의 완전한 複式簿記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서는 元帳이 차변과 대변으로 左右竝列시켜 記入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資料 Ⅵ 참조〉.

「시베킹」(H. Sieveking)교수에 의하면 借邊과 貸邊의 기입은 複式으로 이루어지며 對替記入은 상호기입의 상호기입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리고 그 人名計定외에 현금계정 및 상품계정 등이 설정되어 이들 計定相互間에 對替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24]

〈資料 Ⅵ〉:「도나도 · 솔란조」兄弟商會의 帳簿(1406年)

MCCCCVI	MCCCCVI
Debitori e chreditori tratti del l'estratto fato per ser Jachomo Boltremo de dar per Donado Soranzo proprio fin di 19 Agosto, par in quello k. 76, in questo k 3, lb. CII, s. V. d. VI et per ser Fantin Morexini, par in quello a k. 76, in questo k. 4, lb., s. I, d. VIII, p.16	Debitori e chreditori tratti del l'estratto fato per ser Jachomo Boltremo de aver per la chamera da imprestidi, par in quello k. 76, 78, in questo k. 2, lb. CXXVI, s. V, d. III, p.27 et per ser Bernardo Marioni par in quello a k. 76, in questo k. 2, lb., s. II
〈譯文〉: 1406年 개시잔액 : 「야코모 · 볼트래모」 氏를 위한 殘額法에 의한 것은 借邊이	1406年 개시잔액 : 「야코모 · 볼트래모」 氏를 위한 殘額法에 의한 것은 貸邊이

23) 井上 淸, 『ヨーロッパ會計史』(東京, 森山書店, 1968), pp. 32~47.

24) H. Sieveking, "Aus venetianischen Handelsbüchern, S. 1507 ff. 福田德三, 「續經濟學研究」, p. 776 : 片岡義雄, 前揭書, p. 330.

며, 「도나도 · 솔란조」는 상당방(貸邊)이다. 8월 19일. 前帳에서는 76面. 本帳에서는 3面. lb. 102 s. 5 d. 6	며, 市債局은 상대방(借邊)이다. 前帳에서는 76面, 78面. 本帳에서는 2面. lb. 126 s. 5 d. 3 p. 27
同上. 「판틴 · 모래시니」 氏는 상대방이며, 前帳에서는 76面. 本帳에서는 4面. lb., s. 1 d. 8 p. 16	同上. 「베르나르도 · 마리오니」 氏는 상대방이다. 前帳에서는 76面. 本帳에서는 2面. lb., s. 2
〈出處 : 井上 淸, 「ヨーロッパ會計史」, 1968. p. 44.	

2) 「바바리고」 商會의 會計帳簿

「베니스」의 公文書庫에는 「베니스」의 巨商 「바바리고」(Andrea Barbarigo)家의 商業帳簿가 보관되어 있다.[25] 이 帳簿는 1430년부터 1582년까지 오랫동안 중단됨이 없이 記錄된 것으로서 分介帳과 元帳을 갖춘 體系的인 複式記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바바리고」 家의 帳簿중에서 分介帳의 例를 들면 〈資料 Ⅶ〉과 같다. 이것은 1430년 開業當時의 것으로 分介는 借邊이 per(=for), 貸邊이 a(=to)라는 전치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文末에 간단한 去來內容이 附記되어 있다. 예컨데 〈資料 Ⅶ〉의 두번째 分介는 「페라라」에게 출장여비로 現金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元帳에의 轉記는 분개장의 左側에 있는 分數形式의 숫자가 元帳의 面數를 나타내고 있어서 分子는 차변기입의 元帳面數를, 分母는 대변기입의 元帳面數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바리고」 家의 商業帳簿에서는 分介帳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欄外를 이용하여 원장계정의 轉記를 표시한 것이 대발전인 것이다. 그리고 計定의 마감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새로운 帳簿로 移越할 때에만 행하는 것이었고, 모든 計定의 體系는 名目計定과 實質計定이 조직적으로 결부되

25) 片岡義雄, 前揭書, p. 333.

〈資料 Ⅶ〉:「바바리고」商會의 分介帳(1430年)

	1430 a di 8 zenaro	
5	Per ser nofrio decalzi de Lucça a ser francesco	
14	balbi e fradelli per le bancho de contar per mi	lb. iij.
	1430 a di 22 zenaro	
18	per spexe per mio conto a cassa ch'io spexo per	
18	andar a ferrara due. $3^{1}/_{2}$	s. vij.

〈譯文〉:

	1430年 1月 8日	
5	(借邊)「루까」의 「N. 데칼지」(貸邊)「프란체스코 · 칼비」 兄弟.	
14	나에게 지급해야 할 貨幣.	lb. 3.
	1430年 1月 22日	
18	(借邊)經費, (貸邊)現金.	s. 7.
18	「페라라」에게 旅費로 사용.	

〈出處 : 黑澤淸 編, 前揭書, p.87〉

어 있었으므로 당시의 商業簿記로서는 완성된 형태이며 훗날 各國에 전파된 「이탈리아」式 簿記의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일컫어진다.

V. 「파치오리」와 世界最初의 複式簿記書

1. 「파치오리」의 生涯와 業績

세계에서 최초로 複式簿記에 관한 印刷本을 저술한 사람이 「루카 · 파치오리」(Lucas Pacioli)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그의 生涯와 業績에 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이 기회에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하려고 한다.

「루카 · 파치오리」의 出生과 死亡에 관한 年代는 正確하지가 않으나, 1445년경 「이탈리아」 上部의 「산, 세풀크로」(San Sepulcro)市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幼年期를 고향에서 보냈으며 고향출신의 유명한 畫家요

數學者인 「삐에로」(Piero Della Francesca)의 문하에서 數學을 배웠다.[26]

1464년, 20세인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당시 商業의 중심지였던 水上都市 「베니스」에 가서 豪商 「롬피아시」(Antonio de Rompiasi)家의 家庭敎師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유명한 數學者 「브라가디노」(Domenico Bragadino)의 數學講義를 열심히 청강하였다.[27] 이것이 그로 하여금 數學者로서의 인생을 가늠하게 하는 결심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26세가 되는 1470년에 처음으로 著述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를 「롬피아시」家의 아들 3형제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 豪商집에 가정교사로 머무는 동안 商業實務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여, 훗날 簿記論을 저술하는 데 활용하였다고 한다.[28]

1475년에 그는 「프란체스카」派의 僧團에 입단하여 「이탈리아」의 각지를 순방하였다. 이 무렵 그는 「페루지아」(Perugia)大學의[29] 수학교수가 되었고 代數學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였다. 1481年에 代數學을 저술하였고 1482年 38세가 되는 해에 「로－마」大學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1490년에는 「나폴리」大學에 초빙되어 數學을 강의한 바도 있으나, 「베니스」로 돌아와 著述에 몰두하였으며, 1494年 11月 10日자로 드디어 그의 力著 「算術·幾何·比率 및 比例全書」(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가 出版되었다. 이것이 「파치오리」의 複式簿記書이다. 이것은 數學에 관한 著書로 쓰여진 것이나, 그 내용의 일부가 複式簿記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96년 이후 「파치오리」는 「밀라노」의 「스포르자」(Ludovico Maria Sforsa) 公爵집에 초빙되어 「유－크릿드」幾何學을 강의하면서 「神聖比例

---

26) 片岡義雄, 前揭書, pp. 9~10 : Michael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New York,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 1977, p. 44.

27) 小島男佐夫, 「複式簿記發生史の研究」(東京, 森山書店, 1965), p. 226.

28) A. H. Woolf,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s and Accountancy, London, 1912, p. 113.

29) 「페루지아」大學은 「파치오리」의 고향 「산·세폴크로」에서 南쪽으로 약 50리 정도 떨어진 都市 「페루지아」(perugia)에 소재한 대학이다.

論」(Divina Proportion)원고를 완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레오날드, 다빈치」와 友情을 맺었다. 「볼로니아」 大學과 「프로렌스」 大學에도 出講하였다. 1509년에 그는 「유-크릿드」 幾何學을 「베니스」에서 出版하였다. 敎皇廳의 초청으로 「로-마」 大學에서 수학강의를 한 것이 1514년의 일이다.[30]

「파치오리」의 死亡期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에 관한 硏究文獻에 의하면 그의 複式簿記書 제2판이 出版된 1523년까지는 생존하고 있었다고[31] 하니, 그 이후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1878年에 그의 고향 「산·세폴크로」 市廳 앞의 美術館 벽 위에 그의 生涯와 業績이 새겨진 기념비가 시민들에 의하여 세워져 있다고 한다.[32]

2. 「파치오리」 簿記書의 構成內容

複式簿記에 관한 最古의 記錄으로는 1211年의 「프로렌스」의 商業帳簿, 1340年의 「제노아」 市政廳 記錄 그리고 1406年 「베니스」의 會計帳簿를 들 수 있으나, 가장 오래된 文獻(印刷本)으로는 1494年의 「파치오리」에 의한 簿記書이다. 그것은 그의 「算術·幾何·比率 및 比例全書」 중에 수록된 「計算 및 記錄詳說」(Particularis de Computis et Scripturis)을 일컫는다.

「파치오리」의 著書는 원래 數學書인데, 그것은 二部로 나누어 著述되어 있다. 제1부는 224페이지 이르는 것으로 算術 및 代數를 다루었고, 제2부는 76페이지의 분량이며 주로 幾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제1부의 뒷부분에는 第九篇·論說 第11 「計算 및 記錄詳說」이라는 標題로 複式簿記에 관하여 36章에 걸친 완전한 記述을 하였다. 그 目次를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30) 小島男佐夫, 『簿記史』(東京, 森山書店, 1973), pp. 61~68.

31) M. Chatfield, op. cit., p. 45.

32) R. E. Taylor, "The Name of Pacioli", (The Accounting Review, Vol. 19 No. 1, January, 1944), p. 74.

(1) 제1장 : 序論, (2) 제2장 : 財產目錄, (3) 제3장 : 財產目錄의 模範形式, (4) 제4장 : 유익한 訓戒 및 規則, (5) 제5장 : 記錄整理－세 가지의 主要帳簿, (6) 제6장 : 日記帳, (7) 제7장 : 商業帳簿의 認證方法, (8) 제8장 : 日記帳의 記入方法, (9) 제9장 : 九種의 買入方法, (10) 제10장 : 分介帳, (11) 제11장 : 「借」와 「貸」, (12) 제12장 : 分介帳의 차변 및 대변, (13) 제13장 : 元帳, (14) 제14장 : 분개장에서 원장에 轉記方法, (15) 제15장 : 元帳對替, (16) 제16장 : 元帳에서의 상품계정의 기입방법, (17) 제17장 : 官廳과의 會計기록방법, (18) 제18장 : 거래처와의 회계방법, (19) 제19장 : 환어음에 의한 支給의 記錄方法, (20) 제20장 : 交換 및 組合 등, (21) 제21장 : 조합거래의 처리방법, (22) 제22장 : 諸費用의 記入方法, (23) 제23장 : 점포(支店)의 회계, (24) 제24장 : 분개장 및 元帳에 있어서의 銀行計定, (25) 제25장 : 수입 및 지출계정, (26) 제26장 : 여행비용에 관한 기입, (27) 제27장 : 손실 및 이익계정, (28) 제28장 : 원장계정의 이월방법, (29) 제29장 : 년차의 변경방법, (30) 제30장 : 計算書의 작성방법, (31) 제31장 : 誤記의 訂正, (32) 제32장 : 元帳의 平均, (33) 제33장 : 장부마감 중에 발생하는 거래의 기입방법, (34) 제34장 : 舊元帳計定의 마감 : 차변 및 대변의 總計, (35) 제35장 : 書信의 보존, 서류, (36) 제36장 : 원장기입법칙의 개요.

이상의 것을 사항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제1장, 4장, 5장, 7장 및 9장)

② 財產目錄(제2장, 3장)

③ 日記帳(제6장, 8장)

④ 分介帳(제10장, 11장, 12장)

⑤ 元帳(제13장, 14장, 32장)

⑥ 主要去來의 기록방법(제15장～27장)

⑦ 이월 방법(제28장, 29장)

⑧ 計算書 作成法(제30장)

⑨ 誤記의 訂正(제31장)

⑩ 帳簿의 마감(제33장, 34장)

⑪ 關聯書類(제35장)

⑫ 總括(제36장)

오늘날의 複式簿記에서 보면, 「파치오리」의 簿記論 중에는 簿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제1장, 4장 및 35장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파치오리」 簿記論은 日記帳·分介帳 및 元帳의 세가지 帳簿에 기초하고 있다. 일기장은 去來를 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원시기록부이다. 分介帳은 문장형식의 借邊(per)과 貸邊(a) 및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元帳記入은 文章形式을 이용하여 차변은 deve dare라는 用語를, 대변은 deve avere라는 用語를 기입하여 각각 左右竝列式으로 하여 計定處理를 하고 있다. 元帳에 전기가 끝나면 分介帳의 기입란에 斜線을 긋는다. 「파치오리」는 장부와 계정의 기본적인 구조를 확립한 후 10개장(15장~27장)에서 상인들이 접하게 되는 전문적인 문제 및 去來의 類型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것은 그의 著書 중에서 簿記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원래 그의 著書는 ① 算數와 大數, ② 상업실무에 대한 算數와 大數의 응용, ③ 簿記, ④ 貨幣·度量衡·換錢, ⑤ 기하학의 이론과 그 응용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서술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그가 이 책을 쓰면서, 당시의 관례였던 「라틴」語를 사용하지 않고 「이탈리아」語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理由는 이 책의 序頭에 쓰여진 獻辭에 잘 나타나 있다. 『… 이 書册이 「라틴어」語로 쓰여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는 이 책을 母國語로 썼다.[33] 이것은 당시 「르네상스」 前期의 思想家로서 시인이며 畫家요 조각가·비평가 그리고 「휴매니스트」였던 그의 師匠 「알베르티」(Battista Alberti)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한다.[34] 그는 現實主義와 民衆의 각성이라는 「르네상스」 精神의 소유자였으므로 당시 귀족의 用語였던 「라틴」語를 배제하고 일반서민의 언어인 「이탈리아」語로 著述하는 용기를 보였다. 여기서 理論을 實務에 접

33) R. Emmett Taylor, op. cit., p. 190.

34) R. Emmett Taylor, Ibid., 195 : 小島男佐夫, 前揭書, pp. 23~24.

합시키는 경험주의자로서의 그의 學問的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파치오리」의 複式簿記書는 「이탈리아」의 여러 상업도시에서 상인을 위한 교육의 교과서로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베니스」 식 複式簿記의 대명사로서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Ⅵ. 中世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特徵

그러면, 중세 「이탈리아」의 商業都市 즉, 「프로렌스」, 「제노아」 및 「베니스」에서 사용되었던 商業帳簿의 記錄內容을 통하여 複式簿記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歷史的 史料에 의거하여 中世時代의 會計記錄의 전개과정을 會計史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1. 「프로렌스」 式 複式簿記

(1) 「프로렌스」의 商業帳簿에서 사용하고 있는 記帳方法은 對替的 記帳法에 의하고 있다.

(2) 그 記帳의 대상은 債權者와 債務者를 기초로 하는 人名計定을 사용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記帳形態는 서술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貸借記錄의 형태는 上下連續式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제노아」 式 複式簿記

(1) 「제노아」 市政廳의 會計記錄에 나타난 記帳方法은 복식기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2) 記帳對象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초로 하는 人名計定 뿐만 아니라, 物的計定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3) 記帳形態는 左右竝列式에 의한 對照的 記帳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複式簿記에서 볼 수 있는 貸借兩立의 分介에 의한 計定形式에 기록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베니스」式 複式簿記

(1) 「베니스」의 會計帳簿에 사용한 記帳方法은 「제노아」의 그것과 같이 複式記帳의 형식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2) 記帳의 대상은 人的計定과 物的計定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損益計定과 資本計定을 설정하여 記帳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그리고 記帳의 형태는 「제노아」의 그것과 똑 같이 左右竝列式에 의한 對照的 記帳形態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計定形式에 의한 貸借記入의 형태가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 내용들은 1211年의 「프로렌스」의 銀行家帳簿, 1340年의 「제노아」 市政廳財務官의 帳簿, 그리고 1406年 이후의 「베니스」의 「솔란조」 商會의 帳簿에 각각 내재되어 있는 特徵을 정리한 것이다. 複式簿記의 發達過程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프로렌스」의 上下連續式의 기장방식이 「제노아」의 좌우병립식의 計定形態로 발전함과 동시에 人名計定이 物的計定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드디어 「베니스」式에 이르러 資本計定 및 損益計定을 갖춘 複式簿記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上下連續式이 자본계정과 그 下部計定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계정조직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것은 單式簿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上下連續式에서 좌우병립식으로서의 형식적인 발전은 單式簿記에서 複式簿記로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複式簿記의 구조가 확립된 것은 1340年의 「제노아」의 會計記錄 이후부터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베니스」의 記帳形式이 「이탈리아」式 簿記法으로서 보편화된 것은 「파치오리」의 複式簿記가 출판되어 각국에 전파되면서 부기교육

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파치오리」의 著書에 나타나 있는 複式簿記의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5]

(1) 「파치오리」의 複式簿記論에서 볼 수 있는 첫째의 特徵은 宗敎的인 색채가 濃厚하다는 것이다. 즉, 제2장의 財産目錄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商人은 하느님(神)의 이름으로 營業을 시작해야 하며, 하느님(神)의 이름을 모든 文書의 序頭에 올려넣지 않으면 안된다.」[36]고 하였으며, 필요한 곳마다 聖書의 말씀을 인용하여 商人에 대한 倫理的인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商人이 營業을 시작할 때 우선 財産目錄을 작성하여 개업당시의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3) 帳簿組織은 日記帳 · 分介帳 · 元帳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 「파치오리」의 複式簿記論에 있어서 제27장에 있는 損益計定의 처리방법이 특성있게 서술되어 있다. 이 計定은 오늘날의 집합손익계정과 같은 것이 아니고 각 상품별로 계산하는 個別損益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5) 元帳計定의 마감방법은 元帳計定의 기입이 이루어지고 더 기입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 새로 작성한 元帳에 이월(원장갱신)할 때 마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6)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年度末에 작성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당시의 「이탈리아」의 상업상태가 一般海一企業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장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損益計算을 하였고 年度決算의 관습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7) 帳簿記入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合計試算表가 작성되었으나 잔액시산표의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借邊과 貸邊으로 구분된 二面的 記錄을 통하여 상품

---

35) 片岡義雄, 前揭書, pp. 287~303, passim.

36) 片岡義雄, 前揭書, p. 284(이 내용은 pacioli의 著書 p. 50 및 pp. 58~61에 실려 있다).

매매 손익을 資本金計定에 對替하는 複式簿記의 구조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파치오리」의 著書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Ⅶ.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複式簿記의 성립을 위한 前提條件과 그 歷史的 背景,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형성과정과 그 形態 및 세계 최초의 인쇄물로서 출판된 「파치오리」의 複式簿記書를 중심으로 하는 中世 「이탈리아」의 商業帳簿에 內在된 複式簿記的인 特徵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것은 1211년 「프로렌스」의 商業帳簿를 시발점으로 하여 1340년의 「제노아」 市政廳의 會計記錄과 1406년 이후 「베니스」에서 작성된 會計帳簿가 複式簿記로서 형성되어진 과정을 정리하여,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힌 내용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複式簿記는 「제노아」 會計帳簿에서 定立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十字軍戰爭 이후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였던 中世 「이탈리아」의 都市國家에서 複式記帳方法이 生成되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 改善되면서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上下連續式 기장방법에서 左右並立式의 대조적인 기장방법으로 변형되어 간 것과 人名計定의 구조에서 物的計定까지도 포함하는 구조로 확대된 것은 簿記가 역사와 함께 발전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複式簿記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한 발명품도 아니고 어느 한 世代의 所產도 아니며,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발전의 성과라는 것이 중세 「이탈리아」의 複式簿記生成發達史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立證되었다.

複式簿記는 人類文明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文明史의 한 모퉁이에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성숙되어 온 簿記技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 온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같이 文明의 利器로서 발전되어온 複式簿記의 발자취를 더듬어 歷史的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會計史學徒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使命이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李正浩,「現代會計理論」, 經文社, 1994.
2. _____,「會計思想史」, 經文社, 1985.
3. 高承禧,「財務會計論」, 檀大出版部, 1984.
4. 舍태영,「近代會計學」, 東國文化社, 1961.
5. 井上 清,「ヨーロッパ會計史」, 森山書店, 1968.
6. 小島男佐夫,「簿記史」, 森山書店, 1973.
7. _____,「複式簿記發生史の研究」, 森山書店, 1965.
8. 黒澤清,「體系近代會計學 Ⅶ」, 中央經濟社, 1979.
9. 片岡義雄,「パチョーリ簿記論の研究」, 森山書店, 1974.
10. 江村みのる,「複式簿記生成發達史論」, 中央經濟社, 1960.
11.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1966.
12. A. H. Woolf, "A Short History of Accountants and Accountancy, 1912.
13. M.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New York, 1977.
14. R. Brown,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Frank Cass & co., 1968.
15. R. E. Taylor, "The Name of paciolo"(The Accounting Review, Vol. 19 No. 1, 1944).

獨逸의 産業革命*

金 光 洙**

目 次

Ⅰ. 서 론
Ⅱ. 독일 産業革命의 準備期
Ⅲ. 독일 産業革命의 特質
Ⅳ. 關稅同盟 성립 후 政治的 統一 時까지의 産業革命
1. 불변고정자본의 투하
2. 生産의 上昇
3. 生産技術의 進步
4. 勞動者階級의 상태
Ⅴ. 産業革命의 進行
1. 농 업
2. 纖維工業
3. 鐵 道
4. 石炭·鐵·機械
5. 資 本
6. 商業 및 貿易
Ⅵ. 독일關稅同盟의 成立
1. 역사적 전제
2. 1818년 프로이센관세법
3. 關稅同盟의 체결
Ⅶ. 結 論

Ⅰ. 서 론

1970년부터 1830년간에 잉글랜드의 모습은 크게 변하였다. 이에 竝行하여 社會構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인구는 현저히 증가하고 노동은 한층 특수화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숙련이 도입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原料源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었으며 새로운 商業手段이 안출되었다. 자원량과 그 流動性도 증대하고 銀行制度가 탄생했다. 이러한 變化는 단순히 産業上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사상적인 변화에도 있었다.

변화에 따라 점차 많이 공급되어지는 勞動 土地 資本을 조화적으로 작용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18세기 및 19세기 초기에는 生産諸要素의 새로운 結合方法을 재빨리 고안하고 열심히 新市場의 발견을 위해 민감히 새로운

* 본 논문은 1994년도 숭실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숭실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企業家가 넘치고 있었다. 새로운 技術과 機械의 발명이 뒤따랐다. 土地 勞動 資本의 공급증가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 産業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석탄과 증기가 대규모 제조공업의 원료와 동력을 준비하고 낮은 이자율과 물가등귀 그리고 高利潤의 거래가 활기를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物質的 經濟的 要素의 배후에 그것 이상의 무엇이 존재했다. 貿易은 사람들의 世界에 관한 견식을 넓히고 科學은 그 우주관을 확대했다. 즉, 산업혁명은 동시에 觀念의 革命이고도 했다. 産業革命이 자연의 理解나 自然의 支配에 있어서 進步를 기록했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人間社會의 諸問題에 대한 새로운 態度의 시작을 의미했다.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 사이에 英國에서는 産業革命이 일어나고 其間에 증기기관을 포함하는 機械의 工業에의 加速度的인 이용은 경제구조의 큰 변화와 경제성장의 현저한 變化를 야기시켰다. 勞動者는 工場에서 노동케 되었고, 企業家는 자본설비를 크게 利用하여 효율적인 企業經營도 가능케되었다. 이리하여 工場制度야 말로 가장 경제적인 生産單位로 되었다. 그리고 다른 産業에도 工場制가 출현하고 外部經濟效果에 의하여 새로운 도시가 생겼고 英國은 최초의 都市工業國으로 되었다. 이러한 社會變化에 관하여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사용했다.

英國은 19세기의 중엽 공업적 패권의 절정에 도달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도 工業化를 개시했다. 後進國의 産業革命은 英國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後進性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制度的 手段에 의존하는 비율이 강하게 된다는 點이다. 셋째 後進國에 있어서 工業化의 추진자가 産業企業이 아니고 銀行이나 政府인 경우 工業化의 지도이념은 영국에서 볼 수 있었던 같은 合理主義나 經濟主義는 아니라는 點이다. 독일의 경우 리스트(Friedrich List)의 국민적 통일의 이데올로기가 工業化를 추진했다.

本 硏究는 독일 産業革命의 준비기, 독일 産業革命의 特質 不變固定資本의 투하, 産業革命의 진행 그리고 독일 産業革命의 성공적인 추진과 깊은 聯關을 맺고 있는 독일 關稅同盟의 成立을 論한다. 그리고 結論에서 産業

革命의 終結問題를 취급하겠다.

Ⅱ. 독일 産業革命의 준비기

독일 産業革命의 준비기는 英國에서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개시되었던 時點 대개 1780년대의 중엽에 시작했다고 주장된다. 이 시점에 있어서 작센(Sachsen) 베를린(Berlin) 특히 뒷셀돌프(Düsseldorf) 市近郊의 라인(Rhein)江 右岸地域에서 최초의 紡績機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1] 뒷셀돌프에서는 紡績機가 이미 방적공장속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1784년에는 뒷셀돌프市 近郊 라틴겐(Ratingen)마을 부뤼겔만(Brüggelmann)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유럽大陸에서 최초의 방적공장이 설립되고 있었으며 同地域에서는 이에 계속된 일련의 것들이 大陸封鎖까지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독일에 있어서 최초의 섬유공업지대가 성립하여 그것이 대륙봉쇄의 시기에는 심한 거의 괴멸적인 打擊을 입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방적공장이나 방적기와 같은 시기 즉 1785년에는 독일에 있어서 최초의 와트(Watt)형 증기기관이 조립되어 만스펠트(Mansfeld)地域의 헷트슈타트(Hettstadt)에 설치되었다.[2]

英國과 독일間의 중요한 차이는 독일에 있어서는 其後의 발전이 아주 완만했으며 산업혁명의 준비단계의 개시와 독일에서는 30년대 중엽에 해당하는 본래적인 개시와의 시간적 거리가 아주 길었다는 것이다. 이때 독일에서 있어서 産業革命의 준비단계가 비교적 장기간였던 理由중 가장 결정적인 原因은 브르죠아革命이 늦어진 것과 장기화한 것 이에 19세기 초에 실제적으로 시작한 農村의 봉건적 생산관계와 都市의 중세적 공업체제의 폐지가 苦痛이 많고 길었다는 사실이다. 또 정치적 경제적관점으로 보아

---

1) H. Mottek. Wirtschftsgeschichte Deutschlands. Bd. 1, Berlin, 1964, S. 100~102.

2) H. Mottek, Einleitende Bemerkung—Zum Verlauf und einige Hauptprobleme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in Deutschland, 大島隆雄 譯, ドイツ産業革命, 第2刷, 東京, 1970.

국민적 분열이라는 보다 중요한 原因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중요한 原因외에도 독일에서 새로운 生産諸力의 導入成長速度와 새기술를 기초로 한 불변고정자본의 대량투하의 개시를 늦춘 기타의 구체적 역사적인 제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諸原因의 하나는 1790대에 있어서 英國과의 競爭의 시작이다.[3]

英國의 先例가 독일의 산업혁명의 준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영국이 禁止令이나 罰則措置를 가지고 專門家나 技術의 유출을 저지하였으나 완전할 수는 없었다. 전문가 技術 機械등이 독일로 流入되어 독일 스스로의 힘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事情에 의하여 보다 빨리 신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혁명의 기반조성에 기여했다고 본다. 특히, 독일에서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기계가 독일에서 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4]

독일에 있어서 産業革命 準備期를 길게한 短期的 要因으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유럽의 戰爭, 둘째 보나파르트적 프랑스에 의한 民族的 抑壓 등이다. 최초의 要因은 1790년대의 전쟁개시시에 독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인 브르죠아지가 전쟁에 의하여 많은 利益을 확보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근의 결과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독일의 곡물 및 목재상인의 이윤상승 특히 東엘베(Elbe)의 大土地所有者의 수입증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産業資本의 축적이 급속히 진전하고 부유한 프랑스人 亡命者나 네델란드人의 독일에의 자본 逃避에 의하여 기존의 화폐자금이 다시 증대하고 부유한 商人이 새로운 投資의 가능성을 찾을 만큼 화폐자본량이 증대했던 것이 사실이다.[5]

19세기초 戰爭의 계속은 독일 資本主義발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作用을

---

3) a. a. O., S. 18~19.

4) vgl. A. Schröter, Die Entstehung der deutschen Maschinenbauindustie in der ersten Hälfte des 19. Jahrunderts in : A. Schröter / W Bechker, Die deutsche Mashinenbauindustrie in der indusriellen Revolution, Berlin, 1962.

5) v Gülich, G. Geschichtliche Darstellung des Handels, der Gewerbe und des Ackerbaus der bedeustendesten Staaten unser Zeit, Jena, 1830, Bd. II, S. 311 & 321.

미쳤다. 당신 독일의 일부분은 戰場으로 되었고 또 일부는 독일에 주둔하여 오스트리아(Östereich)와 러시아(Ruβland)에 대한 전쟁을 행하거나 혹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폴레옹(Napoleon)軍의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나폴레옹 戰爭은 민족적 억압과 결합함으로서 독일에 대하여 장해로 되었다. 이것은 가난한 독일인에게 큰 부담이었고 軍稅에 의하여 갓 출생한 젊은 독일 브르죠아지에게 큰 자본 상실을 가져왔다. 독일의 민족적 억압은 또한 나폴레옹의 商業政策에의 종속을 가져왔다. 프랑스의 商業政策에서의 종속은 또 프로이센(Preuβen)을 포함한 독일 諸國이 英國과의 商業戰爭에 協助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독일의 海外輸出의 障害는 증대하여 솜 기타의 원료의 독일에의 輸入은 극히 곤란케 되었다.[6]

독일의 민족적 억압시기에 있어서 다만 프랑스領과 그 關稅領域으로 된 地域만이 실제적인 好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好況은 공업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있었던 라인江 右岸地域의 희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 結果 이 地域은 현저히 어려움을 경험했다.[7]

확실히 英國과의 경쟁압력은 綿紡績業으로 부터는 멀어졌으나 그 대신 강력히 保持되고 있었던 輸入關稅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여야만 했다. 그러므로 綿製造業者의 라인江右岸에로의 도피가 일어났으며 製鐵業者들의 생산도 東유럽의 판매지역이 폐쇄된 결과 毛織物 工業이나 綿織布業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쇠퇴를 가져왔다.[8]

전쟁과 민족적 억압은 직접적으로는 자본축적의 감퇴를 가져왔고 다시

---

6)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22.

7) R. Isenburg, Untersuchungen über die Entwicklung der bergishen Wollenindustie, Phil, Diss, Heidelberg, 1906, S. 23. 大島隆雄 譯, S. 23, 再引用.

8) A. Vollmer, Handel, Industrie und Gewerbe in den ehemaligen Stiftsgebieten Essen und Werden sowie in der Stadt Essen zur Zeit der französichen Herrschaft(1806~1813), in : Beiträge zur Geschichte von Stadt und Stift Essen, Essen, 1909, Heft 31, S. 163. 大島隆雄譯, S. 22 再引用.

축적되어진 商業資本의 生產資源에로의 轉化를 저지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產業革命의 준비에 나중에는 產業革命의 展開에 큰 役割을 다했던 경제적 기술적 先進國 英國과의 접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독일 諸國에 있어서는 1815년 이후 60년대까지 계속되는 平和의 時期가 방문했을 뿐 아니라 이 時期에는 프로에센 改革이 시작하고 있던 封建的 生產關係의 폐기 그리고 브르죠아革命이 시작하고 있었다.[9]

이때 다른 諸要因 즉 統一國內市場의 창출과 영국과의 경쟁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던 독일의 一般的인 경제적 분렬을 지적할 수 있다.

1820년대의 산업혁명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서 30년대 및 40년대의 진보가 이룩되었다. 이 進展은 冶金業이나 鑛山業部門에서 야간의 生產上昇 증기기관의 사용 바불法의 도입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끝으로 베를린이나 독일의 他地域에서 독립한 자본주의적 기계제조업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1820년대이며 그때까지 利用者에 의하여 필요로 했던 기계는 거의 自家製 또는 手工業者들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量的進步는 미미했고, 質的인 그것은 獨逸에 있어서 毛織物工業의 機械化의 시작에 불과했다. 결국 완만한 發展에도 불구하고 20-30년대 초에 있어서 서서히 產業資本主義實現의 전제가 창조되고 있었다. 산업혁명 준비기는 이렇게 하여 독일의 대부분에 대한 經濟的 統一을 달성한 關稅同盟의 성립으로 종결했다. 이에 이어서 產業革命 자체가 시작하여 1873년까지 계속했다.

Ⅲ. 독일 產業革命의 特質

英國 產業革命의 파급은 독일에 있어서 선진공업기술의 수용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프랑스 革命의 영향과 겹쳐 독일의 政治 經濟 社會構造 近代

9) F. Engels, Der deutsche Baurernkrig, Berlin, 1949, S. 22.

化에의 인팩트로 되었다. 독일의 경우 英國 産業革命의 수용에 있어서 먼저 정치적 사회적 조직과 운용에의 정비가 필요했다. 神聖 로마제국은 名目상의 존재이며 300이상의 독립한 諸候의 집합체의 총칭이었다. 나폴레옹戰爭과 뷘(Wien)회의를 거쳐 39의 독립한 領邦으로 이룩된 독일聯邦이 형성되었다. 聯邦會議는 프랑크풀트(Frankfurt/M)에 설치되었으나, 그곳에서의 결의는 諸領邦의 內政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全體의 통일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시하는 機關으로서 기능을 했을 뿐이다.[10]

神聖로마帝國의 南은 오스트리아로부터 北은 프로이센까지 포함되며 발틱海 北海까지의 中部유럽을 占했던 國家聯邦으로 이러한 地理的 條件이 독일의 産業革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工業先進地帶인 西유럽과 農業地帶인 東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兩者의 仲介者로서의 역할이 부과되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독일聯邦內 여러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의 상이에 기인하는 諸領邦의 利害對立이 격렬했다는 것이다.

18세기를 통해 領土를 확장하고 있던 프로이센은 領地의 확대에 수반하여 국토와 국민의 統一에 어려움을 느껴 王室을 중심으로하는 宮廷國家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革命의 영향과 나폴레옹전쟁에서의 패배는 국민국가에로의 轉換과 市民社會 형성의 계기로 되었다. 이를 위해 채택한 일련의 諸方案이 「슈타인·하르덴베르크改革」이라고 불리워진다. 行政措置의 改革을 통해 中央政府에는 各省制度를 설치하고 中央과 地方의 관계를 정비된 官制制度를 가지고 연결하며 국민과 국가간을 行政이 중개한다는 형태가 도입되었다. 특히, 財政制度의 整備에 의하여 宮廷財政과 國家財政이 분리되고 國家財政의 수입원으로 租稅制度가 통일되었다.

租稅特權 뿐만 아니라 領民에게 인격적 지배까지 미치고 있던 貴族的 地主와 農民과의 關係를 조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했

---

10) 原 輝史, 大西健夫, フランスとドイツにおける 産業革命, 荒川, 內田, 島羽編, 産業革命の展開, 東京, 1986, S. 192~193.

다. 有償方式으로 農地改革을 추진하고 國稅納稅者로서의 국민을 육성했다. 身分과 特權에 의해 규제되고 있던 국민의 취업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營業의 자유 就業機會의 부여 居住地 變更의 자유는 물론 국민간에 경제적 機會均等이 실현되도록 노력했다.[11]

共通의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는 全독일的 經濟共同體 形成의 필요는 빈 會議에 의해 유럽에 平和가 도래함과 더불어 英國工業製品의 독일에서의 물람이 시작하자 이에 對抗策으로서 독일各地의 산업계에 있어서 강력히 요구되었다. 1834년에 발족한 독일 關稅同盟(Zollverein)에는 오스트리아, 하노바(Hannover) 그리고 한자(Hansa) 自由都市 등은 참가하지 아니했다. 기타의 領邦은 1818년의 프로이센 關稅法[12]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의 關稅制度를 채용했다. 諸領邦은 政治的 주권을 유지하면서 對外的으로 공통의 關稅率을 채용하고 동맹내부의 通商은 국내에 있어서의 것에 준하도록 했다. 關稅收入은 各 領邦의 人口比에 따라 배분했다. 이 關稅收入이 당시 小領邦에 있어서는 큰 매력이었으며 이는 독일 國民經濟形成에의 제1보를 디딘 것이며 참가하는 諸邦도 서서히 증가해 1870년의 普佛(Preu en-Frankreich)戰爭을 계기로 다음해 성립한 독일帝國 成立의 母體가 되었다.[13]

Ⅳ. 關稅同盟성립 후 政治的 統一時까지의 産業革命

1. 불변고정자본의 투하

독일에 있어서 貨幣資本 특히 商業資本의 축적은 1910년대는 이러한 자본부족이 산업발전을 저지시키었다고 전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資本不足이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20년대에 있어서 利子率의 경향적 저하와 40

---

11) a. a. O., S. 194~195.

12) H. Mottek,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Berlin, 1969, 大島隆雄譯, ドイツ經濟史, 1989~1971, 東京, 1980, S. 56~57.

13) a. a. O., S. 57~85.

년중엽까지 이러한 저하가 계속했다는 사실히 분명히 하고 있다.[14]

또 이때 명백한 資本不足이라는 주장에 대한 最良의 반증은 앞서 보다도 대규모적인 투자가 행하고 있던 때도 利子率의 저하운동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15]

關稅同盟의 형성이 계속되는 時期에는 단지 固定不變資本의 대량투하를 위한 내적전제가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국제적 제조건도 비교적 양호했다. 이러한 好況과 이에 규제되어진 英國과의 경쟁약화는 關稅統一이 성립이나 國內關稅障壁의 철폐 등과 같이 작용하여 固定不變資本 投下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든가 혹은 완만화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산업혁명의 전개를 관철시킨 결정적인 固定資本의 투하는 綿工業, 纖維工業 또 輕工業 一般이 아니라 오히려 交通産業이었다. 독일에 있어서 産業革命의 發現에 있어서 交通産業에의 투자 특히 1840년대 鐵道建設이 결정적이었다.[16] 鐵道建設에 關心이 모이게 된 理由의 첫째는 단순 鐵道企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利益이 아니라 鐵道를 기초로하여 商業經營이나 매뉴팩투어와 같은 종래의 지역적인 企業을 위해 利益과 利權이 증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鐵道建設에 의하여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企業이 촉진되어질 것이며 또 당해지국를 우회함으로서 이러한 연결로부터 제외실될 위험을 피하려는 희망에서가 둘째였다.[17] 1830년대초 이래 독일 市民중의 鐵道建設을 촉진했던 그룹이 鐵道建設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두가지 利益때문이었다. 이 두 利益의 綜合이야말로 鐵道에 대한 資本投下에 관한 결정적인 障害의 극복을 원활하게 하였던 것이다.

特記할 사항은 독일에 있어서 최초의 技師的 技術幹部는 水運 道路強化工事 기타 과제를 위해 국가에 의해서 양성하였다는 점이다. 독일에 있어

---

14) E. Voye, über die Höhe der verschidenen Zinsarten und ihre Wechselseitige Abhängigkeit, Jena, 1902.

15)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31~32.

16)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木村他譯, 經濟成長の諸段階, 東京, S. 75.

17) vgl. D. Eichholtz, Junker und Bourgeoisie vor 1848 in der Preussischen Eisenbahngeschichte, Berlin, 1962.

서 비교적 대규모로 양성되어진 이러한 質이 나쁘지 아니한 상당수의 幹部가 최초의 철도건설을 위해 國家에 의하여 고용되었으며 이들이 독일 鐵道業의 최초의 기술적 개척자였다.[18] 1845년 독일에는 2,131km의 鐵道가 있었다. 1850년에는 5,822km로 확장되어[19] 독일의 鐵道網의 成長速度는 40년대에 있어서 유럽 大陸중 모든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빨랐다.

鐵道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諸部門으로 파급하여 1840년대는 독일史上 최초의 순환성 호경기에 이른 不變固定資本下의 파동은 1847년 경제공황으로 중단되었다. 1853년에 이르러 독일 經濟史上 두번째의 不變固定資本의 대량 투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損耗한 생산수단의 임시적 갱신외에 擴大再生産을 강력히 유도하는 資本投下였다. 이때 또다시 철도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50년부터 1860년대까지의 기간중 독일鐵道의 연장거리는 2배나 증대했다. 그리고 프로이센鐵道로 수송되어진 貨物量은 225만 5590톤으로부터 1,478만 8,641톤으로 거의 7배나 증대했다.[20]

鐵道와 연결하기 시작하자 産業資本家로 된 銀行家나 商人들이 1850년대의 創業붐중 有力한 역할을 다했다. 資本의 집중시 이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銀行도 큰 기여를 하기 시작하여 1850년대 최초의 大株式銀行 내지 최소한 대개인회사은행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미 1858년에는 솨프하우젠(Schaffhausen)銀行이 시작되었고 50년대에는 디스콘토·게젤샤프트(Diskonton Gesellschaft) 달름슈탓(Darmstadt)銀行 베르린(Berlin)商業銀行 및 기타 銀行이 계속되었다.[21] 이러한 銀行이 분산되어 있는 資本의 集中機關으로 작용하였고 결정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固定不變資本의 新投資의 자본조달을 위해 기여하였음은 명백하다.

---

18)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42~43.

19) W. Linden, Eisenbahn und Konjunktur, Wirtschaftsstudien 7, Karlsruhe, 1926, S. 19.

20) vgl, H. Schwabe, Geschichticher Rückblick auf die ersten 50 Jarhre des preußisher Eisenbahnwesen, Berlin, 1895.

21) H. Motteke, 大島隆雄 譯, a. a. o. S. 56.

2. 生産의 上昇

不變固定資本의 강력한 투하를 기초로 하여 1830년대 후반 특히 40년대에 生産 특히 자본주의적 공업경영의 生産成長速度가 급속화하기 시작했다. 이 속도는 50년대는 유지되다가 60년대는 약간 下降했다가 다시 70년대초에 다시 上昇했다.

푸델法(pudding process)및 壓延機를 도입한 工場의 生産 거기다 機關車 및 기타의 機械製造所의 생산 등은 鐵道의 발주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던 모든 工場生産으로 銑鐵生産보다도 한층 급속히 증대했다.[22] 이에 대한 統計的 證明은 關稅同盟에 있어서 鐵道消費量이 1834년의 12만 1,039톤으로부터 1847년의 41만 4,094톤으로 거의 3배로 되었다.[23]

1842년에 독일에 있었던 245台의 機關車중 6분의 1즉 38台만이 독일제였다. 그러나 1851년에 현존했던 1,084台의 機關車중 679台가 독일제였고[24] 그리고 鐵路(레일)에 대한 수요도 점점 自國製品에 의하여 충당되었다.[25] 鐵道에 있어서 固定資本의 투하가 곧 이에 알맞은 金屬加工業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독일 經濟史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기관차 생산의 발전은 특히 기계제조업의 중요한 맹아가 이미 이전에 있었고 技術幹部가 양성되어 있었다는 것 産業브르죠아지의 諸要素가 성숙하여 있었다는 것 등에 의하여 가능했다. 기계제조업의 급속한 발전은 만일 産業革命準備期의 개시 이래 독일에서 사용되었던 기계의 대부분이 독일 자신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주장

---

22) L. Beck, Die Geshichte des Eisens, Braunschwig, 1899, Ⅳ. Abtlg, S. 690,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61, 再引用

23) Ebenda.

24) v. Borries, K., Das Puddelverfahren in Rheinland und Westfalen volkswirtschaftliche betrachtet, Rechts-u. Staatswiss, Diss., Bonn, 1929, Düsseldorf, 1929, S. 46. Ebenda, 再引用.

25) Vgl. W. Oechelhäuser, Vergleichende Statistik der Eisenindustrie aller Länder, Berlin, 1852, S. 112, Ebenda, 再引用.

되고 있다.[26]

독일에 있어서 生產手段生產의 발전은 1851년부터 1857년에 걸쳐 鐵의 소비량이 2.5배나 증대하고 銑鐵生產의 성장속도는 약 2.5배를 기록했다. 石炭生產의 上昇은 거의 2.5배로 英國의 성장속도보다 빨랐다. 綿絲生產은 1850년과 1857년간에 100%이상 증대했으나 그간 綿絲의 輸入은 약간 증대했을 뿐이다. 1854년에 독일의 綿絲生產은 처음으로 外國으로부터 綿絲輸入을 능가했다. 그 이래 1.8배나 우세한 독일의 半製品을 기초로해 綿絲品生產은 급속히 상승을 계속했다. 羊毛製品의 생산은 더욱 발전하여 1846~1850년을 100으로 하면 1856~1860년은 142.3%로 되었다.[27]

3. 生產技術의 進步

1840년대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資本主義的 工業經營이 지배하고 있던 諸部門에서 技術的 進步가 행하여졌다. 重工業 領域에서의 결정적인 技術的 進步는 푸델法의 채용이었다. 푸델法의 보급은 또 자본주의적 中經營에 비하여 어느정도 아직 手工業的 性格을 남기고 있던 小經營의 최종적인 해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적 大經營의 到來를 의미하고 있다.[28] 銑鐵生產에 있어서의 변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鑛產에 있어서 新技術의 使用增大는 노동생산성과 노동능률의 상승으로는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증기기관은 鑛產業의 강력한 확대 그리고 產業革命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鑛山프로레타리아트의 증대 등을 가능케했다. 증기기관은 루어(Ruhr)지역에 있어서 大石炭業의 설립에 그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1839년에 하나의 開削工事가 행하여져 1841년에 엣센(Essen) 부근에서 최초의 坑道가 영업을 개신한 것은 루어炭鑛業史上 중요한 사건이었다.[29] 技術的 進步는 또 機械製造業에도 가져와 거기에서 金

26)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62~63.

27) a. a. O., S. 66~68.

28) K. v. Borries, Das Puddelverfahren in Rheinland und Westfalen, a. a. O,. S. 53. H. Mottek, 大島隆雄 譯, 再引用.

屬加工機械의 광범한 사용에 의하여 機械工業의 변혁과정은 중요한 전진을 이룩했다.[30] 이 발전과정은 50년대에도 계속하고 있었다. 또 이 순환과정에서 산업자본주의부문의 확대는 확실히 이 부문에서 生産技術의 변혁과는 연결되어 있지 아니했으나 生産技術의 일정한 進步와는 결합하고 있었다.

重工業내부에서는 銑鐵製造의 경우 코크스高爐의 채용이 중요한 進步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力織機의 수는 서서히 증가했다. 1857년의 순환적 공황과 이에 계속되는 不況期로 변화하여 그간 소규모적인 섬유공업의 파산에 의하여 보다 큰 그리고 고도한 技術을 장비한 諸經營이 증대했다.

공황에 계속한 1860년대의 好況期에 生産上昇의 기술적 기초가 이전보다 한층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固定資本의 투하가 생산설비의 확대보다도 그 근대화로 돌려졌으며 이 경우 기술적 진보는 특히 섬유공업에서 분명했다. 綿紡績機에서의 노후화된 기계에 대신하여 근대적인 증기력으로 움직이는 自動紡錘에 의하여 급속히 행하여졌다.

技術的 變化는 결코 섬유공업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重工業에서도 이룩되었다. 특히, 鐵鋼제조에 처음으로 벳세머法이나 지이멘스·마르단法이 도입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1860년부터 1870년간에 노동자 1인당의 년노동능률(Arbeitsleistung)은 그전의 10년간에는 약 8.5%만 증가했을 뿐이었는데 비해 약 42%나 증가했다.[31] 전체로서 1860년대는 이미 집중적인 자본주의적 경영 공장 제련소 등이 지배적인 諸部門에서 노동생산성과 노동능률이 급속히 증대하고 또 겨우 자본주의적 공장이 침투하기 시작했을 뿐의 織布業과 같은 部門에서는 그것이 한층 급속히 증대하였다는 특징을

29) W. Däbritz, Entstehung und Aufbau des rheinish-westfälishen Industiebezirks, in :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Technik und Industrie, 15, Bd., S. 27f, Berlin, 1925, Ebenda, 再引用.

30) Vgl. A. Schröter, a. a. O., Ebenda, 再引用.

31) H. Wehner,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Bergbaus von 1850~1870, S. 77, Ebenda, 再引用.

가지고 있었다.

4. 勞動者階級의 상태

산업혁명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化한 手工業者와 본래적인 賃金勞動者(Lohnarbeiter)와의 경계는 불분명했다. 당시의 노동자 상태 그리고 급속한 惡化 노동시간의 연장 그리고 工場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한 가혹한 착취 등에 관하여서는 쿠진스키(Kuczynski)가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32] 그는 1850년대 말까지 實質賃金이 계속 저하하였으며 그리고 노동시간의 연장이 계속했다. 1860년대에는 週賃金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비로소 노동시간량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했다.[33] 쿠진스키는 外延的 착취로부터 集約的 착취에로의 이행이 보였고 특히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요구에 강요된 브르조아지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고있다.

독일 프롤레타리아트 形成의 主要 源泉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적 과잉인구이며 그들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한때 手工業者로 된다는 우회길로 勞動者階級의 구성원으로 되었다.[34] 농업적 과잉인구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농업의 발전 즉 농업혁명에서 발생했으나 보다 큰 부분은 封建的 過去의 상속인이었다. 독일의 농업적 과잉인구량은 産業革命 始初에 특히 컸으며 이것이 독일의 勞動者階級에게 국민적 임금수준과 노동력의 價値發展에 있어 그만큼 劣惡한 출발점을 부여했다. 독일의 工業化 및 資本主義化하고 있던 農業에 의하여 흡수되지 아니한 농업적 과잉인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勞賃에 대한 압박과 실업 불안정성 등을 예리케했다고 지적되었다.[35]

---

32) J. Kuczynski, Die Lage der Arbeiter in Deutschland, Berlin, 1954, 6, Ber, u, Bd. Ⅰ, 1, Teil 1789~1870, derselbe, Geshichte der Kinderarbeit in Deutschland 1750~1939, Berlin, 1958, Ⅰ, Bde, Ebenda, S. 82.

33) J. Kuczynski, Die Geschichte der Lage der Arbeiter unter dem Kapitalismus, Berlin, 1962, S. 142 f.

34) vgl. Becker,Die Bedeutung der nichtagrarishen Wanderung.

35)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82.

독일에 있어서도 産業革命 過程에서 공업인구를 위해 새로운 원천이 점점 발전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産業革命過程 그 자체로부터 기계노동에 의한 手勞動의 驅逐과 그것으로부터 結果的으로 발생해 오는 노동력 과잉의 심화로부터 발생해 오는 源泉이며 이것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상태에 대한 압력도 발생해 왔다.

1830년대 이후 거의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생활수단의 가격상승이 60년대에 들어와서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下落도 보였다. 또 實質賃金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實質賃金의 상승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동자계급의 조직성은 증대하고 그 투쟁정신도 성장했다. 새로운 營業條例의 테두리내에서 도입된 團結의 自由는 1960년대 말까지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자기를 조직하여 스트라이크鬪爭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노동자의 경제적 계급투쟁의 효과는 실질임금의 문제보다도 노동시간단축의 문제에 더 집중되었다. 1848년 혁명의 시기에 勞動時間短縮의 요구는 광범이하게 유포시켰다. 1850년대에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저항력 일반과 마찬가리로 지속되었다. 1860년대 특히 60년대말에 지배하고 있던 전경제적 정치적 상태는 표준노동일 획득을 지향하는 운동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가능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독일 勞動者黨의 설립이 1860년대 말에 이룩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사이에 진행하고 있었던 성숙과정의 표현이었다고 본다.

V. 産業革命의 進行

1. 농 업

제2제국(Zwite Reich)에 포함되어진 독일領의 인구수는 1800년의 2,300만명으로부터 1900년의 5,600만명으로 증가했다. 就業人口 構造도 19세기초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던 제1차 산업인구가 19세기 중엽에는 2분의 1로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3분의 1로 크게 감축했다. 이와 병행하여 제2차

산업취업인구의 증가는 工業化의 진전을 반영하고 있지만, 技術혁신과 資本投下의 증가에 수반하는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 결과하는 것은 19세기 중엽이후이다. 이러한 추세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면 독일에 있어서 그것은 19세기 중엽으로부터 후반에 걸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민해방에 의한 토지소유관계의 변화 三圃農法(Dreifeldersystem) 해체에 의한 토지이용방법의 변화 그리고 農業技術의 진보는 19세기전반에 있어서의 農業의 存在와 方法을 크게 변화시켰다. 개간 휴경지의 활용 共有地의 분할 등의 결과 19세기 최초의 3분의 1기간에 경작지를 최소한 20% 이상 증가했으며 토지단위당 수확량도 10%는 증가했다고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農業生産의 증대는 당시의 農業社會에 풍요함을 갖어 왔다기 보다는 증대하고 있는 인구에 대하여 필요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곡물가격의 상승은 農業經營에로의 자극으로 되었으며 1840년대까지는 세기초와 비교하여 경작지는 40% 증가했다. 경작기술 화학비료의 도입은 경작지 단위당의 수확량을 크게 증대시켜 세기초에 비교하여 40~50% 상승시켰다. 1880년대에 들어와 독일의 經濟構造도 공업화에로의 轉換을 거의 완료하고 있다. 美國의 農産物이 국제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을 상승하게 되었으며 독일은 곡물수입국이 됨과 동시에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곡물관세가 정치문제화되기 시작했다.[36]

2. 纖維工業

19세기 중엽에 들어와서부터 독일경제가 그 기반을 농업으로부터 공업에로 전환한 것이다. 전환기 독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英國이 生産技術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절대적인 지위였다. 농촌사회에서 非農業部門으로서 널리 보급하고 있던 전통적인 섬유공업은 영국의

36) 原 輝史, 大西健夫, フランスト ドイツにおける 産業革命, a. a. O., S. 196~197.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이것은 섬유공업의 生產工程의 대부분이 農村의 副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 이 事情이 독일에 있어서 섬유공업의 기계화를 지연시킨 요인의 하나였다.

羊毛 그리고 麻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가 있었던 독일의 섬유공업에서는 19세기중엽 羊毛에 의한 방적생산량의 3분의 2는 기계화되고 있지 아니했으며 麻에 있어서는 90%까지 手作業으로 방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 綿織物生產의 절반가량이 기계화 되었던 것은 187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였다. 英國產業革命에 있어서 선도산업의 기능을 담당했던 섬유공업은 독일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에의 길을 여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독일에 있어서 섬유공업의 기계화가 일반화된 것은 1870년대 이후의 일이다.[37] 독일 綿紡織業은 關稅同盟체결 후 약 20餘年間의 정체기를 지난 후 生產의 상승이 시작되었다. 綿絲生產은 1834, 1835년부터 1848, 49년간에 96,274톤으로부터 281,938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면사수요에 대한 독일 紡織業의 공급율은 31.7%로부터 37.7%에로 상승했다. 羊毛工業은 1834년을 100으로 했을때 1848년은 168%로 상승하고 있다.[38]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이 時期의 羊毛加工業에 관하여 단순히 방적 뿐만 아니라 완성공정도 기계화되어 있었고 최소한 羊毛加工에서의 生產上昇은 全產業資本主義部門의 成長에서 計算해야만 하게끔 되었다는 사실이다.

綿絲生產은 1850에서 1857년간에 100%이상 증대했고 1854년에 독일의 綿絲生產은 처음으로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을 능가했다. 美國에서의 南北戰爭은 독일의 棉花不足과 價格上昇을 가져와 어려움에 遭遇했는데 이때 이익을 본 것은 다른 섬유공업이었다. 특히, 1860대 후반에는 綿織物工業의 一時的인 好況과 羊毛工業의 급속한 발전이 보였다.

---

37) a. a. O., S. 197~198.

38) H. Blumberg, Die deutsche textilindustrie i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Berlin, 1965.

3. 鐵 道

19세기 중엽에 있어서 英國은 鐵道時代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독일 경제도 鐵道에 자극된 石炭業 鐵鑛業 및 機械工業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기에 들어간 것이다. 1835년 뉘른베르크(Nürnberg)－휠트(Fürth) 間을 독일 최초의 鐵道가 부설된 후 1845년까지는 2,100km 1860년까지는 11,600km 그리고 1880년까지는 33,800km로 증설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은 여객수송과 화물수송망이 유럽대륙에서 가장 완비한 국가로 되었다.

철도망 정비효과는 종래의 수송수단에 비하여 運賃 速度 規則性이라는 點에서 압도적이며 勞動力의 이동 通勤手段 産業 및 거주입지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條件을 창출했다. 철도수송이 工業地帶의 경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關稅同盟國의 확대와 상반하여 국민경제형성과 국내시장통일에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었다. 철도수송이 工業地帶와 農業地帶의 쌍방에 시장을 확보시켰고 동시에 地域間 分業을 결정적인 것으로 한다는 효과를 가져왔다.

鐵道建設의 主體는 私企業이었다. 철도부설계획에서 최대의 요소는 자금조달이었다.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독일은행은 일부의 例外를 제외하고는 産業資金供給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철도회사는 대부분 株式發行 社債銀行을 통하여 자기자본조달의 길을 열었다. 鐵道부설붐이 도래하자, 鐵道株 鐵道債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 증권시장을 혼란시키게까지 하였으며, 1873년의 증권시장위기가 鐵道國有化 추진의 하나의 契機로 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39]

1842년에 독일이 보유했던 245台의 機關車중 166台가 英國製, 12台가 벨지움製 29台가 美國製 그리고 겨우 38台가 獨製였다. 그러나 1851년에는 現存했던 1084台의 機關車중 679台가 독일제였고 鐵道資材의 대부분과 레

39) Ebenda, S. 200~201.

일에 대한 수요도 자체 충당케 되었다.[40] 鐵道에 있어서의 固定資本의 投下가 곧 이에 조응하는 金屬加工業의 發展을 가져온 것은 독일 經濟史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商船隊의 한나를 창건했다. 1871년에 147척으로 총 등록 81,994톤이었던 것이 1913년에는 2,098척으로 총 등록 4,380,348톤으로 성장하고 있다.[41]

4. 石炭, 鐵, 機械

철도망의 충실은 철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의미하며 製鐵業의 확충은 石炭 産出高의 비약적인 증대를 요구했다. 독일의 鐵道부설은 英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초기의 증기기관차는 英國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鐵의 수요는 주로 線路부설에 충당되었다. 19세기 중엽이후 증기기관차 및 차량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철의 수요는 機械工業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철도건설에 자극되어 기계공업에 의하여 그 기반을 확립해가는 독일의 重工業은 銑鐵生産 및 石炭生産高에 있어서 19세기말로부터 20세기에 걸쳐 英國과의 간격이 순식간에 단축되었다.

석탄의 채굴에 있어서는 독일은 그의 競爭者인 영국에 결코 완전히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採炭의 증가율에 관한한 독일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美國뿐이었다. 石炭의 生産은 1871~1875년의 年平均 3,450만톤으로부터 1913년의 1억 9,150만톤으로 증가했다 풍부한 갈탄 생산이 더욱 강력히 개발되었고 그 生産高는 같은 기간에 970만톤으로부터 8,750만톤으로 증가했다.[42]

석탄 鐵 機械는 독일의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독일 經濟의 기본구조를 근

---

40) vgl. W. Oechelhäuser, Vergleichende Statistik der Eisenindustrie aller Länder, Berlin, 1852. S. 112.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62 再引用.

41) G. Stolper, a. a. O., S. 29.

42) a. a. O., S. 27~28.

본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뒤의 工業中心의 立地를 규정해보였다. 예컨대 근세이래 鑛業 金屬工業의 전통을 가지며 거기에 製鐵業 내지 機械工業을 발전해갔던 地域은 라인(Rhein)地方 작센(Sachen)地方 빗템베르크(Wittemberg)地方 슈레지엔(Schlesien)地方 등을 열거할 수 있다. 機械工業이 정착했던 地方으로는 브란덴브르그(Brandenburg) 하노바(Hanover)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안할트(Anhard) 그리고 工業都市 베를린(Berlin)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地方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工業中心地로서의 기반을 그때에 구축했던 것이다.[43]

기계공업은 놀랄만한 속도로 가장 중요한 輸出産業의 하나로 발전했다. 그 취업자수는 1861년에 51,000명 1882년에 356,000명 그리고 1907년에는 1,120,000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군수산업이 이룩한 역할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44]

독일의 製鐵業의 成長을 지원했던 것은 석탄과 더불어 로오트린겐(Lothringen)의 鐵鑛이었다. 鐵鑛生産高는 1871~75년 간의 年平均 530만톤으로부터 1713년의 2,8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것에 의하여 제철업 번영의 조건이 주어졌다. 銑鐵의 생산은 1871년에 160만톤이었으나 1910년에는 1,480만 톤으로 되었다(룩셈불크를 포함). 1900년에는 英國의 銑鐵生産高는 910만톤이고 이것은 독일·룩셈불크의 850만톤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강철에 관해서는 독일(740만톤)은 당시 이미 경쟁상대국 英國(600만톤)을 능가하고 있었다. 1910년에 이르자 독일의 철 생산은 다른 모든 유럽 諸國을 훨씬 앞서 달리고 있었다.[45]

5. 資 本

독일에 있어서 産業資本供給源으로서의 銀行歷史는 짧았다. 전통적으로 은행업의 주요분야는 貨幣業務이며 聯邦政府 地主 商人에로의 저당융자가

43) 原 輝史, 大西健夫, a. a. O., S. 201~202.
44) G. Stolper, a. a. O., S. 29.
45) a. a. O., S. 28.

주체로 되어 있었다. 1830년대에 있어서 産業資金의 공급에 착수했던 것은 쾰른(Köln)의 諸銀行이었다. 그리고 라인地方에서의 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가고 있었다. 독일에 있어서 通貨制度는 크게 北獨의 탈러(Thaler)圈과 南獨의 굴덴(Gulden)圈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8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各領邦은 뮨헨(München) 라이브치히(Leipzig) 베를린(Berlin) 등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에 發券銀行을 설립하게 되었다. 通貨 및 發券銀行制度가 통일되는 것은 제2 제정(Zweite Reich)성립 이후이다.

1873년에 金本位制에로의 移行이 계획되었고 1875년에는 제국은행(Reichs Bank)이 설립되었다. 지난 날로부터의 各地의 發券銀行은 32개로 증가되었으며 이것에는 帝國銀行의 보증이 필요로 되게 되었다. 1910년에는 帝國銀行券이 法定通貨로 되고 1914년의 단계에서 發券銀行으로 잔존한 것은 大領邦을 대표하여 베를린의 제국은행 뮨헨의 바이에른(Byern)發券銀行 드레스덴(Dresden) 작센(Sachsen)發券銀行 칼수루헤(Karlsruhe)의 바덴(Baden)發券銀行의 다섯이었다. 發券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을 목적한 銀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였다.[46]

6. 商業 및 貿易

工業化의 진전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의 産業間 및 地域間 分業이 불가결했다. 그리고 生産者間 및 生産者와 消費者간을 연결하는 상업의 기능강화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먼저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에로의 移行에 따라 都市 내지 工業地帶에의 인구 집중이 진행되어 自給自足的 農村과는 달리 소매상의 존재가 필요케되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消費者組合이 발생케 되었다. 商業의 핵으로서의 도매업의 성장이 이룩되었다. 특히 비교적 큰 資本裝備를 가진 도매상 가운데는 生産者를 겸한 産業資本家로 전화하는 자가 있었고 독일의 경우 商業出身의 企業

46) 原 輝史, 大西健夫, a. a. O., S. 202~203.

家의 수도 많았다.

統一國家 및 統一的 國內市場의 형성이 늦어진 독일에 있어서 외국무역을 다른 유럽의 諸國보다는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關稅同盟의 체결에는 各領邦政府의 재정적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英國 工業製品 특히 木綿製品 鐵製品에 대한 국내공업의 보호의 필요라는 점에서 大領邦間에 利害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同盟諸邦內의 각 산업간의 경쟁은 잔존하고 있었지만, 특히 통일적 對外經濟政策실시의 주체가 성립한 것이다.

각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工業化가 진행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에는 국제분업도 발전하여 世界貿易은 질 및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소위 世界貿易의 출현을 보았다. 독일에 있어서 총무역고는 그 價格에 있어서 19세기 최초의 3분의 1에 있어서 약 40% 증가했다. 關稅同盟으로부터 제2제국의 성립까지의 무역량의 팽창은 4배나 되었다.[47]

工業化에 수반하는 經濟構造의 변화는 무역의 상품구성에 반영되었으며 19세기를 통하여 최대의 輸出項目인 완성품의 비율은 44~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중 1835에는 80%를 차지하고 있던 섬유제품의 비율이 1873년에는 50%까지 감축하고 이에 대신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독일의 工業化를 담당하고 있던 철강 금속 기계제품이었다. 이러한 輸出工業이 독일의 工業化를 추진하였던 것이다.[48]

輸入의 主體는 原料 半製品이며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飮料品輸入의 비중이 크게 증가케 되었다.

19세기를 통한 독일 經濟의 발전은 30년대로부터의 출발기를 거쳐 중엽 이후 加速을 강화해갔다.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에로의 轉換에 있어서 현재화하기 시작한 剩餘勞動力이 제2차산업에로 흡수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산업혁명을 담당했던 鐵道建設을 계기로 하여 성장한 철강 기계공업이라는 重工業에 의하여서이며 19세기 후반에는 이에 化學 電氣가 더하여

47) 原輝史, 大西健夫, a. a. O., S. 203~204.
48) Ebenda.

졌고 독일 經濟의 基盤을 완전히 重化學工業으로 옮겨졌다.

Ⅵ. 독일關稅同盟의 成立

1. 역사적 전제

18세기 초 독일은 정치적으로 현저한 分裂狀態에 있었다. 그 실태는 61의 自由都市를 포함한 300餘의 領邦國家(Territoralstaat)와 그 數倍에 미치는 帝國騎士領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小邦群立의 상태는 16세기 이후의 독일사를 관류하는 큰 특징이라고 주장되고 있다.[49]

프랑스革命戰爭과 나폴레옹戰爭 과정에서 이러한 독일의 政治構造는 정리되고 재편되었으나 빈(Wien) 회의에 의하여 主權이 인정되어진 국가는 아직 38(2년 후의 1817년에 하나가 더하여져 39)를 세게되었다. 이것이 독일聯邦(Deutcher Bund)이라고 불리워지는 느슨한 聯合(Bundesstaat)이 아니고 (Staatenbund)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수는 1866년에는 독일聯邦이 해소되었을 때 33으로 그 때까지 겨우 6개가 감소된데 불과했다. 이러한 정치적분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경제적 분열이었다. 즉 개개의 領邦內에서 굉장한 關稅障壁의 존재였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종의 地方自治로부터 民間의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방법으로 關稅의 징수권을 획득하고 이런 關稅는 領邦의 국경에서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領內의 도로 하천 市內 그리고 시장 등 도처에서 부과되고 있었다.[50]

1790년에 독일에는 1800의 關稅障壁이 존재했다. 실제 슈트라스부르크(Straβpburg)로부터 네덜란드 國境까지 라인(Rheiniz)을 또 함부르크(Hamburg)로부터 마인쯔(Mainz)까지의 마인(Main)江을 혹은 민덴(Minden)으로부터 브레멘(Bremen)까지 뷔이져(Wieser)江을 내려오는 선박은 각각 30個所 이상에서 關稅를 지불하여야만 했으며 막데부르크

---

49) G. Fisher, "Über das Wesen und die Bedingung eins Zollvereins",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Bd. 2, 1864, S. 322.

50) 諸田 實, ドイツ關稅同盟の成立. 東京, 1974, S. 10~11.

(Magdeburge)으로부터 함부르크까지 엘베(Elbe)江을 내려오는 선박은 14회 關稅가 부과되었다. 드레스덴(Dresden)으로부터 막데부르크까지 陸路를 달리는 여행자는 1690개소의 稅關을 통과했다는 것이 실상이었다. 더구나 稅率과 징수의 法規는 극히 번잡했으며 19세기 초의 프로이센에서만 國稅와 內國消費稅의 징수에 있어서 67의 상이한 關稅表가 통용하고 있었다.[51]

이러한 굉장한 關稅障壁의 존재가 기타의 交易制限 公共施設의 사용수수료 정부나 민간의 독점 商品의 지정판매제와 강제적환권등이 상공업의 발달을 방해하고 그결과로서 窘輸를 조장하였다. 關稅·內國消費稅制度는 연방절대주의의 산업규제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領邦當局이 여러가지 弊害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關稅 內國消費稅制度를 고수한 것은 관세 내국소비세수입이 중요한 財源이었기 때문이다. 改革前 프로이센의 세입중 關稅 消費稅가 차지하는 비율은 37.7%에 달하여 地租 王領地 王領林收入의 합계와 거의 同額이었다고 주장되고 있다.[52] 關稅問題는 通商問題이기전에 무엇보다도 財政關稅로서 財政問題였다.[53]

2. 1818년 프로이센 관세법

多數의 領邦으로 분열되고 領邦內部가 다시 다수의 관세영역으로 분렬되어 있었던 독일이 복수의 국가간의 共同市場으로서 관세동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領邦國家의 내부관세(Binnenzölle)가 폐지되고 關稅는 국경에서만 징수되는 근대적 관세제도가 채용되고 통일적인 경제영역이 성립되어야만 했다.[54] 이것이 關稅同盟의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본다.

---

51) J. Kulicher, Allgemeine Wirtschaftsgeschichte des Mittelalters und der Neuzeit, Bd. 2, 1928, S. 501.

52) G. Dähne, Die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in Preußen vor und in den Befreiungskrig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Landwirtschaft, 1928, S. 88.

53) W. Fischer, "The German Zollverein : A Case study in Custom Union" in Kykos, Vol. 13, 1960, S. 67.

독일의 主要 領邦 중 이러한 조치가 취하였던 곳은 먼저 南獨의 3個國 즉 바이에른(Byern) 뷧템베르크(Wittemberg)그리고 바아덴(Baden)으로서 1807~1812간에 프로이센에서는 1818년의 관세법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그 중 독일 관세동맹이 프로이센 主導 아래 성립되고 특히 이때 프로이센의 關稅法이 기본적으로 독일관세동맹의 그것에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55]

1818년의 關稅法 즉 「關稅와 外國商品의 소비세 및 國內諸州間의 교역에 관한 法律」은 프로이센改革의 일환으로서 재무대신 훤 뷔로우(Ludwig Friedrich Viktor von Bülow)에 의하여 제출된 關稅制度改革案 중 제2부 제1편 「外國商品의 수출입세 및 소비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제3편 「일반적 제규정」을 원형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성립한 것이다. 이 關稅法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對內的으로 내부관세를 철폐하고 프로이센全土를 單一의 關稅法이 통용하는 하나의 關稅領域으로하고 이리하여 약 5,000 mile^{2}의 면적과 1,050만명의 인구를 포함한 통일적인 經濟領域으로 창출하였다는 것, 둘째는 對外的으로는 貿易의 自由原則을 선명하고 이 原則에 따라 비싸지 아니한 국경관세를 설치해 財政收入의 확보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리스트(F. List)는 聯邦議會에 제출한 청원서[56]에서 프로이센關稅法은 프랑스와 英國과의 무역에 對應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일 諸邦과의 무역에 대항하는 것을 지향하는것 같이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요컨대 1818년의 關稅法은 先進 資本主義 英國에 대하여서는 東엘베의 農林産物이나 그 加工品의 수출을 도모하기 의하여 英國 工業製品의 수입에 대하여 門戶를 개방하면서 확보를 위해 소비세와 통일관세에 의하여 그리고 關稅法의 엄격한 실시에 의하여 프로이센의 關稅領域으로 加入할 것을 강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57]

---

54) Friedrich List, "Bittschrift an die Bundesversammlung" : in Werke, Bd. 1. S. 491~496.

55) G. Fisher, a. a. O., S. 327.

56) Bittschfift an die Bundesversammlung(1819년 4월 19일).

3. 關稅同盟의 체결

프로이센이 헷센(Hessen)과의 관세동맹을 인접의 諸國으로 확대시키려는데 대하여 이러한 諸國이 中部독일關稅同盟[58]을 체결하여 反프로이센의 態度를 분명히 한 것은 프로이센으로 하여금 中部독일關稅同盟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게 했다. 관세정책과 도로건설을 무기로하는 이 공격은 프로이센과 南독일間의 통상조약의 체결과 마이니겐(Meiningen) 고오타(Gotha)의 道路協定의 체결에 의하여 서전의 승리를 갖어온 것으로 보였다. 프로이센 指導 아래 독일聯邦내에 一大勢力이 출생했고 라인江沿岸諸國을 대표하여 프로이센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진행시키고 있던 라인江의 교섭도 진척되어 프로이센外交의 승리를 말하게 되었다.

1830년의 7월혁명은 관세동맹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센의 東西兩州間에 위치하는 쿠어헷센(Kurhessen)은 프로이센 反프로이센 兩陣營으로부터의 作用의 촛점이었으나 프로이센의 道路政策의 체결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月革命의 영향 아래서의 政變結果 議會內의 세력관계로 親프로이센派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831년 3월 말 마인쯔(Mainz)에서 라인江 航行條約이 조인된 결과 라인江의 航行自由化에 의하여 南北독일間의 상업로를 쿠어헷센이 압박을 가할 의미는 감소했지만 同國이 반프로이센의 태도를 취하는것은 무의미하고 불이익으로 되었다. 이러한 狀況中 1831년 6월 쿠어헷센政府도 프로이센의 방향을 타진한 위에서 關稅問題의 토의를 위해 代表를 파견할 것을 결심하였다. 교섭은 바이에른과 헷센의 代表도 참가해 행하여져 8월 25일 「쿠어헷센과 프로이센·헷센同盟間의 條約」이 체결되었다.[59]

---

57) 諸田 實, a. a. O., S. 14.

58) Der mitteldeutsche Handelsverein.

59) Vertrag zwischen Kurhessen und dem preußish-Hessischen Zollverrin von 25. August 1831 in: H. Oneken und F. E. M. Saemisch(hrsg.) Vorgeschichte und Begründung des deutschen Zollvereins, 1815~1834, Bd. 3, 1934, S. 168 ff.

쿠어헷센의 脫落은 中部독일通商同盟의 끝을 의미했다. 프로이센은 東西로 분리해 있던 領土의 결합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中部독일諸邦의 연휴를 분해했다.[60] 1831년 말부터 남북관세동맹간의 교섭이 개시되었다. 1932년 1월 南獨側은 프로이센東部諸州의 관세동맹에의 포함을 제안하여 프로이센側은 러시아나 폴랜드와의 關係에서 그것이 곤난하다는 뜻을 설명하여 많은 例外를 요구하였다. 2월말의 對案에서 東部諸州를 포함하는 대신에 오더(Oder)江과 그 右岸에 징집하는 通過關稅收入을 제외하는 것 오더江과 그 右岸의 통과교역에 대한 독자의 規制를 유보하는것을 주장했다. 교섭은 一致点을 발견하지 못하고 中斷했지만 이 中斷間에 프로이센은 작센 및 튀린겐(Thüringen)諸邦과의 교섭을 진행하다가 數回의 회담에서 결론에 도달해 1833년 3월 22일 南北關稅同盟間에 관세동맹조약이 체결되었다.

南北獨間에 관세동맹이 성립한 후 이미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작센王國의 加入이 결정하고 5월에는 튀링겐 地方의 9개의 小領邦이 「튀링겐 諸邦의 關稅·通商同盟」을 체결한 뒤에 一括해 加入했다. 이리하여 1834년 1월 1일에는 18個의 領邦 2,300만명의 인구와 7,719mile^{2}의 면적을 포함하는 독일관세동맹이 8년간의 기한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독일關稅同盟에 가입하지 아니한 곳은 바아덴 낫사우(Nassau) 프랑크폴트(Frankfert)라는 中斷商業에 의존하는 內陸의 領邦를 제외하면 한자(Hansa)都市와 하노바의 영향 아래 있었던 北獨沿岸諸邦이었다. 그러나 1835년에 바아덴 낫사우 그리고 1836년에 푸랑크폴트가 가입하여 이로 인하여 關稅同盟은 西南독일에서 완성했다.

關稅同盟의 성립은 국내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며 그業에 미친 영향도 컸었다.[61] 機械工業의 발달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價値가 있었다. 그러나 英

---

60) W. von Eisenhart Rothe, "Einleitung", S. 17, 諸田 實, a. a. O., S. 24, 再引用.

61) W. Thieme, Eintritt Sachsen in den Zollverein und seine wirtschaftlichen Folgen, Inangural Dissetation, S. 62, 諸田 實, a. a. O., S. 145, 再引用.

國製 綿絲의 輸入이 의연히 쇠퇴하지 아니했지 때문에 紡織業의 상태는 반드시 혜택을 입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加入에 의하여 최대의 利益을 얻은 것은 작센의 織布業이었다. 關稅同盟加入에 의한 市場의 擴大가 산업구조의 재편에 끼친 영향은 至大했다.

Ⅶ. 結 論

독일에 있어서 勞動者階級이 형성되고 일정의 성숙단계에 도달한 時期가 산업혁명의 終期이며 1873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되고 있다.[62] 그 工業發展의 속도가 중첩되는 순환을 통해 독일이 有力한 工業國家로 成長하고 英國을 추월하는 것이 時間問題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工業은 한층 더 發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873년이후에 있어서 그것 이상의 資本主義的 工業化를 위한 자본투하는 전혀 工業의 축적이윤 자체로부터 발생케 되었다. 그리고 産業革命의 중요한 메르크말로서의 상업자본의 산업자본에로의 轉化는 이에 중요한 役割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1873년에는 독일資本主義歷史에 있어서 질적인 새로운 時代가 시작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어서 獨占資本主義에로의 移行의 기초로서 자본주의 공업내부에 있어서 급속한 集中 過程이 진전했다. 手工業에 근거하는 小營業에 대한 工場의 투쟁이 산업혁명의 지나간 단계를 특징짓는다고하면 이 時代에는 中小工場에 대한 大工場의 투쟁이 第一義的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다시 19세기 최후의 數10年間에는 전기나 화학 그것에 염가로 生産되어지는 鐵鋼을 기초로 한 새로운 技術的 變革이 시작한 것이다.[63]

上述한 觀點에서 1945년까지의 독일工業史의 時期區分은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64] 1784~1833년 産業革命 準備段階 1834~1873년 産業革

62) J. Kuczynski, Studien zur Geschihte des Kapitalismus, Berlin, 1957, S. 10.

63) a. a. O., S. 11.

64) H. Mottek, 大島隆雄 譯, a. a. O., S. 92~93.

命 1873~1895년 自由競爭의 자본주의로부터 獨占資本主義에로의 점진적 移行期에 있어서 資本主義的 工業化 1895~1914년 독일帝國主義初期에 있어서 독일工業의 發展 1914~1945년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의 제1단계에 있어서 독일工業의 發展期이다. 經濟的 政治的 後進國이었던 독일은 비록 英國에 비하여 뒤늦게 產業革命을 진행했으나 先進國 英國을 추월하는 經濟大國으로 成長했으며 그 근본적인 原因을 성공적인 產業革命의 추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本論文은 독일產業史의 대표적인 硏究者인 H. Mottek의 所論을 核으로 진행시켰음을 부언한다.

獨逸 社會的 市場經濟의 史的 展開過程*

黃 俊 性**

目 次

Ⅰ. 서 론
Ⅱ.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
Ⅲ.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역할
1. 질서정책
2. 경과정책
Ⅳ.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적 전개 과정
1. 제1단계 : 질서자유주의의 확립단계
2. 제2단계 : 질서정책의 쇠퇴기
3. 제3단계 : 질서정책의 부흥기
4. 제4단계 : 舊동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통합 단계
Ⅳ. 결 론

Ⅰ. 서 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분단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전쟁을 통한 경제적 피해는 극심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을 통한 독일인의 사망자수는 800만에 달했고 영토는 24%를 잃게 되었다. GNP는 1939년을 기준으로 50%, 공업생산은 67% 감소했으며 총 가옥의 47%가 전파, 또는 손상되어 3가구당 1가구꼴로 거주할 곳이 없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업시설, 교통망, 운송수단 등도 절반가량이 파괴되어 독일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1] 이는 2차례의 세계대전을 주도한 나치즘의 결과이다.

* 본 논문은 1994년도 숭실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숭실대 경제학과 조교수

1) K. Fasbender, u. a.(Hrsg.), Element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Hamburg, 1991, pp.24~25.

나치체제하에서 독일경제는 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시장메카니즘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대체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형식상 사적 소유로 되어 있으나, 임금 및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은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독일경제에 큰 부담이 된 것은 극심한 인플레 현상이었다. 나치정권은 군비확장과 전쟁수행을 위해 과도한 화폐발행을 통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한 결과 1938년에 564억 제국마르크(RM : Reichs Mark)였던 총통화량이 1945년에는 거의 3,000억 RM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독일에서의 RM은 더 이상 화폐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담배, 버터 등 몇몇 재화가 화폐를 대신하는 '현물경제'로 돌아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재건과 화폐개혁 그리고 전시경제를 운용한 나치경제체제하에서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청산하는 작업이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경제정책, 특히 질서정책의 확립이었다. 패전 후 연합군 점령하에 독일에서의 자원배분은 나치체제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데나워(Adenauer) 정부의 총리였던 에르하르트(Ludwig Erhart)는 시장지향적 질서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나치체제의 유산인 정부의 통제 및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948년 6월 20일 화폐 및 가격개혁을 단행하였다. 화폐개혁을 통해 이전까지 통용되던 제국마르크(RM)는 새로운 독일마르크(DM)로 바뀌었으며, 독일내 모든 국민은 1인당 40마르크씩 현금을 배당받고 두달 뒤에 다시 20마르크를 추가로 배당받았다.[2] 이전의 RM은 은행구좌에 입금되어 10 : 1의 비율로 강제저축되었다. 또한 이전까지의 독일제국의 채무는 완전 백지화되고 민간채무는 10 : 1의 비율로 평가절하되었다. 화폐개혁은 전시의 배급과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였으며 이는 새로운 통화를 도입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산과 분배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가격개혁을 의미한다. 이로써 화폐 및 가격개혁은 독일

2) BfW, 40 Jahr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onn, 1989, p.13.

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3]

이어 1949년 5월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연방의 기본법(Grundgesetz)이 통과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의 법적 체제가 확립되었다. 법문화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적 목표는 가격안정과 완전고용의 유지,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제2장), 사회적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는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고(제3장), 나치경제의 붕괴이후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역사적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분석(제4장)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자의 한 사람인 알프레드 필러-아르마크(Alfred Mueller-Armack)에 의해 처음으로 표현되고 정립되었다.[4] 그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도 18~19세기의 경제상황에 맞는 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현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앙집중적 계획 경제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중의 양자택일이라는 대안은 부적절하며 새로운 제3의 경제체제가 필요한데 이 경제체제가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한마디로 민간기업에게 가능한 최대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지만 사회적 형평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시장개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전후 형성된 독일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에 의하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불필요한 것으로 이

3) K. Voy(Hrsg.), Marktwirtschaft und politische Regulierung, Marburg, 1991, p.173.

4) Mueller-Armack, Alfred, Wirtschaftslenkung und Marktwirtschaft, Hamburg, 1946.

해하고 있으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견지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은 전후 유럽에서 형성되어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적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되 각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의 동기유발과 시장경제적 활동을 사회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념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즉 사회적 목표들, 소위 사회적 안정성(Soziale Sicherung), 사회적 공정성(Soziale Gerechtigkeit), 사회적 발전(Soziale Fortschritt)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 이 개념 속에 설정되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패전독일이 경제적인 위기와 혼란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제3의 체제'로서 도입되었으나 이론적, 사상적 기초는 이미 나치가 지배하던 세계대전 중에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이론 및 체제로서 구체화되어 갔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제창된 신자유주의사상은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점차 확대, 강화되어가는 정부의 경제간섭에 대해 가해진 비판운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최초로 이러한 정부간섭에 대해 그 위험을 경고하고 비판한 사람은 미제스(L. v. Mieses) 였다. 미제스는 그의 가격평가(preistaxen) 이론에서 가격메카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경제전반에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이것은 결국 경제를 중앙집권적 명령경제로 만든다고 했다.[5] 후에 '불협화음론'으로 명명된 이러한 그의 논리는 경제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주제가 되어 경쟁 혹은 시장사회주의 이론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하이예크(F. A. v. Hayek), 뢰프케(W. Roepke), 오이켄(W. Eucken) 등이 이를 계승하여 정부간섭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930년대 나치즘의 발흥과 중앙관리 경제체제의 강화로 신자유주

5) L. v. Mieses, Preistaxen 6Bd. in : Handwoe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 Jena, 1923, pp. 105~106.

의자들의 정부간섭에 대한 비판운동은 위축되었으며 신자유주의자들의 대부분은 국외로 망명하는 등의 일련의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치경제는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독일에서 오이켄, 뢰프케, 뵘(F. Boehm)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프라이부르크학파[6]에 의해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오이켄은 그 중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이켄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자유방임과 사회주의의 중앙관리를 모두 부정하는 소위 '경쟁질서(Wettbewerbsordnung)'를 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주장하였으며, 이것을 과거 자본주의의 이념인 구자유주의(Palaeoliberalismus)와 구별하였다. 그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경제질서는 단순히 스스로 형성되는 '自成的 秩序(gewachsene Ordnung)'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형성해야 할 '設定的 秩序(gesetzte Ordnung)'라는 것이다. 또한 이 학파의 한 사람인 뢰프케는 자유시장 경제를 '自生植物(Natur－pflanze)'이 아닌 '栽培植物(Kultur－pflanze)'로 비유한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 방임해 두면 스스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패하며, 부패된 독소가 사회전체를 해치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손에 의한 배려와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오이켄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이념은 자유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본기구가 되나,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시장의 틀을 창출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개입은 기존의 시장질서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통제와 같이 시장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으로 '경쟁질서'를 선택한 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근거가 있다. 그 하나는 소위 질서라는 의미의 '오르도(ORDO)'

6) 이들 학자들은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의 경제학교수들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틀을 정립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이 소속된 대학의 이름을 따 '프라이부르크'학파로 불리게 되었다.

의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제질서의 상호의존의 원칙'이다. 먼저 '오르도'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부합되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전체의 그러한 질서로서는 '경쟁질서'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오이켄의 입장이다. 사회경제의 본래의 존립방식은 소비가 생산을 유도하며, 여러 재화의 상대적 희소성이 정확히 표시되어, 그에 따라 자원이 가장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경쟁과 이를 통한 유효한 가격형성이 가능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경쟁질서'가 선택되는 두번째의 이론적 근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질서의 상호의존(Interdependenz der Ordnung)의 원칙'이다. 이것은 오이켄에 의해서 정식화된 원칙이기도 하지만, 일찌기 경제에 있어서의 통제파급의 효과를 설명한 미제스나 하이에크의 이론을 일반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경제의 전체를 구성하는 諸部分의 질서 사이, 그러한 부분 제질서와 경제전체의 질서 사이, 또한 경제질서와 경제 외의 사회와 정치와 정신의 질서, 즉 인간생활 전체를 구성하는 생활제질서의 사이에는 불가분의 상호 의존관계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이다.[7]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면, 이를테면 경제는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기타의 생활영역에서 자유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만일 인간이 자유로와지고자 한다면 경제도 또한 자유로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8]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쟁적 질서를 유지하고 설정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자유경쟁에는 자유와 자기책임의 자율의 태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자유경쟁의 실현이라는 경제주체들의 정신에 달려 있다.

둘째로, 정부에 관한 새로운 입장이다. 경쟁질서는 그 법적인 기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제 조건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의 이해집단의 이해를 초월한 강력한 권위의 정부와 정책확립이

7) W. Eucken, Grundsaetze der Wirtschaftspolitik, Tuebingen, 1959, p. 124~125.

8) W. Eucken, op, cit, p.132.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Ⅲ.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一見 모순된 듯한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점점 정부활동이 증대되어 가는 움직임을 부정,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래에 국가는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점점 정부의 기능을 확대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축소를 강조하게 된 것이며, 반대로 정부기능의 확대를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정부에 안정을 요구하는 대중의 움직임과 다양한 이익집단이 생성·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이외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제나 사회를 정부로 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종래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제나 사회, 그 자체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데에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독일식 자본주의모형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주된 특징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들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정책을 질서정책(Ordnungspolitik)과 경과정책(Ablaufspolitik)으로 구별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원칙적으로 질서정책에 국한하고, 경과정책에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질서정책이란 경쟁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들에 가해지는 정책을 의미하며, 경과정책이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제의 흐름에 가해지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쟁시장의 틀을 보전하거나, 그 보완에 국한되어야지, 경제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간섭은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과정에의 정부의 간섭과 정책은 가격기구의 유효한 기능을 해치고 통제과급의 원칙에 따라 결국 중앙관리체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질서정책과 경과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질서정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서정책이란 경쟁시장의 틀을 형성하는 조건에 관한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쟁시장의 틀의 형성이란 오이켄에 의하면 '완전경쟁의 유효한 가격체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완전경쟁의 유효한 가격체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경쟁질서에 필요한 법제적 기초를 정비함은 물론, 그 위에 건전한 통화체계와 함께 독점방지를 위한 '반독점정책'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 오이켄은 경제에서 독점방지를 규제적인 질서정책의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뢰프케는 그것을 경제정책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또한 믹쉬(L. Miksch)같은 경제학자는 금융기관이나 주식회사조직 및 정보에서의 독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독점은 그것이 공공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 내지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통제하기 보다는 독점 그 자체가 惡이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독점에 대한 성과경쟁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반불공정거래법(UWG : 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 割引法, 부가물(덤핑, 경품, 프리미엄 등등)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질서정책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분배정책이다. 특히 소유와 그 분배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유의 분산이 유효한 경쟁시장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유효한 경쟁시장의 형성에는 경제결정기능의 분산, 그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의 사유제가 불가결한 것이다. 시장기구를 통한 분배만으

로는 소득 내지 소유의 격차의 발생과 확대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따라서 유효, 공정한 경쟁에 필요한 '경쟁조건의 평등'이 파괴되어 시장기구의 사회적으로 유효한 기능, 즉 국민의 필요에 부응한 수급조절기능이 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형성정책은 보다 사회적, 인간적인 면에서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산정책은 당연히 集産이 아니라 分散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재산소유와 그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재산형성정책이 도입되었다. 저소득층 재산형성과 주택구입을 위하여 정부보조의 이자가 불입되고 장기간 인출이 불가능한 재형저축수단이 동원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사업재원을 정부가 담당하거나 지원하였다. 특히 기업 이윤의 일부를 투자임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소유하고 기업의 생산자본에 불입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기업의 공동소유를 정부가 촉진하게 되었다. 다른 자본주의경제와 비교하여 독일인 소득분배수단을 누진세체계인 조세정책 보다는 재산형성제도에 더 의존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선택은 경제주체의 동기유발을 극대화하고 소비보다는 저축 및 자본형성을 유도하는 경제의 장기적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2. 경과정책

사회적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질서정책에 한정하고 경과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배제하거나 소극적이었음은 앞서 살펴 보았다. 거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경제과정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은 市場이지, 政府가 아니라는 기본 입장 때문이다.

둘째, 경제과정에의 개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차례로 또 다른 정부간섭을 불러 들여야 하며, 마침내는 자유를 억압하는 중앙관리경제로 되고 만다는 소위 '통제파급의 원칙'의 사고이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경제상황에

따른 경과정책은 대부분 이익집단에 의해서 좌우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경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경과정책에 해당하는 케인즈流의 財政 또는 金融政策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이 확보된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이 거의 담당한다. 거시정책의 경우 연방정부의 자문역할을 하는 半獨立的 연구기관이 거시경제변수를 예측하여 이에 관한 소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재정적 수단이나 정부투자에 대한 완전고용정책은 더 큰 경제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케인즈류의 재정·금융정책을 취하지 않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유이다. 즉 케인즈류의 정책은 구조적인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대시키며 투자의욕의 촉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케인즈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하려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케인즈정책에 의해 점점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딜레머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체제는 중앙관리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케인즈주의 비판은 특히 독일에 있어서 임기응변적인 공황대책으로부터 나치체제에로 이행하게 되었던 지난날의 경험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되기 전까지—통일후 통일비용, 체제의 통합에서 오는 부작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독일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경제적 균형, 기업의 경쟁력, 노사협조 등 경제의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모범적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바로 독일의 독특한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Ⅳ.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적 전개과정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이 경제체제가 변화를 거부하는 엄격한 사회정책적 도그마(Dogma)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높은 적응력과 수정력을 가진 경제체제라는 점이다. 즉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항상 검토,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경제체제임을 의미한다.[9] 따라서 본 章에서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적 전개과정을 이러한 동적인(dynamic) 개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제체제는 1834년의 관세동맹을 기점으로 하여 프러시아 제국주의(1871~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혼합경제(1919~1933년) 및 히틀러下의 나치경제(1934~1945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확히 단계별로 구분지어 고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0]

먼저 2차 대전이후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와 뮐러 아르막(Mueller Armack)에 의해 정리되고 확립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期를 사회적 시장경제의 제1단계(1948~1966년)로 보고, 이후 독일 社民黨(SPD)의 주도하에 基民黨(CDU)과 基社黨(CSU)이 참여하여 수립한 大聯政에 의해 진행된 질서자유주의 사조가 퇴보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개과정(1967~1982년)을 제2단계로 보고,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이 연정을 이루면서 질서정책을 회복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그 이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소위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발견과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기간(1982~1990년)을 제3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이후의 시기(1990~)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1단계(1948~1966년) : 질서자유주의의 확립단계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 에르하르트가 연방 총리에서 퇴임하기

---

9) P. Herder-Dorneich, Die Zukunft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erlin, 1973, pp.12~15.

10) 독일내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연구논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 J. Paetzold의 Soziale Marktwirtschaft(Berlin, 1994) 연구를 들 수 있다.

까지인 1966년 까지는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철학이 되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가 확립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전쟁후 황폐화된 독일의 경제상황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출발은 소위 '질서적 자유'라는 윤리에 의해 강하게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과 실제 경제정책에 있어서 에르하르트의 동반자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뮐러 아르막의 논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질서이다. 이는 결코 목적론이나 구태의연한 정치사조에서는 나올 수 없고 내면적인 정당성을 보유한 윤리적 사조에 기초할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두가지 거대한 목적, 즉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11]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자유와 사회적 정의라는 두가지 윤리적 목적은 '책임있는 인간'이 중심을 이루며 인간의 책임은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대두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유이다. 다만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는 더 이상의 아담스미스적 '방임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적 자유'이며, 이 질서적 자유는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질서자유주의는 고전자유주의의 자유방임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자동적 조정기능에 의한 시장경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에 의해 보장되며, 정부에 의해 계속 관리되는 경쟁질서(Wettbewerbsordnung)에 의존하는 시장경제를 요구하는 것이다.[12] 결국 질서자유주의의 핵심은 완전경쟁[13]이 지배하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개인적 자유주

11) A. Mueller-Armack, Vorschlaege zur Verwirklichun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 Genealogi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eitraege zur Wirtschaftspolitik, Bd. 34, Bern und Stuttgart, 1981.

12) W. Eucken, op. cit, pp.245~246.

13) 사회적 시장경제가 가정하는 완전경쟁은 고전학파가 가정하는 완전경쟁과는 다른 As-if식 완전경쟁이다. As-if 경쟁은 완전경쟁을 위한 전제조건의 충족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를 '완전경쟁이 지배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도록 정

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대체로 1966년까지 이론적으로는 아르막에 의해서, 정책적으로는 에르하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확립되었다.[14]

이 시기에 뮐러-아르막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창안, 정립했고, 에르하르트는 이러한 개념들을 법,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에르하르트는 연방 경제장관으로서 전후 독일경제에서 화폐개혁을 통한 안정된 화폐로의 복귀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일차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나치체제하에서 독일은 경제과정에 대한 완전한 국가통제, 정부의 부채와 억압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의 황폐화 및 가격구조의 왜곡 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독일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경제에서의 질서적 자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질서적 자유에서만이 자유가격과 가격비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경제행위와 경제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15]

이러한 관점에서 에르하르트는 당시 과도한 통화량이 경제에서 질서자유주의를 확립하는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1948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16] 그 결과 생산과 분배에서 가격 및 수량통제가 철폐되고 자유로운 시장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49년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인 헌법에 경제적 기본법 등을 포함하므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그 위에 질서자유

부에 의해 조정되고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in:L. Miksch, Die Wirtschaftspolitik des Als-ob, Zeitschrift fue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Tuebingen, 1949, pp.310~338.

14) 에르하르트는 독일 최고의 연방경제장관이었으며 뮐러-아르막은 그의 정무비서관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5) O. Schlecht,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Tuebingen 1990, 안두순외 역, 사회적 시장경제, 비봉출판사, 1993, pp.35~36.

16) 화폐개혁의 주요내용은 서론 참조.

라는 경제질서를 위한 제반 제도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7]

- 1949년의 단체교섭법(Tarif－Vertragsgesetz)
- 1952년의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 1957년의 연금개혁법(dynamischer Rentergesetz)
- 1957년의 독일연방은행법(BBKG : Gesetz ueber die Deutsche Bundesbank)
- 1957년의 반경쟁 제한법(GWB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등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질서자유주의 원칙은 국제적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1950년대에 관세인하, 수입량 제한철폐,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통화의 완전태환 등이 실현되었다. 또한 독일의 1958년의 OECD 가입 및 EC회원 가입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질서자유주의가 독일내에서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18]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한편 또 다른 특징은 독일내 政黨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질서자유주의 확립과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현재의 독일여당인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당시에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데 비해, 사민당(SPD)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사민당내에서도 다이스티(Deist), 오트립(Ortlieb), 바이서(Weisser), 쉴러(Schiller) 등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5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는 초당파적으로 독일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 제2단계(1967～1982년) : 질서정책의 쇠퇴기

17) J. Paetzold, Soziale Marktwirtschaft, Berlin, 1994, pp.58～61.
18) O. Schlecht, op. cit, p.41.

사회적 시장경제의 제2단계는 에르하르트가 연방수상에서 물러난 후(1966년), 사민당(SPD)을 중심으로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의 대연정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6~1967년의 경기 침체는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1%라는 당시로서는 높은 실업율이 결국 1966년 11월 20일 에르하르트를 연방수상에서 물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9] 이에 따라 제2단계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다르게 강조된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란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소위 '경제 안정화정책'의 도입이다. 1967년 6월 8일에 제정된 '경제 성장 및 안정 지원법(StWG : Gesetz zur Foerderung der Stabilitae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을 통해 경기부양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동법 제1조에서 국민경제적 균형의 달성이 동법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물가수준의 안정, 높은 고용수준, 대외경제의 균형 및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최초로 기록한 1966년의 경기침체와 1967년의 0.1%의 마이너스 성장은 질서자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이 요구되었다.[20] 이 요구는 질서정책의 보완정책으로서의 총량 조정정책(Globalsteuerungspolitik)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 및 안정지원법'은 프라이부르크의 명제와 케인즈학파적 대안간의 조합을 현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총량조정정책이란 경제의 총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전에 설정된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말한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의 제2단계는 질서사조의 부분적 퇴조와 경제정책의 제도화가 강조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총량조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대표적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케인즈식 수요관리정책

19) J. Paetzold, op. cit, p.62.

20) 1964년의 6.6%와 '65년의 5.5%라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제외하고는 60년대 이후 독일의 경제성장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며, 대표적인 케인즈의 수요관리정책이 재정정책이다. 질서정책이 중심이 된 과거에는 독일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이 매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고전적 재정법칙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축적인 경기국면에서는 정부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호황국면에서는 정부수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역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국면과 평행하게 움직였다.[21] 그러나 1966년의 경기침체의 대책으로 케인즈이론이 부각되면서 정부재정을 경기에 반순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독일에서 '경제성장 및 안정 지원법'(이후 안정법으로 명기)이 제정되기 전까지 정부가 이러한 경기조정을 위한 반순환적 정책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없었고 오히려 헌법 제110조에는 매년의 재정균형의 원칙이 성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정법'의 제정으로 케인즈적 의미에서의 반순환적 재정정책을 위한 수단들이 확보되었다. 대연정의 연방경제장관을 지낸 쉴러(K. Schiller)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1단계의 질서자유주의를 근간으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을 약화시키고자 사회적 시장경제를 '解明된 시장경제(Aufgeklaerte Marktwirtschaf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22]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창조는 특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쉴러는 독일의 경제체제를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시장경제(GlobalgesteuerteMarktwirtschaft)'라고 지칭하였다.

1966년 후반기에 나타난 독일의 경제침체는 안정법의 제정을 통한 케인즈적 수요관리정책으로 성공적으로 극복되어 1968년의 6.5%, 1969년의 9%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였다. 이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물가수준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전고용이 달성될 수 있었고, 일시적인 재정적자가 신속히 균형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케인즈식의 총량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

21) 이를 소위 독일에서는 'Parallelpolitik(평행정책)'이라고 부른다.

22) D. Radke, Soziale Marktwirtschaft－eine Option fuer Transformations－und Entwicklungslaender?, Koeln, 1994, p.7.

순환적인 경기변동은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제2단계의 한 기간인 1967~1972년은 바로 이러한 총량조정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상승은 1970년부터 시작된 해외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23]

부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끝나고 변동환율제도로 넘어가던 과도기적 시기인 1972년 후반기에 총량조정의 수단들이 다시 취해졌지만 이 때의 경제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종전보다 많아졌고 어려워졌다. 해결해야 할 정책목표들이 경기순환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고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위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非케인즈적인 상황을 자연히 케인즈적인 경제정책, 즉 안정화정책의 수단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총량조정은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총량조정만으로는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변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24] 특히 안정법과 총량조정의 정책도구가 정부개입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질서정책에서 이탈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25]

첫째, 케인즈식 거시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과신으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여 통화안정과 사회적시장경제의 질서기반이 무너졌다.

둘째, 사회복지의 확장때문에 경제질서 우선에서 사회질서 우선으로 중심이 이동하여 부담의 한계를 초래하였다.

셋째, 정부에 대한 과대한 기대로 경제적 필요성과 재정적 적정선간의 조화가 깨어졌다.[26]

---

23) 해외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그 당시의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통제될 수 없었다.

24) J. Kremer, Reform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ielefeld 1993, pp. 79~81.

25) H. J. Thieme, Soziale Marktwirtschaft—Ordnungskonzeption und Wirtschaftspolitische Gestaltung, Muenchen, 1991, pp.40~47.

26) 이 문제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일경제는 개인이 져야할 책임까지도 정부의 공동책임으로 전가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적용력 및 효율성이 취약해지고 경제질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적 부담력의 범위를 벗어나 공동사회질서의 붕괴라는 위험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심화되는 경제여건의 악화는 지하경제의 확산을 초래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결국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Bretton Woods 체제의 붕괴와 함께 도입된 변동환율제 및 1973년과 1978년의 석유파동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케인즈적 수요정책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27]

요약하면 70년대의 케인즈적 총량조정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조정 정책에서는 이들 정책수단의 적정 범위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에는 이를 과소평가했다. 둘째,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때에는 국민경제의 공급측 요인에 더 많은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수요촉진적인 공공지출의 확대책에만 의존하였다. 셋째, 케인즈적인 경기정책이 '개혁'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다른 목표달성에 남용되었다.[28]

70년대 독일경제의 어려움은 다음 〈표 1〉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 1〉 70년대 독일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년 도	실 업 율	실질경제성장율
1970	0.7	4.0
1971	0.8	2.1
1972	1.1	3.5
1973	1.2	4.0
1974	2.5	0.3
1975	4.6	−1.2
1976	4.5	6.1

27) O. Schlecht, op. cit, p.49.

28) O. Schlecht, op. cit, pp.131~132.

1977	4.3	3.0
1978	4.1	3.6
1979	3.6	3.9
1980	3.6	1.6
1981	5.1	−0.4
1982	7.2	−1.0

자료 : Jahresgutachten 1991/92 des Sachverstaendigenrates, Bonn 1991.

3. 3단계(1982~1990년) : 질서정책의 부흥기

70년대 독일경제의 침체는 질서정책을 무시한 케인즈식 총량조정정책의 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80년대 초 독일의 경제 및 정책적 전개는 거의 필연적으로 질서정책의 부흥(Renaissance der Ordnungspolitik)으로 연결되었다. 1982년 10월 기민당(CDU)을 중심으로 자민당(FDP)이 새로운 연정을 구성한 후 질서정책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질서정책을 추진하였다. 1982년 부터 다시 추진된 질서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포함되어 있다.[29]

첫째, 경제정책의 신뢰성, 연속성 및 일관성이 재확립되어야 한다.[30]

둘째, 경쟁의 강화, 대내외적 시장의 개방 및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활동은 고유한 업무에 집중하고, 공공부문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전체 및 경기안정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공공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되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명목국민총생산보다 낮은 지출증대를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여섯째, 보조금도 시장적 의사결정이 우선 되도록 점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

29) O. Schlecht, op. cit, pp.51~52.

30) 이는 왜냐하면 Eucken이 그의 '기본원칙'에서 말한 대로 경제에서 장기적 계획과 예방가능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성과와 성장에 반하는 조세와 공과금의 부담은 축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전체적 부담능력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요구가 세입과 세출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80년대 독일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재정의 견실화, 정부비중의 축소, 조세개혁, 보조금 축소의 시작,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성공적인 사례들이다.

70년대에 비해 80년대의 가장 큰 변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결정권자들이 가진 질서정책관이다.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시장결과보다는 경쟁촉진적인 시장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부는 주요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직접적으로 시장프로세스에 간섭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자 및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참여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질서정책관은 구체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독일경제에 국내 총생산의 증가, 소폭의 고용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물가수준도 약간의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독일경제에 있어서 실업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독일의 실업율은 198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85년에는 8.9%로 최고의 실업율을 기록하였다.[31] 그 결과 독일경제는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위해 소위 '고용창출조치(Arbeitsbeschaffungsmassnahmen)'를 취하게 되었다.[32] 이러한 고용촉진법을 통하여 期限附 고용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해주었고 한 직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으며, 시간제 근무도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동태

31) K-G. Zinn, Soziale Marktwirtschaft, Mannheim, 1992, p.91.

32) 고용창출조치로는 직업훈련의 강화, 단축노동, 주당 노동시간의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성이 제고되어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가능케 하였다.[33]

한편 1986년에서 1990년 까지의 3단계에 걸친 근로세 및 소득세의 감소는 민간에게 연간 약 500억 마르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보험과 법적 연금보험의 구조적 개혁과 함께 사회보장체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 기반 아래 구축되었다. 70년대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왔던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대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반경쟁제한법(UWG) 개정으로 합병 및 기업행위의 제제수단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당하지 못한 예외규정이 에너지, 교통, 은행, 보험부문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80년대 질서정책이 가져 온 또 하나의 경제적 성과는 그동안 연방정부가 직, 간접으로 소유하던 기업지분을 민영화하였다는 점이다.[34]

질서정책의 강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켰다. 1985~1990년 동안 년평균 투자율이 9.3%의 증가를 보인 것도 바로 질서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35] 요약하면 80년대의 질서정책의 회복은 모든 부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4단계(1990~) : 통동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통합단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PDS(민사당)[36]가 참패하고 동독 CDU(기민

---

33) A. Borrmann(Hrsg.), Soziale Marktwirtschaft, Hamburg, 1990. pp. 74~76.

34) 민영화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독일 텔레콤의 민영화를 비롯,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35) S. Paraskewopoulos, Sozialpolitik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 W. Klein(Hrsg.), Soziale Marktwirtschaft, Berlin, 1995, p.200.

36) 1989년 12월 구동독을 지배해 왔던 SED(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 PDS로 당명을 개칭했다.

당) 중심의 연합세력이 압승함으로써 구동독체제는 사실상 종료되고, 동독 CDU의 데미지에르(Lothar de Maizier)수상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의 양독 통일과정이 본격화되게 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통화, 경제, 사회통합으로 독일은 1차로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통화통합(Waehrungsunion)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화폐가치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전제하에 서독 마르크(DM)貨를 공통통화로 하는 단일 통화지역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DM을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하고, 기존의 동독 마르크(EM)貨는 일정한 비율로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되었다.[37] 기본적으로 동서독마르크의 1 : 1 교환은 경제적인 고려에서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동독주민들에게 새로운 독일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해 주고 통일 후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동독마르크의 실제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교환되었다.[38]

경제통합(Wirtschaftsunion)의 주요내용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통일 독일의 경제체제로 확정하고, 동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동독에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자유로운 시장가격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력, 자본, 재화, 서비스의 완전 자유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분단 이후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동서독간의 소위 내독교역(Innerdeutscher Handel)체제는 종결되었다.

사회통합(Sozialunion)에서는 양독간의 노동법 관련사항,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0년 8월 30일 동서독간에 소위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제2차로 체결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

37) 동독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연금, 집세, 임대료 및 정기적 지급은 1 : 1 비율로 교환하고, 동독마르크로된 채권, 채무의 교환비율은 원칙적으로 2 : 1로 교환키로 하였다.

38) 이것은 통일 후 열악한 동독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기업의 도산을 가속화 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결국 이것은 경제적 측면을, 특히 시

결국 독일의 통일은 40여년간 유지해 왔던 동독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는 크게 3대 과제가 있다. 그것은 경제제도의 창출, 통화의 안정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다.[39] 그러나 동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하나의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동독의 경우에는 체제 전환의 3대 과제중 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통화의 안정화라는 두가지 부문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40] 따라서 동독의 체제전환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세번째, 즉 경제의 실질적인 구조 조정, 특히 기업의 구조 조정이다.

기업의 구조 조정의 핵심은 동독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자유경쟁의 보장인데, 이는 사적 기업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독에서는 1990년 3월 1일자로 '신탁관리청법(Treuhandgesetz)'이 발효되고, 이에 따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이 설립되어 동독 국영 콤비나트의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1993년 4월 현재 신탁관리청은 1만 2,136개의 기업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했다. 민영화로 인한 총매각 대금은 420억 마르크에 달했으며, 민영화된 기업으로 부터 1,770억 마르크에 이르는 투자유발이 있었다.[41] 향후 몇년간에 걸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14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구의 기능을 올바로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경제정책은 경제적 부작용만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정치적 목적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9) H. Siebert, Das Wagnis der Einheit, 허선 譯, 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험, 을유문화사, 1993, p.29.

40)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연방 가입을 통해 구동독은 서독의 제도적 인프라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며, 통화의 안정도 화폐통합을 통해 확보되었다. 기본법 제23조는 기본법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법이 우선 서독지역에서만 유효하고 타지역(동독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가입 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독지역의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에 의한 통일을 가능케 하고 있다.

41) 허선 譯, 위의 책 p.91.

독일 경제는 '90년 통일 이후 약 3년 반동안 동독경제의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조정기간을 거쳐 '94년부터는 수출과 건축경기가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94년 독일경제는 2.5%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42]

〈표 2〉 최근 독일 경제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

	(舊)서독지역			(舊)동독지역			독일 전체		
	93[1]	94[2]	95[3]	93[1]	94[2]	95[3]	93[1]	94[2]	95[3]
실질 GDP성장율	△1.7	2.0	2.5	5.8	8.5	8.5	△1.1	2.5	3.0
(민간소비)	0.2	1.0	0.5	2.7	3.0	1.5	0.5	1.0	0.5
(공공소비)	△1.2	0.0	1.0	△1.2	1.5	1.5	△1.2	0.5	1.0
(투자총액)	△8.3	2.5	4.5	14.1	16.5	13.0	△4.5	5.5	6.5
(수 출)	△3.2	7.0	7.0	5.5	15.0	18.0	△6.2	6.0	8.0
(수 입)	△5.3	6.5	5.5	5.0	8.5	5.0	△6.1	6.0	5.0

※ 주 : 1) 실적치, 2) 예상치, 3) 전망치

※ 자료 :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

특히 '94년 약 8.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舊동독지역 경제는 '95년도에도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92~'93년의 경기침체기에도 독일 기업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90년 통일 이후 3~4년간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값비싼 통독대가를 치루었지만, 동독의 급진적인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43] '94년부터는 독일경제에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체제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2) Ifo-Schnelldienst, Fuenf Jahre Reformprozess in Ostdeutschland, Muenchen, 1995, p.8.

43)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급진적으로 통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여타 동구국가들에서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V. 결 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는 전후 프라이부르크학파에 의해 정립된 '질서자유주의'를 원칙으로 경쟁과 자율을 중심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제반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을 시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는 계속 고성장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高生産性, 高賃金型' 국가가 되었다. 이는 결국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되, 근로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경제를 운영해 온 사회적 시장경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40여년에 가까운 독일의 社會的 市場經濟史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분석의 한계와 부분적인 특징만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발전과정의 전체적 흐름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중 자주 거론되는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개과정을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간략히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안두순 외 譯, 사회적 시장경제(O. Schlecht), 비봉출판사, 1993.
2. 허선 譯, 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험(H. Siebert), 을유문화사, 1993.
3. BfW, 40 Jahr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onn, 1989.
4. A. Borrmann(Hrsg.), Soziale Marktwirtschaft, Hamburg, 1990.
5. W. Eucken, Grundsaetze der Wirtschaftspolitik, Tuebingen, 1959.

6. K. Fasbender, u. a.(Hrsg.), Element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Hamburg, 1991.
7. P. Herder-Dorneich, Die Zukunft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erlin, 1973.
8. Ifo-Schnelldienst, Fuenf Jahre Reformprozess in Ostdeutschland, Muenchen, 1995.
9. W. Klein(Hrsg.), Soziale Marktwirtschaft, Berlin, 1995.
10. J. Kremer, Reform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ielefeld, 1993.
11. L. v. Mieses, Preistaxen 6Bd. in : Handwoe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 Jena, 1923.
12. L. Miksch, Die Wirtschaftspolitik des Als-ob, in : Zeitschrift fue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Tuebingen, 1949.
13. A. Mueller-Armack, Wirtschaftslenkung und Marktwirtschaft, Hamburg, 1946.
14. ----------, Vorschlaege zur Verwirklichun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 Genealogi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ern und Stuttgart, 1981.
15. P. Paetzold, Soziale Marktwirtschaft, Berlin, 1994.
16. D. Radke, Soziale Marktwirtschaft-eine Option fuer Transformations-und Entwicklungslaender, Koeln, 1994.
17. U. P. Ritter, Vergleichende Volkswirtschaftslehre, Wien, 1992.
18. H. J. Thieme, Soziale Marktwirtschaft-Ordnungskonzeption und wirtschaftspolitische Gestaltung, Muenchen, 1991.
19. K-G. Zinn, Soziale Marktwirtschaft, Mannheim, 1992.
20. K. Voy(Hrsg.), Marktwirtschaft und politische Regulierung, Marburg, 1991.

韓國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에 관한 研究*

李 相 玉**

目 次

Ⅰ. 序 言
1. 研究目的
2. 研究의 構成 範圍와 方法
Ⅱ. 在來市場의 起源과 成立 理論
1. 在來市場의 起源
2. 在來市場의 成立 理論
3. 在來市場의 變化趨勢
Ⅲ. 在來市場의 成立形態 및 事例
1. 在來市場의 構造
2. 在來市場의 成立形態
3. 在來市場의 成立事例
Ⅳ. 在來市場의 時代別 發展過程과 役割機能
1. 時代別 發展 過程과 役割機能
2. 在來市場의 發展 事例(安養)
Ⅴ.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 問題
1. 在來市場의 變化樣相에 作用要因
2. 小賣機關의 主要 類型
3. 代表的인 小賣機關事例
4. 在來市場 流通近代化의 當爲性
Ⅵ. 結 論

Ⅰ. 序 言

1. 研究目的

오늘의 産業社會下에서 市場은 高度의 能率化가 요구되고 있기에 市場의 流通近代化는 그 目標임과 동시에 槪念自體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韓國在來市場 활로의 對外的 趨勢를 살펴보면, 流通市場 開放에 對應하는 國際 競爭力 強化와 飽和狀態의 解決을 위해 製品別 市場의 活路를 찾아 이

* 本人의 博士學位論文을 修正補完한 論文임.

** 安養大學校 經營學科 敎授

제는 海外市場 進出까지 本格化하고 있다. 이외 實例로서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키, 中國의 延吉, 北京市 및 몽골에 衣類百貨店 設立에 대한 交涉과 開店作業에 着手한 狀況을 들 수 있다. 韓國人의 삶의 現場인 市場은 歷史를 통하여 뿌리 깊은 市場의 經營經濟史的 또는 社會文化的歷史의 綜合的 所產(朴贊石, 1985, 參照)이라는 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市場의 發展과 變遷을 통사적 측면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調査, 硏究하고 오늘의 市場現象 그 自體를 現場事例로 선정, 現地踏査를 통하여 在來市場 流通近代化에 대한 새로운 體制의 變化 理論을 모색코저 하였다.

在來市場은 一般的으로 定期市場 또는 5日場으로 불려져 왔고 朝鮮時代에 表記되었던 市場(장시)를 뜻한다. 傳統社會 특히 農業 및 農村을 中心으로 해서 저형적으로 發生 分布했던 市場制度의 한 形態라고 할 수 있지만, 產業의 構造的 變換을 초래한 近代化된 產業社會(특히 농촌사회의 산업구조 변환에 대하여서는 崔洋夫 1985, 李萬甲 1973, 金文植 1980, 김정동 1984, 李萬甲 1984, 鄭址雄 1984, 張潤植 1985, 黃宗建 1986, 徐贊基 1988 參照)에서도 아직까지 널리 나타나고 있음은 유통근대화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朝鮮後期부터는 1천基가 넘게 出現하여 在來商業의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였으며 傳統社會의 중심지로서 그 役割기능이 多樣하였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7白餘基가 그 役割機能의 脈을 이어오고 있다.

在來市場은 時代別로 여러가지의 名稱으로 불려졌으나 이는 1913年부터 1917年까지 總督府 臨時 土地調査局에서 市場을 精密하게 調査하는 市場調査事業을 土地調査事業과 竝行實施, 1914年 總督府令으로 市場規則을 發布함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韓國 傳來의 傳統市場을 第1號市場 또는 在來市場으로 分類通稱하게 되었다. 특히 一般大衆들 간에는 場市, 定期市場, 5日場이라는 같은 뜻의 표현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趙炳贊, 1992 參照).

때문에 在來市場은 韓國의 오랜 歷史와 더불어 農村의 經濟, 社會, 文化, 生活의 中心地이자 農村地域에 이어져 내려오는 각종 主要 機能遂行의 한

役割을 擔當해 왔기에 各 分野別 學問을 통해 在來市場을 주요 硏究對象으로 삼아 여러 측면에 대한 硏究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硏究가 크게 未洽할 뿐 아니라 그 本質이나 特性面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基礎硏究 成果들도 體系化되지 못한 狀態에 있다. 더해서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라는 면에서는 流通經營史的 側面에서의 現實的 要求는 大端하였으나 市場의 小賣機關의 近代化와 連結시킨 流通近代化面에서의 學問的 뒷받침을 한 硏究는 그리 많지 않은 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에 관한 本 硏究論文에서는 다음과 같은 硏究目的을 두고 있다.

첫째, 在來市場에 대한 旣存硏究를 分野別로 調査·硏究함으로써 時代的인 흐름을 통해 在來市場에 대한 理論的인 體系化를 試圖하고

둘째, 在來市場의 傳統經營史的 側面에서 時系列的으로 發展 過程과 그 役割 機能을 檢事하고 地域別 事例를 들어 直接 現場踏査를 통하여 流通近代化의 經濟的 機能의 새로운 樣態를 밝혀보며

셋째, 이상의 硏究目的을 통하여 틀로 해서 流通近代化에 作用하는 諸要因과 認識의 틀을 模索, 近代化의 代表的인 小賣流通機關의 事例를 通해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와 接木시켜 봄으로서 그 當爲性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자 한다.

더해서 以上의 目的外에는 在來市場에 對한 流通近代化 關係政策樹立에 參與 또는 寄與함은 물론 오늘의 폭넓은 마아케팅활동인 消費者 中心主義, 全産業 人本主義(金元銖 1992, 兪鵬老 1993, 李相玉 1993, 1994 參照)의 側面에까지도 폭을 넓혀 보고자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地域間 各種 環境與件의 差別的 內容과 전국적인 規模의 오랜 歷史傳統의 背景을 일시적으로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 限界가 있기에 이 한계의 克服 問題가 앞으로의 課題라 하겠다.

2. 硏究의 構成 範圍와 方法

研究와 構成範圍인 在來市場과 關係되는 諸學問分野의 研究를 들어보면 주로 在來市場을 相異한 社會文化集團이 接觸하는 場所로 把握하고 있기에 그것의 社會的 統合機能과 經濟的 交換體系에 關心을 두고 있는 人類學分野(Belshew 1965, Berry 1967, Skinner 1964, 1965a, 이덕성 1976, 정승모 1983 參照) 傳統社會 또는 開發途上國에서의 社會 變動의 한 現象으로 在來市場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社會學分野(Kim Hye-Soon 1984 參照), 落後된 農村地域의 發展을 圖謀키 위한 戰略으로서 在來市場의 役割과 活用에 關心을 갖고 있는 地域學分野(Obudho 1974, 崔星然 1981 參照), 在來市場을 商品去來가 행해지는 장소이자 社會 空間의 中心地로 認識, 廣範圍한 關心領域에 焦點을 두고 있는 地理學 分野(石原潤 1987, Stine 1962, Hodder 1965, Bromley 1978, 1971, Symanski 1974, Smith 1979, 1980, Park, Siyoung 1977, 李宰夏 1988 參照), 在來市場 經濟의 마아케팅分析에 주로 關心을 두고 있는 經濟經營學分野(Hay 1971, 吳相洛 1981, 金元鉉 1981, 1983 參照), 商業市場 經濟의 歷史的 發展을 나타내는 指標로서 在來市場의 過去 存在 樣相에 關心을 두는 經濟史的歷史學分野(權炳卓 1990, 文定昌 1941, 黃萬吉 1974, (주)新世界 1992 參照)로 大綱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諸學門領域의 研究 關心을 폭넓게 受用하면서 第2章에서는 經濟경승史的 側面에서의 在來市場의 概念과 市場의 起源 成立 및 役割機能과 流通近代化에 대한 諸研究를 受用해 보았다.

第3, 4章에서는 第2章의 各種 理論的 背景을 틀로 해서 經濟史的 側面에서 在來市場에 대한 生成發達, 經營史的면에서 그 構造와 成立形態 및 時代的 發展過程과 特性에 따른 役割機能을 문헌조사를 통해 通史的으로 살피고 특히 經濟的 市場機能을 勘案 몇개 地域의 發展 事例를 들어 現場踏査와 調査를 통해 研究하였다. 더하여 產業社會 轉換에 따른 最近의 變化樣相에 대한 旣存 地域의 事例를 參考로 各種 現場研究의 實證事例 資料(李宰夏 1988 參照) 등을 活用하는데 主力하였다.

第5章에서는 第3, 4章을 통해서 나타난 在來市場의 變化作用 要因을 60

年代 前後 產業政策에 대한 各種變化의 內容을 選別, 最近의 變化模型을 設定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認識의 틀에 따른 流通의 模型과 유통근대화의 그 代表 機關인 小賣機關을 事例로(李相玉 1992, 1993, 1994 參照)들이 總括的인 流通 近代化의 進展 方向과 累變的으로 내려오는 在來市場 現場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朴康壽 1977 參照)을 提示, 在來市場 流通近代化의 當爲性을 찾아 보았다.

이어 第6章 結論에서는 全般的으로 在來市場變化樣相에 따른 變化要因을 要約, 새變化 理論을 摸索하고, 發展方向에 따른 政策 方案을 示唆하고자 하였다.

硏究方法으로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國在來市場의 時代別 特性과 變化樣相, 在來市場에 對한 理論的 背景을 文獻調査를 통하여 찾아보고 이 理論을 土臺로 現場을 實際 踏査를 變化發展에 따른 流通近代化의 當爲的인 理論을 導出코저함에 있다.

따라서 商業 및 市場經濟的 側面에서의 存在樣相과 그 役割機能을 考察해 봄으로서 全般的인 發展過程에 따른 役割機能의 變化樣相을 時系列的으로 把握해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擴大 適用해 보면 社會發展 全般의 變化發展과 連繫시킬 수 있는 새로운 認識의 틀 또한 摸索해 낼 수 있겠다.

이러한 問題들에 대한 硏究方案 中에는 本 論文에서 主로 適用, 解釋해 보려는 近代化 理論 외에도 從屬理論 또는 生產樣式 理論도 있으나 이들 理論으로는 韓國과 같은 新興工業國家의 發展問題를 제대로 說明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實在하는 現實을 分析하는데 妥當한 接近方法이 되지 못하고 動態的인 社會 變化現象을 설명하는데 弱點이 있으며 低發展 社會에서의 資本主義的 生產樣式으로 인한 在來市場維持存續에 對해선 說明이 可能하나 그것이 어떻게 發展되고 變化하는가를 說明하는 데는 適切치 못하다는 生覺으로 본 논문의 硏究方法으로는 社會 複合的인 變化現象을 가장 잘 說明해 주고 在來市場의 變化와 發展에 대한 基礎의 理論的 모든 硏究 傾向에서도 가장 優勢하게 提示되어진 近代化 理論의 틀을 중심으로 韓國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의 變化現象을 說明코저 한다.

이러한 考察 過程에서 發見된 시기 區分의 重複과 不明確한 歷史的 背景의 限界를 勘案하면서 韓國在來市場의 變化樣相과 그것에 作用한 要因을 考慮하여 調査 硏究 體系化가 이루어졌으며, 社會의 一部分인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過程과 함께 어떻게 發展·變化했는가 하는 流通近代化의 새로운 模型 즉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 理論을 歸納的 方法을 使用하여 硏究코저 한다.

本 論文의 內容을 綜合 流通經營史的 接近方法에 의해 韓國在來市場의 全般的 特性과 變化樣相을 考慮 그 變化樣相에 關係되는 要因을 流通近代化의 理論的 視覺에서 糾明하고 이를 土臺로 歸納的인 方法으로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의 理論을 展開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硏究體制를 간단한 圖式으로 구도화시켜서 설명해 보면,

한국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의 問題를 經濟史, 經營史, 마아케팅의 側面에서 歷史的 接近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文獻資料 調査, 蒐集分析 및 現場事例로 선정된 지역의 現場踏査를 실시하였다. 또한 近代化理論 實際를 활용하여 유통 근대화의 要因 抽出과 그 당위성을 體系化 하는데 歸納的인 方法으로 理論을 展開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Ⅱ. 在來市場의 起源과 成立 理論

大體로 經濟史에서 在來市場에 대해 硏究해 온 關心領域은 그 認識의 틀에 따라 多樣하게 區分可能하나[1] 本 論文에서는 크게 그 起源과 成立理論의 機能을 약간 폭넓게 受用하여 考察코저 한다.[2]

1. 在來市場의 起源

1) 文定昌, 「朝鮮の市場」, 日本 東京 : 日本 評論社, p.66, 1941.
(株)新世界, 「韓國의 市場 商業史」, pp.21~26, 1992.

2) 특히, 市場理論에 대한 理論적 背景으로서의 市場槪念은 李相玉 ; 「韓國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 近代化에 관한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博士學位 論文 p.7~10참조, 1994.

在來市場도 剩餘農產物의 去來에서 起源하여 나타난 去來制度 또는 場所의 한 形態로 보고 있는 것이 共通된 經濟史家들의 見解이지만 市場의 起源에 對한 傳統的인 理論에서는 物物交換하려는 個個人의 性向이 局地的 小規模 交換과 勞動의 分業 및 市場에 대한 必要性을 차례로 發生시킨다고 主張한다. 이와 같이 市場이 局地的 交換과 需要에서 起源하였다고 보고 있는 內生說이 있는 反面에, 外生說에서는 이를 不定하고서 局地의 市場은 外部商人의 刺戟과 外部商品의 活用性으로부터 起源하였다고 主張, 이러한 對立된 見解는 諸學問分野의 硏究에서도 繼續되고 있다.[3] 즉 地理學者들은 異質地域 또는 部施間의 遠距離 交易結果 한 地域內에서 생긴 剩餘物去來 즉 局地的 去來 또는 內部去來說, 市場「시스템」檢討結果 產業의 分業에서 農村地域에서 起源했다는 3가지 說이 있다.

以上의 3가지 起源說을 具體的으로 論議해 보면 맨 처음으로 硏究를 試圖한 호더는 나이지리아 北部의 요류바랜드에 있는 傳統市場의 起源에 대한 硏究에서 異質地域 또는 部施間의 遠距離 交易에서 市場 및 在來市場의 發生이 起源하였다고 主張했다.[4] 이러한 遠距離 交易 市場起源說은 아프리카의 여러 地域에 대한 市場 硏究에서 確認되거나 支持도 받고 있다.[5]

이에 反해서 베리는 한 地域 內에서 생겨난 剩餘物의 去來 즉, 局地的 去來 또는 內部去來에 의해 在來市場이 起源하였다고 主張했다. 이 說도 그 後 여러 學者에 의해 支持받고 있다. 특히 테일러는 東아프리카에 있는 傳統市場을 보이지 않는 都市라고 槪念化하고, 最初의 市場은 同一 種族이 相異한 地理的 環境을 占據하여서 그들의 基本的 生活用品의 生產水準 差異가 發生함에 따라 이것의 交換場所로서 생겨났을 것이라는 假說을 提示

---

3) R. J. Bromley, R. Symanski and C. M. Good, The Rationale of Periodic Markets, *Annals of A. A. G.*, Vol. 65, No. 4, p.533, 1975.

4) B. W. Hodder : The Distribution of Markets in Yorubaland", *Scottish Geograohical Magazine*, Vol. 81, pp.97~105, 1965b.

5) C. M. Good, *Rural Markets and Trade in East Africa ; A Study of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of Exchange Institutions in Ankole, Uganda*,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Dep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123, pp. 193~205, 1970.

한 바 있다.

한편 以上의 相反된 見解와는 또 다른 說이 提起되고 있어 注目된다. 리델은 시에 라리온의 在來市場 시스템의 起源을 考察한 結果, 이 나라에서는 植民地化 以前에도 遠距離 交易은 存在했으나 在來市場 시스템은 成立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 후 在來市場이 農村에 發生한 것은 새로운 都市와 鑛山의 發生으로 그들에게 食糧 等을 供給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農村에 있어서의 分業形成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브륌리 등도 市場은 勞動이 잘 分化되어 있고 外部와 強하게 連繫되어 있어서 그 影響을 받고 있는 그런 成層化된 社會에서 正常的으로 起源한다고 主張하고 있어, 産業 또는 勞動의 分業說은 앞으로 더욱더 提起될 것 같다.

以上에서 본 것처럼 在來市場의 起源에 관한 硏究課題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 問題는 오히려 在來市場이 分布하고 있는 地域的 環境과 文化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韓國의 市場 起源에 대한 硏究는 最近에 歷史學論文에서 唯一하게 行해졌다.[6] 이에 대한 보다 仔細한 內容은 韓國의 古代市場 發達史에 論讚하겠지만, 이 論文에서는 古代에 祭壇으로 使用된 바 있는 市와 井에서 祭祀가 擧行될 때 大衆이 雲集했음으로 自然히 이 때 市井 즉, 市場이 形成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注目되고 있다.

2. 在來市場의 成立 理論

在來市場이 世界到處에서왜 定期的 形態를 取하면서 成立하고 있는가에 대한 疑問은 모든 學問에서 가장 中心的인 關心事이며 在來市場 硏究에 가장 큰 主題라고 할 수 있다. 在來市場과 移動式 去來의 成立에 관한 理論에는 經濟的 傳統과 非經濟的 傳統으로 追求되어 왔고, 經濟的 傳統은 中心理論的 接近과 經濟學的 立地論的 接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

6) 姜英卿, 「韓國古代의 市와 井에 對한 一硏究 ; 市場의 起源과 關聯하여」 院友論叢, 第2輯, 숙명女子大學校 院友會, pp.93~115, 1984.

이런 觀點에서 그 硏究 傾向을 槪略的으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經濟的 側面의 中心地理論的 接近으로서 在來市場의 成立에 관해 최초로 理論化를 試圖한 硏究는 스타인이 1962年에 발표한 韓國의 在來市場에서 移動商人의 巡廻에 着眼한 在來市場의 成立說이다. 그는 移動商人이 동시에 同一 地點에 두 사람 以上이 營業을 할 때가 그렇지 않는 境遇보다도 더 有利하다는 假定에서, 여러 移動商人이 一定한 地點을 巡廻移動함으로써 그들의 生計에 必要한 需要를 充分히 確保하게 되고, 그 때문에 在來市場 體系가 形成된다는 理論를 펴고 있다.

스타인은 크리스탈러의 中心地理論에서 槪念化된 商品의 到達範圍의 槪念에 基礎해서 商人의 移動과 在來市場의 成立을 說明하고 있다. 그는 먼저 到達範圍의 槪念을 分散되어 있는 消費者가 어느 場所에서 商人에 의해 提供되는 어떤 商品에 대해, 적어도 購入하려고 하는 範圍를 最大 到達範圍라 하고 商人의 生計를 保障할 만큼의 需要를 담고 있는 原形의 空間的 範圍를 最小到達範圍라고 槪念化하였다. 여기서 最大到達範圍와 같거나 그 以上이 되면, 商人은 移動할 必要가 없이 固定된 場所에서 常設店鋪를 經營할 수 있으나, 最小到達範圍가 最大到達範圍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商人의 生存이 不可能해지기 때문에 移動戰略을 採擇해서 必要한 需要를 確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商人의 移動 跳躍의 길이는 最大到達範圍와 函數關係이고, 移動의 回數는 最小到達範圍 間에 差異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段階에서는 商人의 移動 길이와 回數가 各各 길고 많아서 이른 바 巡廻 現像을 하는 段階라고 한다면,[7] 다음 段階는 多數의 商人이 各各 週期的으로 巡廻移動하게 되어 在來市場을 形成하는 段階이고, 그 以上 段階에서는 商品需要의 增大로 最小到達範圍가 最大到達範圍내에 놓이게 되면 더 以上 移動하지 않게 되어 固定된 場所에서 常設市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8]

---

7) 韓國에서 過去에 褓負商이 마을을 巡廻하면서 장사하는 것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8) J. S. Stine, "Temporal Aspeots of Tertiary Production Elemeuts in Korea", in F. R. Pitts(ed.), *Urban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Eugene, Oregon : University of Oregon, pp.72~78, 1962.

이와같이 둘 以上의 移動商人의 移動과 集積이 在來市場을 形成한다는 스타인의 理論은 그 후 여러 學者의 硏究에서 確認되거나 支持받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人類學者 스키너는 中國 農村의 在來市場 硏究에서 在來市場이 成立하는 理由를 첫째, 商人 및 生産者 겸 交易者의 立場에서는 여러 市場이 定期的으로 열리면 巡廻함으로써 利益을 더 많이 確保할 수 있고, 둘째, 消費者의 觀點에서는 市場의 定期性이 그들의 必要한 商品과 用役을 얻기 위해 施行해야 하는 距離를 減少시키는 方法이 되며 셋째, 傳統的 農耕社會에서는 交通의 原始性이 市場의 定期性을 成立케 하는 또 다른 중요한 要因이 된다고 하였다.[9]

그러나 이러한 支持와는 달리 스타인의 理論을 批判하는 見解도 있다. 알아오는 스타인의 理論이 商人의 固定된 市場 活動에 對해서는 理論的 根據를 提供해 주기는 했으나, 定期的 市場 去來活動과 在來市場의 空間 配置에 關해서는 잘 說明해 주지 못한다면서 中心地理論的 觀點에서 市場의 均衡的인 空間 패턴을 提示하기도 하였다. 또한 플래트너는 스타인의 理論에 대해 그것은 移動商人에 대해서는 說明을 提供해 주었지만 移動商人이 그들의 定期的 集積을 위해 特定한 場所를 〈왜 그리고 어떻게 選擇하는지〉를 滿足스럽게 說明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둘 以上의 商人이 그들의 定期的 訪問이 一致할 때 그곳에서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이유도 充分히 說明해주지 못한다고 批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移動商人은 市場이 없어도 成功的으로 營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中心地理論的 接近의 在來市場 成立理論에 대해서 反旗를 들고 經濟的 立地論의 立場에서 接近한 硏究도 있다. 이러한 接近에 헤이에 의하여 처음으로 提起되었다. 그는 스타인의 見解를 批判하고 定期的 마아케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經濟的 立地論과 經濟學的 知識에 의해 說明하고 있다. 즉, 그는 商人이 營業상의 支出費用과 需要와의 關係에 基礎하여 費用이 더 많은 境遇에는 固定된 營業을 할 수 없게 되어 定期的인 마

9) G. W. Skinner,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1", *Journal of Asia Studies*, Vol. 24, pp.10~11, 1964.

아케팅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定期的 마아케팅은 勞動時間의 配分에 따라 時間制 또는 非專業 마아케팅과 여러개의 去來場所(在來市場)를 移動하여 專業型으로 營業을 하는 移動 마아케팅 形態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商人의 定期的 마아케팅은 다음의 세가지 目的 중 어느 한 理由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生存能力을 遂行하기 위해, 둘째, 常設營業에서 보다 더 많은 利益을 얻기 위해 셋째, 販賣商人의 경우는 小賣價格을 相對的으로 낮춰 주고 購買商人의 경우에는 買入價格을 올려줌으로써 價格競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定期的으로 마아케팅은 〈表 2-1〉과 같이 여섯 가지의 類型으로 나타나서 在來市場을 成立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인은 單旨 4型에만 該當되는 說明만을 하였다고 批判하였다. 그 後 그는 이에 대한 硏究를 繼續하여서 生産者 小賣인 卽, 農民도 農場에서 商人에게 販賣하는 境遇보다도 在來市場에서 販賣하는 것이 더 有利하기 때문에 非專業的인 장꾼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最近에는 그의 理論을 그래프 分析으로 說明하기도 하였다.[10]

그리고 웨버와 시만스키도 經濟 立地論的인 分析에 의해 在來市場 및 定期的 마아케팅의 모델화를 試圖하였다.[11] 이들은 스타인과 헤어가 다룬 中

〈表 2-1〉 定期的 마아케팅의 類型

목 적	行 態	
	비전업	전업적 이동
생존능력의 수행	1	4
이윤의 최대화	2	5
가격경쟁에 대처	3	6

자료 : A. M. Hay, 1971, op. cit., p.401.

10) A. M. Hay, "Some Alternatives in the Economic Analysis of Periodic Marketing", *Geographical Analysis*, Vol. 9, pp.72-79, 1977.
A. M. Hay and K. S. O Beavon, "Periodic Marketing : a Preliminary Graphical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Part-time and Mobile Marketing", *Tijdschrift voor Economischeen Sociale Geografie*, Vol. 70, pp.27-34, 1979.

心問題에 焦點을 두고 數式으로 說明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行商人은 그들의 總費用과 交通費 및 市場當 利潤程度에 따라서 時間制로 營業하는 非專業 商人과 專業的 移動商人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專業 移動商人은 移動하지 않는 것보다도 移動營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利益이 있을 것이고, 또한 集中하는 것이 孤立的인 行商을 하는 것보다도 더 利益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한 地域에 있어서 最初의 商業體는 移動販賣者의 集中으로 出現한 것이라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요컨대, 移動商人의 集中에 依해 在來市場이 成立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濟的 側面에서의 接近理論과는 달리 非經濟的인 變數로서 在來市場의 成立問題를 論한 硏究도 있어 注目된다. 브룸리 등은 在來市場의 成立關係를 生活慣習과 傳統 같은 社會文化的인 側面에서 說明하고 있다.[12] 이에 依하면, 市場이 發達하기 以前에는 販賣者와 購買者도 生産者였으므로 그들간의 去來는 單旨 副業的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漸次 그들의 經濟的 役割이 擴大되었지만 마아케팅을 할 수 있는 時間은 制約되어 있었다. 그래서 自然的인 反應으로 市場은 在來市場으로 열리게 되었는데,[13] 市場에 採擇된 定期性은 傳統社會가 가지고 있는 獨自的인 曆法上의 農業生産, 宗敎, 休息[14] 등에 關係된 時間的인 巡廻를 反影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市場은 旣存의 定期的 制度와 一致하여 定期的으로 開設된다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한번 開設되면 定期的 마케팅의 習慣과 在來市場터의 立地는 累積된 機能의 强化와 慣性 때문에 持續되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在來市場의 成立理論에 關係된 內容과 硏究傾向을 살펴 보았다. 이 硏究主題는 在來市場 硏究에서 基本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

11) M. J. Webber and R. Symanski, "Periodic Markets ; An Economic Location Analysis", *Economic Geography*, Vol. 49, 3, pp.213~227, 1973.

12) R. J. Bromley, R. Symanski and C. M. Good, op, cit, pp.530~537, 1975.

13) 라틴 아메리카에서 크리스트교의 影響으로 初期에 나타난 日曜市場은 여기 該當된다고 하였다.

14) 욱우(Ukwu)가 指摘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의 이보랜드에서의 4日 乃至 8日 週期의 市場은 그곳 休息日(4日마다 休息)을 反影하여 成立된 在來市場이다 (Hodder and Ukwu, p.129, 1969).

論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生覺된다. 한편, 韓國의 在來市場 成立에 關한 內國人의 硏究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最近에 韓國의 在來市場을 中心地 理論的 立場에서 그 成立過程을 說明하고 있는 스타인의 假說에 대해서 否定的인 見解를 나타내고 그 成立을 社會文化的인 時間制度의 所産으로 보는 見解를 披瀝한 것이 있다.[15] 그리고 韓國內의 旣存 論文에서는 스타인과 스키너의 見解만 약간 紹介되고 있는 實情이어서 이 課題에 대한 國內의 硏究努力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3. 재래시장 변화 추세

이상의 내용에 따른 재래시장의 변화내용과 변화내용에 대한 변화양상의 추세를 시대별 주창자별로 구분해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고 이를 둘로 해서 그 변화 후의 현황과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다.

〈表 2-2〉 在來市場의 變化의 趨勢 比較表

變化樣相	變化要因과 內容	備考(主唱者)
1. 在來市場의 存續(제도)	· 상인의 商品價格을 방어적 마아케팅 社會文化的 慣性(전통) · 小資本營業 可能性, 消費者 購買慣習, 地自制 團體의 政策 · 生産物交換必要性, 地域社會統合의 可能, 農村人口의 減少, 自給的 小農經營, 劣惡한 農村交通狀態 農民의 需要, 商業農으로의 變換	· Hay(1980), Bromley(1971, 1978, 1985), Good(1970, 1972), 박시영과 Ren(1987) · 中島義一(1988), 石原潤(1987), 新實正男(1983), 仙道良夫(1981) · 김성훈(1980), 이덕성(1976), 최성연(1981), 정승모(1983), 김혜순(1984)
2. 在來市場의 增加(번성, 신설, 대시장, 기능집중)	· 人口增加, (人口密度過密), 商品經濟化(商業化), 傳統農業社會人口 增加	· 石原潤(1987), BERRY(1967) · Bromley(1985),

15) 李宰夏, 「韓國 定期市場 變化 過程」, 慶北大 大學院, 文學博士學位 論文, pp. 103~104, 1988.

	· 交通發達 改善, 社會經濟 近代化 · 農村繁榮, 下位 在來市場 新設 · 消費者所得增大, 住民生活 向上과 行動內容 및 範圍 活潑 擴大	李中雨(1970), 柳佑益(1972) · 李賢英(1974) · 田京淑(1987)
3. 在來市場의 衰退 (소시장소멸, 개시일감소, 사회문화 기능 약화)	· 近代的 交通改善, 農民所得 增加, 常設店鋪의 增加, 상인의 固定訪問 形態 增加, 高位階層市場 減少, 在來市場數 減少 · 人口의 都市化, 農村文化補給, 農村人口減少, 農畜產物 出荷 體系 정비, 自動車 交通의 發達, 都市機能 強化, 商業農으로 변화	· Skinner(1965), Thorpe(1978), Geetha(1978) · 李賢英(1974), 朴英洽(1972) · 李顯旭(1983), 盧陽柱(1984), Kim, Hye-Soon(1984)
4. 其他(대시장화, 상설시장화, 체계의 변화, 개시일 증가)	· 交通의 發達 및 改善, 人口, 所得, 商品需要, 1개시일의 增加, 1인당 需要 增加 · 都市化, 人口集中 聚落(都市)	· Stine(1962), Webber & Symanski(1974) · 石原潤(1987), Skinner(1964)

주 · 繼續的인 分野別 흐름의 趨勢를 地域特性 및 環境과 直結시켜 연구함이 필요하며 위 표는 論者가 年代別 주창자들의 주장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변화요인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주창자가 重複되었으며 ( )는 該當 參考文獻의 發行年度임.

· 李相玉「韓國 在來市場 變遷과 流通 近代化에 관한 硏究」. 檀國大 大學院 經濟學 博士 論文, 1994, p.131의 〈그림 4-1〉의 韓國在來市場의 最近變化 樣相 모델化 參照.

Ⅲ. 在來市場의 成立形態 및 事例

本 章에서는 在來市場의 時代別 發展過程으로서 韓國 在來市場의 生成發達의 過程을 史的으로 槪觀한 다음 經營史的 側面에서 市場構造 및 形態를 硏究하고 經濟史的 側面에서 時代別 發展 過程과 그 役割 機能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市場의 變化過程에 따른 在來市場의 社會經濟的 機能을 考察하고 오늘날까지도 存續하는 몇개의 在來市場의 變化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1. 在來市場의 構造

그러면 재래시장의 생성과 발달을 고려하면서 鄕村과 都市市場을 區分하여 時代別 資料를 整理 몇가지 特徵的構造를 比較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表 3-1〉 在來市場構造의 比較

區分 / 內容	鄕村市場	都市市場
1. 特 徵	· 상설시장과 재래시장 구분 향시수 1000개, 보부상 활동 전국대시장 15개(상업도시)로 분류 商廛설치－시장권형성(5일장 개시) 지역적 향촌시장에서 생필품 구매[16]	· 서울·개성·평양·수원의 상설점포(시전) 1399(定宗元年) 800여간 건조 시전기능(수도주민 생필품조달, 국가필요물자 조달, 국고잉여품 처분) 도시상가 변화의 상징(육의전) 1500년대 이후 시전 이외 시장개설(난전상인 출현－상권확보경쟁, 상업활동활기[17]
2. 市場分布	· 시장금압정책완화, 장세징수, 1700년대 중반기 전국장시수	· 서울시장 ; 주요지방도시시장 분류

16) 「備邊司謄錄」, 一二七册, 英祖三十年 十一月 十八日條.
「備邊司謄錄」, 二三四册, 英祖二十四年 四月 十八日條.
「萬機要覽」, 財用編五, 鄕市條.
「迂書」, 卷八, 論商販事理願稅規制條.

17) 商品을 賣買하는 곳은 市라고 하고 그러한 店鋪를 廛이라 하여 官廳에서 都城內에 設立한 常設店鋪인 公商을 市廛이라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十六三 市糴考一, 姜萬吉, 「韓國商業의 歷史」, 世宗大王記念事業會, p.35, 1974.
萬機要覽, 財用編五, 客廛.

	1064개 1800~1900초반까지 변화없음. 장수와 인구수의 연관 보부상의 시장순회기준 개시일은 5일시, 3일시, 10일시, 15일시 존속(5일시가 86% 점유)-(한 단위 지역권역을 순회하며 상업행위로 관할시 위주의 지방성격에서 상표도시 위주의 성격으로 전환됨)[18]	상설점포와 일일장시(화폐유통의 형성) 1470(庚寅年)전라도 場門열림, 서울·개성만 조정이 설립한 시전이 있고 지방향시활동 통제, 15세기 후반 상업억제정책 조금씩 완화(도시인구증가)로 향시와 상설점포의 자연발생적으로 성립, 그 원인(지방관리의 수탈) 과중한 조세부담, 연이은 흉년, 4차에 걸친 시전 행랑 완공 국역부담의 有分各廛(35종) 無分各廛(55종) 양분 국역부담의 특분에 의거 육이전 칠이전, 팔이전 구성 시전과 장시의 고가, 저가 상품 거래 구분개성의 시전 발다로가 금속화폐의 常用이 최초로 이루어짐(평양, 수원)[19]
3. 市場商人	褓負商 ·시장의 주역으로 활동 행상(20~60리의 일일행정거리 표준) 사회적 분화 형성, 지방향통 경제의 핵심적 기관으로 실질적 판매 담당자	·市廛商人-특권상전(公廛稅) 수도서울 변화의 상징 房, 間으로 세분되어 대형연쇄점 형성(길드조직, 동업자간 조합결성, 이들 都中 조합원을 都員이라 함)상인조합의 운영규칙 철저, 도원자격과 가입조건 엄격

18) 「東國文獻備考」, 「林國十六志」, 倪圭志.
전국 5일장의 각도별, 지역별의 개장일과 특산품의 종류는 두산그룹 기획실 「두산」 p.84 참조, 1991.

19) 「成宗實錄」, 卷二十七, 城宗四年二月 壬申., 「世宗實錄」, 卷一百四十八-卷一百五十五, 地理志, 「中宗實錄」, 卷二十一, 中宗九年十一月癸酉., 「中宗實錄」, 卷二十五, 中宗十一年八月辛亥, 「明宗實錄」, 卷六, 明宗二年九月乙亥, 「萬機要覽」, 財用編五, 各廛., ① 「正宗實錄」, 正宗元年 乙卯, ② 「太宗實錄」, 卷二十三, 太宗十二年 五月 乙巳., 劉元東, 「商工業의 槪觀」, 朝鮮前記 商工業, 國史編纂委員會, p.28, 1982.

	지방유통경제 좌우－전국적 유통 발전 연결, 중국·일본수출(화폐 이용), 경제순환 계속할 원동력 17세기 이후 시장활동 왕성, 인구 증가, 교역활발로 큰 시장권형성, 실제적으로 시장상실화 경향[20]	(혈연관계 남계여계)[21]
	客主 · 坐商－위탁판매, 보관업, 금융업, 보부상의 상품공급원 기능 유산계급대표(口廛상인) 부수업무로 여관업 物商客主, 施閣 灣商客主, 靑船客主, 褓商客主, 步行客主, 무시로 객주 신라시대 발생 고려시대 商事문화로 정착[22]	· 사상인－16세기 이후 민간상인 출현 농촌인구의 서울 유입의 자연현상으로 영업활동 전개 임난 이후 경쟁 본격화(환전) 私商都賣의 형태(초기득점의 先賣) 현지상품구입, 현지상품완전 買占 辛亥通共 정책실시, 적용지역의 특성과 지방중심도시, 지방교육중심 국경도시의 定住商人들의 활동 활발[23]
	居間 · 중개상인－유통과정의 중간관계 개재 거래매개임무(國風), 거래 성립 보조 활동, 內거간, 外거간	

20) 文定昌,「朝鮮の 市場」, 日本評論社, p.140, 1941.
權丙卓,「韓國經濟史」, 博英社, pp.130～131, 1985.
①「大邱府邑誌」, 場市條, 權丙卓,「藥令市硏究」, 韓國硏究院, p.141, 1986.
②「林園十六志」, 倪圭志.

21)「立權儀節」, 哲宗十二年, 劉元東,「韓國近代經濟史硏究」, 一志社, p.158, 1977.

22) ① 朴元善,「客主」, 延世大學校出版部, pp.59～68, pp.13～38, 1968.
② 善生泳助,「朝鮮の市場經濟」, 朝鮮總督府, pp.277～279, 1929.
③ 四方 博,「朝鮮に於ける近代資本主義の成立過程」, 朝鮮社會經濟硏究所,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pp.150～152, pp.277～279, 1933.
南宮營,「客主及族閣に就で」,「朝鮮當時の金融財政慣行」, p.293, 1930.

23) 金泳鎬,「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운 展開」, 韓國史硏究, 韓國史硏究會, p.32,「萬機要覽」, 財用編五, 各廛, 1968.

	同事거간, 노력거간, 특별시설자본력 없이도 종사 가능[24]	
	去來關係 · 시장의 대량상품 배급기관 역할 지방시장의 상업기관으로 객주는 보부상과 연결 시장상품유통도모, 대상인 객주의 판로개척은 소상인 보부상의 활동에 의거 성패 좌우 보부상은 物商객주, 부상은 施閭과 관련 주종관계 설정, 후견인 역할(수직관계) 보부상단과의 의사소통은 수평적 상호관계 형성[25]	
4. 流通商品	· 경기, 호남, 호서, 관동의 출시품목수 2663개 중 수공품 48%의 1294개 품목 농가공물 38.2% 494개 품목, 器物類 14.8%, 191개 품목 각종 품목류 다양, 人力, 우마차, 驛馬 이용으로 자본규모, 물동량 증대로 향촌주 국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구매력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 점차 증대함[26]	· 시전중심으로 자본력과 영역규모에 따라 有分廛, 無分廛으로 大分, 전문상점에서 소규모 잡화점의 취급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유통됨, 線廛의 각종 비단類外 37개 廛에서 각종 상품으로 분류하였다.[27]

자료 : 각 주에 있는 시대별 자료에서 논자가 요약 정리 작성하였음.

---

24) 朴元善, 「居間」, 延世論叢 第10輯, 延世大學校大學院, p.209, pp.211~213, 1993.
四方 博, 前揭書, p.152.
善生永助, 「朝鮮の 市場經濟」, 朝鮮總督府, pp.277~279, 1929.

25) 南宮萬, 「客主及旅閭に就て」, 前揭書, p.294, 漢城府, 完文節目, 1879.
林仁榮, 「朝鮮魚物廛硏究」, 淑明女子出版部, pp.27~31, 參照, 1977, 朴元善, 「居間」, 前揭論文, pp.32~33.

26) 「林園十六志」, 俱圭志, 常務組合本部章 章程, 帝國實業會細則, 1908.

27) 萬機要覽, 財政編 五, 各廛.

以上과 같이 몇가지 側面에서 韓國 在來市場의 構造的인 면을 考察한 市場活動을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韓國의 市場體系는 古朝鮮時代부터 形成되었으며 朝鮮時代의 초기에는 都市의 常設市場 中心으로 市場體系가 形成되었고 中期以後에는 鄕村의 在來市場의 活動幅이 增大되어 流通經路網이 形成되었다. 이런 現象를 구미의 經營기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훨씬 以前인 朝鮮時代에 이미 韓國내 실정에 맞는 韓國的 經營活動이 市場을 中心으로 실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在來市場과 常設市場에서 활약한 褓負商 客主 시전상 松商 등이 展開한 經營理念과 組織體系 및 活動實態는 社會大衆의 生活側面에서 品質과 分量를 독특하게 維持 向上시키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現代經營의 實踐對象이 된다는 것은 認識할 수 있다.

이러한 傳統的인 示唆点을 勘案하면서 다음에서는 在來市場의 成立形態에 대하여 現場事例를 살펴보기로 한다.

2. 在來市場의 成立形態

본 절에는 재래시장의 구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설립에 대한 제학설과 특징적 형태를 논하고 오늘까지 존속하는 서울의 대형 재래시장의 역사적 성립사례를 연구하여 재래시장 유통근대화 과정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

그 내용을 表로 정리하기로 한다〈表 3-2 참조〉.

〈表 3-2〉 在來市場의 歷史的 成立 學說 및 形態表

成 立	主張根據	內 容
1. 市場成立學說	1957. Melon	잉여생산물과 필요품과의 교환
· 화물교환설	1954. Roscher	영리적으로 경영되는 재판매를 위한 구입
· 상인상업설	1915. Gruntzel	최고로 가능한 사용가치를 공급하기 위한
· 국민경제적 기능설	1964. Lexis	경제가치의 장소적, 시간적 매개
· 영리매매업설	1961. Hirsch	영리의 목적으로 물품을 교환 또는 구입하
· 배급조직설		여 그것을 재판매하는 영업적 경험
· 거래기업설		사람에서 사람에로의 재화 이동 조직

		경영체의 거래행위
2. 成立形態 · 행상적 시장형태 · 좌상적 시장형태 · 상설적 형태		30里~40里의 1일 行程이 시장개장 기준. 보부상의 행상적 경영형태, 길드적 동업조합 결성 물물교환, 지방특산물 雲從街, 六矣廛商人, 國役의무 부담 특정상품의 독점판매권 장악, 상납관청과의 종적관계 유지 민족적 상업자본의 축적 시장의 발전 시장 상호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 대도시 주변 시장의 상설화, 상업도시 형성발달, 지방문화의 중심지화
3. 成立事例 재래시장(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중앙시장, 아현시장, 길음시장, 경동시장, 영등포시장, 천호시장, 용문시장, 불광시장)		주 내용의 논문 〈表 3-4〉 재래시장 현상사례 특기사항 비교표 내용참조.

주 : 李相玉(1994)論文의 각주 70~89까지의 참고문헌 내용을 정리하고 각주 90~108까지와 〈表 3-4〉를 참고하여 논자가 정리 작성하였음.

以上과 같이 市場의 成立을 全般的으로 살펴 본 것을 발판으로[28] 하여 다음에서는 서울의 10개 市場을 在來市場 모델로 삼아 그의 成立·發展過程과 그 특징을 考察하여 在來市場의 成立사례로 고찰한다.

3. 在來市場의 成立事例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대표적인 10여개의 在來市場의 성립 발달과정과 그 특징을 비교표를 통해〈表 3-3 참조〉 살펴봄으로써 재래시장의 유통근대화 모형설정에 도움이 된다(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李相玉(1994) 論文 參照).

---

28) 李相玉의 제3章 第5節의 2, 松坡 參照, 1994.
裴高吉, p.39, 1974.

〈表 3-3〉 在來市場 現場事例 特技事項 比較表

內容 / 區分	起源 및 設立根據	市場形態	特 徵	去來品目	去來實績 占有率 (서울)	特記事項
1. 남대문 시장	이조·영조대 (남별창) 이조·선조 47년(1608) 조선 농업주식회사(손병준)	공설시장	서울중심 대표적 재래시장	농·수산 직물 축류 일용품	경성부내 40% (1912)	동양물산운영독점, 민족시장역할, 연합번영회 구성(1963) 중간도매상 배격 시장근대화
2. 동대문 시장	自然 發生的 1904. 7. 19 (188개 점포) 광장주식회사 (광장시장)	私設市場	배우개 시장	곡물, 잡화, 건어물, 과물, 수산물	1/3 (1917)	직물상등 소규모 구호품 복지시장 시장형태 시장민주화
3. 중앙 시장	토박이 상인 (미곡 도매상) 1950년 1969 중앙백화점 설립	집단적 상거래 시장	미곡도매	쌀(논밭 생산작물)	서울양곡 소비 70% 반출입 (1953)	쌀모집 위탁 판매(신용) 1965 매매량 1/5감소 야채상 중앙상가 빌딩 건립
4. 아현 시장	굴레방다리 피난민 간선도로 노점상 (북·아현시장) 1930년대초	생필품 공급	간선도로변 노점상	채소, 생선	·	의류잡화 60여개점포존재
5. 길음 시장	승인산업(판자점포) 1953. 10(421개 점포 240 노점)	종합시장	상품가저렴 거상이 없다.	식료품, 양품, 일용잡화, 포목, 채소류	야채류 최저가	전천후 시설 중간도매성격 동두천 농협유치
6. 경동 시장	집장사 100여채 1960년도 (홍경표)	4층 건물	새벽시장 위탁판매	채소류, 고추, 마늘	·	청량리역 이용, 김장시장
7. 영등포 시장	시흥군(경성부 편입), 1971등	공설 일용품	공장지대	일용품	·	토박이 상인 상가공동분담, 현

	마루시장, 경성부 영보극장 뒤	시장				대식 빌딩
8. 천호시장	부동산 붐에 따라 1960년 후반	상업지대 중간 도매상	변두리 특수지역	지방야채류	·	천호동 사거리 20년 토박이 빈민지역
9. 용문시장	생업수단 노점 1969(주) 용문시장	산매시장	해방직후	산매품	·	소비자 고정, 입지조건한계
10. 불광시장	한적한 시설, 국민주택 1959	간이시장	3개 시장으로 구성	의류, 잡화, 식료	·	개발품 불광, 풍권상가 등장 대규모화

주 : 서울 近郊의 대표적인 在來市場으로 文獻調査 現地訪問, 踏査를 통해 論者가 정리하여 작성한 표임. 이를 근간으로 地域 사정과 環境을 고려, 在來市場 變遷과 流通近代化 趨勢를 전국적 규모로 계속 조사 연구함이 필요하다. 내용중 거래실적 점유율, 공간은 숫자적 統計가 아직 없음.

Ⅳ. 在來市場의 時代別 發展過程과 役割機能

1. 在來市場의 時代別 發展過程과 役割機能

韓國史에서 商業과 關係되는 時代別 論文을 前提로 하는[29] 韓國經濟史

29) 韓國史 大綱과 韓國通史的인 側面에서, 原始部族社會, 古代, 古代統一國家－統一新羅－中世, 近世(實學思想, 近代思想不安), 近代, 現代로 區分해서 時代別로 市場과 聯關이 되는 關聯 論文을 時代順으로 涉獵하여 參考함으로서 在來市場의 起源과 發展過程 役割機能의 뿌리를 찾아보는데 參考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金光鎭(1937), 三上次男(1954) ◇ 李哲後(1954), 李基白(1954), 白南雲(1934) ◇ 邊太燮(1964), 旗田巍(1959), 日野開三郎(1960, 1961) ◇ 金三守(1965), 金庠基(1937), 閔丙河(1963), 劉敎聖(1959), 李鉉淙(1964), 河玄綱(1962), 小葉田淳(1931), 旗田巍(1930), 花村美樹(1930), 李丙燾(1948), 李相伯(1949), 姜萬吉(1960) ◇ 金泳鎬(1969), 金漢閔(1946), 劉敎聖(1964), 李光麟(1962), 李能和(1949), 李鍾英(1962), 崔虎鎭(1957), 韓佑劤(1964), 金洸鎭(1934), 小葉田淳(1965), 田川孝(1964), 田中健夫(1959), 宮宗兎一(1951, 1954), 金三守(1964), 金容燮(1970), 朴元善(1965), 柳元東(1968), 柳子厚(1948), 李乙浩(1966), 趙璣濬(1962), 震檀學會(李相伯)編(1961, 1965), 韓우劤(1961), 洪以燮(1959), 田川孝(1964) ◇ 高承濟(1955), 趙璣濬(1965), 池田勝

의 時代區分 및 그 性格의 論爭을 감안하면서[30] 本章에서는 通例的으로 使用하는 政治的 時代區分에 따라 各時代別로 在來市場의 發展過程과 朝鮮時代以後는 그 役割機能까지도 포함해서 차례로 考察한다. 먼저 그 내용을 表로 작성하여 보면 〈表 4－1〉과 같다.

〈表 4－1〉 在來市場의 時代別 發展過程과 役割機能 比較表

시 대 별	발 전 과 정	역 할 기 능
1. 조선시대 이전 · 고조선 및 삼한시대 ·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후한서」 철을 화폐로 사용, 매매교환 성행 삼한시대－街路市, 祭典市, 境界市, 城邑市 정기적 형태의 시장 발전 사회적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국가차원의 시장정책 채용, 판설시장 개설 향시 등 지방시장의 광범위한 분포 대내외 교역의 활성화 철전의 보급, 개경, 동경, 서경 등의 상설적 상가 설립, 보부상의 대외 무역 활동, 농촌의 5일장과 같은 시장 출현	
2. 조선시대	서울의 시전, 지방의 향시, 대외무역시장, 대동법 시행, 실학의 경제사상 대두, 임진왜란으로 인한 농민의 상인화, 재래시상의 정체 형성.	상품의 생산지역내 잉여분 거래활발, 소식, 정보교환, 사교, 오락, 정치적 기능 수행, 농촌계몽 농촌의 소득향상에 공헌(복수작물의 상품화)

(1953), 姜德相(1962), 金洸鎭, 澤東平(1953), 四方博(1933), 李元寧(1968), 李瑄根(931), 崔虎鎭(1947), 韓우昉(1970), 趙璣濬(1965), 高承濟(1970).

30) 趙璣濬, 趙炳賢(1984, 1992), 上古時代解放 以後로 區分, 參照.
李相玉, "在來市場의 發展과 小賣流通機關의 動向에 關한 硏究", 대신大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硏究」, 創刊號, pp. 4～15, 1933.

3. 일제시대	시장의 운영권 장악, 재래 정기시장 장려정책, 인구 증가로 인한 재래시장의 성장	농산물의 교환기능 수행, 일제의 농산물 수탈로 인한 농산물 거래 증대 거래품목의 다양화 도·농간 생필품 거래의 매개 문물 전파, 오락기회 제공, 독립운동 등 정치적 집회 장소
4. 해방 이후	물가고와 생필품 부족상태로 경제 침체, 6·25전쟁으로 인한 유통경제마비, 미국의 경제 원조, 인구성장, 시장경제의 활성화, 경제개발 계획 실시, 70년대 이후 공업, 도시중심의 사업사회로 변모.	도시의 상설 도·소매시장의 발달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대적 거래 기능 약화. 농축산물 거래가 주류 경제적·오락적 기능 수행, 농촌주민의 결속과 공동생활권 형성의 공동매개체 기능 60년대 이후 이전의 기능 약화, 농촌 주민의 생활중심지 기능 수행

주 : 李相玉(1994)논문의 각주 120)을 참조하고 시대별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논자가 비교표를 작성하였음.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쳐 最近에 들어와서 우리의 在來市場의 수백 年 동안 발휘해 온 고유한 役割機能이 크게 弱化돼 가거나 農村社會에 대한 役割이 변질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農村의 큰 중심 市場은 農村 住民의 日常的인 經濟 및 社會的 生活에서 중요한 〈센터〉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遂行해 준다는 指摘도 있다.[31] 한편 歷史的으로 5일 市場은 農業의 商業化와 農産物의 生産增大, 상인의 企業家 精神(entrepreneurship)의 함양, 한 地域의 市場體系網을 통한 統合化 등에 寄與함으로써 韓國 農村의 經濟發展에 중요한 役割을 했다고 評價해 볼 수 있다.[32] 한국의 在來市場은 多樣한 商品과 서비스의 提供, 剩餘 農産物의 去來場所 提供, 商品購入時 移動費用 및 時間의 절감, 農民에게 副業(商業)機會 提供과 이로 인한 所得增大, 社會文化的인 機能의 提供 등과 같은 여러 가지 役割機能을 遂行하고 있어

31) Lee, Jaeha, pp.97~98, 1987.
32) Park, Siyoung, pp.244~245, 1977.

서 農村 住民의 福祉增進에 寄與해 왔다고 볼 수 있다.[33] 뿐만 아니라 아직도 5日場이 零細的인 自給農을 商業的인 農業으로 轉換시키는데 가장 效果的인 媒介體 活用될 수 있다는 硏究結果도[34] 提起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在來市場을 단순히 前近代的인 市場으로 보고 방치하거나 폐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오늘날에서의 機能과 役割을 다시 評價하고 農村 發展에 어떻게 活動할 것인가에 대한 政策的인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在來市場의 地域 發展 事例(安養)

그러면 首都圈地域에 속하는 安養市와 그 周邊地域을 선정, 이 地域의 在來市場의 變化過程을 살펴봄으로써 地域事例의 內容으로 삼고저 한다.[35]

朝鮮時代의 農本主義的 儒敎社會 속에서 商業抑壓政策과 뿌리깊은 士農工商의 賤職末業觀은 특히 地方場市 내지 地方 商業의 發達을 저해였으나 中宗, 明宗代에 들어서 全羅, 忠淸, 慶尙 등 三南 각지에 場市가 波及 形成되기 시작하여 純祖 때는 全國에 1,000여개의 鄕市가 생겼다.

〈表 4-2〉 蛇川市場의 賣買高(1922年 統計)

매 매 상 품	매매고(원)
계	252,546
농 산 물	2,2199
수 산 물	93
직 물	270
축 류	247,743
기 타	2,221

資料 : 朝鮮總督府「朝鮮の市場」(1924), 「安養市誌」, p.1206.

33) 崔星然, pp.109~112, 1981.

34) Kim, Hye-Soon, "The Periodic Market in Contemporary Korea : Its Continuing Role in Rural Developmen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n Sociology, The University of Hawaii, 1984.

35) 安養市誌編纂委員會, 「安養市誌」, 12, pp.1205~1208, 1992.
朴元善, p.157, 1985.
朝鮮日報, 「이규태의 600년 서울」, pp.225~245.

朝鮮時代의 시흥군은 漢城에 隣接하고 京畿道의 中心地域에 위치하여 隣近의 農産物 등의 生産이 많아 일찍부터 市場이 發達하였고, 交易의 商業機能이 활발하였던 곳이다.

朝鮮時代 말기에는 시흥군 내에 防築場市와 山袋場市·秀岩場市 등 3개의 市場이 있었다. 시흥군지(1988年 발행)에 의하면 防築場市는 수암면 광석리(현재 시흥시 광석동에 해당하는 地域)로서 이 市場을 광석리에 있다고 하여 廣石市場이라고 불렀다.

山袋場市는 당시 안산구 大月面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안산시 선부동이 된 地域이다. 安山市 秀岩面에 위치하고 있던 秀岩場市는 邑內場이라고도 불리웠으며 후에 安山市場으로 개칭되었다. 지금의 그 위치는 始興市 秀岩洞이다.

日帝 강점시 朝鮮總督府에 의하면 1912年 당시 始興郡은 1개의 市場을 갖고 있었고 이 市場의 연간 開場回數는 72회였으며 5日場으로 되어 있었다.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즉, 지금의 시흥시 신천동에는 蛇川市場 또는 뱀내장이라는 큰 市場이 있었는데 이는 1日 6日에 개장하는 市場으로 年 74回나 開場하였다.

1924年에는 全國의 市場數는 1,200여개이고 이 가운데 京畿道가 104개, 始興郡에 5개 市場이 있었다. 이 중 4개는 현재 서울에 해당하는 地域이고 安養地域의 군포場市는 5日과 10日에 開場하는 在來市場으로 당시 시흥군 호계리에 위치하였다. 이는 지금의 안양시 호계 3동에 해당되는 地域이다.

〈表 4-3〉 公設市場 現況

시 장 명	등급	구분	개장일	당 시 위 치	현 재 지 명
永 登 浦 市	1호	공설	3. 8일	始興郡 永登浦面 永登浦里	서울市 永登浦區 永登浦洞
雷 室 里 市	1호	공설	3. 8일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三 巨 里 市	1호	공설	3. 8일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軍 浦 場 市	1호	공설	5.10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	안양시 호계3동
蛇川市(뱀내장)	1호	공설	1. 6일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資料 : 朝鮮總督府「朝鮮の市場」(1924), 「安養市誌」, p.1206.

〈表 4-4〉 市場, 商街 大規模 小賣店 現況

시장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일자	시설규모(㎡)					점포운영(개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허가면적 (매장면적)	시설	점포수 (개수)	계	직영	분양	임대	미운영
계		13명		50.913.6	87.391.56	57.963.13 (53.333.93)	4.116.14	3.114	3.254 / 53.333.93	281 / 8.502	1.057 / 17.906.3	1.892 / 20.758.9	319 / 6.940.4
중앙시장	안양4동 676-44	김진동	61. 11. 6	4.772 (2.636.5)	5.996 (1.142)	5.996		283	283 / 5.996		283 / 5.996		62 / 1.642
남부시장	안양1동 623-229	문광식	72. 7. 10	2.256	1.756	1.756		130	130 / 1.755			130 / 1.755	
창원상가	안양2동 688-17	조든섭	76. 6.14	1.715	5.394	2.996		40	180 / 2.996			180 / 2.996	
석수시장	석수2동 287	정원무	79. 9. 29	6.783.8	2.929.7	2.929.7		135	135 / 2927.9			135 / 2927.9	30 / 661.16
중앙 지하상가	안양4동 1189-1	정덕한	79.11.23	2.347	1.477.6	1.477.6		156	156 / 1.477.6			156 / 1.477.6	
마산시장	비산2동 419-30	김옥연	79.12.22	2.848.5	4.030	4.030 (3.754.5)		43	63 / 3.754.5	1 / 197		62 / 3.567.5	40개소 / 2.252
관악시장	안양2동 41-5	유영재	80.3.29	1.641.8	1.297.27	1.297.27 (877.4)		69	69 / 877.4			69 / 877.4	
명하시장	안양6동 434-3	김제중	80.8.23	2.369.7	5.262.21	5.636.21 (4.251)		363	363 / 4.254		363 / 4.254		
현대 종합상가		박원규	80.10.30	3.141.5	5.547	5.547 (93.808.3)		225	225 / 3.808.3		225 / 3.808.3		
삼신시장	안양1동 63-337	양동윤	82.1.22	1.650.9	3.714.9	3.714.9 (2.902)		170	170 / 2.902			170 / 2.902	
본백화점	안양1동 627-33	이종철	83.11.22	1.774.2	8.384.18	5.482.45		134	134 / 5.483.45	114 / 4.840		20 / 642	
백산 쇼핑센타	안양4동 627-287	김희근 김순규	85.12.5	3.799.2	25.415.7	10.814	4.116.14	420	420 / 10.814	166 / 3.495	186 / 3.484	44 / 1.035	24 / 2.475
여전 지하상가	안양1동 1189-1	이선준	86.6.24	15.824	15.824	2.280		926	926 / 6.287			926 / 6.287	163 / 970

資料 :「安養市誌」, 1992. 12. 8, p.1209.

그 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에 1926年 1월 28일자로 安養市場에 開設되었는데 이 市場은 公設市場으로 등급이 1호이며 開場日은 5日과 10日이었다. 이는 지금의 安養市 安養1洞 舊市場 자리로서 지금도 安養1洞 地域을 市堡洞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安養市場이 1940年代 後期에 安養場으로 개칭되어 불리우다가 1960年代에는 안양牛市場으로 바뀌었고 개장일도 3日과 8日로 변하였다. 安養市場은 1960年 9월 24일 火災를 당해 18개 店鋪와 가옥 13세대가 전소되어 그 당시 500萬圓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1961年 11月 6日 安養市 安養 4洞에 開設된 安養公設市場은 1970年代 들어 常設市場으로 바뀌었으나 1973年 7月 1日 安養市가 승격되면서 始興郡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앞으로 百貨店과 쇼핑, 都小賣市場의 成長實態에 관해선 繼續的으로 硏究 檢討해야 할 課題이다.[36]

V.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 問題

本 章에서는 旣存의 地域農村의 設問調査統計를 蒐集活用하여 在來市場의 變化作用要因, 小賣機關의 發達 그 代表機關의 內容과 事例에 따라 在來市場 流通近代化의 當爲性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1. 在來市場의 變化樣相에 作用要因

最近에 在來市場은 郡 地域 中心市場과 같이 一部는 1970年 以後 더 成長하기도 했지만 餘他 大部分의 場은 여러 側面에서 急激히 衰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變化樣相을 가져온 原因의 糾明은 接近하는 理論的 觀點과 論證方法에 따라 달리 說明될 수 있다. 在來市場의 發展과 低發

36) 韓國商工會議所, 「韓國의 商圈」, -主要都市消費市場構造와 特性-, pp. 362~363, 1991.
「安養市」流通構造 參照.

展(또는 衰退)은 近代化理論에서 어떤 視覺으로 接近하는가에 따라 달리 說明될 수 있으며, 또한 變化에 作用한 要因도 演繹的 方法과 歸納的 方法 中에서 어떤 方法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本 硏究에서는 最近 在來市場의 變化에 미친 要因을 보다 客觀的으로 說明하기 위해, 演繹的인 接近方法을 脫皮하고 調査·分析을 통해 事實을 糾明하였던 歸納的인 方法을 利用하여 論하기로 한다.

이러한 接近方法을 통해 發見되고 여러 變化要因 즉, 都市化, 交通發達, 商品購買 代替市場의 擴充, 農業의 商業化와 農産物 流通機構의 變化, 近代的 大衆文化媒體의 普及, 家畜市場의 衰退, 기타 原因(都農間의 不平等한 社會經濟的 構造, 農民의 生活向上, 工産品의 品質 向上, 그리고 政府의 5日場에 대한 政策的 無關心) 등을 中心으로 在來市場의 變化樣相에 作用한 要因을 論議하고저 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韓國의 在來市場의 最近의 變化樣相을 綜合하여 이를 圖式으로 모델化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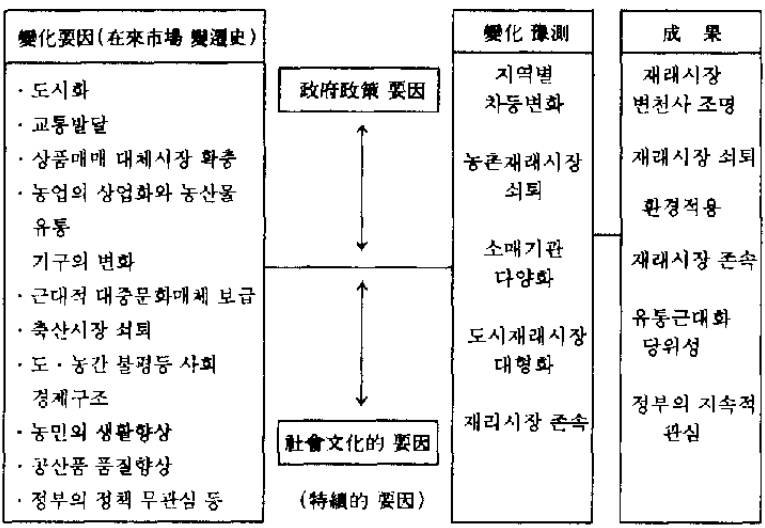

자료 : 變化樣相의 作用要因을 整理하여 論者가 整理要約 모델化한 것임.

以上에서와 같이 農村在來市場의 變化와 衰退要因을 原因別로 살펴보고 近代化理論과 結附시켜 그 變化樣相을 찾아보았다. 이에 따라 在來市場은 全般的으로 減少狀像을 나타내고, 規模面에서도 그 減少現像이 두드러지며 市場圈에서도 크게 縮小되어감을 알 수 있고 그 機能面에서도 單純化, 弱化되어가는 衰退現狀을 勘案하고 流通近代化의 當爲性을 위한 小賣流通機關에 대하여 다음 節에서 살펴본다.

2. 小賣機關의 主要 類型

小賣機關은 여러 가지 基準에 따라 分類할 수 있어서 多樣한 業態가 있다.

이하에서는 〈表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販賣商品의 계열, 相對的인 價格중점, 營業前提의 性格, 販路의 통제 및 店鋪集積類型의 5가지 基準에 따른 主要類型으로 나누어 진다.

〈表 5-1〉 小賣機關의 主要類型

판매제품계열	상대적인 가격중점	영업전체의 성격	판로의 통제	점포집적의 유형
전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복합점, 슈퍼스토어 및 아이퍼마켓 서비스점	할인점 창고집 카탈로그전시점	우송 및 전화주문소매 자동판매기 구매서비스점 개별방문소매	회사연쇄점 임의연쇄점 소매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프랜차이즈조직 콩글로머천트	중앙영업지구 지역소핑센터 지방상(점)가 인근상(점)가

자료 : P. Kotler, op. cit,. p.461.

이상의 小賣機關 주요 유형의 내용과 설명들은 시대적인 變化樣相과 제품계열의 넓이에 따라 더욱 더 類型 細分化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37) 變化要因 11가지의 설문조사 통계에 의한 설명 내용은 李相玉 pp.114~131 참조, 1994.

혁신적인 원리의 도입, 상대적인 중가 쇠퇴, 새로운 업태의 成立, 條件, 形式, 自動化, 각 나라의 경우에 따라 새로운 조직체, 규모의 대소조직 개설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關心과 硏究가 필요하다.[38]

3. 代表的인 小賣機關事例

流通의 發展 方向에 대하여 在來市場의 成長發展과 流通의 發展方向을 감안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在來市場이 變化해 왔는지 그 內容과 그러한 상황이 形成되고 또 그 흐름의 方向이 어떤가를 살필 수 있는 近間의 代表的인 現場小賣流通機關의 現況資料를 提示해 본다.[39]

중소형 中心으로 營業力의 強化와 多角化를 추진하고 직영·商品特化 등의 統合體制를 構築하면서 무더기 出店에 따른 過多競爭과 關族化에 積極 대처키 위한 百貨店街의 賣場의 無休선언으로 各種 쇄신바람이 在來市場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한 事例로 서울百貨店들을 들어보자.

百貨店街에 賣場革新 바람이 일고 있다. 임대·분양賣場의 직영화를 꾀하는가 하면 賣場 컨셉트를 轉換, 새로운 商品과 이미지의 賣場으로 꾸미는 등 중소형 百貨店을 中心으로 店鋪別 營業活性化대책 마련에 積極나서고 있다. 이는 規模의 利益 및 요지선점을 노린 百貨店들의 무더기 출점으로 競爭이 날로 熾烈해지고있어 全體賣場의 統合管理 體制를 시급히 構築하지 않고서는 競爭隊例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40]

또한 流通市場 전면개방에 따른 외국 大型流通業體의 直進出에 대비, 빠른 시일내의 獨自的인 營業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課題가 전면에 떠오르고

---

38) 金元銖, pp.186~208, 1993. 李相玉, pp.25~34, 1993.
(株)新世界, 前揭書, 第9章 經濟開發期의 流通商業近代化 최근 市場實態 및 市場動向 참조.

39) 李相玉, 前揭論文, pp.211~214.

40) 朝鮮日報, 2. 10, p.16(百貨店들이 賣場刷新을 통한 독자 商權에 일제히 拍車를 가하는 常設衣類, 廉價賣場을 轉換한 賣場의 陳列장 모습의 사진이 곁들여 있음). 韓國 經濟新聞 每週 木曜日 "流通" 百貨店 街欄의 1991년~1994년까지 계속적으로 趨勢를 調査한 內容, 1993.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분양賣場의 직영化를 積極 추진하고 있는 百貨店의 예로서 뉴코아 百貨店은 분양점주들과의 협의하에 本館直營化率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린 計劃이다. 지난해 1段階 多店鋪化 전략에 따라 出店한 果川店, 東水原店, 順天店의 식당가는 이미 1백% 직영體制로 運營하고 있다. 旣存店鋪의 直營化率을 재고, 새로운 店鋪증설없이 獨者營業面積을 擴大함으로써 賣出을 增大시킨다는 전략이다. 본관 분양店鋪로 인해 시너지效果를 발휘하지 못했던 各種 販促活動의 效果를 한次元 높이기 위한 것이다. 實際로, 지난해 2천6백50억원의 신본館店내 매출 중 신관과 全體賣場 規模가 비슷한 본관의 매출比重이 22%에 불과, 直營率提高로 營業에 彈力性을 부여할 境遇 큰 폭의 賣出伸張이 기대된다. 뉴코아는 이와 함께 層別 리뉴얼을 통한 賣場特化作業도 발생, 部門別 1등코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方針이라고 한다.

미도파百貨店은 上溪店 進出로 營業난을 겪고 있는 건영 옴니 百貨店도 직영化率을 높여 營業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한 方案 마련에 積極나서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미도파와 現代 그리고 多店鋪化로 買入力을 強化하고 있는 한신 코아와의 商權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60%를 조금 웃도는 직영율을 제고하는 方案밖에 없다는 判斷이다. 2천여평에 달하는 분양 또는 賃貸賣場 중 營業力이 극히 저조한 코너를 委託管理 등의 方法으로 營業管理의 일원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近間에 段階的으로 직영賣場의 리뉴얼을 통한 雰圍氣 쇄신작업에 돌입할 計劃이다.

賣場革新 작업은 쁘랭땅, 비바 百貨店 등 買入力이 뒤떨어지는 중소형 百貨店의 商品전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각기 商權特色에 맞게 商品의 質과 폭을 달리해 特定顧客층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시중, 大形百貨店과의 差別化를 꾀해 나가겠다는 것. 쁘랭땅百貨店은 顧客特性을 감안 20~30대 젊은 職場女性들이 選好하는 商品을 積極 展開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衣類는 그 동안의 賣出效率을 分析, 特定브랜드만을 집중 育成시킬 計劃이다. 현재 好評받고 있는 피플즈, 익스프레스 클럽 등 편집賣場의 構成을 대폭 擴大한다는 戰略도 세워놓고 있다.

브랜드수가 줄어 선택폭이 좁아지는 短點을 特定브랜드 商品의 깊이를 더해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비바 百貨店은 지난 年초에 2층 婦女캐주얼 衣類賣場을 常設衣類割引 賣場으로 轉換 廉價商品展開를 強化하고 있다. 매출이 저조해 브랜드 유치가 어려운데다 商權特性上 유명브랜드 나열식 商品展開로는 시중 大形百貨店과 競爭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유행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면 값이 싼 在庫衣類를 購入하는 쪽으로 衣類購買 패턴이 변해가고 있는 것도 商品展開方向 轉換에 한 몫한 것으로 分析된다. 비바는 새로 단장한 2층 賣場의 호응도에 따라 常設廉價 賣場을 더욱 擴充하는 등 염가賣場으로서 입지를 새롭게 構築한다는 計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環境內容에 따라 다르겠지만 在來市場의 沈滯를 增加시키고 과소비 助長의 念慮도 있으나 이런 狀況變化로 緣由한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 當爲性은 더 크게 認識되고 關心의 對象으로 浮刻시키고저 하는 뜻이 있다.[41]

以上과 같이 流通小賣기관에 대하여 오늘의 現像까지 상세히 나열하여 서울시내의 百貨店을 대표기관으로 선정하여 그 近代化의 진전추세에 內容을 살펴보았다.

4. 在來市場 流通近代化의 當爲性

數次에 걸친 經濟開發 五個年計劃, 新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함께 韓國經濟는 高度成長을 成功的으로 持續하여 그 規模가 크게 增大되어 왔다. 生產면에서는 大量生產體制의 確立과 함께 產業構造가 高度化함에 따라 生活物資의 購入單位는 增大되어 왔으며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民間消費支出은 擴大되고 消費패턴도 多樣化되어 왔다.

그러나 生產, 消費와 함께 國民經濟의 3大部門의 하나인 流通側面은 經營規模의 零細, 去來慣行 및 條件의 前近代性, 經路의 復雜多岐化와 物的流通施設의 未備 등으로 그 生產性과 效率性이 크게 뒤떨어져, 相對的으로

41) 京畿日報, 2. 18, p.14, 趙炳贊, 前揭書, 제6장 市場變遷 發達 參照, 1993.

停滯되고 있으며 國民經濟의 脆弱部門이 되고 있다.

이 점을 考慮한 政府의 流通近代化作業에 따라 登場한 수퍼마켓과 百貨店 등 大型小賣流通機構들은 눈부신 發展을 示顯하고 있는데 反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在來의 常設市場만은 前近代的인 市場施設과 環境, 零細한 規模 및 多元化된 組織과 運營으로 無秩序한 去來行態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어 韓國 全流通機構 가운데서 가장 落後되어 있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在來市場이 지닌 問題點을 각기 다른 角度에서 詳細히 더 보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2]

(1) 小賣市場은 開設者와 多類의 零細한 入住商人으로 構成된 無計劃的인 複合體이다.

市場開設者의 役割은 주로 賃貸料 및 管理費를 徵收하여 淸掃·保安 및 施設補修를 하는데 局限되어 있다. 賃貸商人은 經營上의 統制나 干涉을 拒否하고 獨自的으로 商去來活動을 하고 있으며 兩者間의 利害關係가 相互對立되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對立은 하나의 經濟 組織體로서 統合된 意思決定을 하거나 또는 一元化된 科學的이고도 近代的인 運營을 志向하는데 있어 決定的인 障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그리고 結局은 消費者需要의 變化나 流通構造의 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을 弱化시켜 一元的 經營의 利益을 갖는 大型小賣流通機關이 發達됨에 따라 在來市場의 本來機能을 漸次로 喪失케 할 可能性이 크다.

(2) 市場開設에 있어서 開設者의 計劃性의 缺如내지는 無責任性을 들 수 있다. 市場 全體로서 有機的이고 均衡있는 賣場中心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도록 建物의 設計, 賃貸商人의 業種構成, 그들의 配置運營方法이나 資格要件 등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고 단지 賃貸收入의 確保에만 置重하여 市場을 開設하는 傾向이 크다.

(3) 施設이 貧弱하고 環境이 混雜하다. 一部市場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

42) 韓國市場協議會, 「市場近代化 促進方向」, 8, 1978.
大韓商工會議所, 「在來市場의 現況과 誘導방향」, 4, 1978.
韓國產業硏究所, 「流通構造改善基本對策方案調査硏究」, 12, 1979.

粗雜한 建物에 統一性이 없고 지저분한 店鋪나 座板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또한 周邊에는 많은 露店과 雜商人이 汎濫하고 있어 通行이 不便하고 環境이 不潔하여 購買雰圍氣를 造成하고 있지 못하다.

(4) 雜貨商人이 規模가 零細하며 經營合理化에 대한 認識과 勞力이 缺如되어 있다. 이들의 店當 平均面積은 4.6坪으로 大部分 零細資本과 家族勞動力을 利用하여 店鋪를 經營하고 있으며 敎育水準도 낮아 經營에 대한 知識이 거의 없다. 이러한 零細性과 經營의 非合理性으로 因하여 市場은 各種 不公正去來와 無秩序한 商去來의 溫床이 되고 있으며 消費者의 信用度도 낮다.

이러한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 在來市場은 그들의 現狀維持的이고 環境變化에 適應하지 못하는 한, 流通近代化過程에서 落後되어 結局은 現在 非專門化한 前近代的인 雜貨店이 그러하듯이 都市外廓地帶나 地方都市의 購買力과 消費水準이 낮은 地域에서만 潛在하게될 可能性마저 크다. 뿐만 아니라 諸般流通環境의 變化는 在來市場의 存立自體에 대한 威脅으로 發展하고 있는데 그 要因들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發展에 따른 敎育, 所得水準의 向上에서 오는 環境의 變化이다. 이는 都市環境, 生活環境, 消費環境의 變化를 가져왔으나 結果的으로 在來市場의 立地, 施設, 環境, 業種構成, 去來方法에 새로운 變革과 改善을 要求하게 된 것이다.

둘째, 近代的인 大型小賣流通機構의 大擧出現과 大企業의 流通産業進出이다. 특히 商品構成面에서 類似한 直營百貨店과 수퍼체인 및 쇼핑·센터가 規模의 利益을 追求하는 形態로 出現하면서 在來市場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萎縮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셋째, 購買 慣習의 變化이다. 가령 日用品은 수퍼마켓으로 選賣品은 百貨店으로 專門品은 專門店으로 去來處가 變化할 뿐만 아니라, 所得水準의 向上과 메스컴의 影響으로 消費者欲求의 多樣化와 個性化가 擴大되면 지금과 같은 在來市場으로서는 文化的 側面이 미풍양속的인 側面을 除外하고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 輸入自由化에 따른 國際化 時代로서 轉換이다. 輸入自由化는 國際化는 勿論이고 去來의 國際化 내지 機構의 國際化를 가져온다. 또한 流通部門에 대한 技術 및 資本의 提携가 이루어져서 在來式 經營方式으로서는 流通産業의 國際化 물결에 對處할 수 없다.

다섯째, 消費者의 生活樣式 및 時間觀念의 變化를 硏究할 必要가 있다. 最近 西歐의 消費패턴을 모방하려는 消費者들이 많아졌으나, 家計所得의 增加幅은 制限되어 있으므로 職業女性의 數가 增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時間觀念도 인스탄트化 傾向을 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婦女子들은 淸潔·衛生觀念에 더욱 까다로우며, 特別賣出이나 價格訴求에 더욱 敏感하여 各 商店의 品質·價格·品種數를 比較하면서 購買하므로 商品配達, 店內의 音樂放送, 親切한 使用法의 敎示 등과 같은 流通費用이 많이 드는 消費者奉仕가 發達하게 되었다. 在來市場은 淸潔·衛生問題와 購買時間 및 消費者奉仕면에서 消費者의 새로운 生活樣式에 適應할 수 있는 立場이 못되기 때문에 이점 또한 在來市場 存立에 대한 威脅으로 대두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在來市場의 問題點과 存立自體에 대한 威脅에 對處하기 위해서 在來市場의 近代化가 절실히 要請되고 있다.

流通構造의 形成과 變化에 가장 決定的이고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消費者들의 流通機關들에 대한 서어비스 要求程度에 달려 있다고 하고,[43] 서어비스 要求정도는 다음과 같이 區分하였다.

① 地域的 便易性

② 1回 注文量

③ 注文後 配達까지의 時間

④ 製品의 多樣性 또는 具色의 多樣性

그런데 最近 在來市場에 대한 消費者들의 態度調査에 의하면 商品의 新鮮度, 商品의 具色, 賣場의 크기, 商權의 크기 등에서 有利하여 수퍼마켓보다 훨씬 먼 곳에 있는 주부까지 顧客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L. W. Stern & A. I. El-Ansary, *Marketing Channels*, Prentice-Hall, pp. 226~236, 1977.

따라서 아직도 去來市場은 商品의 具色과 地域的 便易性 등의 消費者의 서어비스 要求水準을 充足할 수 있기 때문에 大量生産에 對應하는 大量流通機關으로서의 機能과, 消費者가 必要로 하는 商品을 便利란 場所에서 品質과 價格을 比較하면서 一括購入할 수 있도록 하는 機能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各種 綜合商品小賣機關이 發達하지 않는 한, 在來市場은 앞으로도 繼續하여 存續할 것이며 또 存續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現在 都市에는 아케이드, 連銷商街, 貨店型百貨店 등 比較的 零細資本의 集團化에 의해 外觀과 機能면에서 大型小賣店에 接近된 集團小賣機關形態가 發達하고 있으나 이들도 非單一經營體라는 점에서 在來市場과 同一한 強點을 지니고 있으며, 商品構成도 高度의 選賣品·專門品 中心이고 立地的으로도 中心商街志向性을 갖는다는 點에서 이들은 在來市場의 機能을 代替하기 보다는 오히려 百貨店이나 專門店이 發達되기까지의 過渡的으로 繁昌하는 小賣機關形態라고 볼 수 있다.

先進諸國에 있어서도 流通機構의 變化는 生産 및 消費패턴의 變遷과 더불어 서서히 發展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韓國 流通機構內에서 店鋪數, 市場規模, 商人數, 投下資本 및 去來額에 있어 아직도 小賣業의 大宗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固有한 機能을 가지고 一般民層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在來市場이 短時日內에 近代化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과 前近代性을 克服하고 새로운 流通環境에 動態的으로 適應해 나가기 위해서는 市場經營의 近代化가 절실하 要請되고 있으며, 그 成果에 따라서는 近代化된 流通構造 속에서도 이들이 存續될 餘地는 充分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으로써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 當爲性을 몇가지 現代小賣機關의 流通事例를 들어 살펴봄과 同時에 그 變化 作用要因을 논하였다. 따라서 近代化와 韓國 社會에서 七白餘基가 아직도 分布하여 있는 在來市場의 그 機能과 役割의 맥이 近代化의 새로운 물결을 環境的 時系列的으로, 또 發展變化를 繼續해야 할 當爲性을 分析考察하였다. 그 現場 資料로서 小賣流通機關의 事例도 들어보았다. 在來市場의 繼續的인 存續과 새로운 流通의 近

代化 形態로 때어나는 歷史를 통로하여 다음 章에서 在來市場의 變化 作用 要因을 再整理, 在來市場의 流通近代化 方向 提示를 結論에로 이어진다.[44]

Ⅳ. 結　　論

以上에서 韓國 在來市場이 全體的으로 어떤 經路의 變化過程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把握하고 이를 기틀로하여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를 近代化 理論의 觀覺에서 時系列的으로 分析, 考察하였다.

第1章 序論에서 提示한 대로 第2章의 硏究傾向은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 問題를 廣範圍하게 綜合的으로 檢討하였으며 旣存 硏究의 體系와 理論的 水準을 밝혔다. 이를 根幹으로 第3, 4章에서 時代別로 在來市場을 發展過程과 役割機能 및 流通 近代化 問題를 分析하였다. 물론 變遷時期間의 重複이나 不明確性을 勘案하면서 특히 在來市場의 變化·發展過程에서의 變化形態와 이에 작용한 各種要因을 다시 정리, 近代化 理論에 따른 韓國 在來市場의 歷史的, 時代的 發展過程의 段階를 生態學的으로 分類해보면 古朝鮮時代는 胎動期, 三韓 및 三國時代는 發生初期, 高麗時代는 發生後期, 朝鮮, 日帝時代는 成長初期의 成長 加速期로, 解放 以後 '60年代 末까지는 成長末期로 나누고 그 以後는 衰退期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發達段階를 勘案하면서 '60年代 前後한 近代化 産業社會로의 變化過程을 살펴보면 韓國의 農村은 構造的인 變化를 맞게 된다. 여기에서 在來市場이 衰退하게 되는 複合的인 要因으로서는 都市化, 交通 특히 自動車交通의 發達, 常設店鋪 및 代替市場機構의 活用, 近代文化 媒體의 不平等한 社會 經濟的 構造, 農業의 機械化, 工産品의 品質向上, 쇠고기 등과 같은 農畜産物 輸入, 소(牛)의 不法去來, 5日場에 대한 政府의 無關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第1次 및 第2次的 要因이 同時에 作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4) 吳相洛, 前揭論文, p.216.
李相玉, 前揭論文, pp.220~223, 1993.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서는 在來再來의 需要者인 農村人口의 數, 社會近代化 程度, 市場關聯製度와 政策의 方向, 文化的 慣習을 들 수 있고 이 要因에 의거 韓國 在來市場의 盛衰, 存續, 變化가 左右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歷史的 變化過程에서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에 대한 問題點으로는 첫째, 在來市場에서의 小賣市場은 開設者와 많은 種類의 零細한 入住商人으로 構成된 無計劃的인 複合體라는 것이고, 둘째는 市場의 開設에 있어 開設者 스스로의 計劃性의 缺如내지 無責任性을 들 수 있으며 셋째, 市場의 施設이 貧弱하고 環境이 混雜하며 넷째, 市場施設의 賃貸商人이 規模自體가 零細하여 經營合理化에 대한 認識과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韓國在來市場 存立自體에 큰 威脅인 繼續的으로 發展 近代化 되어가고 있는 제반의 小賣流通機關의 環境 變化 要因을 들어보면 (1) 産業발전에 따른 敎育所得 水準의 向上에서 오는 各種 環境變化 (2) 近代的인 大形 小賣機構의 대거 出現과 大企業의 流通産業에의 進出 (3) 購買 習慣의 變化 (4) 輸入 自由化에 따른 國際化 時代로의 轉換 (5) 消費者의 生活樣式 및 時間觀念의 變化에 대한 硏究의 必要性 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流通構造 近代化 形成變化에 가장 중요한 影響 要因이 消費者들의 流通 機關에 대한 서어비스 要求程度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서어비스 요구정도는 地域的 便宜性, 1回 注文量, 注文後 配達까지의 時間, 製品의 多樣性 또는 具色의 多樣性 등으로 決定된다. 물론 在來市場도 商品의 新鮮度, 商品의 具色, 買場의 크기, 商圈의 크기 등에 따라 顧客의 立場에서 보면 좀더 유리한 部門을 갖기도 하지만 各種 綜合 商品小賣機關의 近代化에 따라 多樣한 變化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流通近代化의 多種多樣한 變化에 따른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 作業 遂行이 必然的이고 必須的이라 하겠다.

따라서 在來市場의 市場 經營 近代化와 더불어 在來市場의 流通 近代化는 韓國 在來市場의 繼續的인 維持 발전에 크게 좌우한다고 하겠다.

以上과 같이 韓國在來市場의 變化에 의거, 앞으로 韓國在來市場은 利用者가 그래도 적지않은 市·邑·面·洞·里單位에 位置한 規模가 큰 在來市場을 除外하고는 그 維持, 存續이 어렵다고 豫想되므로, 中央 및 地方政府는 在來市場 流通 近代化 助成의 일환으로 農民의 需要와 生活文化를 考慮하여 農村住民의 一日生活權이 되고 있는 郡地域單位로 최소한 몇개 基의 在來市場이라도 選別하여 育成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環境施設改善은 물론 農村의 社會文化的, 經濟的 中心地가 되도록 육성하면 이는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福祉農村建設의 開發計劃에 부합되고 傳統的 文化資源을 보호한다는 側面에서도 한층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大型 小賣機關의 流通 近代化의 長短點을 考慮하여 地域 農村環境에 맞는 것을 選擇, 差別的으로 補完하면, 消費者 中心主義的이고 全產業, 人本主義的인 폭넓은 마아케팅 活動으로 農村 住民의 所得과 福祉增進에 寄與함은 물론이고 流通 近代化된 在來市場의 環境을 多方面에서 최대로 活用하는 政策的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在來市場의 全國的 規模面에서 그 地域別 特性과 장구한 歷史的 背景에 대한 時代區分이 重複이나 不明確性의 한계가 있기에 이를 克服하고 對處하여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의 問題를 더욱더 調査·硏究할 필요가 있겠다.

參考文獻

I. 古書 및 史料

「經國大典」, 「高麗史」,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古朝鮮古記條」, 「大邱府邑誌, 場市條」, 「大東地志」, 「東國文獻備考」, 「東國輿地勝覽」, 「萬機要覽」, 「明宗實錄」, 「牧民心書」, 「磻溪隨錄」, 「備邊司謄錄」, 「三國史記」 辰韓條 「三國遺史」 卷1, 「三務組合本部章程」, 「徐兢擇」, 「宣祖實錄」, 「成宗」, 「新增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續大典」, 「承政院日記」, 「燃藜室記述」, 「卷八, 論商財里額稅規制條」, 「六田條例三溟城府, 市廛條」, 「仁祖

實錄」, 「林園十六(經濟)志」, 「定宗實錄」, 「朝鮮國來書簿」,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增補文獻考」, 「帝國實業會細則」, 「太宗實錄」, 「擇里志」, 「漢城府, 完文節目」, 「海東繹史 惠商工局序」, 「後漢書 東夷傳」.

Ⅱ. 韓國 文獻

• 單行本

姜萬吉, 「朝鮮 後期 商業의 問題點」, 서울 : 韓國史研究, 第6輯, 1971.

_____, 「韓國商業의 歷史」, 서울 : 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74.

經營史學會, 「經營史學」, 創刊號－6集, (1986～1991).

經營史學會, 「經濟史學」, 創刊號－16號.

權柄卓, 「藥令市研究」, 서울 : 財團法人 韓國研究院, 1986.

_____, 「韓國經濟史」, 서울 : 博英社, 1990.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研究」, 서울 : 博英社, 1965.

金聖壽, 「日帝下의 韓國經濟史論」, 서울 : 經進社, 1985.

金柄夏, 「李朝 前期對日貿易研究」, 서울 : 韓國研究院, 1969.

_____, 「韓國經濟史」, 一朝閣, 1977.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Ⅰ, Ⅱ, Ⅲ, 1989.

_____, 「韓國經濟史」, 서울 : 民族文化社, 1990.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서울 : 一潮閣, 1970.

金元銖, 「經營學史」, 서울 : 經文史, 1985.

_____, 「巨視마아케팅論」, 서울 : 經文社, 1986.

_____, 「小賣企業經營論」, 서울 : 經文社, 1986.

_____, 「마아케팅管理論」, (第3版), 서울 : 經文社, 1992.

_____, 「마케팅原論」, 서울 : 經文社, 1993.

金孝錄, 「市場論」, 普文閣, 1962.

大韓商工會議所, 「在來市場의 現況과 誘導方向」, 1978.

_____, 「韓國小賣業의 現況과 課題」, 1983.

朴康壽, 「韓國在來市場研究」, 서울 : 汎學圖書, 1977.

朴元善,「褓負商」, 서울 : 韓國研究院, 1965.

商工部,「全國市場 百貨店現況」, 1979.

成培永,「市場開發과 統通近代化」, 研究叢書 18, 서울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주)新世界 百貨店,「韓國의 市場 商業史」, 서울 : 小賣商業發達의 通史的研究」, 1992.

(주)三養社,「三養」, 1992, 12(通券 214號), 1993, 1, 2(通券215－216號).

安秉植・李大根・中村哲, 梶村秀樹 編,「近代朝鮮의 經濟構造」, 比峰出版社, 1990.

五 星,「朝鮮 後期 商人研究」, 서울 : 一潮閣, 1989.

劉敎聖,「高麗 寺院經濟의 性格」, 白性郁記念, 佛敎學論文集, 1959.

劉元東,「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 Ⅰ, Ⅱ, 1965.

_____,「서울六矣廛研究」,「朝鮮後期 商工業 研究」, 서울 : 韓國研究院, 1968.

柳子厚,「朝鮮褓負商攷」, 서울 : 正音社, 1948.

李光麟,「京主人研究」, 人文科學 7, 1962.

李能和,「麗末鮮初의 貨幣制度」, 서울 : 麗檀學報 16, 1949.

李丙燾,「高麗時代의 研究」, 서울 : 乙酉文化社, 1948.

李瑄根,「朝鮮最近世史」, 서울 : 漢城圖書, 1931.

李相佰,「李朝建國의 研究」, 서울 : 乙酉文化社, 1949.

_____,「韓國史 近世前期篇」, 서울 : 乙酉文化史, 1961.

_____,「韓國史 近世後期篇」, 서울 : 乙酉文化史, 1965.

李乙浩,「茶山經營思想의 研究」, 서울 : 乙酉文化社, 1966.

李宰夏외,「韓國의 場市」, 定期市場을 中心으로, 서울 : 民音社, 1992.

李勳燮,「韓國傳統經營史研究」, 서울 : 保景文化社, 1992.

林炳卓,「장날」, 忠北의 市場, 청주 : 靑芝社, 1983.

林元善,「褓負商」, 서울 : 韓國研究院, 1965.

정승모,「시장의 사회학」(한국의 생활과 풍습 ②), 서울 : 웅진출판, 1992.

鄭求鉉, 「小賣流通商業의 市場開放에 關한 硏究」, 大韓商工會議所, 1988.

趙炳贊, 「韓國市場經濟史」, 서울 : 東國大學校 出版部, 1992.

崔虎鎭, 「近代朝鮮經濟史硏究」, 서울 : 民衆書館, 1947.

韓沽劤, 「李朝後期의 社會와 思想」, 서울 : 乙酉文化社, 1961.

_____, 「韓國通史」(28版), 서울 : 乙酉文化社, 1971, 1884.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硏究」, 서울 : 韓國硏究院, 1959.

黃明水, 「經營史學」, 서울 : 日新史, 1980, 1986.

• 論 文

姜英卿, 「韓國古代의 市와 井에 對한 一硏究 : 市場의 起源과 關聯하여」, 〈원우논총〉(제2집, 1984), 淑明女子大學校 원우회, 1984. pp. 93~115.

高承濟, 「李朝末期貨幣危機의 分析」, 서울大 論文集(人文社會科學), 1955.

金柄夏, 「褓負商에 關한 考察」, 「經濟學論集」, 第3卷 第1號, 中央大學校, 1963.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 3, 1967.

_____, 「麗宋貿易小考」, 震檀學報 7, 1937.

金成勳, 「韓國定期市場의 制度와 機能 硏究」, 農村經濟 硏究所, 1977.

_____, 「流通構造 및 政策의 變遷」, 金文植 外, 「韓國農業의 近代化過程」,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0, pp. 156~253.

金泳鎬,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운 展開」, 韓國史硏究 2, 1, 1968.

_____, 「3·1運動에 나타난 經濟的 民族主義」, 東亞日報, 3·1運動 50周年 記論集, 1969.

金漢周, 「李朝時代商業과 手工業과의 關係」, 李朝社會經濟史, 1946.

閔丙河, 「高麗時代의 地方制度와 土豪勢力」, 成均大論文集 8, 1963.

朴英洽, 「京畿道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 駱山地理(2), 서울大學校, 1972.

朴元善, 「褓負商」, 韓國硏究院, 1965.

_____, 「韓國의 市場 : 商法史的 考察」, 〈東方學志〉(46, 47, 48 合輯, 1985), pp. 231～296.

朴贊石, 「傳統市場의 生態學的 接近」, 竹坡 洪淳完敎授 華甲紀念論文刊行委員會, 「竹坡 洪淳完敎授 華甲紀念論文集」, 大邱 : 螢雪出版社, 1985, pp. 325～347.

吳相洛, 「流通近代史에 있어서 在來市場의 座標」, 〈經營論集〉(第14卷, 第3號, 1981), 서울大學校 韓國經營硏究所, pp. 204～216.

劉敎聖, 「서울 육외전 硏究」, 〈歷史學報〉第8集, 歷史學會, 1955.

柳佑登, 「韓國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 「駱山 地理」 第2號, 서울大地理學科, p. 12, 1972.

劉元東, 「古代－高麗時代의 市場形成史」, 〈都市問題〉(1967, 8月號), pp. 21～32.

_____, 「韓國의 市場과 褓負商」, 國際文化財團(編), 「韓國의 經濟生活」, 서울 : 時事英語社, pp. 111～132, 1982.

李德成, 「韓國의 定期市場에 對한 人類學的 硏究」, 「人類學論集」 第2輯, 1976.

李相玉, 「安養地域 中小企業의 마아케팅 戰略實態에 關한 硏究」, 安養經濟硏究叢書 16권, 11, 安養商工會議所 地域經濟 硏究센타, pp. 1～200, 1991.

_____, 「在來市場의 生成發展에 따른 小賣流通近代化에 關한 硏究」, "經營史學 第7輯, 經營史學會, pp. 197～226, 1992.

_____, 「在來市場의 發展과 流通機關의 動向에 關한 硏究」, "社會科學硏究", 刊號, 대신大學校 社會科學 硏究所, pp. 1～43, 1993.

_____, 「韓國傳來의 定期市場에 關한 社會經濟的考察」, "대신文化" 제16집, 13, 11, 대신大學校, p. 256～274.

_____, 「消費者中心主義에 對應한 마아케팅戰略」, 대신大學校 新聞(敎授論壇), 11, 29, p. 2, 1993.

_____,「朝鮮時代定期市場에 關한 硏究－制度와 流通經濟史的 側面에서－」, 亞洲大學校 李宗舜敎授 停年退任 記念論文集, 2, pp. 315～335, 1994.

_____,「韓國 在來市場의 變遷과 流通近代化에 관한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博士學位 論文, 1994.

李宰夏,「韓國의 定期市場變化過程」,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1988.

李鍾英,「朝鮮初期貨幣制의 變遷」, 人文科學 7, 1962.

李中雨,「江原道 市場分布」,「慶北大 敎育大學院 論文集」, 第1輯, 1970.

李憲昶,「開港期 市場構造의 變化」, 京畿大 論文集 24號, 1989.

李顯旭,「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 全南大 大學院 碩士論文, 1982.

李賢英, 「韓國 定期市場의 變遷과 空間構造」, 〈首都女師大論文集〉(第6輯), pp. 267～285, 1974.

李鉉淙,「南洋諸國人의 來往貿易에 對하여」, 史學硏究 18, 1964.

_____,「朝鮮 前期 對日交涉硏究」, 韓國硏究院, 1964.

田盛一,「韓國褓負商의 變遷過程과 役割에 關한 經營史的 考察」, 〈第7回 全國大學生 學術硏究發表大會 論文集(社會科學分野)〉, 大邱大學校, pp. 350～372, 1982.

兪鵬老,「마아케팅의 社會的 責任」, 韓國마아케팅 學會報, 第2, p. 2.

鄭承謨,「農村 定期市場에 對한 人類學的 硏究」, 人類學論文 第2輯, 1983.

趙璣濬,「李朝末葉의 財政改革」,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 5, 1965.

_____,「韓國에 流入된 日人資本額推定 및 그 性格分析」, 高麗大 60周年 紀念論集, 社會科學篇, 1965.

_____,「朝鮮物産奬勵運動의 性格」, 歷史學報, 3·1運動 50周年 記念 特輯號.

崔星然,「都市化에 따른 農村定期市場의 構造와 機能의 變化에 關한 硏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1.

崔虎鎭,「近代朝鮮에 있어서의 生産力으로서의 農業用勞動手段에 關한 硏

究」, 民族文化 3, 1947.

_____,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高利貸資本의 特徵과 機能」, 中央大論文集, 1957.

河炫綱, 「高麗 地方制度의 硏究」, 史學硏究 13, 14, 1962.

韓沽劤, 「18世紀 前半期에 있어서의 韓國社會 經濟面에 關한 一考察」. 서울大 論文集人文社會科學 7, 1958 : 李朝 後期의 社會와 思想, 1961.

_____, 「東學軍 弊政改革案 檢討」, 歷史學報 23, 1964.

Ⅲ. 外國文獻

• 日本語 單行本

文定昌, 「朝鮮の市場」, 日本, 東京 : 日本評論社, 1941.

梶村秀樹, 「韓國近代 經濟史 硏究」, 四季節 編輯部, 1983.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硏究(上)」, 東京 : 國書刊行會, 1937.

善生永助, 「朝鮮の市場」, (調査資料, 第8輯), 京城 : 朝鮮總督府, 1924.

_____, 「朝鮮の市場經濟」(調査資料, 第27輯), 京城 朝鮮總督府, 1929.

三上次南, 「衛氏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中國古代史の諸問題, 1954.

池田勝, 「朝鮮市場における日清兩國の抗爭ー日清戰爭原因探究」, 世界史硏究 3, 1953.

四方 博, 「市場を通して見たる朝鮮」, 日本東京千倉書房, 1938.

石原 潤, 「定期市の硏究」, 名古屋 大學出版部, 1987.

花村美樹, 「高麗律」, 朝鮮社會法制史硏究, 1930.

• 日本語 論文

加藤繁, 「清代に於けるの村鎮の定期市」, 「支那經濟史考證 : 上卷」, pp. 505~556, 1936.

宮原兎一, 「朝鮮初期の銅錢に就いて」, 朝鮮學報 2, 1951.

_____,「朝鮮初期の楮貨に就いて」, 東洋史學論集 3, 1954.

旗田巍,「高麗朝における寺院經濟」, 史學雜誌, 43, 5, 1930.

南宮營,「客主及族客に就て－朝鮮當時の金融財政慣行, 1930.

梶村秀樹 外著, 四季節 偏報部編,「韓國 近代經濟史研究－李朝 末期에서 解放까지」, 四季節 出版社, 1983, 本 册 內容 中 宮出鳴博史,「朝鮮甲午改革 以後의 商業的 農業」및 梶村秀樹,「李朝末期의 流通 및 生產構造」의 두 論文을 參照.

朴元善,「韓國客主の類型」,〈朝鮮學報〉(第52輯, 1969), 日本 天理大學出版部, pp. 1～134.

福田敬太郎,「市場論」, 1930.

善生永助,「朝鮮の市場」(調査資料 8輯),「朝鮮の市場經濟」(27輯),「朝鮮の 商業」, 11輯, 京城, 朝鮮總督府, 1924, 1929.

_____,「朝鮮の市場分布現況」,〈朝鮮〉(第123號, 8月號, 1925), pp. 87～98.

小葉田淳,「高麗朝 貨幣史考」, 經濟史研究 20, 1931.

_____,「中世後半期における日鮮金銀貿易の研究」, 史學雜誌, 42 10, 43 11, 1931, 932 : 日鮮關係史の研究(上) 1965.

仙道良次,「東北地方に立つ定期市(5)～(6)」,〈地理〉(第26券 2月～3月號, 1981).

宇野政雄監修, 流通政策研究所編,「流通新世紀, Leading Industry への道」, 1989.

日野開三郎,「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16, 17, 18, 20, 1960, 1961.

田京叔,「韓國忠淸北道地域における生活圈および定期市場の變容に關うる研究」,「地理學評論」, Vol. 56, No. 5, pp. 292～312, 1982.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研究」, 東京 : 東洋文庫, 1964.

_____,「李朝貢物考」, 朝鮮學報 9, 1965.

田中健夫,「初期日鮮貿易と博多貿易商人」, 朝鮮學報 4, 1953 : 中世海外交

涉史の研究, 1959.

中島義一, 「三重縣の定期市」, 〈駒澤地理〉(第24號, 1988), pp. 11~29.

• 歐美語 單行本

Alderson, W., *Factors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Marketing channels,* in 123, Richard D. Irwin.

Belshaw, Curil S., *Traditional Exchange and Modern Market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65.

Berry, B. J. L.,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f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67.

Good, Charles M., *Rural Markets and Trade in East Africa : A Study of the Functions and Development of Exchange Institutions in Ankole, Uganda,* Research Paper, No. 123, Chicago : The Department of Geogra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0.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4th ed.), Prentice Hall Int, 1980.

_____, *Principles of Marketing,* Prentice Hall Int, 1980.

_____,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5th ed.),

Roscher, W. Systeme der Volswirtscahft 5 Bed, 8 Aufi, 1854.

Stern L. W., & El-Ansary A. I. *Marketing Channels,* Prentice Hall, 1977.

• 歐美語 論文

Bromley, R. J., "Marke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 A Review", *Geograohy,* Vol. 56, Part 2, pp. 124~132, 1971.

Bromley, R. J., "Traditional and Modern change in the Growth of Systems of Market Conters in Highland Ecuador", in R. H. T.

Smith(ed.), *Market-Place Trade: Periodic Markets, Hawkers, and Trader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Vancouver*: University of Vritish Columbia, The Centre for Transportation Studies, 1978.

Fleming D. K., "Spatial Interaction", *Focus on Geography*, P. Bacon, ed NCSS, 1970.

Geetha, T., "The Size of Communities and Areas Served by Periodic Markets in Krishnagiri Taluk, Tamil Nadu, India", *Oriental Geograoher*, Vol. 22, No. 1~2, pp. 57~63, 1978.

Hay, A. M., "Some Alternatives in the Economic Analysis of Periodic Marketing", *Geographical Analysis*, Vol. 9, pp. 72~79, 1977.

Hodder, B. W., "Some Comments on the Origins of Traditional Markets in Africa South of the Sahara", *Transactions and Papers, I. B. G.*, No. 36, pp. 97~106, 1965.

Kim, Hye-Soon, "The Periodic Market in Contemporary Korea : Its Continuing Role in Rural Developmen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n Sociology, The University of Hawaii, 1984.

Kim, Hye-Soon, "Functional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Modes of Production in Relation with Periodic Market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16th Pacific Science Congress, Seoul, Korea, Aug, 20~30, 1987.

Lee, Jaeha,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on the Consumers' Behavior in Periodic Market of Rural Iorea", Paper Presented at the 10th Pacific Rational Science Conference, Pusan, Korea, July, 1987, 《地理學論究》, 第8號, 慶北大學校地理學科, pp. 89~101, 1987.

Obudho, R. A., "The Role of Periodic Markets in National and Re-

gional Plann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aper Presented to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Chicago, 1974.

Park, Siyoung, "The Changing Roles of Periodic Markets in The Development of Rural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n Geography, The Univ. of Minnesota, 1977.

Park, Siyoung, "Rural Development in Korea : The Role of Periodic Markets", *Economic Geography*, Vol. 57, No. 2, pp.113~126, 1981.

Park, Siyoung and Mei-E Ren, "Periodic Markcts as Cultur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Korea and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16th Pacific Science Congress, Seoul, Korea, Aug., 20~30, 1987.

Skinner, G. William,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1", *Journal of Awian Studies*, Vol. 24, pp.3~43, 1964.

Stine, James H., "Temporal Aspects of Tertiary Production Elements in Korea", in F. R. Pitts(ed.), *Urdan Systems and Economic Developmint*, Eugine, Oregon : University of Oregon, 1962.

Vanderblue, H. B.,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Marketing", *Political Economy*, Vol. 29.

Webber, M. J. and Richard Symanski, "Periodic Markets : An Economic Location Analysis", *Economic Geography*, Vol. 49, No. 3, pp.213~227, 1973.

Zimmerman, S., Says Retailer Should Be Civically Active, *Supermarket News*, March 10, 1980.

1950年代 工業化와 資本形式

徐 賢 洙*

目 次

Ⅰ. 序 言
Ⅱ. 工業化의 成長推移와 構造
1. 工業成長의 推移와 産業構造
2. 部門別 成長推移
3. 業種別 成長推移
Ⅲ. 工業資本 形式의 原因
1. 國內貯蓄과 資本形成
2. 援助와 資本形成
3. 價格機構와 資本形成
Ⅳ. 50年代 工業化의 經濟的 歸結
1. 先行條件의 充足
2. 對外依存의 深化
3. 對內的 不平等의 擴大
4. 退嬰的 企業家像 構築
Ⅴ. 結 語

Ⅰ. 序 言

지금까지 한국의 工業化의 주된 관심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성과와 정책의 효과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확실히 經濟發展段階說的인 시각에서 보면 1960년대는 연평균 실질 성장율이 10%에 달할 만큼 躍躍의 시기였고, 이에 따른 모두 사회경제부문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계획으로 생산적으로 연결되던 活力의 시대였다. 이러한 사실이 偶然的(accidental)이나, 아니면 因果的(causal)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우선 우리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성과에만 주목하고 외부로부터의 찬사에 안주하였을 뿐 그 이전의 役割이나 先行的 條件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50년대는 무계획적인 시기였으며, 三白工業 위주의 소비경제로서 援助에 의해 국민경제가 지탱되는 퇴영의 시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그 축

* 大邱慶北開發硏究院, 責任硏究員

적자본은 원조물자의 배분 유통에 기식하는 前期的 商業資本[1]으로 또는 貶民的 獨占, 低次的 獨占經濟로 성격이 규정될 뿐 별다른 生産力增大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반적 접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1960초를 전후하여 그 전에는 4%에 불과하던 經濟成長率이 10%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었는가에 의문을 갖고 1950년대의 공업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무릇 경제발전은 偶然的으로 일어난다기 보다 繼起的 過程에서 서로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어느 한 시대가 전 시대와 분리하여 獨自的으로 존재한다기 보다 전후 시대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발전과정에서 전 단계의 여러 변수들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60년대의 開發意志와 國土開發이 경제개발 성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그 前史로서 1950년대 工業化와 資本形成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前段階로서의 1950년대 공업화과정을 분석하므로써 우리는 도약의 土臺 내지 前提條件의 構造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이 선행될 때 우리의 공업화과정, 高度成長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Ⅱ장에서는 1953년에서부터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되기 전인 1961년 까지의 1950년대 工業化의 成長推移와 構造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國民經濟成長과 공업성장과의 비교, 工業部門別·業種別 성장추이 분석을 통해 50년대 공업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工業資本形成의 원인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있어온 援助依存的 消費財資本形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國民貯蓄·援助·價格機構가 공업자본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50년대 공업자본형성이 韓國 經濟發展史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 귀결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1) 谷浦孝雄, 「해방 후 韓國商業資本의 形成과 發展」,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81, 297~331면.

Ⅱ. 工業化의 成長推移와 構造

1. 工業成長의 推移와 産業構造

휴전과 더불어 經濟收拾, 復興을 개시하여 1955년에 戰前의 수준을 회보하게 되었다. 그후 공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61에 이르는 8년 사이 국민 총생산은 1.45배 성장하여 연평균 4.75%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일면 낮은 비율로 보여질지 모르나 당시의 人口壓力[2]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성장율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2차산업은 이 기간 동안 2.26배 성장하여 연평균 10.7%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성장율은 國民總生産 성장율에 비해서는 2.25

〈표 Ⅱ-1〉 産業別 國民總生産(1960年 不變價格)

(단위 : 10억원)

	國民總生産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1953	158.13(100)	59.57(100)	19.54(100)	79.02(100)
1954	167.66(106.0)	64.05(107.5)	22.78(116.7)	80.83(102.3)
1955	178.30(112.3)	65.65(110.2)	26.83(137.3)	85.82(108.3)
1956	180.67(114.3)	61.86(103.8)	29.52(151.0)	89.29(112.9)
1957	193.60(122.4)	66.91(112.3)	34.21(175.0)	92.48(117.0)
1958	214.90(135.9)	72.22(121.2)	36.52(186.8)	96.67(122.3)
1959	214.90(135.9)	71.87(120.6)	40.40(206.7)	102.63(129.8)
1960	218.78(138.4)	71.92(120.7)	45.52(219.9)	103.89(131.4)
1961	229.30(145.0)	81.04(136.0)	44.19(226.1)	104.07(131.7)

자료 : 한국은행조사부,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 1965, 「國民計定諸表」 12~13면

주 : 1) ( )내는 1963=100으로 한 지수표시

2) 2차산업에는 전기, 가스, 수도업을 포함

---

2) 한국의 인구는 1953년 20,902천명에서 1963년 27,184천명으로 연평균 2.66%의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배, 1차산업에 비해서는 2.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2차산업은 1952~56사이 한국전쟁 후의 복구과정에서의 特殊景氣로 평균 15% 이상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安定化政策이 강조된 1958년~61년 사이는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8.4%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2차산업의 성장과 1차·3차 산업의 상대적 침체는 〈표 Ⅱ-2〉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Ⅱ-2〉 國民總生産의 産業別 構成比

	國民總生産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1953	100	37.7	12.3	50.0
1954	100	38.2	13.5	48.3
1955	100	36.8	15.0	48.2
1956	100	34.2	16.2	49.6
1957	100	34.6	17.6	47.8
1958	100	35.2	17.5	47.3
1959	100	33.4	18.7	47.9
1960	100	32.9	19.4	47.7
1961	100	35.3	19.2	45.5

자료 : 〈표 Ⅱ-1〉에서 작성

표에서 보듯 産業別 構成比는 1953년 1차·2차·3차 산업이 37.7% : 12.3% : 50.0%이던 것이 1961년에는 35.3% : 19.2% : 45.5%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되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각 산업별로 보면, 먼저 3차산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3년 50.0%에서 1963년 45.5%로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에서는 계속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마땅한 생산시설 없이 원조물자의 유통과 배분에 기반을 둔 流通産業의 異常肥大現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차산업은 그 비중이 이 기간 동안 37.7%에서 35.3%로 감소하고 있다.

공업화의 國內需要 기반인 농업의 상대적 침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공업의 상대적 활성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1차·3차산업의 상대적 침체와는 반대로 2차산업은 그 비중이 12.3%에서 19.2%로 6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産業別 構成比의 추이에서 우리는 1950년대 성장의 주축이 2차산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산업의 성장과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낸 것이 産業別 相對的 成長度[3]로 표시된 〈표 Ⅱ-3〉이다.

〈표 Ⅱ-3〉 産業別 相對的 成長度

산업별 / 年度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1953년	100.0	100.0	100.0
1954년	101.4	110.1	96.5
1955년	97.7	121.7	96.3
1956년	90.8	132.1	98.8
1957년	91.7	143.0	95.6
1958년	93.3	143.8	94.1
1959년	88.7	152.1	95.5
1960년	87.2	158.9	94.9
1961년	93.8	155.9	90.8

자료 : 黃炳晙, 『韓國의 工業經濟』,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66, 353면
주 : 産業別 相對的成長度=(각 産業의 GNP成長指數/GNP 成長指數)×100

여기서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은 50년대를 통하여 계속 정체되고 있으나, 2차산업은 뚜렷이 높은 相對的 成長度를 보여주고 있다. 1차산업은 1953년에서 61년 사이에 그 상대적 성장도가 93.8%로, 3차산업은 90.8%로 마이

3) 相對的 成長度란 經濟變數의 총지수에서 차지하는 각 부문별 지수의 크기를 1로 했을 때 그 구성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鈴木義圖씨는 黃炳晙씨가 사용한 「각 産業의 進展度」를 적절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와같이 바꾸어 사용하였다 (富岡倍雄 外, 『韓國經濟試論』, 白桃書房, 69면).

너스 성장율 하고 있는데 비해, 2차산업은 155.9%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0년 한국의 國民經濟規模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 주축은 2차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이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2차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部門別 成長推移

먼저 2차산업의 국민 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4〉 2次産業의 國民總生産 推移

(단위 : 억, %)

2次産業 / 年度	鑛業 · 採石業	製造業	建設 · 電氣 · 가스 · 水道業
1953年	14.9(100)	125.7(100)	54.8(100)
1954年	16.0(107.4)	148.0(117.7)	63.8(116.4)
1955年	21.5(144.3)	181.0(144.0)	65.8(120.1)
1956年	21.1(141.6)	208.3(165.7)	65.8(120.1)
1957年	30.2(202.7)	227.1(180.7)	84.8(154.7)
1958年	33.2(222.8)	245.3(195.1)	86.7(158.2)
1959年	40.4(271.1)	263.7(209.8)	99.9(182.3)
1960年	49.4(331.5)	278.1(221.2)	102.2(186.5)
1961年	49.2(330.2)	283.9(225.9)	108.8(198.5)

자료 : 〈표 Ⅱ-1〉에서 작성
주 : ( )내는 1953년=100으로 한 성장지수

〈표 Ⅱ-4〉에서와 같이 2차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鑛業 · 採石業이고, 製造業과 건설 · 전기 · 가스 · 수도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먼저 광업 · 채석업은 그 생산액이 1953년 14.9억원에서 61년 49.2억원으로 3.3배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 重石 등

광업의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제조업은 이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2.3배의 성장율 보여주고 있으나, 생산액에서 보면 1961년 283.9억원으로 2차산업 총생산액에서 64.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경제성장은 2차산업이 근간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기본적 原動力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으로 나누어 부문별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Ⅱ-5〉 工業部門別 成長 推移

(단위 : 백만원, %)

年度	전 공 업			소비재공업			생산재공업			기 타		
	부가가치	성장율	지수	부가가치	성장율	지수	부가가치	성장율	지수	부가가치	성장율	지수
1953	13,829	–	100.0	11,210	–	100.0	2,357	–	100.0	262	–	100.0
'54	16,561	69.7	119.7	13,181	17.6	117.6	3,027	28.4	128.4	353	34.7	134.7
'55	20,023	20.9	144.8	15,968	21.1	142.4	3,594	18.3	152.5	461	30.6	176.0
'56	23,249	16.1	168.1	18,372	15.1	163.9	4,323	20.3	183.4	545	18.2	208.0
'57	25,336	8.6	183.2	20,057	9.2	178.9	4,732	9.5	200.8	547	0.4	208.8
'58	27,720	9.4	200.4	21,633	7.9	193.0	5,563	7.6	236.0	524	4.2	200.0
'59	30,356	9.5	219.5	23,163	7.1	206.6	6,519	14.9	276.6	674	28.6	257.3
'60	32,981	8.6	238.5	24,388	5.1	17.1	7,936	9.8	336.7	707	4.9	269.8
'61	34,759	5.4	251.3	24,296	0.2	216.7	9,688	22.1	411.0	775	9.6	295.8
平均		12.2			10.1			19.3			14.5	

자료 : 한국은행, 『國民所得推計資料』, 제1표

주 : 소비재공업에는 식료품, 도정,음료품, 연초, 섬유, 혁·의류 및 장신품 제재 및 목제품, 가구 및 장식품, 지류 및 지류제품, 인쇄·출판 및 동유사품 피혁 및 피혁제품 제조업을 포함함.
생산재공업에는 화학 및 화학제품, 섬유 및 석탄제품, 토석 및 유리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기계, 전기기구, 수송용기구 제조업 포함.

첫째, 全工業의 附加價値 총액은 1953~61년 사이 2배 증가하고 있으나 1950년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의 성장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는 후반기의 안정화 정책과 이미 輸入代替 소비재 산업이 한계에 도달하여 침체국면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는듯 하다.[4]

둘째, 소비재와 생산재공업 사이에 있어 생산재공업이 소비재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50년대의 성장이 소비재 위주의 공업화 과정이었다는 통설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주목된다. 〈표 Ⅱ-5〉에서도 나타나듯 전기간에 걸쳐 대부분 소비재보다 생산재공업 성장이 높으며, 특히 50년대 후반의 생산재 공업의 성장은 두드러진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바와 같이 1950년대 초반부터 성장해온 비료, 고무, 펄프, 시멘트, 전기기계, 유리 등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체 금액적인 면에서는 소비재 공업이 그 구성비가 1953년 79.45%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비록 생산재공업이 빠른 성장을 시현했다 해도 1950년대 경제성장은 제당·제분의 식료품, 섬유 등의 소비재 공업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業種別 成長推移

工業部門別 성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업종별 成長指數와 그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Ⅱ-6〉과 〈표 Ⅱ-7〉과 같다.

1953년~61년 사이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율 나타낸 것은 전기기계기구 업종으로 이 기간 동안 무료 6.0배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제1차금속(4.7배), 석유·석탄제품(5.3배), 토석·유리제품(4.0배), 종이류·종이제품(3.7배) 등은 3배 이상의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외 음식료품, 화학·화학제품, 수송용기계 기구가 각각 2.6배 성장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生産財工業 업종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고, 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消費財工業 업종은 상대적으로 그 성장율이 낮으나 全製

4) 消費財工業은 1957년경에 이미 전반적으로 施設過剩에 직면하게 된다(黃炳晙, 앞의 책, 94~101면 참조).

〈표 Ⅱ-6〉 製造業 業種別 成長指數

(1953년=100)

업종 \ 년도	1953年	'54	'55	'56	'57	'58	'59	'60	'61
1. 식료품	100.0	128.6	155.3	199.6	214.3	245.1	243.7	247.4	266.8
2. 음료품	100.0	81.9	159.7	191.6	171.6	197.2	234.1	251.9	265.6
3. 연 초	100.0	107.2	115.6	117.3	120.3	128.3	133.7	131.7	141.8
4. 섬 유	100.0	125.7	159.3	190.3	236.1	239.6	254.6	248.2	229.8
5. 구두·의복·장신구	100.0	117.9	176.6	151.6	177.2	198.4	217.6	236.5	214.3
6. 목재·목제품	100.0	128.5	138.9	155.8	206.0	158.0	133.3	217.2	121.9
7. 가구·장치품	100.0	122.2	177.8	176.4	175.7	163.9	138.9	138.9	97.2
8. 종이류·종이제품	100.0	128.6	132.9	146.6	175.8	172.0	228.6	301.9	368.9
9. 인쇄·출판	100.0	113.8	138.8	143.3	130.8	176.9	183.2	235.1	208.4
10. 피혁·가죽제품	100.0	126.3	157.7	207.0	207.0	232.9	185.9	167.1	193.9
11. 고무제품	100.0	139.1	116.4	108.6	153.9	171.1	262.5	261.8	252.3
12. 화학·화학제품	100.0	115.9	139.7	132.7	140.8	156.0	169.7	233.9	262.2
13. 석유·석탄제품	100.0	114.9	138.6	229.7	264.4	312.9	412.9	533.7	533.7
14. 토석·유리제품	100.0	143.4	179.9	223.9	226.5	311.4	369.7	386.9	396.5
15. 제1차 금속	100.0	115.3	135.8	210.9	267.9	313.1	446.0	552.6	466.4
16. 금속제품	100.0	106.1	116.3	115.9	139.4	158.3	176.9	184.1	206.8
17. 기계제조	100.0	127.6	115.0	156.0	127.3	126.7	117.6	98.0	135.5
18. 전기기계기구	100.0	119.3	114.0	235.1	243.9	249.1	263.2	370.2	603.5
19. 수송용 기구류	100.0	130.9	166.3	192.1	207.7	194.0	189.2	210.0	259.1
20. 기 타	100.0	118.3	124.8	138.9	16.9	129.8	150.4	144.7	145.0

자료 : 〈표 Ⅱ-1〉과 동일, 54~55면

造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纖維(19.6%), 食料品(18.1%), 煙草(13.1%) 등 소비재 공업업종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주요업종과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율을 2期로 나누어 살펴보면 1958년 이후 후반기의 성장율이 전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纖維業은 마이너스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50년 이후 계속된 不況, 외국원조의 감소, 國內市場需要의 限界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표 Ⅱ-8〉에서 보듯 1954~57년의 전반기에는 纖維, 食品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1958~61년 사이의 후반기에는 金屬·化

〈표 Ⅱ-7〉 製造業 構成別 構成比 推移

(全製造業=100%)

업종 \ 년도	1953年	'54	'55	'56	'57	'58	'59	'60	'61
1. 식료품	15.39	16.82	16.59	18.53	18.25	19.33	17.87	17.20	18.17
2. 음료품	8.48	5.90	9.40	9.80	8.07	8.57	9.46	9.65	9.97
3. 연 초	20.81	18.95	16.71	14.73	13.85	13.68	13.22	12.38	13.07
4. 섬 유	19.28	20.58	21.33	22.14	25.19	23.67	23.39	21.62	19.61
5. 구두·의복·장신구	2.90	2.90	3.55	2.65	2.84	2.94	3.00	3.10	2.75
6. 목재·목제품	2.54	2.77	2.45	2.39	2.89	2.05	1.98	2.49	1.37
7. 가구·장치품	1.15	1.19	1.41	1.22	1.11	0.96	0.76	0.72	0.49
8. 종이류·종이제품	1.28	1.40	1.18	1.13	1.25	1.13	1.40	1.75	2.09
9. 인쇄·출판	3.69	3.57	3.56	3.19	2.67	3.35	3.22	3.92	3.41
10. 피혁·가죽제품	1.69	1.82	1.86	2.12	1.94	2.02	1.50	3.28	1.45
11. 고무제품	2.42	2.86	1.96	1.58	2.06	2.12	3.03	2.86	2.70
12. 화학·화학제품	5.07	4.99	4.92	4.06	3.95	4.05	4.10	5.36	5.88
13. 석유·석탄제품	0.80	0.78	0.77	1.11	1.18	1.29	1.58	1.94	2.09
14. 토석·유리제품	2.73	3.33	3.41	3.68	3.42	4.35	4.81	4.77	4.79
15. 제1차 금속	1.09	1.07	1.03	1.39	1.66	1.75	2.32	2.72	2.25
16. 금속제품	2.10	1.89	1.70	1.47	1.62	1.70	1.77	1.75	1.92
17. 기계제조	2.71	2.94	2.17	2.55	1.91	1.76	1.52	1.20	1.63
18. 전기기계기구	0.45	0.46	0.36	0.64	0.61	0.58	0.57	0.76	1.21
19. 수송용 기구류	3.33	3.70	3.84	3.86	3.82	3.31	3.00	3.16	3.81
20. 기 타	2.09	2.08	1.80	1.76	1.71	1.39	1.50	1.37	1.34

자료 : 〈표 Ⅱ-1〉과 동일, 54~55면

주 : 附加價値基準, 1960년 不變價格으로 표시

學·機械 등의 生産財工業 업종의 성장율이 소비재공업 업종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아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5]

이상에서 50년대 工業化의 推移와 그 構造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이를 기초로 이 기간 동안 공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가 있다.

---

5)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前期는 外國援助를 축으로 自給自足을 위한 消費財 工業化 段階로, 後期는 生産財 부문을 중심으로 한 1960년대 전반의 본격적 輸入代替化를 촉진하는 準備段階로 보고 있다(富岡倍雄 外, 앞의 책, 71~73면).

〈표 Ⅱ-8〉 工業 主要業種別 成長率

(단위 : %)

業種別 \ 年度	1954~57	1957~61
食品	12.8	9.0
纖維	25.1	-0.9
化學	14.9	20.2
窯業	22.9	18.2
金屬	24.0	21.1
機械	18.3	19.0
全製造業	18.1	6.7

자료 : 富岡倍雄 外, 앞의 책, 73면에서 재인용

첫째, 50년대 공업생산은 대부분 國內市場指向的이라는 것이다. 업종별 성장추이에서도 잘 나타나듯, 纖維, 製糖·製粉 등을 위시한 소비재 공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은 국내시장에 일정하게 존재하는 수요를 國產으로 대체하기 위한 원료,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단순히 끝손질(final touches)만을 가하여 組立·加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었다.

둘째, 국내의 다른 산업과 연관되는 迂廻生產의 정도가 낮고 輸入依存度가 매우 높다. 제조업의 생산이 輸入原料와 輸入資本에 의존하였으므로 제조업 생산의 성장은 더욱 수입을 유발하였고, 수입이나 원조가 중단되면 생산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構造的 脆弱性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50년대 공업부문은 농업부문과 聯關性이 매우 낮았다. 공업부문은 공업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농업부문은 이와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외국 原資材의 계속된 도입으로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50년대의 공업화가 工業內部 내지 國內產業間의 分業關係에 기초한 自生的인 것이 아니라 원조물자 가공에 국한된데 기인하는 것이다.

Ⅱ. 工業資本形成의 原因

공업화의 근저에는 資本의 蓄積이 필수적이다. 자본축적 없이는 공업측면에서의 供給力增大나 發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자본축적은 物的·人的資本이 다같이 중요하며, 또한 물적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장비나 공장시설 등의 直接生産資本과 항만·도로·철도 등의 社會間接資本 축적이 다같이 필요하다.

물론 당시의 중요한 物的 基盤이었던 歸屬財産 拂下가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6] 이 장에서는 物的資本 그중에서도 私的企業의 기계장비·공장시설 등의 자본형성에 촛점을 두고 앞장에서 살펴본 공업화를 가능케 한 자본형성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본형성의 주된 자금원천인 國內貯蓄·外國資本 그리고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價格機構로 나누어 살펴본다.

1. 國民貯蓄과 工業資本形成

한국전쟁으로부터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한 1955년 이래의 국민저축의 主體別 構成은 〈표 Ⅲ-1〉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 총저축은 GNP에 대한 비중이 평균 3.3%로 상당히 낮다. 이를 主體別로 보면 政府는 이 기간 계속해서 負의 저축을 실현하고 있으며, 주로 국민저축은 民間部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왜 政府貯蓄은 마이너스를 나타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느냐는 것과 企業貯蓄의 원천은 주로 어디에서 파생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저축이 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歲出이 歲入보다 많다는 財

---

6) 1948년말 현재 歸屬企業體가 全企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장수에 있어서는 21.6%, 종업수는 59.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 점에서 불하기업체가 공업화 출발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였다고 보기도 한다(金大煥, 「1950年代 韓國經濟의 硏究-工業을 중심으로-」 『1950年代의 認識』, 한길사, 1981, 179~184면 참조).

政赤字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投資의 원천이 되는 저축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Ⅲ-2〉는 재정적자의 內譯別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 國民貯蓄의 主體別 構成

(單位 : 10億원, %)

	政府		法人企業		家計 및 非法人企業		國民總貯蓄	
	금 액	GNP에 대한 %	금 액	GNP에 대한 %	금 액	GNP에 대한 %	금 액	GNP에 대한 %
1955	−2.69	−2.3	1.65	1.4	6.72	5.8	5.68	4.9
1956	−4.42	−2.9	2.20	1.4	0.15	0.1	−2.07	−1.3
1957	−6.01	−3.0	3.31	1.7	13.63	6.9	10.98	5.5
1958	−6.43	−3.1	4.23	2.0	12.47	6.0	10.27	5.0
1959	−5.94	−2.7	5.48	2.5	9.12	4.1	8.66	3.9
1960	−5.01	−2.0	5.88	2.4	3.02	0.2	3.89	1.6
1961	−5.30	−1.8	8.84	3.0	7.78	2.6	11.32	3.8
평균		−2.5		2.1		3.8		3.3

자료 : 朴 昇, 「韓國經濟成長論」, 日新社, 1969, 128면

〈표 Ⅲ-2〉 財政赤字의 內譯別 推移

(단위 : 백만원)

	特別會計借入金	一般財政借入金	產業復興國債	總 計
1953	747.3(22.8)	2,020(61.8)	500(15.4)	3,267.3(100.0)
1954	93(2.5)	2,320(63.2)	1,256(34.3)	3,669(100.0)
1955	1,433(43.5)	0	1,860(56.5)	3,293(100.0)
1957	412(11.2)	950(25.8)	2,319(63.0)	3,681(100.0)
1958	201(11.1)	2,230(123.7)	−628(−34.8)	1,803(100.0)
1959	2,259(78.4)	640(22.2)	−19(−0.6)	2,880(100.0)
1960	114(18.9)	496(81.9)	−5(−0.8)	605(100.0)
1961	2,987(49.4)	173(2.9)	2,885(47.7)	6,045(100.0)

자료 : 경제기획원, 「豫算概要」, 1964

財政赤字의 內譯別 추이에서 보면, 安定政策 전개기로 산업부흥국채 발행이 중단된 1958~60년을 제외한 1953~57년 사이에 발행된 產業復興國債가 통화 증발을 수반한 총재정적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가깝다. 여기에 財政投融資의 주요 재원의 하나인 產業金融債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훨씬 상회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정부저축의 반은 陽의 저축으로 計上되어져야 할 것이다. 후진국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 중 직접적인 資本動員, 自給供給役割은 재정투융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年次別 財政投融資規模는 〈표 Ⅲ-3〉과 같으며, 국내 總固定資本形式에서의 비중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3〉 年次別 財政投融資

(단위 : 백만원)

	財源別				供給別		合計
	代充資金 (외국원조)	租稅·기타	特別會計 剩餘金	產業復興 國債	投資	融資	
1954	1,721(43.5)	730 (18.5)	248 (6.3)	1,256 (31.7)	1,804 (45.6)	2,151 (54.4)	3,955 (100.0)
1955	5,464(65.2)	885 (10.6)	169 (2.0)	1,860 (22.2)	5,089 (60.7)	3,289 (39.3)	8,378 (100.0)
1957	10,437(70.3)	714 (4.8)	1,146 (7.7)	2,551 (17.2)	9,667 (65.1)	5,181 (34.9)	14,848 (100.0)
1958	12,026(93.0)		910 (7.0)		7,120 (55.0)	5,816 (45.0)	12,936 (100.0)
1959	9,135(85.4)		1,556 (14.6)		5,772 (54.0)	4,919 (46.0)	10,692 (100.0)

자료 : 洪性圖, 『韓國의 資本蓄積過程』,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65, 125면
주 : ( )내는 구성비

〈표 Ⅲ-3〉에서 보면 財政投融資의 財源으로 外國援助(代充資金)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의 측면보다 내부적 배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년대에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예산의 30~50%를 國防

費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 원조는 冷戰이데올로기 防波堤로서의 한국의 위치와 관련지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원조가 재정투자용자에는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剩餘農産物 도입으로 한국의 原料農業의 파멸,[7] 農業의 荒廢化[8]를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57년까지는 産業復興國債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50년대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9] 産業復興國債의 발행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되었고, 그 배분에 있어 政治的 意圖가 개입되어 기업과 정부의 유착,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는 나쁜 영향을 끼쳤다.

한편, 財政投融資가 國民總固定資本 形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년대 중반 70% 차지하다가 그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표 Ⅲ-4〉에서 보면 工業資本이 상당부분 이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 國內總固定資本形式과 財政投融資

(단위 : 백만원)

	固定資本形成額(A)	財政投融資額(B)	B/A (%)
1953	2,860	1,043	36.5
1954	6,200	3,955	63.8
1955	10,720	8,378	78.2
1956	12,850	?	?
1957	20,090	14,848	73.9
1958	21,940	12,936	59.0
1959	26,500	10,691	40.3

자료 : 〈표 Ⅲ-3〉과 동일, 32 · 59 · 125면

7) 美國의 過剩農産物의 도입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한국에서 생산가능한 국산밀, 국산면, 생사 등 原料農業은 재배농가와 재배면적감소로 50년대 후반에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기에 이른다.

8) 1950년대의 資本蓄積의 주된 犧牲部門은 두말할 것 없이 農業部門이며, 이는 不等價交換, 強制收奪, 高利債金融을 통한 收奪매카니즘을 통해 이루어 졌다(李大根, 「韓國戰爭과 1950年代 資本蓄積」, 까치, 1987, 240~248면).

〈표 Ⅲ-5〉는 政府의 공 업자본형성에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財政融資의 配分構成이다. 표에서와 같이 총재정융자 중 55.8%인 一般産業資金, 中小企業資金 3.3%, 輸出振興資金 0.5% 등 모두 59.6%가 공업자본 優待政策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 財政融資의 配分

(단위 : 백만원)

配分 / 會計年度	一般産業資金	水利農事資金	中小企業資金	住宅資金	輸出振興資金	合 計
1953	500	—	—	—	—	500
1954	1,695	456	—	—	—	2,151
1955	2,029	1,160	—	100	—	3,289
1957	2,624	1,644	600	313	—	5,181
1958	3,192	2,204	50	370	—	5,816
1959	2,453	1,750	48	668	—	4,919
1960	1,480	1,227	122	210	130	3,169
合 計 構成比	13,973 (55.8)	8,441 (33.7)	820 (8.3)	1,661 (6.7)	130 (0.5)	25,02 (100.0)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64年 8月호, 20면
주 : 결산액기준

한편, 企業貯蓄은 기업소득의 증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 Ⅲ-6〉에서와 같이 1953~62년 사이 商業所得 중 기업소득의 비중은 평균 73.7%이다. 비록 60年代로 갈수록 감소되어지기는 하나 이는 민간기업의 利潤이 단적으로 流通部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商業部門이 자본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9) 1953년에서 61년 사이 발행된 産業復興國債는 모두 109억 5천 3백만원으로 "이는 地國國債와 함께 투자의 量的 擴大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지는 모르나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수탈된 대중의 저축은 소수의 향락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洪性圖, 앞의 책, 37면).

〈표 Ⅲ-6〉 工業資本形成에 있어 商業部門 役割

	非農業部門 국민소득 중 企業所得 비율	商業所得 중 企業所得 비율	非農業部門의 국민소득 중 商業所得의 비율	非農業部門의 전체기업소득 중 商業所得·企業所得 비율
1953	29.1	80.9	22.1	61.4
1954	28.2	78.0	20.9	58.0
1955	31.5	79.1	22.4	56.2
1956	32.5	77.7	22.9	54.7
1957	29.7	76.5	20.1	51.8
1958	26.2	72.2	17.1	47.1
1959	26.4	70.7	15.6	41.8
1960	22.5	68.8	15.5	47.5
1961	22.8	67.0	14.6	43.0
1962	24.8	66.3	15.1	40.5
平均	27.4	73.7	18.6	50.2

자료 : 李昌烈 編, 「國內資本動員」, 1964, 87면

이와 같이 流通過程을 중심으로 한 企業所得이 형성된 주요한 계기는 뒤에서 설명할 인플레이션, 換率, 金利, 相對價格 등 가격기구를 통한 것이었다. 이것은 富의 逆流的 再分配過程을 통하여 소비자, 농민, 근로자 등의 영세 소비대중의 부담으로 轉嫁하고, 이를 이용한 商業資本的 企業貯蓄을 통한 자본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援助와 工業資本形成

外國援助는 국민저축과 함께 50년대 한국의 資本供給手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원조는 주로 미국에 의한 것으로 한국전쟁으로 거의 모든 공업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工業再建과 運營資金, 原料供給 등에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원조물자의 構成과 政策背景, 波及效果 등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닌 것이었다.[10]

1945년부터 1961년까지 31억 달러 이상의 援助가 한국에 제공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外國援助 總括

(단위 : 千달러)

年度	合 計	U. S. A				CRIK	UNKRA
		GARIOA	ECA & SEC	PL 480	AID		
1945	4,934	4,934	–	–	–	–	–
1946	49,496	49,496	–	–	–	–	–
1947	175,371	175,371	–	–	–	–	–
1948	179,593	179,593	–	–	–	–	–
1949	116,509	92,703	23,806	–	–	–	–
1950	58,706	–	49,330	–	–	9,376	
1951	106,509	–	32,972	–	–	74,448	122
1952	161,327	–	3,824	–	–	155,534	1,969
1953	194,170	–	232	–	5,571	158,787	29,580
1954	153,925	–	–	–	82,437	50,191	21,297
1955	236,707	–	–	–	205,815	8,711	22,181
1956	326,705	–	–	32,955	271,049	331	22,370
1957	382,893	–	–	45,522	323,268	–	14,103
1958	321,272	–	–	47,896	265,629	–	7,747
1959	222,204	–	–	11,436	208,297	–	2,471
1960	245,393	–	–	19,913	225,236	–	244
1961	199,245	–	–	44,926	154,319	–	–
1962	232,310	–	–	67,308	165,002	–	–

10) 李大根씨는 施設財導入, 代充資金에 의한 工業資本形成, 物價安定 등에 원조가 기여하였다고 하나 시설재가 총 원조물자 중 10%에 불과하고, 원조물자 販賣過程에서의 跛行性, 投機意識助長에 의한 인플레이션유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援助依存蓄積論을 배격하고 農業輸性蓄積論으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李大根, 앞의 책, 237~239면 참조).

1963	216,446	–	–	96,787	119,659	–	–
1964	127,820	–	–	60,985	66,835	–	–
합계	3,711,568	502,097	109,097	427,728	2,093,117	457,378	122,084

자료 : 한국은행, 「조사월보」, 1965.2. 統計篇, 92면

〈표 Ⅲ－8〉 美國의 對韓 援助物資 構成

(단위 : 백만달러)

資 金 別	施 設 財	消 費 財	合 計
GARIOA	31(7%)	379(93%)	410
ECA	6(3%)	170(97%)	176
SEC	0.2(0%)	26(100%)	26
CRIK	–(0%)	457(100%)	457
UNKRA	86(70%)	36(30%)	122
ICA	485(28%)	1,260(72%)	1,745
PL480	–(0%)	203(100%)	203
合 計	608(19%)	2,531(81%)	3,119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 막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각종 공업건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導入物資의 내용을 살펴보면 施設財는 19%에 불과하고 消費財가 8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Ⅲ－8〉 참조). 특히 PL 480호에 의한 원조는 이 기간 총원조물자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가 미국의 剩餘農産物로서 한국농업의 파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원조 중 資本財 導入이 제조업 固定資本形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財政投融資의 財源比重 등에 원조가 차지한 절대적 위치와는 달리 1957년 27%를 頂点으로 점차 감소하여 60년에는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工業部門에의 원조자금 투자 상황을 보면 1957년 현재 全業種 가운데서 纖維·化學이 이들 원조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UNKRA원조에 의해 1957년 仁川板硝子, 聞慶시멘트 공장이, ICA 원조로 忠州肥料工場, 삼덕제지공장 등이 건설되기도 하였다.[11]

11) 洪性圃, 앞의 책, 328면.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성과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잉여농산물 공급으로 農業의 停滯, 대외의존 소비재 편중 공업구조의

〈표 Ⅲ－9〉 製造業 固定資本 形成과 援助(經常價格)

(단위 : 억원)

年度	製造業 固定資本形成(A)	製造業에 대한 資本財援助(B)	B/A
1953	…	0.024	…
1954	…	0.9	…
1955	…	2.8	…
1956	42	11	26
1957	47	12	27
1958	49	8	17
1959	48	3	6.5
1960	53	6	11

자료 : 山田三郎 編, 『韓國工業の 課題』, アジア經濟研究所, 1971, 230면

〈표 Ⅲ－10〉 工業部門 援助資金 投資 狀況

(단위 : 千달러)

財源別 및 年度	纖 維	化 學	機 械	기 타	合 計
UNKRA 計	8,987	14,364	728	961	25,140
1953	2,818	9,785	308	407	13,318
1954	4,482	4,106	520	54	9,662
1955	1,687	473	－	－	2,159
ICA 計	3,826	49,920	5,692	200	59,638
1954	－	34,689	－	－	34,689
1955	376	3,482	1,342	－	5,200
1956	352	4,221	416	－	4,989
1957	3,098	7,528	3,934	200	14,760
總 額	12,813	64,284	6,519	1,161	84,778

자료 : 〈표 Ⅱ－1〉과 동일, 77면

구성,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국경제정책의 被動性 등을 야기하였다. 특히 전후 부흥시에 원조물자 도입으로 이루어진 絹紡, 毛紡, 製粉, 肥料, 시멘트 등은 모두가 원조물자의 導入, 處理, 加工過程을 권력과 밀착된 무역업자와 제조업체에게 각종 特惠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원조는 이들이 원조자금으로 배정받아 이들 물자의 국내 공급부족에 편승 獨占利潤을 취하고 大企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다.[12]

이와 같이 원조가 가진 否定的 側面, 즉 輸入誘發的, 消費財 偏重 經濟構造를 고착시키고, 공업화 주체의 성격이 對外依存的, 官僚的으로 된 점, 농업이 해야할 몫을 무상원조가 대행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위축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援助가 공업자본형성에 기여한 몫은 그만큼 平價切下되어야 할 것이다.[13]

3. 價格機構와 工業資本形成

가격기구를 통한 資本動員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저축을 民間企業에게 대행시키되 이를 가능토록 유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공급의 媒介役割을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획일적일 수는 없으나 Gerschenkron에 의하면 경제적·제도적 여건과 後進度에 따라, 工業化段階에 따라 범위와 심도가 다르나 後進國일수록 그 범위는 包括的이고 그 強度가 강하다.[14]

가격기구는 家計보다 企業, 消費者보다 生產者에 유리하도록 작용하므로써 부족한 國民的 財源을 생산부문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데, 가격기구

---

12) 援助物資의 特惠的 配定을 둘러싸고 성장한 대기업은 三星物產, 大韓重石, 韓國火纖, 全南紡織, 韓國毛紡, 內外紡織, 大田紡織, 三護紡織, 大韓製粉, 第一製糖, 半島商社, 東林產業, 中央產業 등이며, 이들중 일부가 군사정부의 不正蓄財者로 탈락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남아 있다.

13) 援助가 주어진다고 모든 低開發國이 工業化에 모두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이를 받아 運營·生產으로 연결시키는 主體, 內在的인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예로서 한국의 경우를 들고 있다(富岡倍雄 외, 앞의 책, 89면).

14)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352~364면).

를 통한 공업자본형성에는 金利, 換率, 相對價格, 租稅, 金融政策 등을 통해 고찰될 수 있다.

1) 金 利

1950년대에는 민간투자의 촉진수단으로 일관해서 低金利政策을 실시하였다. 〈표 Ⅲ-11〉은 物價上昇率과 일반은행의 主要 貸出金利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物價上昇率은 각종 貸出金利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1955년의 경우 4배에 달하고 있다. 實質金利는 최저 -9.85에서 -62.85의 負의 利子率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超인플레이션하에서는 대출이 곧 致富手段이고, 貸出需要는 무한정으로 팽창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超인플레이션, 低金利下에서의 銀行信用擴大는 생산적 투자보다는 非生産的인 商業投機를 조장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상업자본의 축적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1957년에 銀行歸屬株 불하가 완료되기까지 금융은 官權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으므로 금융측면을 통한 資源配分은 엄격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官僚들의 恣意的인 選擇에 의한 경우가 더욱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金利도 製造業에 유리한 金利體系를 갖고 있었는데, 원조물자 인수자금의 경우 일반자금의 대출금리보다 약 5% 포인트가 낮은 9%를 적용하였고, 특히 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1957년 말 현재 일반산업자금 15%에서부터 代充資金에 의한 施設資金 3%까지 다양하고 낮았다.

〈표 Ⅲ-11〉 物價上昇率과 一般銀行 主要 貸出金利

(단위 : %)

年度	都賣物價上昇率	一般 資金	援助物資引受資金	商業 어음	實質金利
1954	28.1	18.25	13.9	17.5	-9.85
1955	81.1	〃	〃	〃	-62.85
1956	31.6	〃	〃	〃	-13.35

자료 : 洪性囿, 「韓國經濟의 資本蓄積 過程과 財政金融政策」(「經濟論集」 서울대, 1964), 113면

공업부문에 대출된 금액을 보면 産業銀行의 경우 1954~63년 사이 總貸出金額 435억 중 제조업 대출은 190억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은행의 對製造業 貸出實績은 〈표 Ⅲ-12〉에서와 같이 대출총액에서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2〉 一般銀行 貸出實績

(단위 : 백만원, %)

年 度	貸出總額(A)	製造業貸出(B)	B/A
1957	11,367	6,992	61.5
1958	13,299	8,081	60.8
1959	13,447	7,526	56.0
1960	15,181	7,109	46.2

자료 : 한국은행, 『經濟統計年報』, 1961년

이러한 貸出集中과 優待는 당시 격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마이너스 利子率 적용과 資金不足 상황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금융지원이 곧 利潤으로 연결되었으므로 政治的으로 또는 情實的으로 그 대상이 선정되어 물의를 빚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 예가 58년 5·2선거 직전 東立産業, 金星紡織, 中央産業, 大韓重工業 등 12개 기업체에 15억환 가량의 정치자금을 받고 39억환이 융자되었다가 국회에서 특별조사가 실시되었던 連鎖資金放出 事件이다.[15] 당시 財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李承晩 대통령의 〈可晩〉이라는 싸인만 받으면[16] 은행대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었다.

이러한 金利의 二重構造에서 나오는 기업의 利得概算額은 非農業部門企業 總所得에서 1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17]

---

15) 이병도 외, 「解放30年史」, 共同文化社, 1975, 962~965면.

16) 泰昌紡織의 550만 달러 特惠的 外貨貸出은 〈可晩〉의 메모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國會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朴喜淵, 「韓國의 企業」(財界社, 1965, 196면).

17) 李昌烈씨는 總國國債 이자율에서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뺀 金利隔差에다가 은행

2) 換 率

50년대의 한국의 환율은 公定換率, 대충자금 환율과 같이 韓美間의 합의에 의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환율이 있었으며, 이외에 政府保有債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복잡한 환율제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援助收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달러에 대한 원公定換率을 과대평가하므로써 〈표 Ⅲ-13〉와 같이 協定換率과 實勢換率이 크게 괴리를 나타내는 二重價格構造를 갖고 있었다.

〈표 Ⅲ-13〉 1950年代 換率 市場構造

(단위 : 달러당원, 경상가격)

年 度	公定換率(A)	프레미움(B)	關稅 및 租稅(C)	需要價格 (D=A+B+C)	歪曲率 (E=D/A)
1955	31.3	48.1	5.9	85.3	2.7
1956	50.0	52.9	7.0	109.9	2.2
1957	50.0	58.9	9.4	118.3	2.4
1958	50.0	64.0	20.3	134.3	2.7
1959	50.0	84.7	47.8	182.5	3.7
1960	63.8	83.9	52.0	199.7	3.1

자료 : 可至 重 : Jones, L. P.,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韓國開發研究院, 1981, 120면.

協定換率이 實勢換率을 크게 밑도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달러 配定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었으며, 항상 원貨價値가 高平價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이하의 가격에서 달러를 배정받아 수입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은 배가 되는 막대한 것이었다. 換率의 二重構造에서 오는 이득이 非農業部門 總企業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에서 9.7%에 이를 정도

대출잔액을 곱하여 總利得額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非農業部門의 企業所得으로 나누어 총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李昌烈, 위의 책, 86면).

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8]

3) 相對價格

상대가격변동, 즉 기업측에서 볼 때 投入價格과 產出價格의 차가 클수록 기업소득 분배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기업의 이윤은 커지며 자본축적은 가능하게 된다. 이는 勞動生產性과 實質賃金, 그리고 農產物價格과 工產品價格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勞動生產性과 實質賃金의 관계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名目賃金의 경우 1957~62년 사이 36.9%, 물가상승을 고려한 實質賃金은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59년 이후는 실질임금이 4.0%포인트 감소하였다(〈표 Ⅳ-3〉 참조). 1960~67년 사이 노동생산성이 56%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도 적어도 실질임금 성장율 이상으로 노동생산성이 성장했을 것은 분명하며, 그 차액만큼 기업이윤에 반영되고 이 企業利潤은 기업저축을 통해 자본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過剩人口下에서의 질좋은 勞動力으로 생산성은 비교적 높지만 임금은 낮은 高生產 低賃金에 속하며, 따라서 이러한 要素價格의 변동에 의한 자본축적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農產物價格과 工產物價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Ⅲ-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년대 전반기의 농산물 都賣物價指數는 전년의 秋穀凶作이 있었던 1952년, 53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총지수를 밑돌고 있으며, 직물, 건축자재, 연료 등의 공산품에 비해서는 해가 갈수록 크게 낮아져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후반기 들어서도 비슷하다.

이와같은 工產品價格의 폭등은 소비자에게 間接稅를 부과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가 없으며, 따라서 農·工產品間의 이러한 鋏狀價格差는 농민,

---

18) 李昌烈씨는 換率의 二重構造에서 오는 利得額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는데, 산출방법은 금리의 이중구조에 의한 利得 概算額 산정 경우와 비슷하다. 즉 實勢換率에서 公定換率을 뺀 換差에다 民間購買援助額을 곱하여 총이득을 구하고 이를 非農業部門 企業所得으로 나누어 비중을 구하였다(李昌烈, 위의 책, 86면).

〈표 Ⅲ－14〉 50年代 前半期 農·工產物 卸賣價格指數

(1950. 6.=100.0)

年 度	總指數	穀物	副食料	纖物原料	纖物	建築資材	肥料	燃料	雜品
1950. 12.	239	188	304	162	271	327	100	543	280
1951. 6.	480	352	778	496	655	617	460	479	633
12.	747	643	1,166	517	819	1,030	827	1,061	759
1952. 6.	1,476	2,110	1,568	699	814	1,054	827	1,053	807
12.	1,511	1,793	1,500	946	1,034	1,527	929	1,548	1,390
1953. 6.	1,766	2,127	2,311	976	1,074	2,165	929	1,880	1,373
12.	1,858	1,353	3,797	1,615	2,008	3,515	929	4,147	1,637
1954. 6.	1,934	1,394	4,088	1,767	2,162	3,408	929	3,904	1,709

자료 : 한국은행, 「經濟年鑑」, 1955, 185면.

〈표 Ⅲ－15〉 50年代 前半期 農·工產物 卸賣物價指數

年 度	總指數	穀 物	穀物 제외	化學肥料
1955	100.0	100.0	100.0	100.0
1956. 10～1957. 1 (4개월간 평균)	142.1	174.4	131.4	313.8
1957. 10～1958. 1 (4개월간 평균)	143.3	142.9	143.4	313.8
1958. 10～1959. 1 (4개월간 평균)	140.3	133.1	142.7	313.8
1959. 4～9	148.6	138.3	151.7	333.9
1959. 10～1960. 1 (4개월간 평균)	152.8	120.4	163.6	360.0
1960. 10～1961. 1 (4개월간 평균)	167.8	163.2	169.3	346.1

자료 : 한국은행, 조사월보(洪性圖, 앞의 책, 48면에서 재인용)

소비자에게는 消費抑制를, 기업에게는 企業收益의 증대효과를 가진다고 하겠다. 農·工產品間의 극심한 가격차를 유발한 중요한 요인은 미국 剩餘農產物 도입에 따른 공급과잉에 있지만, 이러한 협상가격차의 심화 확대는

농업소득의 쇠퇴와 함께 비싼 공산품 구입에 의한 農業剩餘 流出을 가져다 준 반면, 도시 공업부문에는 低賃金→高利潤의 축적기구를 통해 이들이 급속히 발전하게 함으로써 農·工間의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19]

4) 租 稅

조세는 政府所得效果, 所得再分配效果, 資源再配分效果를 가지고 있다. 세금을 거두는 경우 그 재원이 어디에 있든 政府는 그만한 소득을 얻게 되며, 누구에서 나와서 그것을 어느 쪽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고, 어떤 특정부문에 대한 優待措置나 重課로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는 국내 자본동원을 통한 자본형성에 중요한 政策變數로 사용되어져 왔다.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開發途上國家에서는 저축 및 투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優待措置(減免稅 措置)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널리 애용되고 있다. ① 主要產業에 대한 일정기간의 減免稅 制度, ② 貯蓄에 대한 감면세 제도, ③ 貯蓄收益에 대한 감면세 제도, ④ 讓渡所得稅의 감면세 제도, ⑤ 留保利潤에 대한 法人稅 輕減措置, ⑥ 減價償却에 대한 優待措置, ⑦ 신규투자 과세 控除制度, ⑧ 輸出所得 控除制度 등이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도 工業部門의 자본형성을 위한 여러가지 조세 측면의 특혜가 있어 왔다.

여기서는 租稅構造 推移를 살펴보면서 그 내부에 있어온 우대조치를 분석키로한다.

50년대의 直接稅, 間接稅의 구성을 보면 50년대 전반기 34.5 : 65.0에서 30.6 : 68.8로 간접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Ⅲ-16〉에 따라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所得稅는 이 기간동안 그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 구성비는 매우 낮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나타난 對企業側 우대를 위한 配當·利子

19) 洪性圖, 앞의 책, 50면.

〈표 Ⅲ－16〉 課稅構造의 推移

(단위 : %)

區 分	1949~1953 평균	1954~1960 평균
直 接 稅	34.5	30.6
所 得 稅	10.8	11.2
法 人 稅	3.3	3.9
土地收得稅	20.3	11.7
기 타	0.1	3.8
間 接 稅	65.0	68.8
營 業 稅	11.3	6.0
酒 稅	7.3	6.0
物 品 稅	9.5	17.4
石 油 類 稅	—	—
關 稅	12.6	19.6
專 賣 益 金	18.7	11.2
기 타	5.6	8.6
기 타	0.5	0.6

등에 대한 特惠的 低率 分離課稅(10%), 거대한 地下經濟로 인한 資本所得의 脫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근로소득 綜合課稅率이 1954년 階級數 1, 최저·최고 단일 8%에서 1960년 계급수 9, 최저 3%, 최고 38%로 累進課稅率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그 납세자수도 다른 후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1959년 소득세 구성에서 勤勞所得稅가 48.5%, 事業所得 44.6%, 不動産所得 3.4%, 配當·利子所得 0.5%, 기타 1.0%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세는 일반국민에게는 매우 不公正하고 가혹한 大衆課稅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事業所得에 대한 비중이 근로소득세보다 낮고 그 비중이 63년 34.1%로 감소[20]하게 된 것은 당시 製造業의 고

20) 金命潤, 「韓國의 財政構造」,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67, 〈표 Ⅳ－16〉참조.

도성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현상이다. 고도성장 하에서는 資本利得(capital gain)이 所得利得(income gain)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實質賃金의 감소에서도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逆轉된 현상이 나타난 것은 事業者所得稅의 경우 여러가지 減免稅의 특혜를 받을 뿐 아니라 납세자 신고를 기초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지만 당시 過小申告·未申告가 일반화되어 脫稅가 성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21]

이와 더불어 당시 상당한 不動産投機, 配當·利子所得이 있었음에도 그 합계 비중이 4%에도 못 미치는 것은 당시의 소득세가 일반 대중에게는 가혹한 반면, 재조업체에게는 優待되는 不平等構造를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法人稅의 경우 〈표 Ⅲ-17〉에서와 같이 國稅總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대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個人企業은 소득세에 비하여 법인세가 稅制上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는 個人企業이면서도 法人組織으로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과 50년대에 많은 기업들이 족출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稅率의 우대조치에 있었다. 1956년말의 稅制改革에서 정부에서는 重要事業體에 대한 租稅輕減期間을 연장하여 6년 또는 4년의 減免期間이 만료한 것일지라도 계획중에 있던 정부의 經濟復興5個年計劃 보조에 맞추기 위해 1961년까지 5년간은 그 稅額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투자로 얻는 法人利益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소득에 대하여도 감면토록 하므로서 공업부문의 자본형성을 유도하였다.[22]

셋째, 間接稅의 비중은 간접세 중심의 稅制改編을 목적으로 한 1956년말의 세제개혁 이후 그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租稅收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적으로 소비되고 수요가 안정적인 大衆消費物品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간접세 중에서도 關稅를 제외하면 50년대 후반기에는 物品稅(17.4%), 담배 소비세인 專賣益

21) 金命潤, 위의 책, 206면.
22) 金命潤, 위의 책, 99면.

〈표 Ⅲ－17〉 , 法人稅 收入의 推移(決算額 基準)

(단위 : 백만원)

年 度	國稅總額(A)	法人稅額(B)	B/A(%)
1949	14.5	0.4	3.6
1952	977.8	34.4	3.6
1955	1,054.2	565.8	5.2
1958	14,659.4	514.0	3.6
1960	24,971.3	919.0	3.7
1961	23,206.8	1,707.2	7.4

자료 : 司稅局, 「稅務統計年報」, 1964.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1965.

金(11.2%), 酒稅, 營業稅가 각각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간접세는 소비자에게 그 租稅負擔을 轉嫁하는 것으로서 소득에 대해 逆進的이고 低所得일수록 그 부담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대중의 조세부담으로 정부재정이 운영되므로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關稅를 보면 50년대 후반 그 비중이 19.6%로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당시 후진국에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고 또 국내의 幼稚産業을 보호하고 財政收入을 올리기 위하여 高率의 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수입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製造業을 육성하기 위한 特惠政策, 즉 二重關稅制가 실시되었다. 1957년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인상하였으나 나머지는 50년 1월의 관세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競爭完製品 보다는 非競爭完製品이, 半製品보다는 原料가 더 낮았다.[23] 그리고

23) 1950년대의 각 품목에 적용된 關稅率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양곡과 산업, 교육, 문화, 위생시설에 필요한 非競爭(국내생산불능)設備와 원료수입은 無關稅, ②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해 적은 필수품과 국내생산이 안되는 非完製品에 대해서는 10%관세, ③ 국내에서 생산되는 非完製品에 대해서는 20%관세, ④ 국

1959년 10월에는 지금까지의 特定重要產業用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이외에 輸出用 原資材 수입에 대한 關稅減免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原棉 등은 이제 관세없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差別關稅制度는 국내에서의 輸入代替 생산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제조업에 유리한 여러가지 稅金優待措置가 工業資本形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서민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었다.

Ⅳ. 1950年代 工業化의 經濟的 歸結

1950년대 한국공업화의 과정은 60년대 공업화의 기초를 제공해 준 先行條件의 충족이라는 經濟發展의 연결성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대외적으로는 對外依存性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階層間·產業間 不平等의 확대, 유통에 기반을 둔 상업자본적 자본형성, 비합리적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라는 좋지 못한 면을 결과하였다.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단면은 심화·확대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공업화가 추진되는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었다.

1. 先行條件의 充足

1950년대 工業化는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先行條件(preconditions)의 충족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國民貯蓄, 援助 그리고 價格機構에 의한 공업자본 형성으로 50년대 공업은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이후 跳躍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成長潛在力을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顯在化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30%관세, ⑤ 국내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40%관세, ⑥ 準奢侈品目에 대해서는 50~90%관세, ⑦ 사치품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였다(金光鎬, L. E. Westphal,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硏究院, 1976, 45~46면).

시키고 에너지를 組織化한 결과, 1961년 이후 연평균 實質經濟成長率이 10% 이상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1950년대 공업화 결과 50년대 말경부터 국내시장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한 消費財 輸入代替産業 가운데서 일부 기업들은 이들 제품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소비재 수입대체 생산에서 消費財 輸出生産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확장일로를 거듭하던 소비재공업은 58년에 이르러서 過剩投資, 過剩競爭에 직면하여 생산이 停滯되기도 하였으며,[24] 이중에서 綿紡織工業을 효시로 麥酒(1958), 合板(1959) 등은 輸入代替를 완수하고 輸出産業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25] 이러한 소비재산업 편중의 생산설비구조는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의 투자가 1960년대 공업화과정에서 "相對的으로 적은 投資로 많은 成果를 올리게 된"[26]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人的資本蓄積 측면에서 볼 때 비록 50년대 공업화가 국내시장지향적 측면이 강하고, 이 기간의 경제활동이 성장과 고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때 행해진 物的基盤과 함께 공업화 과정에서 많은 企業家의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工業勞動者群을 육성하였다.

〈표 Ⅳ-1〉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업체가 5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3~60 사이 大企業은 3.76배 증가하나, 中小企業은 2,368개 업체에서 15,204업체로 6.4배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당시 官僚·對外依存的으로 買辦的 性格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은 본질적으로 民族資本的 성격을 띠며 自手成家型 기업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의 성장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24) 한국산업은행, 『韓國의 産業』, 1966(上), 133면

25) 林鍾哲, 「解放後 韓國工業의 發展」, 12면.

26) 평가교수단, 『評價敎授報告書』, 1967.

〈표 Ⅳ－1〉 製造業 規模別 事業體數 推移

(단위 : 個社)

年 度	中小企業		大企業		
	5~50名	51~100名	101~150名	151~200名	201名 以上
1953	2,155	117	39	21	36
1955	7,934	450	173		64
1958	12,646		325		
1959	7,019	5,627	325		
1960	13,520	1,323	224		137

자료 : 한국은행, 『經濟統計年鑑』, 1955, 56, 60 및 경제기획원, 『韓國統計年鑑』, 1962(高岡倍雄 外, 앞의 책, 127면에서 재인용).

광복 당시 우리나라의 기업가 수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으나[27]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60년 이미 상당한 정도의 力量을 가진 기업가가 常存하였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對外依存性 深化

50년대 한국공업화의 과정은 다른 일면에서는 사회경제적 不平等 深化過程이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依存經濟體制, 대내적으로는 階層間·産業間 격차확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먼저 대외 의존성을 보면 광복을 계기로 自主的 發展의 길이 열렸으나 한국동란과 경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미국에 새로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資本·原料·貿易 側面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자본의 경우 앞장에서 투자의 구성, 자금원조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原料側面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0년대 공업화는 미국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工業化와 國內市場圈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紡績, 製糖, 製粉 등 先導産業인 三白産業이 국

27) 참고로 1941년 조선인 기업인수는 전체 기업 1,964개 업체의 41%, 814개사에 불과하였다(조선은행, 『朝鮮經濟年報』, 1948, Ⅰ~318면)

내원료 농업과 일정한 分業體系를 이루지 못하고 그 원료는 전적으로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제분공업의 소맥, 고무공업의 생고무, 모방직의 원모, 제지의 펄프, 제당의 원당, 합성수지, 牛脂 및 가성 소다 등은 100%, 면방직의 원면은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다.[28] 참고로 1962년 공업업종별 원료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표 Ⅳ-2〉와 같다.

〈표 Ⅳ-2〉 工業의 業種別 原料輸入 依存

業種	國內依存度	輸入依存度
식료품공업	63.6	36.4
제재업	92.4	7.6
제지공업	48.2	51.8
방직공업	56.3	43.7
화학공업	74.5	25.5
요 업	84.9	15.1
기계공업	93.5	6.5
전기기기공업	72.6	27.4
금속공업	73.9	26.1
운반용 기기공업	54.8	45.2
잡제품	74.2	25.8
평 균	71.4	28.6

자료 : 경제기획원, 『經濟白書』, 1963년

原棉의 경우 광복 이전에는 自給自足이 가능할 정도였으나 미국 잉여농산물의 導入으로 국내 생산기반은 파괴되고, 마침내 50년대 후반에는 國產棉을 축출하기에 이르게 된다. 1946년 8,162톤이 소비되던 國產棉은 1961년 249톤에 그치고, 대신으로 도입 外棉 82,036톤으로 대체될 정도로 국산면의 생산기반은 거의 파괴되기에 이르렀다.[29]

28) 金成斗, 『財閥과 貧困－韓國 資本主義 메카니즘과 그 展開』, 白耕文化社, 1965, 52면.

29) 金大煥, 앞의 논문, 277면.

결국 50년대 공업화는 원료측면에서는 미국의 過年의 剩餘農産物 처리 논리[30]에 따른 대외의존의 심화과정으로, 그 이면에는 원면과 같이 韓國農業犧牲, 停滯를 수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對內的 不平等의 擴大

대내적 불평등은 주로 계층간, 산업간의 矛盾關係에 의해 표출되는 것으로 공업화 정책에 의거, 階層的으로는 勞動者들이, 産業的으로는 農業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정체될 수 밖에 없었다.

〈표 Ⅳ-3〉에서 보면 제조업 종사원의 實質賃金이 年次的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名目賃金은 상승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60년대 초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3〉 製造業從事員의 相對的 地位

年度	名目賃金(원)	指數	物價指數	實質賃金(원)	指數	增加率(%)
1957	2,030	100.0	100.0	2,030	100.0	
1958	2,170	106.8	93.8	2,313	113.9	13.9
1959	2,350	115.7	96.4	2,437	120.0	5.3
1960	2,330	114.7	106.3	2,191	107.9	−10.1
1961	2,610	128.5	120.4	2,167	106.7	−1.1
1962	2,780	136.9	131.7	2,110	103.9	−2.7

자료 : 한국은행, 『經濟統計年報』, 각 년도

한편 50년대 공업화는 산업간에 있어서는 農業의 정체를 중요한 요인으로하여 이루어졌다. 한국 농업의 정체의 1차적 요인은 미국 剩餘農産物 도입과 低穀價政策이었다. PL480호에 의한 잉여 농산물 도입은 〈표 Ⅳ-4〉와 같이 주로 원면, 소맥, 대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입되어 국내에 판매된 농산물 대금은 미국측과 공동으로 사용

30) "매 동구리 마다 생산년표를 표시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거의가 1935~36년산 솜들이었다(京城紡織株式會社, 『京城紡織50年史』, 1969, 233면 참조).

〈표 Ⅳ-4〉 PL 480호 剩餘 農産物 導入實績

區 分	合 計	밀	보리	수수	옥수수	쌀	原棉
1956	32,955	7,504	12,419	—	—	—	8,184
1957	45,522	1,520	4,608	—	—	25,840	1,807
1958	47,896	29,941	14,104	2,226	672	—	448
1959	11,436	3,623	140	6	575	—	6,986
1960	19,913	18,576	—	—	574	—	763
1961	44,926	20,162	2,161	90	247	—	21,492
1962	67,308	26,167	6,071	470	1,702	—	31,291
1963	96,787	55,670	5,170	538	1,193	—	31,766
1964	60,985	24,726	3,266	1	1	—	30,541
1965	59,537	28,394	1,293	—	—	—	29,717
1966	37,951	11,202	—	—	—	—	26,749
1967	44,293	7,871	—	—	—	—	33,999
合計 比率	569,509 (100.0)	235,356 (41.3)	49,212 (8.6)	3,331 (0.6)	4,964 (0.9)	26,840 (4.7)	223,734 (39.4)

자료 : 한국은행, 『經濟統計 年報』, 1968
주 : 우지 및 기타의 농산물은 표에 나타나지 않으나 합계에는 포함됨.

되는 것으로 미국측 사용비율은 50년 후반 판매대금의 15% 정도였으며, 나머지 85% 가량은 한국측이 사용한 것으로 모두 國防費에 전입되었다.[31]

이러한 잉여 농산물 도입과 함께 低賃金을 지탱하기 위한 低穀價의 강요, 그리고 경제안정과 조세수입을 위한 臨時土地收得稅에 의한 現物稅도입[32] 등도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으며, 農業停滯를 가져오는 큰 요

31) 洪性圖, 앞의 책, 317면, 표(23) 참조.

32) 臨時土地收得稅는 한국전쟁 이후 누적되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복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51년부터 金納稅를 폐지하고 호별세, 교육세 등 타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한 現物稅이다. 그 세율은 수확량 10석 미만은 15%에서 50석 초과시 28%에 이르는 누진세를 적용하였으나 이의 收買價格이 당시 市場價格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서 실제로는 큰 부담이었다(拙稿, 「1950년대 韓國資本蓄積過程에서의 農業의 役割」『嶺南經商論叢 14』, 20면이하 참조).

인이 되었다.

그리고 農·工業 生産物間의 가격차 역시 대내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剩餘農産物의 大量導入→低穀價→低賃金→物價安定으로 도시인의 소비생활과 공업이윤 축적에는 크게 유리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60% 정도에 이르는 농민, 농촌의 궁핍화를 그 祭物로 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遺産的 企業家像 構築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인 능력은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요소를 획득, 이용할 수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인은 그러한 갭을 스스로 보충(gap-filling)할 수 있어야 하며, 각종 투입물의 최소 소요량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전부 조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33] 마찬가지로 외국원조물자를 도입 배분하는 우리나라의 50년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 등 經濟資源의 割當配給(rationing)이 있게 되며, 또 이는 정치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市場外的인 交涉力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업인 능력이 기업, 경제발전에 중요하다고 해도 그 시장외적인 능력 발휘가 사회적 도덕성과 너무 차가 날 때는 문제가 된다 하겠다.

50년대 공업화의 근간을 이루는 大企業은 中小企業과는 달리 외국원조, 歸屬財産의 처분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특혜를 배정받고 그 비호를 받음으로써 독점적인 재벌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原資材 配定에서 協會나 組合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하여 강력한 原料카르텔[34]을 구축하였다.

---

33) 李奎億, 「經濟力集中」,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대출판부, 1987, 65면).

34) 援助物資의 特惠的 配定을 둘러싸고 三白農業에서는 기존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大韓紡織協會, 大韓製糖協會, 韓國製粉工業協會를 1947, 1955년에 각각 정책적으로 설립하였다.

이들은 公定換率로써 원재료를 독점 배정받아 시장환율과의 차익을 누렸으며, 三白의 소비재 공업구조를 구축하였던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합리성에 기초한 기업운영 보다는 政商型的인 기업가가 많이 배출되었던 그러한 분위기가 중소제조업체의 족출과 함께 확산되었다.

이들은 경영적 노력보다도 政治權力에의 접근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경영능력이나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官權과의 친밀도 등 經濟外的 요인에 의해 기업활동의 성패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당시의 경제상황에 편승, 원조물자와 저임금을 기초로 정치권력과 유착된 상태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업과 무역에 종사함으로써 관권·해외의존적·상업자본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특혜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공업화의 방향을 왜곡하고 대외의존적 성격과 불평등구조를 고착시켰다고 하겠다. 이러한 退嬰的 企業家들은 그 후 큰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4·19혁명 이후 不正蓄財者에 대한 국민의 처벌요구로 24명의 재벌 및 기업가, 그리고 46개의 기업체에 대하여 19.6억원에 달하는 벌과금과 추징금이 통고되었고, 5·16 군사정부에서는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 30명에게 84억원의 벌과금을 통고하였다[35]는 사실에서 우리는 당시의 퇴영적 기업가에 의한 공업화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V. 結　　語

50년대 공업화 과정은 소비재를 수입대체하는 생산활동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의 경제 최우선 과제가 파괴된 생산시설을 戰前水準으로 복구하고 경제부흥을 이룩하는 것이었으므로 정부에서는 民間企業에 투자의욕을 자극하여 공업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산업보호적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Ⅳ장에 논의된 바와 같은 質的·量的 統制手段과 價格的·非價格的 정책이 모두 동원되었

35) 金大煥, 앞의 논문, 251~253면.

다. 差別關稅制度, 複數換率制度, 低金利政策, 低穀價政策 등 가격기구를 이용하거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政府査定價 절반 수준의 귀속재산 불하, 외환통제, 원조물자의 배분 등을 통한 각종 특혜로 투자의욕을 자극하였다. 이들 조치는 수입대체 상품의 국내화폐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었다. 이와같은 조치들의 강력한 投資誘引에 의해 생성된 대표적 산업이 三白産業이었고, 50년대 후반기에는 資本財工業에로 확산되어 갔다.

한편, 50년대의 공업화는 物的 土臺의 구축, 成長潛在力의 축적이라는 국민경제적 기여와는 달리 다른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때의 공업생산은 國內市場指向的이었으며, 해외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정도여서 우회생산도가 낮다는 점, 輸入誘發的·輸入依存的 생산구조를 가졌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당시의 공업화가 각 산업부문별로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동시 竝行的으로 전개되지 않는 일방적 성장이었다. 공업화의 진전과는 달리 농업은 정체 내지 침체 일로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본축적 패턴도 자율성이 없는 외국원조를 조건으로 해서만 가능한 종속적, 대외의존적 구조를 띨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재벌에 국한해서 볼 때 이러한 跛行性, 從屬性 그리고 이에 기식한 자본의 성격으로 해서 50년대의 공업자본형성이 平價切下되는 한계는 있으나, 60년대의 발전의 물적토대를 구축하고 많은 중소기업자를 배출하였으며, 노동자군의 형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축적해 왔다는 점은 再評價되어야 할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잠재력과 물적기반은 60년대 이후 군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으로 생산부문으로 유도되어 높은 성장을로 顯在化되게 된 것이다.

資本國際化와 韓國經濟

李 甲 泳*

目 次

Ⅰ. 머리말
Ⅱ. 정지된 호황
1. 이윤율의 저하
2. 미국헤게모니의 쇠퇴
Ⅲ. 자본축적구조의 재편
1. 극소전자혁명의 확산
2. 자본국제화의 전면화
Ⅳ. 한국경제의 지평
1. 재생산구조의 특징
2.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Ⅴ. 맺음말

Ⅰ. 머리말

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자본주의 유일구조가 창출되면서 개별국가의 통합화·긴밀화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반면에 전후 장기번영을 지지했던 미국헤게모니가 잠식되면서 자본의 각축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현실이다. 자본의 가치증식 공간이 초국적 범주로 확장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핵심적 동력은 무엇인가? 국경선은 철거될 것인가? 나아가서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종속약화인가 종속불변인가? 이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즉 사회과학일반에 새로운 논쟁지반을 제공하는 현실경제의 변화에 대한 해석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자본주의의 해외진출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이라는 현상을 자본이 스스로의 가치증식을 위한 자본축적구조의 불안정성에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즉 기존의 축적구조가 변동하면서 새로운 축적방식을 모색하는 자본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후 장기번영에 따른 과잉축적으로 이윤율이 저하하면서 맞이한 74~75년, 81~92년의 순화적 공황과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축적구조의 불안정에서 그리고 한국자본은 자본에 대한 노동대중의 저항과 선진자본주의의 압박에 따른 축적구조의 불안정에서 자본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의 동력이 마련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의 대외 의존적인 재생산 구조를 고려할 때 축적구조 재편의 계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윤율저하 그리고 미국헤게모니의 쇠퇴로 압축되는 전후 장기호황의 '정지'에서 출발한다.

Ⅱ. 정지된 호황

1. 이윤률의 저하

최악의 대불황이 제2차 세계대전의 수행으로 극복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50~60년대에 장기번영을 누렸다. 자본의 가치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케인즈적인 국가와 함께 복지모델의 등장, 계급타협적인 노자관계의 제도화, 기술혁신과 중화학공업의 발달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확립 그리고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세계경제 조직화에서 마련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호황의 열풍은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의 질적 전환으로 인식되었고 계급적대나 불황은 지나간 시대의 산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연속적인 불균형의 과정'(MEW Bd. 25, 267쪽)이며 공황이라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 공황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내적모순에 의해 폭발하는데 지속되던 호황의 정점에서 급작스레 모든 재생산 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가리킨다. 영원할 것으

로 믿었던 세계경제의 장기호황 역시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에 따른 대가를 요구받는다. 74~75년과 81~82년의 공황 폭발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순환적인 경기과열과 경기침체는 케인즈적인 국가가 개입해도 관리·회피될 수 없음이 반증된 것이다.

그러면 두 차례의 세계공황은 석유위기에서 야기되었나? 'OPEC책임론'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석유위기가 공황의 형태와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자본주의에서는 이미 〈표 1〉과 같이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Marglin, 18~20쪽). 일반적으로 공황은 투자

〈표 1〉 이윤율 추이(1960~87)

(단위 : %)

구 분	선진국[1]	미 국	유 럽	일 본
산업전체				
정점[2]	19.5(1966)	19.9(1965)	20.5(1960)	34.8(1970)
1973	15.4	13.2	16.0	21.6
1975	11.7	11.0	11.4	14.5
1982	10.6	7.9	11.7	15.9
1987	13.6	11.2	16.3	15.7
1975/정점	0.60	0.55	0.56	0.42
1982/정점	0.54	0.40	0.57	0.46
1987/정점	0.70	0.60	0.80	0.46
제조업				
정점[2]	29.1(1965)	36.4(1965)	21.5(1960)	53.6(1969)
1973	21.9	22.0	15.4	38.8
1975	13.1	16.2	8.8	15.2
1982	10.2	8.5	10.5	13.9
1987	15.9	15.4	17.7	14.6
1975/정점	0.45	0.45	0.41	.028
1982/정점	0.35	0.23	0.49	0.26
1987/정점	0.55	0.42	0.82	0.27

주 : 1) 선진국이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을 의미함.
2) 정점(peak)이란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이전의 연도로 정의됨.
자료 : Armstrong, 부록에서 작성.

감소에서 시작된다. 즉 자본은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율은 당연히 장래의 기대수익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윤율이 저하한다면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의미하며 가까운 장래에 호황의 종말과 함께 불황의 도래를 예상하게 해준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첫째, 산업일반이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의 부진에 따라 산업설비 유휴화, 노동생산성의 정체, 후진국으로부터의 경쟁격화 그리고 수요감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둘째, 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이 격화되면서 사회적 긴장의 고조, 임금상승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자본의 이윤이 압박되고 셋째, 미국의 과도한 대외팽창정책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유동성의 과잉과 달러 信認度가 하락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국제금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안정성과 투기성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스스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윤율을 조달하지 못하고 공황이라는 비정상 상태로 가속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동시폭발을 통해 1930년대 이후 최대의 불황을 맞는 현실이다.

〈표 1〉을 보면 선진국 일반이 겪은 이윤율의 저하는 축적률의 절정 수준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가속화된 축적이 이윤 압박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즉 산업전체는 66년 19.5%의 이윤율로 최고수준에 도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82년에는 최고수준의 54%에 불과한 10.6%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역시 65년 29.1%에서 82년에는 최고수준의 35%인 10.2%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87년 현재 이윤율은 두 차례의 공황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산업일반과 제조업이 각각 13.6%, 15.9%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황의 깊이와 심각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장기번영이 정지한 74년 이후 생산성 정체의 일반화, 점증하는 실업 그리고 탈공업화 화면을 비추면서 대불황기를 지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 일반은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미국헤게모니를 급속하게 잠식하게 된 것이다.

2. 미국헤게모니의 쇠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후 장기번영은 미국헤게모니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브레튼 우즈 체제로 상징된다. 자본의 역사에서 최대의 재난으로 기록되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경제적 민족주의의 폭발에 대한 예방적 모색이 미국을 중심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창출했다. 즉 새로운 질서는 국내적 자율성과 국제적 규범의 갈등에 대한 타협으로 등장하여 국가정책의 자율성, 고정환율, 통화의 태환성을 기본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무역이 유례없이 성장하고 세계적 범주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가속되었다.

그런데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헤게모니가 지배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전면화하고 있다. 즉 미국경제가 성장할 때 세계경제도 성장했으며 동시에 전자가 침체할 때 후자도 같은 경로를 밟게 된다. 이러한 미국헤게모니의 토대는 당연히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의 유일적 지위와 핵무장의 견고함으로 압축되는데 헤게모니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활용되었으며 막대한 경제력이 뒷받침한 것이다.

전후 세계경제의 장기번영 단계에서 미국경제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즉 미국경제는 52년 선진자본주의에서 총생산의 58%, 총자본스톡의 60%를 차지하고, 제조업 생산액 및 생산성 역시 압도적인 편차를 보이면서 세계공산품 수출의 33%를 점유했으며, 57년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43개가 미국기업인 것이다(Armstrong, 231쪽).

그러면 미국경제를 후퇴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앞에서 분석했듯이 과잉축적과 함께 낮은 노동비용, 높은 생산성으로 무장한 유럽과 일본의 맹렬한 추격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불균등 발전이다. 첫째, 유럽과 일본의 자본축적은 급속히 진전했으며 특히 낮은 노동비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60년 미국제조업의 시간당 노동비용을 기준할 때 독일 32%, 영국 32%, 일본 10%이며 70년에는 화폐임금이 급속히 상승했음에도 각각 56%, 36%, 24%를 기록하여 유럽과 일본은 노동비용에서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미국경제는 산업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60~73년 기간동안 산업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선진국 전체가 4.2%였으나 미국은 2.5%를 기록했을 뿐이며 73~79년의 동지표는 각각 2.2%, 0.4%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역시 유사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69~73년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선진국 전체가 3.5%, 미국은 1.2%로서 미국의 증가율은 선진국 전체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경제의 산업구조는 유럽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거대기업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에 경쟁압력의 수위가 낮았다. 즉 과점적 구조의 상대적 안정성은 자기 만족적인 분위기를 배양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보하지 못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이 대량생산체제의 확립, 생산성의 향상, 국가경쟁력의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미국경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적 세계체제'의 역학관계는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세계통화인 달러를 약화시켰다. 달러가 세계통화의 지위를 점유했던 것이 미국경제의 지배력을 상징했다면 달러의 약화는 지배력의 잠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브레튼 우즈 체제의 동요로 귀결되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60년대가 진행되면서 달러의 모순적 역할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약점을 폭로하여 국제유동성의 창출과 국제적 신용 사이의 모순인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현상이 가속된 것이다. 즉 국제유동성을 증가시키려면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의 信認度가 저하되며, 반대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지속되면 달러의 信認度는 높아지나 국제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딜레마를 IMF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6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불균등발전과 세계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거대규모의 달러를 해외에 유출시킴으로서 국제

유동성의 파잉과 달러 信認度의 하락을 야기했다. 〈표 2〉에서 보면 미국은 50~74년 기간동안 925억 달러의 화폐를 해외에 유출하고 있다. 즉 달러가 세계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얻게 된 막대한 이익이다.

〈표 2〉를 분석하면 막대한 흑자를 지속했던 상품거래는 유럽과 일본의 도전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해외군사원조인 군사거래의 적자규모가 계속되는 것은 대외팽창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경상계정에서 주목되는 이자·배당수입의 막대한 규모는 미국 다국적 자본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의미하며 해외자산의 대규모 소유는 장기자본계정의 적자규모로 반중되고 있다. 〈표 2〉에서 경상계정과 장기자본계정을 합계하고 해외민간부문의 달러보유액 증가분을 포함하면 기간별로 각각 175억 달러, 154억 달러, 586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즉 안정적인 축적체

〈표 2〉 미국의 국제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구 분	기 간		
	1950~59	1960~67	1968~74
상품거래	293	396	− 93
서비스거래	− 53	− 85	−102
군사거래	−231	−205	−198
정부원조(군사원조제외)	−205	−148	−167
이자·배당수입	255	365	614
경상수지	60	323	54
직접투자	−172	−279	−422
주식·채권투자	− 37	− 64	108
정부대출	− 41	−106	−111
장기자본수지	−250	−449	−425
경상·장기자본수지	−190	−126	−371
해외민간달러보유액증가	15	28	−225
달러해외유출액	−175	−154	−596

자료 : US Government, Survey of Current Business, June 1982, June 1975, October 1972.

제와 세계통화신용체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의해 유지되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유럽과 일본의 경제력 · 정치력 때문에 낡은 시대의 산물이 되었으며 미국은 스스로 힘들게 창출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시켰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하여 달러보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의 정책은 그들의 요구에 호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축적구조의 불안정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미국헤게모니를 해체 · 분할하면서 새로운 축적방식으로 과학기술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본국제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Ⅲ. 자본축적구조의 재편

1. 극소전자혁명의 확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장기호황에 따른 과잉축적이 현재화되면서 겪은 순환적 공황 그리고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자본의 재생산구조가 동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축적전략으로 주목하는 극소전자혁명과 생산방식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조건의 위기에서 강제된 것이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변동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후 장기호황을 지탱한 축적체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것은 앞에서 분석한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국제금융체제의 붕괴가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석유위기'로 가속되었다. 특히 석유위기는 임계상황까지 누적된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과잉을 단숨에 폭발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상호결합되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위기의 복합 · 연대에 직면하면서 저성장이 필연화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위기가 심각하면 할수록 구조적일수록 국가와 자본은 위기극복과 축적구조의 재편을 위한 욕구가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축적구조의 재편은 자본에게도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초과

착취의 강화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욕구 역시 강화된다. 이러한 자본과 국가의 움직임이 과학기술개발과 생산의 유연성 확보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면 축적구조의 재편이 왜 극소전자혁명으로 전개되는가? 오늘의 불황은 기본적으로 과잉축적에서 유발되었기 때문에 과잉자본의 해소를 위해 자본의 가치파괴가 요구되지만 축적기반의 재구축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점진적인 자본의 가치파괴 의도에서 출발한다. 즉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면서 위축된 시장의 조직화를 위해 생산방식의 유연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적조건에 호응하려면 철과 석유 중심의 기술체계를 대체하는 자원절약형 · 에너지절약형 · 지식집약형 기술의 개발과 함께 유연한 생산 · 유통 체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패러다임이 불가피하여 극소전자(Microelectronics)혁명으로 전개된 것이다(박준식 · 이영희, 66쪽).

과거 미국의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한 것이 군사목적의 중화학공업이었음을 고려할 때 극소전자기술은 정보통신부문, 금융 · 보험 등 서비스부문을 성장시키면서 소재부문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극소전자기술은 70년대 중반 이후 생산영역에 광범하게 도입 · 응용되면서 첨단기술을 통합화 · 복합하는 핵심고리로 등장하는 한편 생산방식의 변화, 산업구조의 재편, 자본의 결합을 추동하여 새로운 축적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우선 극소전자기술은 컴퓨터의 소형화 · 고성능화를 통해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를 가속하여 컴퓨터통합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방식의 유연성을 급속히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생산방식(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은 다품종 생산을 목표하는 자동화생산방식으로 종래의 대량생산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급격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무기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극소전자기술은 산업의 새로운 결합과 분화를 통해 산업구조재편

의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복합적 성격에 의해 국내외 자본의 상호관계 역시 새롭게 구성한다. 즉 자본은 경쟁심화와 제휴확산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자본이 국제적 제휴·동맹은 80년대 초반 세계공황을 경험하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수·합병 및 사업분할(Meger, Acquisition & Divestiture)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자본축적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매수합병붐'을 통해 자본의 집중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혁명의 성과 즉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영역에서도 매수·합병은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 부문에서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자본분파의 헤게모니가 세계적 범주에서 급격히 강화되었다(전창환, 52쪽). 이렇게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자본축적구조 재편을 위한 극소전자기술을 혁신하는 한편 자본국제화를 가속하여 '저성장'의 탈피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자본국제화의 전면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국제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당연히 자본의 가치실현 욕구를 반영하면서 자본의 순환공간이 국가영역을 돌파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의 자본국제화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수준까지 도달하여 전면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선진자본주의에 국한될 수 있으나 '제3세계 다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변화 수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변화하는 모습은 전후자본주의의 한계에서 출발했으며 자본축적.구조의 재편의도를 담고 있다. 즉 전후자본주의는 장기번영을 거치면서 순환적공황에 직면하여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극소전자혁명과 함께 자본국제화를 가속시킨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국소전자혁명의 확산에 따른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해외직접투자를 비롯해 생산자본의 국제화를 급속하게 진

전시키고 매수·합병 등 자본의 제휴와 동맹을 통해 세계적 범주의 자본집적과 집중을 그리고 세계적 과점(World Oligopoly)을 형성하고 EC통합과 NAFTA의 창설로 압축되는 지역화의 심화, 국제적으로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포괄 개방을 강요하는 WTO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국제화의 현실은 어떠한가? 맑스가 제시한 자본순환도식으로 표현되는 실물적 순환은 크게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실물적 순환과 금융적 순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화의 형태는 유통(가치실현)의 국제화, 생산(가치창조)의 국제제화, 금융(화폐자본의 조달)의 국제화이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자본국제화를 가속한 것은 과거의 추세와 달리 유통의 국제화가 아니라 생산의 국제화, 금융의 국제화인 것이다(박복영, 70쪽). 따라서 자본국제화의 현실은 생산국제화와 금융국제화에 대한 관찰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먼저 생산의 국제화 현상을 분석한다.

생산의 국제화란 한 나라의 자본이 다른나라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자본과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상호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직접투자(FDI)라는 거시경제적 지표로 표현된다. 80년대 전반기까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해외 직접투자는 8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총생산, 국내총투자 그리고 유통국제화의 지표인 수출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표 3〉에서 보면 86~90년 기간동안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총생산, 국내총투자, 재화의 서비스 수출의 동지표는 각각 9%, 10%,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생산국제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OECD국가의 해외직접투자가 점점 OECD영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3극'(Triad)으로 불리는 미국, EC, 일본 상호간에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이다(김환석, 118쪽). 즉 UN 다국적기업센터(UNCTC)의 추계에 따르면 80~88년 기간 동안 3극 사이의 상호 직접투자스톡은 1,420억 달러에서 4,100억 달러로 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80년대를 휩쓸었던 매수·합병 활동과 함께 미국의 해

〈표 3〉 세계경제의 생산국제화 추이

(단위 : 십억달러, %)

구 분	금액(1991)	연평균 증가율	
		1981~85	1986~90
직접투자율	180	4	24
직접투자잔고	1,800	7	16
국내총생산	21,500	2	9
국내총투자	4,900	0.5	10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000	−0.2	12

자료 : UNCTC(1993), World Investment Report 1993.

게모니가 약화되면서 EC, 일본의 미국진출이 가세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생산국제화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활동이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반해 현단계는 일정수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독점자본 사이의 동맹관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생산의 국제화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자본축적에 필요한 화폐자본의 일부분을 다른 나라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조달하거나 다른 나라 국민에 의해 축적된 저축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과 함께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을 통한 국제적 간접금융 규모는 75~79년 기간 동안 연평균 470억 달러에서 80~84년 기간에는 연평균 1,060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금융국제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증권발행을 통한 국제금융방식 즉 채무의 증권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박복영, 75쪽). 80년대 전반에는 국제대부의 형태로, 80년대 후반에는 국제적 증권발행을 통해 진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OECD의 추계에 의하면 80~84년 연평균 국제자본조달 총액 1,774억 달러 가운데 40%가 국제채권발행, 60%가 국제대부를 통하여 조달되었으나 92년대는 국제자본 조달 총액 4,582억 달러의 73%가 국제채권 발행으로

조달되었다. 따라서 금융국제화가 증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형태로 진전되는 것이며 특히 유로채－외국에서 그 나라 이외에 통화로 표시되어 발행되는 채권－발행이 주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금융국제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개별국가의 금융규제 완화에 힘입고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긴밀화를 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독특한 자본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자본주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즉 자본국제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장기화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자본축적구조 재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의존적인 재생산구조는 새로운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

Ⅳ. 한국경제의 지평

1. 재생산구조의 특성

해방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상향적 발전과정은 국가의 주도적 개입에 의한 자본주의화 과정이며 수출지향적 공업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는 내외자 및 생산수단의 동원과 배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자본을 선별적으로 보호·육성하면서 수출을 통한 상품의 가치실현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일반의 저항을 억압함으로써 압축성장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적 축적방식과 자본순환구조의 대외의존성이라는 축적구조를 토대로 국제분업구조에 안정적으로 편입한 한국자본주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즉 한국자본주의는 60~85년 기간 동안 연평균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는 취약한 축적기반으로 독특한 자본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첫째, 대외의존적인 재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대자본 중심의 축적방식이며 셋째, 노동에 대한 억압체제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자본주의는 가치증식에 필요한 기본조건 가운데 광범한 임노동의 존재를 제외하면 화폐자본, 생산수단 그리고 가치실현은 해외영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번영기에는 일정수준의 성과가 확보되지만 공황 및 불황국면에서는 급속하게 수축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축적구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에 의해 재생산구조를 재편·정비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한국자본의 순환구조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자본재와 중간재 등의 노동수단은 주로 일본에, 소재나 원료 등의 노동대상은 일본과 미국에 그리고 생산된 상품의 가치실현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축적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구조가 위기에 직면하면 국가는 지배적인 자본분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화학공업화, 산업구조조정과 같이 자본을 재편하거나 이윤율의 제고를 위해 노동에 대한 통제·관리에 적극 개입한다. 즉 국가주도적 축적방식은 국내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선택적으로 일부의 대자본에게 배분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주체인 자본을 육성·성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는 한계에 직면한 수출산업을 위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분업연관을 재고함으로써 축적기반을 정비한 것이며, 80년대의 산업구조 조정 역시 국내적인 축적조건의 재편뿐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분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자본주의에서 관찰되는 고도축적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저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적 우위이다. 대외의존적인 재생산구조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실현을 위해 국가는 노동대중에 대한 억압적 장치를 활용한다. 즉 국가는 절대적 잉여가치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개입은 물론 '경제성장'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적 통합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제한, 노동일의 연장, 전통적인 농업해체를 통한 잉여노동력의 지속적 공급 그리고 자본의 이해조정, 재정금융지원, 세제혜택을 통한 자본축적지원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에 나타난 특성은 자본주의의 상향

적 발전과 함께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대외의존적 축적구조와 연관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변화이며 또한 국제분업구조에 한국자본주의를 편입시켰던 국내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변화이다. 특히 자본축적구조의 불안정성의 증대와 함께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동시적으로 전개된 사실은 주목된다.

2.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탈피하려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축적구조재편은 대외의존성이 특징인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광범한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역시 축적방식의 재편을 강제하는 질적 변화를 경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강용중, 117쪽). 즉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적 우위와 억압장치를 반전시키기 위한 저항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결집되면서 자본축적 방식의 불안성이 증대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가 특히 저임금에 토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표 4〉에서 관찰되는 단위노조와 조합원수의 급격한 증가, 파업강도의 증가, 노동시간의 감소, 그리고 높은 임금 상승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의존했던 축적기반 즉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자본주의는 노동투쟁의 강화에 따른 축적구조의 불안정성 증대로 자본국제화의 경로를 탐색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 현실은 어떠한가? 68년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에서 시작된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표 5〉에 나타나듯이 87년을 분기점으로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해서 총투자건수는 87년 92건에서 91년 453건, 92년 4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투자액 역시 87년 4억 1천만 달러에서 91년 11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추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동운동의 고양과 함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및 국내적 축적기반의 불안정성 증대이며 필연적으

〈표 4〉 노조관련지표 추이

구분	조합원수 (명)	단위 노조수	파업건수	건당평균 분류 지속일수	노동손실 일수	월별 평균노동 시간수	명목임금 인상률(%)
1986	1,035,890	2,658	276	—	—	237.7	9.21
1987	1,267,457	4,086	3,749	5.3	6,946,935 (100%)	234.6	11.62
1988	1,707,456	6,142	1,827	10.0	6,351,443 (91.4%)	228.6	19.58
1989	1,932,415	7,861	1,616	19.2	5,400,837 (77.7%)	220.0	25.08
1990	1,886,884	7,676	322	19.1	4,487,151 (64.5%)	216.0	20.16
1991	1,803,408	7,656	234	18.2	3,257,621 (46.8%)	214.0	16.85
1992	1,734,598	7,527	235	20.1	1,827,612 (21.9%)	211.0	15.68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2.
경단협, 노동동향, 1993, 5월호.

〈표 5〉 해외직접투자추이

(단위 : 천달러)

	총 투 자	투 자 잔 액
1985	115,562(39)	483,931(443)
1986	183,877(52)	645,115(476)
1987	410,508(92)	966,012(536)
1988	223,761(176)	1,130,108(680)
1989	569,590(269)	1,522,495(926)
1990	959,326(339)	2,335,680(1,243)
1991	1,125,364(453)	3,372,904(1,673)
1992	1,218,295(497)	4,421,895(2,10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3.

로 90년대에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초과한 것이다. 특히 한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는 〈표 3〉에서 분석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급속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시기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국내적 축적조건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화와도 연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에서 일차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북미에 편중되고 있는데 두 지역을 합한 건수와 금액이 92년 현재 7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92년 잔존투자기준으로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51.4%와 50.4%를 차지하는 현실은 종래와는 달리 생산자본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제조업의 해외투자를 선도하는 산업은 섬유, 의류, 전자, 전자 등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부문인데 이러한 산업은 수출지향적 발전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품이었음을 고려하면 저임금에 기초한 자본축적구조가 와해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급증하는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상품수출에 긴박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다국적화가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는 상품의 가치실현 뿐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도 불안정성이 증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에 대한 직접투자는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 뿐 아니라 임노동의 조직적 저항이 적다는 사실이 커다란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압축하면 기존의 축적구조 불안정에서 자본의 해외진출은 전개되고 있으며 상품의 가치실현(유통국제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의 국제화를 새로운 축적방식으로 주목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국제화 추세는 한국자본주의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함께 하는 것이며 출발선 역시 자본의 가치증식 운동이라는 동일선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대외 의존적인 재생산구조를 지닌 한국자본주의의 해외직접투자의 핵심동력을 자본축적구조의 위기에서 주목했다. 기존의 축적구조가 불안정해지면 초국적 자본이거나 한국자본이거나 자본일반은 새로운 축적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즉 스스로에게 적합한 축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흐름이 자본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장기화를 탈피하기 위해 과학기술혁명을 진전시켜 생산력 수준을 제고하고 유통국제화, 금융국제화 특히 생산국제화를 통해 가치증식 공간을 전지국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 역시 억압적 국가장치와 전후 세계경제의 장기호황에서 마련되었던 기존의 축적구조가 노동운동의 고양에 따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및 국내적 축적기반의 불안정성, 대외의존적인 재생산구조로 인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축적구조 재편을 반영하여 자본의 해외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한국자본주의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자본국제화의 진전은 새로운 축적방식의 모색이라는 동일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고려하면 자본국제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 변모는 유보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본을 위해 수행한 기능－숙련노동력의 공급과 일정수준의 국내시장보호, 자본사이의 상업관계에 대한 법적규제와 안정적 통합공급, 대규모 공급자와 수요자의 몰락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의 자본보호, 최종적으로 의지할 이익보호자로서의 군사력제공－은 여전히 개별자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Chris Harman, 75쪽).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자본이 스스로 담지하지 못하는 한 국경의 철거는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즉 자본국제화에 따라 자본은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존하면서 종래와는 달리 국가 밖으로 진출하여 다른 국가 또

는 다른 국가와 연결된 자본과 제휴 · 동맹하거나 경쟁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에 대한 종속성 문제는 자본수출을 자본주의의 특정한 발전단계와 결합시키기 보다는 자본일반의 보편적 속성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적 축적기반이 불안정해지면서 한국자본은 유통국제화와 함께 생산국제화를 급속히 진전시키는 현실이다. 자본은 스스로의 증식에만 복무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대근, 세계경제론 :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까치, 1993.
2. 박준식 · 이영희 편저, 기술혁명과 노동문제, 두리, 1991.
3. Chris Harman, 이원영 편역,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갈무리, 1994.
4. Wallerstein, Immauel, Unthinking Social Science :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 Polity press, 1991(성백용 옮김,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 비평사, 1994).
5. Callinicos, Alex, The End of Nation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Summer, 1991(배일룡 편역 "현대자본주의와 민족문제", 갈무리, 1994).
6. Marglin, Stephen A., "Lessons of the Golden Age : An Overview", in Stephen A. Marglin and Juliet B.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1990.
7. 김환석, 신기술경제 패러다임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경제와 사회 93년 겨울호, 한울, 1993.
8. 강용중, "한국자본의 해외진출" 국제화와 한국사회, 학술단체협의회, 나남, 1994.
9. 이용우, 개방화와 한국자본주의, 경제와 사회, 94년 여름호, 한울, 1994.

10. 전창환, "80년대 초국적 자본의 축적구조와 지배구조", 한국경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백산서당, 1991.
11. 박복영,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화와 국제적 경제조절", 국제화와 한국사회, 학술단체협의회, 나남, 1994.
12. 황현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초국적기업", 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한울, 1992.
13. Armstrong, P. et al.,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ackwell, 1991(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3).

經營史學會 任員名單

職 責	姓 名	所屬大學校 및 學科	職 場	自 宅
顧 問	김병하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053-580-5402	053-256-5781
	황명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02-709-2130	02-543-7561
會 長	김광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02-820-0275	02-599-8459
副 會 長	박재륙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0653-50-5217	0653-856-1188
	김성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3	02-568-0645
監 事	박광서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0418-549-1169	0343-45-6717
常任理事	고승희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02-709-2530	02-567-5986
	김도경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02-913-2001	02-446-5538
	안춘식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02-290-1046	02-452-8580
	이승욱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02-709-2515	02-542-9594
	최태호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02-910-4523	02-387-1833
	이한구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0331-31-8310	02-643-7007
	김신용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0431-51-8127	02-954-4073
理 事	강계삼	서원대학교 상업교육학과	0431-62-8813	042-482-3641
	김문관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064-54-2114	064-43-5474
	김준헌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053-810-2751	053-623-1020
	민경환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02-709-2170	02-448-8638
	서길수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02-919-0411	02-646-5413
	설봉식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02-236-0091	02-593-5093
	이정도	경북대하교 경영학과	053-950-5420	053-423-2527
	이해주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051-510-2542	051-56-2068
	권병탁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053-810-2714	053-624-4561
	황남길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02-709-2516	02-593-9639
	배주한	관동대학교 경제학과	0391-49-7346	02-821-6849
	양재선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0661-50-3496	0661-745-2506
	이건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02-360-2779	02-568-2842
	이상옥	대신대학교 경영학과	0343-49-5271	0343-41-5827
	김 신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741-5701교2321	02-443-0390
	유병주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042-821-5539	042-482-2655
	이성해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042-220-6247	042-226-1659
	천명섭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032-860-7734	02-543-5894
	이진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02-920-1176	02-514-6400

職 責	姓 名	所屬大學校 및 學科	職 場	自 宅
理 事	김성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0431-61-2218	0331-291-8087
	민완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042-629-7606	042-623-1853
	조병찬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02-260-3326	02-902-6918
	이훈섭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0331-40-7412	02-802-1231
	김광철	동아대학교 사학과	051-200-7070	0551-84-9757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0331-281-5500	0331-283-9995
	조영건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0551-49-2409	0551-82-4536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0591-751-5749	0591-43-8037
	홍성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02-361-2487	02-338-4689
	김정식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062-230-6825	062-671-1302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02-233-4251～7	0342-701-0245
	서정익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0418-40-5232	02-831-3388
	이원우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02-820-0563	02-552-4546
總務幹事	황준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02-820-0558	032-671-0654

經營史學會 會員名單

姓　名	所　屬	電　話
강경훈(姜環薰)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450－2622
강민주(姜玟株)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13－8069
강병창(康秉昌)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강원대학교도서관	강원대학교	53－9000
강용수(姜龍洙)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83－2151
강인호(姜仁鎬)	경북실업전문대학 관광학과	82－7001
강주훈(姜周薰)	관동대학교 경제학과	49－7349
강태경(姜泰景)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580－5403
고승희(高承禧)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709－2530
고시천(高時天)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450－3635
고재경(高在經)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580－5378
공병호(孔柄昊)	한국경제연구원	786－4928
공신영(孔信永)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83－2151
곽동성(郭東星)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14－1731
구정모(具正謨)	경남대학교 박사과정 경영학과	423－1234
권병탁(權丙卓)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권상장(權相璋)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580－5379
권영호(權寧鎬)	동광스텐레스 사장	22－5644
권호기(權琥基)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4－2111
권혁소(權赫紹)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김경태(金敬泰)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545－7292
김정호(金璟浩)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4－2111
김　광(金　光)	국사편찬위원회	752－2982
김광수(金光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820－0275
김광윤(金光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219－2716
김광철(金光哲)	창원대학교 사학과	83－2151
김기선(金基善)	쌍용 대구지점	67－5204
김대우(金大羽)	용인대학교 사무처장	35－6971
김대원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204－0107
김도경(金疇經)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931－2001
김동균(金東鈞)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39
김동희(金東會)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姓　名	所　　屬	電　話
김민채(金民彩)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김병곤(金炳坤)	정주물산(주) 대표이사	547－4739
김병태(金炳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843－5920
김병하(金炳夏)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580－5402
김상규(金相圭)	경원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750－5763
김상무(金相武)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626－1321
김상호(金尙鎬)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83－2151
김순곤(金舜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762－0748
김선정(金善政)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김성규(金盛奎)	삼우공업주식회사 업무과장	54－3159
김성수(金聖壽)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3
김식현(金植鉉)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80－6900
김신웅(金信雄)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1－8127
김양화(金洋和)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56－0171
김영건(金榮建)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김영호(金永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955－5001
김옥근(金玉根)	부산산업대학교 경제학과	622－5331
김용환(金容煥)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경영학과	862－0077
김원배(金元培)	경원전문대학 교양학과	750－5524
김윤상(金潤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10－2738
김응식(金應植)	제주전문대학 관광학과	23－6113
김인환(金人煥)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67－8021
김재진(金載珍)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955－5001
김종규(金鍾圭)	효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66－6374
김종현(金宗炫)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13－1106
김종호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232－8151
김　준(金　埈)	동의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04－0171
김준헌(金峻憲)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김중식(金重植)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13－3811
김진병(金珍炳)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42
김진수(金鎭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김진탁(金鎭卓)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626－1321
김창남(金昌男)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242－0101
김창의(金倉宜)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44
김창주(金昌柱)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814－2731

姓 名	所 屬	電 話
김충현(金忠鉉)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김태환(金台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김한규(金漢圭)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김혜수(金惠水)	강릉대학교 사학과(강사)	42－7001
김호언(金鎬彦)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김홍식(金鴻植)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김효동(金孝東)	중앙대학교 사학과	813－8069
나경수(羅慶洙)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955－5001
노덕률(盧德律)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노직수(盧直樹)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82－2151
노택환(盧宅煥)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노형진(盧炯晋)	경기대학교 경상대	43－5648
류건우(柳建佑)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류기덕(柳基悳)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3－9201
류창우(柳昌佑)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민찬식(閔燦植)	경원전문대학 경영학과	252－1103
박광순(朴光淳)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55－0011
박광서(朴光緖)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549－1169
박기동(朴起東)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박동국(朴東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242－0101
박동수(朴東守)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동운(朴東雲)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09－2498
박명광(朴明光)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박명호(朴明鎬)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0－2360
박무현(朴武鉉)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박성규(朴誠圭)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성봉(朴性鳳)	경희대학교 사학과	962－9800
박승준(朴勝俊)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90－2499
박영상(朴濬祥)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박영철(朴英哲)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박용기(朴容基)	대신대학교 경영학과	49－5271
박우룡(朴佑龍)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박인태(朴寅泰)	효성여자대학교 경제학과	66－6374
박일근(朴一根)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83－2151
박은희(朴恩會)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762－5021

姓 名	所 屬	電 話
박재록(朴載錄)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2－5217
박정윤(朴貞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종기(朴鍾基)	삼우공업주식회사 사장	553－2567
박종수(朴宗洙)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52－4331
박종신(朴鍾信)	청주대학교 무역학과	54－211
박종헌(朴鍾憲)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준채(朴準埰)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232－8185
박현재(朴炫哉)	영남대학교 상업교육학과	82－5111
배성현(裵聖鉉)	영남대학교 상업교육학과	82－5111
배수진(裵守鎭)	계명실업전문대학 경영학과	620－2733
배연수(裵然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배주한(裵注漢)	관동대학교 경제학과	49－7346
상무달(尙戊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서길수(徐吉洙)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919－0411
서인덕(徐鱗德)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서정형(徐正衡)	경북개방대학교 경영학과	952－1661
서청석(徐靑錫)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962－9800
서진수(徐鎭洙)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281－5500
설봉식(薛鳳植)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236－0091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582－8805
성태현(成泰鉉)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45－5000
손국호(孫國鎬)	계명대학교 법학과	626－1321
손일선(孫一善)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과정	503－4704
송성진(宋成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4
송용종(宋龍鍾)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66
송희영(宋喜永)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84－5920
신규성(愼奎晟)	부산동아대학교 경제학과	242－0101
신두휴(申斗休)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741－6040
신수철(申壽澈)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신용수(申容守)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550－3376
신용휘(申容輝)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862－0077
신유근(愼侑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77－0101
신재정(申宰貞)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914－3141
신현종(申鉉鍾)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심정택(沈靖擇)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2－2151

姓　名	所　　屬	電　話
안병직(安秉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77－4171
안윤태(安潤泰)	영남대학교 상업교육학과	82－5111
안춘식(安春植)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290－1046
안태백(安泰佰)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914－3141
양동휴(梁東烋)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77－4151～8
양재선(梁在鮮)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50－3496
여동길(呂東吉)	계명대학교 상업교육학과	626－1321
여진구(呂珍九)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67－2081
오두환(吳斗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82－1321
오세창(吳世昌)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오흥수(吳興秀)	청주교육대학교	4－8151
우갑정(禹甲禎)	경북전문대학	82－7001
우성대(禹成大)	경북공고 기계과	626－1321
우영환(禹英煥)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550－3372
유봉로(兪鵬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92－0103
유원동(劉元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713－9390
야나기마찌(柳町功)	일본나고야상과대학교 경영학과	(05617)3－2111
유진채(兪鎭采)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61－2591
유한우(柳漢佑)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유호근(兪好根)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윤기복(尹基福)	산업경제연구원 경영연구실	546－3984
윤재권(尹在權)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954－6001
이경희(李慶喜)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이계원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232－8151
이광종(李光鍾)	신흥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870－3491
이광주(李光周)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709－2522
이대근(李大根)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582－8805
이동우(李東雨)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914－3141
이덕훈(李惠薰)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629－7510
이말남(李末南)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이병찬(李炳贊)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40－5271
이상옥(李相玉)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713－9240
이상조(李相祚)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이승엽(李承燁)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이승욱(李承旭)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709－2515

姓　名	所　　屬	電　話
이영훈(李榮勳)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582－8805
이영훈(李榮勳)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61－2114
이용옥(李容旭)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이원달(李元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이원우(李元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820－0563
이윤복(李允馥)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50－6114
이인기(李仁書)	서점경영	914－4849
이재율(李在律)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이정규(李正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962－9800
이정도(李正道)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955－5001
이종오(李鍾旿)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626－1321
이종훈(李鍾燻)	중앙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813－3811
이천우(李天雨)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83－2151
이철희(李喆熙)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626－1321
이춘삼(李春三)	청주대학교 무역학과	54－2111
이필우(李弼佑)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843－5920
이한구(李漢九)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31－8310
이해주(李海珠)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56－0171
이헌창(李憲昶)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43－5648
이호철(李鎬澈)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955－5001
이효수(李孝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이효영(李孝永)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이희경(李熙慶)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50－6142
이희대(李熙大)	대구한의과대학교	83－0551
임향근(任香根)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47
장동섭(張東燮)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55－0011
장시원(張矢遠)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743－8420
장홍석(張洪碩)	유풍출판사 대표이사	967－5351
전경태(全景泰)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전기호(戰基浩)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962－9800
전남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55－0011
전철환(全哲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822－0101
전　형(田　馨)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09－2505
정경섭(鄭京燮)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
정기숙(鄭基淑)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姓 名	所 屬	電 話
정덕기(鄭德基)	충남대학교 사학과	822－0101
정병휴(丁炳烋)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77－4171
정상천(鄭相天)	공주사대 상업교육학과	52－2529
정성호(丁聖浩)	계명전문대학	626－1321
정종수(鄭鍾秀)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83－2151
정초시(鄭超時)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4－2111
정해동(丁海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813－8059
조군제(趙君濟)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83－2151
조기준(趙璣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52－2216
조덕구(趙德九)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305－1581
조봉진(曺峯震)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0－2388
조상국(趙相國)	효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66－6374
조수종(曺壽鍾)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61－2214
조영건(曺永建)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45－5000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상대학	219－2714
조인석(趙仁錫)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82－1321
조진하(趙進夏)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조현정(曺賢正)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주종환(朱宗桓)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67－8131
지정택(池禎擇)	아주대학교 경상대	219－2707
차진무(車珍武)	중앙공업(주) 대표이사	62－8031
채종찬(蔡鍾瓚)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최길상(崔吉相)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72－8153
최단옥(崔丹鈺)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760－8323
최동호(崔東湖)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최만기(崔晩基)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최명규(崔明圭)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94－7004
최명주(崔明周)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최송열(崔松烈)	계명대학교 상업교육학과	626－1321
최영곤(崔永坤)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최영순(崔榮順)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강사)	359－0752
최원철(崔元喆)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23－6141
최태호(崔泰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910－4523
추교완(秋敎完)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2－2151
편인범(片仁範)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797－0581

姓　名	所　　屬	電　話
하치덕(河致德)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한한수(韓漢洙)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4
허수열(許粹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822－0101
허　화(許　樺)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56－0171
허익구(許益九)	포항전문대학 무역학과	2－8001
호리가즈오(堀和生)		일본075－645－4008
황완성(黃完晟)	국민대학교 경제학과(강사)	388－0096
황남일(黃南逸)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709－2516
황명수(黃明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09－2130
황성규(凰聖圭)	중앙대학교 일본학과	813－8096
황신모(黃信模)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1－8132
황하현(黃夏鉉)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290－1021

經營史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學會는 經營史學會(이하 本 學會)라 한다.

第2條(所在地) 本 學會의 事務所는 大韓民國內에 둔다.

第3條(目的) 本 學會는 經營史에 관련된 學術硏究와 會員 相互間의 친목 도모를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 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經營史와 이에 관련된 硏究와 調査

(2) 會誌 및 硏究書籍의 刊行

(3) 硏究發表會 및 公開講座의 開催

(4) 本 學會와 目的을 같이하는 國內外 關聯機關과 産業界와의 交流

(5) 創業大賞 選定에 관한 事業

(6) 其他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關聯事業

第5條(機構) 本 學會는 前條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의 委員會를 두며 各 委員會의 設置內規는 따로 定한다.

(1) 編輯委員會

(2) 創業大賞審査委員會

(3) 企業史硏究委員會

(4) 企業家思想硏究委員會

(5) 組織委員會

(6) 弘報委員會

第2章 會 員

第6條(會員의 構成) 本 學會의 會員은 本 學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로 하고, 이를 區分하여 (1) 正會員 (2) 準會員 (3) 特別會員 (4) 機關會員으로 한다.

第7條(會員의 資格) 正會員은 大學 또는 專門大學의 專任講師 이상의 者와 硏究機關의 硏究員으로 한다. 準會員은 經營史에 관심을 가진 大學院의 碩士過程의 在學生 및 그에 준하는 者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機關會員은 本 學會의 事業에 계속하여 贊助나 出捐을 하는 機關(團體포함)으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8條(會員의 權利·義務) 本 學會의 會員은 소정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며 本 學會의 諸般事業에 자유롭게 參加할 수 있다.

第9條(會員의 資格喪失) ① 本 學會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會員自身의 脫退意思를 表現했을 때

(2) 本 學會의 名譽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② 前項의 (2)에 해당하는 會員은 總會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10條(任員의 構成) ① 本 學會의 任員은 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理事 및 監事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會長 1人, 副會長 약간명, 常任理事 10명 內外, 理事 30명 內外로 구성한다.

③ 監事는 2人으로 한다.

④ 本 學會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社會 各界의 人士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顧問 및 諮問委員으로 추대할 수 있다.

第11條(會長의 選出) 會長은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 또는 正會員 3분의 1이상의 推薦을 받은 者로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出한다.

第12條(監事 및 理事의 選出) ① 監事는 總會에서 선출한다.

② 副會長, 常任理事 및 理事는 會長의 推薦에 의하며 總會에서 認准한다.

第13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重任할 수 없다.

第14條(任員의 權限) ①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常任理事는 會長의 主宰下에 本 學會의 業務를 協議한다.

④ 監事는 會務를 監事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할 수 있으며 理事會에서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⑤ 顧問 및 諮問委員은 本 學會의 發展을 위한 諮問을 할 수 있다.

第 15條(事務局 設置) ① 本 學會에 事務局을 두며, 會長은 常任理事 中에서 幹事를 任命한다.

② 會長은 필요할 경우, 幹事 밑에 實務를 擔當할 幹事補를 任命할 수 있다.

第 4章 會 議

第 16條(總會) 本 學會의 總會는 定期總會 외 臨時總會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年1回 정기적으로 會長이 소집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會員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第 17條(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改正

(2) 會長 및 監事의 選任

(3)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

(5) 豫算 및 決算

(6) 기타 主要事項

第 18條(理事會)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 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書 및 決算書 作成에 관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會則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기타 主要事項

第 19條(定足數) ① 모든 會議는 會員 多數의 參席으로 開催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決議한다.

② 不得已한 사유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會員은 議決權을 會長 및 出席委員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 20條(會議錄) 會議事項에 관하여는 반드시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

다.

第5章 財 政

第21條(財政) ① 本 學會의 財政은 회원이 納付하는 會費와 寄附金, 補助金, 出捐金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22條(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7月 1日부터 다음해 6月 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1條 ①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다.

② 本 學會의 總會나 理事會에서 特別한 決議가 없는 한, 通常慣例에 따른다.

第2條(施行) 本 會則은 1986年 2月 22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施行當時의 任員의 任期는 1993年 2月 28日까지로 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經營史學會 論文集 編輯委員會 設置 內規

第1條 이 規程은 經營史學會의 學術硏究誌인 「經營史學」의 發刊을 위한 編輯委員會의 設置, 運營 및 그 編輯方針에 의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 學會의 論文集 發刊을 위하여 「經營史學」 發刊 編輯委員會를 설치 운영한다.

第3條 編輯委員會의 委員은 本 學會의 論文集 發刊時마다 會長의 推薦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第4條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執行한다.

(1) 論文集 發刊計劃의 樹立 및 施行

(2) 提出된 論文의 揭載與否 審議

(3) 기타 論文集 發刊 編輯에 관한 事項

第5條 編輯委員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는 本 學會의 豫算에서 執行한다.

第6條 投稿者는 原則的으로 經營史學會의 會員에 限한다. 다만, 會員과의 共同 硏究者 및 招請된 寄稿者는 例外로 한다.

第7條 揭載된 論文의 責任은 執筆者가 진다.

第8條 硏究論文은 다른 刊行物에 發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第9條 提出된 論文은 編輯委員會에서 위촉하는 審査委員에 의한 審査가 이루어지고 審査結果에 따라 編輯委員會에서 그 揭載與否를 決定하고 이를 執筆者에게 通報한다.

第10條 編輯委員會는 揭載될 論文 內容의 修正이나 補完을 執筆者에게 요구할 수 있다.

第11條 揭載될 論文의 審査基準은 :

(1) 硏究主題의 重要性

(2) 硏究方法의 妥當性

(3) 內容의 創意性 및 檢證性

(4) 理論的, 實務的 및 敎育的 寄與度

(5) 其他 編輯技術上의 要件에 適合與否 등

第 12條 論文集 內容은 硏究論文, 硏究노트, 書評 및 通信欄으로 구분될 수 있다.

第 13條 揭載되는 論文의 體制에 관한 事項은 編輯委員會에서 정한다.

第 14條 「經營史學」에 揭載된 論文의 版權은 經營史學會가 所有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

이 규정은 1991年 9月 1日부터 시행한다.